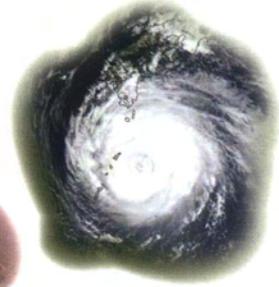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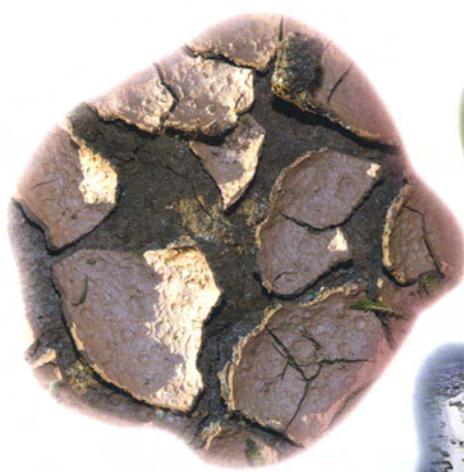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3820000-000076-10

2014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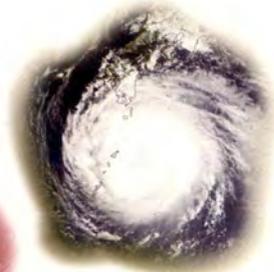


의 정 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등록번호

71-3820000-000076-10

2014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의 정 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전 관리 헌장 -

오늘날 우리는 태풍 · 지진 · 화재 · 교통사고 ·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 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1.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 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장. 총 론	3
제1절 일반사항	5
제2절 재난관리 대책	6
제3절 재난의 이해	8
제4절 과거 자연재난 피해현황('98~'14년)	14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21
제1절 조직체계	23
제2절 단계별 근무체계	25
제3절 비상지원본부(현장CP)설치.운영	57
제4절 재난현장 대응절차	59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63
제1절 태풍·호우	65
제2절 대 설	97
제3절 황 사	117
제4절 가 물	125
제5절 지 진	151
의정부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60
제6절 폭 염	193
제7절 강 풍	205
제8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217
제4장. 업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239
1.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241
2.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254
3. 봉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58
4.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262
5. 인명피해 우려 위험구역 설정.운영	264
6.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276
7.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289

8.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297
9.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303
10. 급경사지 대책	306
제5장. 본부장 및 각급 담당별, 실과별 행동요령	309
제1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11
제2절 소관실과별 주요임무	378
제6장. 주민행동요령	411
1. 태 풍	413
2. 호 우	417
3. 대 설	420
4. 가뭄 및 폭염	424
5. 지 진	429
6. 황 사	435
7. 강 풍	438
8. 한 파	439
제7장. 부록	445
1. 기상특보 발표기준	447
2. 재난피해접수 서식	448
3. 방재시설 현황	449
4. 방재물자 현황	457
5.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459
6.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460
7.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461
8. 의료기관 현황	463
9. 재해취약지구 현황	465
10. 재해약자관리 현황	467
11. 의정부시 하천 현황	473
12. 설해 취약지 노선 및 동별 현황	475
13. 대규모 건설공사장 현황	476
1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477

제1장 총론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재난관리 대책

제3절 재난의 이해

제4절 과거 자연재난 피해현황



여 백

제1절 일반사항

1. 개 요

이 매뉴얼은 태풍, 호우, 해일,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유형별, 단계별(대비, 대응, 복구),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매뉴얼 적용범위

-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강풍 등으로 인한 재난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적용
-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용
-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사태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3. 관련법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지진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제334호, 13.7.18)
-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 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 2013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2013-23. 2013.7.1)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2절 재난관리 대책

1. 기본방향

-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적극 추진
-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대비 및 Action Plan 정착
- 현장밀착형 재난관리 행정 강화
- 사전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평가를 하는 책임행정 강화

2. 대응 원칙

- 기상정보·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점검 및 지속적 보완
- 태풍·호우 등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및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재난정보를 반복적으로 홍보
- 피해(우려)지역 책임담당제 실시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2. 우리 시의 지리적 요건

○ 지리적 위치

의정부시는 경원선과 평화로가 시가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교외선이 도봉산 서쪽 기슭을 감싸 도는가 하면, 43번 국도는 천보산 분수령을 넘어 철원방면으로 연결되는 등 한수이북의 심방부를 형성하고 있다.

시의 외각에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들뿐 아니라, 중랑천이 남류하여 한강에 이르고 있다.

교통체계상 경기도 북부의 교통중심지로서 문산, 금촌, 동두천, 연천, 포천 등지와 연결되며 경원선과 교외선철도의 교차점이자 국도 제3호선, 39호선, 43호선의 교차지점으로 군사상 요충지이고 수도시설의 북부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 수리적 위치

의정부시의 남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와 시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단은 양주시 양주1동과 포천시 소흘읍, 서단은 양주시 장흥면, 동단은 남양주시 별내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행정구역 현황

의정부시는 총 15개의 행정동, 1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동

-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 법정동

-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고산동, 산곡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3. 주요정비 내용

가. 지역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매뉴얼 작성

- 우리시 과거 자연재난유형별 발생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대비·대응단계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매뉴얼에 반영
-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매뉴얼 정비·보완으로 실용성 확보
- 재난 유형(태풍·호우 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작성·활용

나.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 매뉴얼 정비

- 기상특보 발령시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매뉴얼 운용을 위하여 서비스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및 연락처 수록

다. 『인명피해 최소화 행동요령』을 매뉴얼에 반영 작성·활용

- 인명피해 우려지구 지정·관리 현황(위치, 공무원·민간 담당자, 단계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반영
- 동 주민센터 직원 등 인명피해 우려지구 담당자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 반영

라.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시 실용성 확보

- 지역대책본부와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매뉴얼에 명시, 재난발생시 협조·지원·보고체계 원활한 가동
- 재난유형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비상근무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근무인원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매뉴얼에 수록

제3절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가.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폭염,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다. 국가기반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국가 및 국민의 책무

가.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및 시·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나.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난의 신개념

재난 = 기존의 자연재난개념 + 기존의 인적재난개념 + 국가기반재난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3.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가. 태풍(typhoon)

- 일반적으로 중심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른다.
- ※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 m/s 이상인 것을 태풍(TY), 25~32 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IS), 17~24 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 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 태풍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한다.
- 태풍의 크기는 풍속 15 m/s 이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강으로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온도가 보통 27°C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북위 5° 이상에서 발생한다.

-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을 동반한다. 태풍권역이나 진행방향의 우측(동측)은 강한 바람이 불며, 중심권역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풍우가 발생한다.
-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통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난다.
- 그러나 태풍이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태풍은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저위도 지방에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람과 피해의 관계】

평균속도 (m/초)	시속 (km/hr)	풍압 (kg중/m ²)	비교속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나무의 모습	건축물 피해
10~15	~50	~11.3	일반도로의 자동차	바람을 향하여 걷기가 힘들어진다.	수목 전체가 흔들린다.	설치가 불완전한 간판이나 함석판이 날기 시작한다.
15~20	~70	~20.0	고속도로의 자동차	바람을 향하여 걸을 수 없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잔 가지가 꺾어진다.	비닐하우스가 쓰러지기 시작한다.
20~25	~90	~31.3		신체를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진다.
25~30	~110	~45.0		서 있을 수 없다. 옥외에서의 행동은 위험하게 된다.	수목이 쓰러지기 시작한다.	블록담장이 무너진다.
30~	110~	45.0~	특급 열차			목조주택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나. 호우(heavy rain)

-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우량·강우강도·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한다. ⇒ 집중호우
- 호우는 발생하는 위치와 시각 및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풍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어 엄청난 손실을 낸다.

- 호우에 의한 피해는 지대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우가 높은 산에 발생하면 고지대는 도로의 붕괴로 고립현상이 나타나고 저지대는 유수에 의한 침수가 발생한다.
- 최근 경향으로 봤을때 여름철 장마기간에 발생한 피해보다는 장마가 끝난 후인 8월 ~ 9월초사이에 서해안으로부터 공급되는 비구름에 의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재난이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99년, '00년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한 자연재난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우시 시간당 강우량과 벌어지는 상황】

강우량 (mm/hr)	사람이 받는 느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실외 상황	차에 있을 때	재해발생 상황
10~20	세게 내리는 비	걸을 때 바지를 적신다.	지면에 물 웅덩이가 생긴다.	와이퍼를 빨리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하다.
20~30	장대비라 말한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젖는다.			고속 주행시 바퀴와 노면의 사이에 수막이 생기고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된다.
30~50	물통으로 붓듯이 내린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보라가 일어나 도로면이 새하얗게 되고 시야가 나빠진다.	
50~80	폭포와 같이 내리며 쿵쿵 소리가 난다.	가슴이 답답한 압박감이 있다. 공포를 느낀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80이상					

다. 대설

-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 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르다.
-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의 적설이 있어도 교통두절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산간지역의 과도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초래하여 마을간 고립현상이 발생한다.

라. 황사(Asian dust, yellow sand)

-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한다.
-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마. 가뭄(drought)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수문학적 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예전에는 가뭄의 강도를 무강수(無降水) 계속일수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물부족량 정도의 지속 기간 및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넓이 등에 따라 판단한다.

바. 지진(Earthquake)

-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 지진의 규모란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 8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

규 모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JMA진도 (8등급)
2.5미만	사람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됨	느낄 수 없음	0(무감)
2.5~3.0	정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다소 흔들린다고 느낌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I(미진)
3.0~3.5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창문이 다소 흔들림	여러사람이 느낌	II(경진)
3.5~4.0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움직이며 형광등과 같은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거나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 깨	III(약진)
4.0~5.0	건물의 흔들림 심하고 불안정하게 놓인 꽃병이 넘어지며 그릇의 물이 넘침,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옴	매우 놀람 자다 깨 밖으로 나옴	IV(중진)
5.0~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됨	서 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낌	V(강진)
6.0~7.0	건물파괴 30%이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에 금이 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음	도움없이 걸을 수 없음	VI(열진)
7.0~8.0	건물파괴 30%이상 산사태가 나고 땅이 갈라짐	이성상실	VII(격진)
8.0~9.0	건물 완전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대공황	
9.0이상	관측된 바 없음		

【기상특보 발령기준】

구 분		내 용
호 우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경 보	6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강 풍	주의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경 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경 보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이 예상될 때
태 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호우·강풍·풍랑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이상 예상될 때

제4절 과거 자연재난 피해현황

1. 1998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7명, 실종 1명
- 재산피해 : 41,400백만원 (공공시설 : 18,000백만원, 사유시설 : 23,400백만원)

2. 1999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9,795백만원 (공공시설 : 9,700백만원, 사유시설 : 95백만원)

3. 2000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480백만원 (공공시설 : 400백만원, 사유시설 : 80백만원)

4. 2001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530백만원 (공공시설 : 1500백만원, 사유시설 : 30백만원)

5. 2002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없음

6. 2003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이재민 : 없음
- 재산피해 : 4백만원 (공공시설 : 0백만원, 사유시설 : 4백만원)

7. 2004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없음

8. 2005 수해복구 추진현황

피해현황

없음

9. 2006 수해복구 추진현황

가. 피해현황

1) 인명피해 : 없음

2) 이재민 : 없음

3) 재산피해 : 696백만원 (공공시설 : 666백만원, 사유시설 : 30백만원)

나. 복구실적

1) 복구금액 : 696백원 (국고 21백만원, 지방비 675백만원)

공공시설 : 666백만원(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30백만원(주택침수)

다. 복구사업 추진실적

【공공시설】

(단위 : 건/억원)

구분	복구대상		비고
	건수	복구비	
계	8	6.66	
도로교량	2	1.23	
하천	5	2.83	
소하천	0	0	
소규모시설	1	2.60	
방재시설	0	0	

【사유시설】 주택침수 : 복구대상 30세대, 완료 30세대

10. 2007 수해복구 추진현황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없음
- 2) 이 재 민 : 없음
- 3) 재산피해 : 113백만원 (공공시설 : 0원, 사유시설 : 113백만원)

나. 복구실적

- 1) 복구금액 : 113백원 (국고 0원, 지방비 113백만원)
 - 공공시설 : 0원(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 사유시설 : 113백만원(주택침수)

다. 복구사업 추진실적

【공공시설】 없음

【사유시설】 주택침수 : 복구대상 113세대, 완료 113세대

11. 2008 수해복구 추진현황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없음
- 2) 이 재 민 : 없음
- 3) 재산피해 : 26.5백만원 (공공시설 : 0원, 사유시설 : 26.5백만원)

나. 복구실적

복구금액 : 26.5백원 (국고 18.55백만원, 지방비 7.95백만원)

- 공공시설 : 0원(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 사유시설 : 26.5백만원(주택침수 26가구, 농작물 1가구)

다. 복구사업 추진실적

【공공시설】 없음

【사유시설】 주택 침수 : 복구대상 26세대, 완료 26세대

농작물침수 : 복구대상 1세대, 완료 1세대

12. 2009 수해복구 추진현황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없음
- 2) 이재민 : 없음
- 3) 재산피해 : 4백만원 (공공시설 : 0원, 사유시설 : 4백만원)

나. 복구실적

- 1) 복구금액 : 4백만원 (국고0원, 지방비 4백만원)
 - 공공시설 : 0원(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 사유시설 : 4백만원(주택침수 4가구)

다. 복구사업 추진실적

【공공시설】 없음

【사유시설】 주택침수 : 복구대상 4세대, 완료 4세대

13. 2010 수해복구 추진현황

가. 9.2일 태풍 곤파스

- 기상특보 현황
 - '10.9.2. 03:00 태풍주의보 발표 ⇒ 06:00 태풍경보 발표
- 지급액 : 2건 / 2,000천원
 - 지급대상 1 : 1,500천원(농약대 500천원, 생계지원비 1,000천원)
 - 지급대상 2 : 500천원(농약대)

나. 9.9일 집중호우 피해

- 기상특보 발령현황
 - 9. 9일 20:30 ~ 9. 10일 04:00 : 호우주의보
 - ※ 9.10일 23:40 경보 대체
- 지급액 : 13건 / 13,000천원 (단순침수)

14. 2011 수해복구 추진현황(7.26~29 집중호우)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이재민 : 없음
- 2) 재산피해 : 3,622,572천원 (공공시설 : 3,387,972천원, 사유시설 : 234,600천원)

나. 복구실적

- 복구금액 : 3,337,581천원
 - 공공시설 : 3,102,981천원
 - 사유시설 : 234,600천원(주택침수 222, 농경지침수 22, 상가침수 2건)

다. 복구사업 추진실적

【공공시설】 복구대상 37건 / 완료 37건

구 분	전수	복 구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283	3,337,581	174,246	1,079,462	2,083,873	
하 천	12	1,035,645		1,035,645		
소하천	11	903,554			903,554	
도 로	10	1,012,689			1,012,689	
문화재	1	15,905		15,905		
산사태	1	123,762			123,762	
군시설	2	11,426	11,426			
사유시설	246	234,600	162,820	27,912	43,868	

【사유시설】 침수 복구대상 246건 / 완료 246세대

15. 2012 수해복구 추진현황(제15호 태풍 블라벤)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없음
- 2) 이 재 민 : 없음
- 3) 재산피해 : 75,300천원 (공공시설 : 0원, 사유시설 : 농작물 113건-39ha)

나. 복구실적

【공공시설】 해당 없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1건(500천원)

16. 2013 수해복구 추진현황(7.12~14 집중호우)

가.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 없음
- 2) 이재민 : 없음
- 3) 재산피해 : 80,033천원 (공공시설 : 0원, 사유시설 : 주택 35건 상가 3건)

나. 복구실적

【공공시설】 해당 없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주택 26건(26,000천원)

재해구호지원금 지급 - 상가 3건(3,000천원)

여 백

제 2 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체계

제2절 근무체계

제3절 비상지원본부(현장CP)
설치운영

제4절 재난현장 대응절차



여 백

제1절 조직체계

1.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나.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2.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가. 본부장 : 의정부시장이 되며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 나. 차장 :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
- 다. 총괄조정관 :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의정부시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 라. 통제관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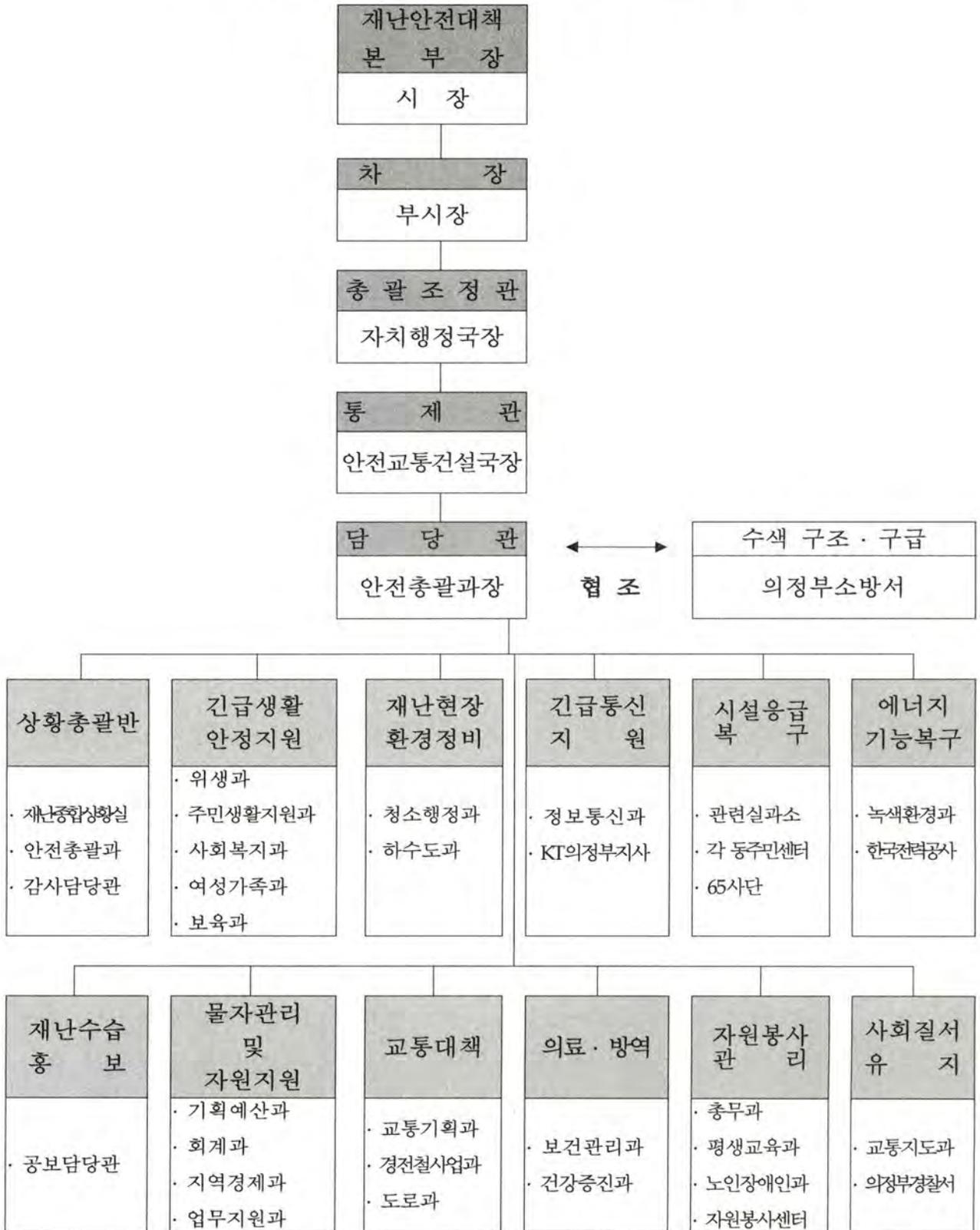
마. 담당관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

바. 실무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의정부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제2절 단계별 근무체제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2. 비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 단계시 보고서 작성

- 반 장 : 안전총괄과 방재팀장
- 반 원 : 안전총괄과 방재팀 4명
- 주요임무 및 행동요령
 - 정보수집·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 상황보고서 작성(1일 4회 : 06, 11, 17, 23시)
 - 보고서 작성 60분 전까지 보고자료를 시·도 재난상황실로 제출
 - 인명피해 관리
 - 재산피해 관리(공공, 사유, 침수 등)
 - 재난정보 모니터링(정보수집 전파)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 활용 태풍·호우정보 수집
 - 재난상황관리 총괄
 -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협업기능별 추진상황 관리
 -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즉보(초동보고) 실시
 - 재난상황보고 순서 : 최초 → 중간 → 최종보고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복지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피해정보 수집·분석 보고
- 자연재난진행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나. 13개 재난관리 기능의 임무·역할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교통대책 : 육상 교통수단 지원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재난발생 단계별 신속한 상황보고 실시

< 보고단계 >

(최초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상황전파시스템,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중간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 수습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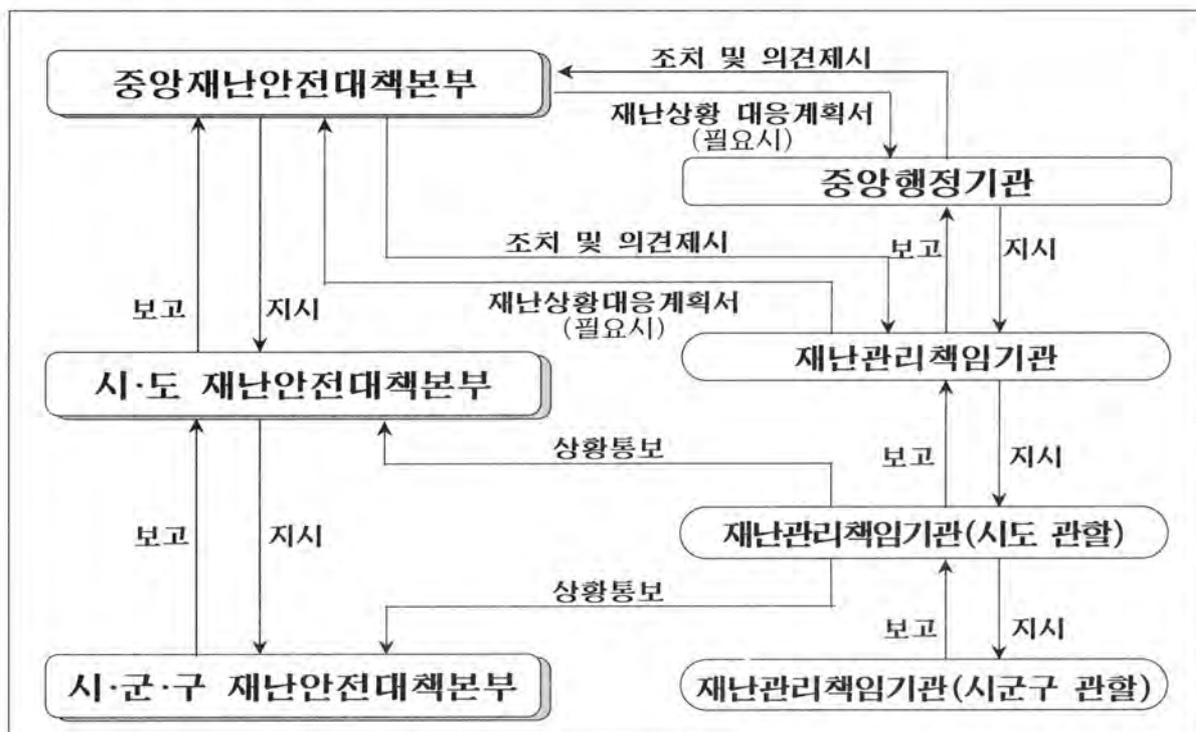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보고단계 >

의정부시장 ⇒ 경기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부서장 ⇒ 의정부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다. 상황관리체계



나. 의정부시 재난관리시스템 대응계획

- 목 적 : 상황단계별 신속한 사전대비 및 대응 업무절차 수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력은 관련부서 담당자가 직접 실시 (소방방재청 지침)
 - ※ 재난관련부서 담당자가 취합하여 입력하던 방식을 탈피
- 입력시기 : 예비 특보, 주의보·경보 발효시부터 종료시까지
- 방 법 : 재난관리시스템 업무분야별 담당자 반드시 입력
 - ※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 입력주소 : <http://105.3.10.31:9100/sdt/SdtLogin.jsp> (재난관리시스템)

○ 재난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ID 현황

행정서비스구분	시스템ID	부서별			행정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부서	직급	담당자			
풍수해총괄	4115000001	안전총괄과	공업6급	이병기	4331		
방역	4115001001	보건관리과	보건7급	이명순	4552		
의료	4115002001	보건관리과	보건7급	서경숙	4782		
인명피해	4115003001	안전총괄과	시설8급	박성용	4334		
산사태	4115004001	공원녹지과	녹지7급	박한덕	2343		
쓰레기 처리	4115005001	청소행정과	행정7급	송귀득	2822		
상수도	4115006001	수도과	공업9급	안주영	2449		
지방도	4115007001	도로과	시설7급	김영삼	2982		
시군도	4115008001	도로과	시설7급	김영삼	2982		
서비스총괄	4115009001	안전총괄과	사무7급	김지희	4324		
지방하천	4115010001	안전총괄과	시설7급	최종훈	2892		
소하천	4115010101	안전총괄과	시설8급	이수민	2893		
수리시설(저수지)	4115011001	수도과	행정7급	김충호	2442		
수리시설(양배수장)	4115011201	안전총괄과	공업7급	구본철	4334		
소규모시설(농로)	4115012001	도로과	시설8급	임재명	4333		
소규모시설(소교량)	4115012101	도로과	시설8급	임재명	4333		
도시배수펌프장	4115013001	안전총괄과	공업7급	구본철	4334		
농업시설	4115021001	지역경제과	행정7급	노자연	2313		
내집앞눈치우기	4115022001	안전총괄과	공업7급	구본철	4334		
이재민	4115099901	주민생활지원과	행정7급	고재욱	4053		
물놀이안전사고	4115051001	안전총괄과	시설7급	신은우	4323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10	의정부1동	운전8급	윤상식	4261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20	의정부2동	청원경찰	엄대현	4007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31	의정부3동	행정7급	정세훈	4131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41	호원1동	청원경찰	이규웅	4286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51	호원2동	청원경찰	김형태	4342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61	장암동	행정7급	김남경	4155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71	신곡1동	행정8급	한광희	4367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81	신곡2동	행정8급	임성애	5838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591	송산1동	행정7급	윤수정	4380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01	송산2동	행정7급	성태현	4182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11	자금동	농업7급	백종두	4988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20	가능1동	행정7급	이현순	4207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31	가능2동	청원경찰	박동환	4215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40	가능3동	녹지7급	백남협	4957		
풍수해피해입력	4115000651	녹양동	행정7급	이재철	2918		
풍수해피해(일반건축분야)	4115000661	주택과	시설7급	박정선	4244		
풍수해피해(공동주택분야)	4115000670	주택과	시설8급	함찬승	2913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등 입력 요령

1 사전대비 보고서

- ①재난대응활동 / ②사전대비보고서/③ 유형별로 선택후 입력



2 인력관리

- ①자원정보 / ②인력관리 / ③ 유형별로 선택후 입력



③ 물자관리

- ①자원정보 / ②물자관리 / ③ 유형별로 선택후 입력

④ 시설관리

- ①자원정보 / ②시설관리 / ③ 유형별로 선택후 입력

※ 서식은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의 '자원정보' 입력으로 같음하며 별도 제출 불필요

3.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표

〈기상특보 발령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m/s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 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이 예상 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 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 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 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 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한반도 주변 해역(21N~45N, 110E~145E)등 에서 7.0 이상의 해저지 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 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종류	주 의 보	경 보
한파	<p>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p> <p>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p>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p> <p>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태풍	<p>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호우 현상·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p>	<p>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p> <p>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p> <p>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p>
황사	<p>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μg/m³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μg/m³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폭염	<p>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가. 태풍호우시

구분	근무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
평상시 (준비단계)	태풍 호우	◆ 24시간 상황관리	2명	- 재난상황실 근무자 : 2명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	태풍	◆ 태풍정보 발표 시 (경기지역 도착1일전)	25명	- 담당관 : 1명 - 상황총괄반 : 5명 - 긴급생활안정지원 : 1명 - 재난현장환경정비 : 1명 - 시설응급복구 : 15명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명 - 교통대책 : 1명
	호우	◆ 예비특보 발효 시 (특보발효 예상 3시간 전)		
비상 1단계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122명	- 담당관 : 1명 - 상황총괄반 : 8명 - 긴급생활안정지원 : 6명 - 재난환경정비 : 2명 - 긴급통신지원 : 1명 - 시설응급복구 : 58명 - 에너지기능복구 : 1명 - 재난수습홍보 : 1명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명 - 교통대책 : 1명 - 의료·방역 : 2명 - 자원봉사관리 : 4명 - 사회질서유지 : 1명 - 수색 구급·구조 : 1명 - 기타 : 25명 (펌프장, 배수문)
	호우	◆ 호우주의보 발표		
비상 2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198명+ α	- 통제관 : 1명 - 담당관 : 1명 - 상황총괄반 : 14명 - 긴급생활안정지원 : 11명 - 재난환경정비 : 4명 - 긴급통신지원 : 3명 - 시설응급복구 : 99명 - 에너지기능복구 : 3명 - 재난수습홍보 : 2명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0명 - 교통대책 : 9명 - 의료·방역 : 4명 - 자원봉사관리 : 8명 - 사회질서유지 : 3명 - 수색 구급·구조 : 1명 - 기타 : 25명 (펌프장, 배수문)+ α
	호우	◆ 호우경보 발표		
비상 3단계	태풍 호우	◆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951명+ α	전원 비상 근무태세 돌입

※ 의정부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 특보가 없어도 특보이상에 준한 기상상황 발생시 의정부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보강시”이상의 단계에 근무편성을 할 수 있다.

<태풍·호우시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인원>

구 분	준비단계 (평상시)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계	대책 본부	사무실 (현장)	계	대책 본부	사무실 (현장)	계	대책 본부	사무실 (현장)	계	대책 본부	사무실 (현장)	계	대책 본부	사무실 (현장)
계	2	2	0	25	5	20	122	15	107	198	26	172	951+ α		
통제관										1	1				
담당관				1	1		1	1		1	1				
상 황 총괄반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2			2			3			3			
	감사담당관 (정보수집, 보고서)	2			5			8	1		14	1	1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2	1		2	2		2	7		
긴급생활 안정지원	위생과														2
	주민생활지원과								1	1		1	2		
	사회복지과				1			6		1	11		2		
	여성가족과									1			2		
재난현장 환경정비	보육과									1			2		
	청소행정과				1			2		1	4		2		
긴급통신 지원	허수도과					1				1		1	1		
	정보통신과							1		1	3	1	1		
시 응 복 구	KT											1			
	미래정책과														2
	시민봉사과														2
	세무과														2
	문화관광체육과														2
	도시과														2
	주택과				15			58	1	1	99	1	4		
	주거정비과														2
	공원녹지과								1	3		1	4		
	수도과														1
	동주민센터														75
65사단												1			
에너지 기능복구	녹색환경과												1	1	
	한국전력공사							1		1	3	1	1		
재난수습 홍보	공보담당관							1	1		2	1	1		
물자관 리 및 자원지 원	기획예산과														2
	회계과														2
	지역경제과				1		1	5	1	1	10	1	3		
	업무지원과														2
교 대 통 책	교통기획과														2
	경전철사업과				1			6		1	9		2		
	도로과								1	3		1	4		
의 료 방 역	보건관리과												1	1	
	건강증진과							2		1	4		2		
자 원 사 리	총무과												1	2	
	평생교육과														2
	노인장애인과							4		1	8		2		
	지역자율방재단												1		
사회질서 유 지	교통지도과												1	1	
	경찰서							1		1	3	1			
수색구조 구 급	소방서							1	1		1	1			
기 타	배수문, 펌프장							25		25	25		25		

전원근무
+ α

<단계별 근무자 명단(준비단계)>

구 분	A조			B조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2	2		2	2	
통제관						
담당관						
상 황 총괄반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2	2(당직2인)	2	2(당직2인)	
	감사담당관 (정보수집, 보고서)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긴급생활 안정지원	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보육과					
	청소행정과					
긴 급 통신지원	하수도과					
	정보통신과					
시설응 급 복 구	KT					
	미래정책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에너지 기능복구	동주민센터					
	65사단					
재난수습 홍 보	녹색환경과					
	한국전력공사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교통대책	업무지원과					
	교통기획과					
	경전철사업과					
의료·방역	도로과					
	보건관리과					
자원봉사 관 리	건강증진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					
사회질서 유 지	지역자율방재단					
	교통지도과					
수색구조 구 급	경찰서					
	소방서					
기 타	배수문, 펌프장					

<단계별 근무자 명단(사전대비 단계)>

구 분	A조			B조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25	5	20	25	5	20	
통제관							
담당관	1	안전총괄과장		1	건설행정팀장		
상 황 총괄반	5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2(당직2인)	5	2(당직2인)		
		감사담당관 (정보수집, 보고서)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1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위생과		1			
		주민생활지원과	1			1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청소행정과		1			
		하수도과	1			1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KT					
시설용 급부	15	미래정책과		15			
		시민봉사과					
		세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동주민센터			15(동재난담당자)		15(동재난담당자)
65사단							
에너지 기능복구		녹색환경과					
		한국전력공사					
재난수습 보		공보담당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기획예산과		1			
		회계과					
		지역경제과	1			1	
		업무지원과					
교통대책	1	교통기획과		1			
		경전철사업과					
		도로과	1		1		
의료·방 역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자원봉사 관 리		총무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방재단					
사회질서 유 지		교통지도과					
		경찰서					
수색구조 · 구 급		소방서					
기 타		배수문, 펌프장					

<단계별근무자명단(비상1단계)>

구 분	A조			B조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122	15	107	122	15	107	
통제관							
담당관	1	안전총괄과장		1	건설행정팀장		
상 황 총괄반	8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3(김지희,당직2인)	8	3(이승준,당직2인)		
		감사담당관 (정보수집, 보고서)	1(임경덕)		1(장상근)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2(이병기,박성용)		2	2(이영석,이영희)	2
긴급생활 안정지원	6	위생과		6		1	
		주민생활지원과	1(고재욱)		1	1(서충원)	1
		사회복지과			1		1
		여성가족과			1		1
		보육과			1		1
재난현장 환경정비	2	청소행정과	1	2		1	
		하수도과	1			1	
긴 급 통신지원	1	정보통신과	1	1		1	
		KT					
시설응급 복 구	58	미래정책과		58		1	
		시민봉사과					1
		세무과					1
		문화관광체육과					1
		도시과					1
		주택과	1(이정우)		1	1(전지훈)	1
		주거정비과			1		1
		공원녹지과	1(이진홍)		3	1(이용규)	3
		수도과			1		1
		동주민센터			45 (각3명)		45 (각3명)
에너지 기능복구	1	녹색환경과	1	1		1	
		한국전력공사					
재난수습 홍 보	1	공보담당관	1(이봉득)	1	1(김지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5	기획예산과	1	5		1	
		회계과	1			1	
		지역경제과	1(노자연)		1	1(전상희)	1
		업무지원과			1		1
교통대책	6	교통기획과	1	6		1	
		경전철사업과	1			1	
		도로과	1(박준범)		3	1(이균섭)	3
의료· 방역	2	보건관리과	1	2		1	
		건강증진과	1			1	
자원봉사 관 리	4	총무과	1(최현미)	4	1(이진숙)	1	
		평생교육과	1			1	
		노인장애인과	1			1	
		지역자율방재단					
사회질서 유 지	1	교통지도과	1	1		1	
		경찰서					
수색구조 · 구 급	1	소방서	1(정연천)	1	1(정연천)		
기 타	25	배수문,펌프장	25	25		25	

< 단계별 근무자 명단(비상2단계) >

구 분		A조			B조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대책본부	사무실(현장)	
계		198	26	172	198	26	172	
통제관		1	안전교통건설국장		1	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관		1	안전총괄과장		1	건설행정팀장		
상 황 총괄반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14	3(김지희, 당직2인)		14	3(이승준, 당직2인)		
	감사담당관 (정보수집, 보고서)		1(진경애)	1		1(김수경)	1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2(이병기, 박성용)	7		2(이영석, 이영희)	7	
긴급생활 안정지원	위생과	11		2	11		2	
	주민생활지원과		1(장혜경)	2		1(손기현)	2	
	사회복지과			2			2	
	여성가족과			2			2	
	보육과			2			2	
재난현장 환경정비	청소행정과	4		2	4		2	
	하수도과		1(한용민)	1		1(김광일)	1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3	1(최정원)	1	3	1(오은숙)	1	
	KT		1(곽순구)			1(곽순구)		
시설응급 복 구	미래정책과	99		2	99		2	
	시민봉사과			2			2	
	세무과			2			2	
	문화관광체육과			2			2	
	도시과			2			2	
	주택과		1(허남준)	4		1(남창민)	4	
	주거정비과			2			2	
	공원녹지과		1(조환백)	4		1(조형택)	4	
	수도과			1			1	
	동주민센터			75 (각5명)			75 (각5명)	
				1(정승식)			1(정승식)	
	에너지 기능복구		녹색환경과 한국전력공사	3		1(표순광) 1(지동희)	1	3
재난수습 홍 보	공보담당관	2	1(황용)	1	2	1(권성민)	1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기획예산과	10		2	10		2	
	회계과			2			2	
	지역경제과		1(김정일)	3		1(고영대)	3	
	업무지원과			2			2	
교통대책	교통기획과	9		2	9		2	
	경전철사업과			2			2	
	도로과		1(박준범)	4		1(이균섭)	4	
의료방역	보건관리과	4	1(정은경)	1	4	1(이명순)	1	
	건강증진과			2			2	
자원봉사 관 리	총무과	8	1(이재근)	2	8	1(강수진)	2	
	평생교육과			2			2	
	노인장애인과			2			2	
	지역자활방재단		1(정덕렬)			1(원유현)		
사회질서 유 지	교통지도과	3	1(최윤아)	1	3	1(박찬주)	1	
	경찰서		1(정재훈)			1(정재훈)		
수색구조 · 구 급	소방서	1	1(정연천)		1	1(정연천)		
기 타	배수문, 펌프장	25		25	25		25	

<재난종합상황실(대책본부) 근무자별 임무>

구 분	부 서	근 무 자	임 무
상황총괄반	안전총괄과	이병기, 박성용, 이영석, 이영희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재난 진행 사항 파악 등
	감사담당관	임경덕, 장상근, 진경애, 김수경	• 기타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주민생활지원과	고재욱, 서충원, 장혜경, 손기현	• 피해주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	하수도과	한용민, 김광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및 환경정비 지원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최정원, 오은숙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관리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KT 의정부지사	곽순구	
시설응급 복구반	주택과	이징우, 전지훈, 허남준, 남창민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공원녹지과	이진홍, 이용규, 조환백, 조형택	
에너지기능 복구반	녹색환경과	표순광, 이동춘	• 전기 등 시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복구
	한국전력공사	지동희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담당관	이봉득, 김지은, 황용, 권성민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정보 배포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지역경제과	노자연, 전상희, 김정일, 고영대	•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상태 유지
교통대책반	도로과	박준범, 이균섭	• 교통수단 상황관리 및 긴급수송지원
의료 방역반	보건관리과	정은경, 이명순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관리반	총무과	최현미, 이진숙, 이재근, 강수진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정덕렬, 원유현	
사회질서 유지반	교통지도과	최윤아, 박찬주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등)
	의정부경찰서	정재훈	
수색·구급 구조반	의정부소방서	정연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 재난피해접수 및 상황보고 시 「부록」 - 재난피해접수서식」 활용

<태풍.호우시 실무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관 련 부 서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피해상황 파악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기타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수립,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기타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 감사담당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지도확인 -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재해구호물품, 재해구호기금 지원 및 현황파악, 응급생계구호 실시 - 기타 긴급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 보육과
재난현장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하수도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파악 - 기타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과 • 하수도과
긴급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두절 지역 파악 및 복구 - 그 밖에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과 • 유관기관(KT)
시설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관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추진 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 요청 - 주택·옥외광고물 파손유실 및 침수피해 현황 파악 - 재개발·재건축, 대형공사장 안전조치사항 파악 - 상수도 임시공급 및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현황 파악 - 농작물농경지 침수도복등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등 - 전도된 수목제거 - 문화재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 그 밖에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정책과 • 시민봉사과 • 세무과 • 문화관광체육과 • 도시과 • 주택과 • 주거정비과 • 공원녹지과 • 수도과 • 동주민센터 • 유관기관(65사단)
에너지기능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등 에너지 두절 지역의 파악 및 복구 - 그 밖에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환경과 •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태풍·호우시 실무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관 련 부 서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기타 재난수습홍보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담당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복구 공사시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 -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과 • 회계과 • 지역경제과 • 업무지원과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전철 운영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 - 도로·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추진 상황 지도확인 - 고립지역 긴급 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기타 교통대책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기획과 • 경전철사업과 • 도로과
의료방역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진료·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 -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기타 의료·방역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관리과 • 건강증진과
자원봉사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노인복지·장애인 관리 -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 및 보고자료 작성 - 그 밖에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 평생교육과 • 노인장애인과 • 유관기관(지역 자율방재단)
사회질서 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교통, 현장통제, 안전관리등 사회질서에 필요한 사항 - 주민대피상황시 주민보호 및 대피불응자 강제대피 - 기타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과 • 유관기관(경찰서)
수색·구급 구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사항 -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소방서)

< 의정부시 부서별 동담당 >

국·소	부서명	정원	담당 직원	담당동	통수
계	37개 담당관·과·소	807		15동	571통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	14	감사담당관 직원	의정부1동	43
	공보담당관	11	공보담당관 직원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20	기획예산과 직원	의정부2동	35
	총무과	35	총무과 직원		
	미래정책과	11	미래정책과 직원	의정부3동	23
	평생교육과	14	평생교육과 직원		
	시민봉사과	30	시민봉사과 직원	호원1동	47
	정보통신과	22	정보통신과 직원		
재정경제국	세무과	41	세무과 직원	호원2동	50
	회계과	30	회계과 직원		
	지역경제과	23	지역경제과 직원	장암동	32
	위생과	16	위생과 직원		
	청소행정과	18	청소행정과 직원	신곡1동	53
	농업기술센터	9	농업기술센터 직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20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신곡2동	48
	사회복지과	25	사회복지과 직원		
	노인장애인과	15	노인장애인과 직원	송산1동	51
	여성가족과	20	여성가족과 직원		
	보육과	13	보육과 직원	송산2동	41
	문화관광체육과	21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도시관리국	도시과	20	도시과 직원	자금동	40
	주택과	22	주택과 직원		
	주거정비과	20	주거정비과 직원	가능1동	36
	공원녹지과	16	공원녹지과 직원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16	교통기획과 직원	가능2동	17
	교통지도과	28	교통지도과 직원		
	경전철사업과	13	경전철사업과 직원	가능3동	21
	안전총괄과	28	안전총괄과 직원		
	도로과	28	도로과 직원	녹양동	34
업무지원과	28	업무지원과 직원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24	녹색환경과 직원	가능1동	36
	수도과	22	수도과 직원		
	하수도과	17	하수도과 직원	가능2동	17
	하수처리과	40	하수처리과 직원		
보건소	보건관리과	27	보건관리과 직원	가능3동	21
	건강증진과	31	건강증진과 직원		
	차량등록사업소	19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배수펌프장 보강근무자 현황>

연 번	부서명	요청 인원	전담근무자			보조근무자		
			직	성명	연락처	직	성명	연락처
	계	21명		21명				
1	기획예산과	1	행정7	박영기		행정7	김성용	
2	총무과	1	행정9	김상훈		행정7	박용봉	
3	미래정책과	1	시설7	김웅남		행정7	목두호	
4	정보통신과	1	운영7	배영철		전산8	전문규	
5	회계과	1	공업7	권대익		운영7	김경태	
6	지역경제과	1	공업9	장성익		행정6	김동환	
7	청소행정과	1	공업7	서정선		공업7	전인수	
8	문화관광체육과	1	행정8	정성목		행정9	김재곤	
9	도시과	1	시설8	김영교		시설8	박민석	
10	주택과	1	운영8	박삼선		시설7	이무송	
11	주거정비과	1	시설7	이규현		시설7	송 수	
12	공원녹지과	1	기능7	김광수		운전8	한원균	
13	교통기획과	1	공업7	최상진		공업9	김남수	
14	교통지도과	1	기능7	권영일		행정8	김경현	
15	경전철사업과	1	공업7	박운선		시설6	오형만	
16	도로과	1	공업8	이후재		운영6	양승천	
17	녹색환경과	1	운영7	조정호		환경9	이용철	
18	수도과	1	공업9	안주영		운영7	홍연희	
19	하수도과	1	운영6	김홍섭		공업6	최수열	
20	하수처리과	1	공업7	황무영		운영6	박철순	
21	지식정보센터	1	운영7	이용희		운영7	이명호	

<유관기관 배수펌프장 비상근무 지원현황>

배수 펌프장명	비상근무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비고(평시 점검자)
의정부 1동	기술과장 김원용		김원용
신곡동	기술과장 강평철		강평철
의정부 3동	기술과장 강평철		시청직원 상주
장암동	기술과장 최철주		최철주

<반지하주택 등 지하시설 거주 재해약자 현장책임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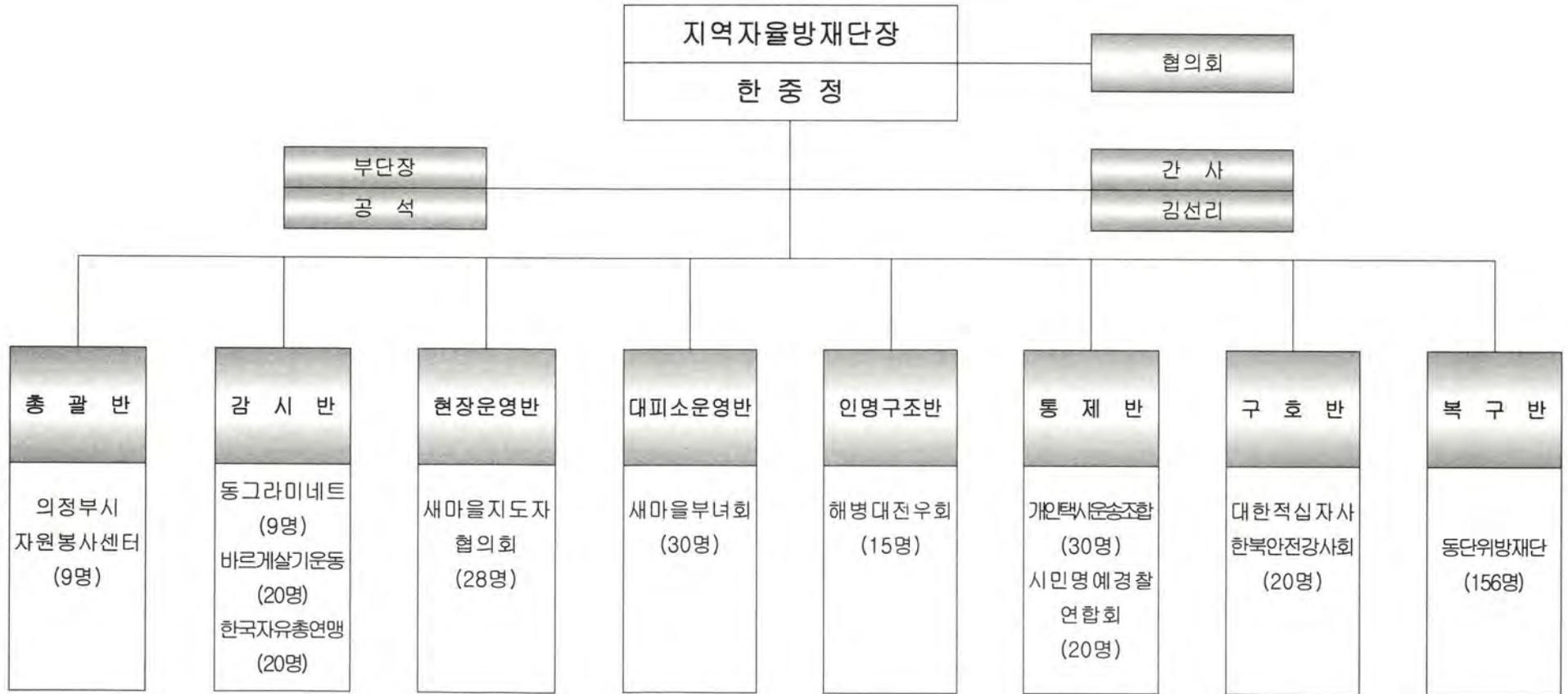
- 침수우려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노약자 또는 거동 불편자 등 재해약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현장책임관 지정 (*부록 10 재해약자 관리현황 참조)
- 동 주민센터 및 관련 실과소에서는 아래 기상기준에 따라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아 래 -

구 분	기상기준	점검방법	비상근무 편성인원	비 고
비 상 1단계	■ 태풍 예비특보 발표	유선 또는 현장확인 후 피해발생 예상시 대피	전실과소 1/5 근무	
	■ 호우주의보 발표			
비 상 2단계	■ 태풍 주의보·경보 발표		전 실 과 소 1/3 근무	
	■ 호우경보 발표			

* 재해약자 대피시 안전총괄과로 즉시 통보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도(총360명)



※ 2014.03.31 현재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 비상1단계 (주의보)

1조			2조			3조		
소 속	성 명	연락처	소 속	성 명	연락처	소 속	성 명	연락처
해병대전우회	염경천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이중호		녹양동	류제욱	

○ 비상2단계 (경보)

1조			2조			3조		
소 속	성 명	연락처	소 속	성 명	연락처	소 속	성 명	연락처
의정부2동	정덕렬		송산2동	원유현		가능2동	조정훈	
신곡1동	박정서		신곡2동	김보은		자원봉사센 터	김진철	

※ 태풍·호우주의보(경보) 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1조, 2조, 3조 교대근무 실시

나. 대설시

구 분		상황기준	상황근무	주 요 임 무
준비단계	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특보 및 대설 주의보 발표 (강설량 3cm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 : 8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1명 - 상황전파 및 보고 9명 - 현장지원 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및 상황관리 ■ 재난 진행 상황 파악 ■ 사전예방조치 ■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주의보 발표 (강설량 5cm 이상) 		
비상단계	I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경보 발표 (강설량 20c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 : 1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1명 - 상황전파 및 보고 20명 - 현장지원 1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진행 상황 파악 ■ 사전예방조치 ■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IV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제설작업 등) ※대책본부의 상황별 지시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 : 951명+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1명 - 상황전파 및 보고 20명 - 현장지원 930명 - 유관기관 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정보 수집 보고 ■ 긴급 상황관리 ■ 유관기관 지원 협의 ■ 현장상황지원 등 ■ 제설인력지원 및 투입

<대설시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인원>

구 분		1단계(예비특보) 2단계(대설주의보) 강설량 5cm 이상			3단계(대설경보) 강설량 20cm 이상			비고	
		계	대책본부	사무실 (현장지원)	계	대책본부	사무실 (현장지원)		
계		86	10	76	148	21	127		
상황총괄		1	1		1	1			
상 황 총괄반	안전총괄과 (정보수집, 보고서 작성)	6	4		13	10			
	도로과 (정보수집, 보고서 작성)					1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2			2			
행 정 지원반	총무과	2	1		2	1			
	감사담당관		1			1			
구 조 구급반	보건관리과				2	1			
	소방서						1		
비 상 지원반	도로과	77	1	15	127	1	17		
	지역경제과			1			1		
	주택과						1	1	
	교통기획과							1	
	동주민센터					60 (동별4명)		105 (동별7명)	
지원봉사 지원반	주민생활 지 원 과				2	1	1		
공 보 지원반	공보담당관실				1	1			

<대설시 실무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관련부서
상 황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사항 파악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안전총괄과 도로과
행 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보고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총무과 감사담당관
구 조 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 상황파악 관리, 의료시설, 물자·장비 확보 ○ 구조·구급 업무는 의정부소방서장이 전담하여 추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의정부소방서 소속 직원의 상주근무) 	보건관리과 의정부소방서
비 상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제설작업, 교통소통 대책 추진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 및 응급복구 사항보고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주민생활 필수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상황·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피해 및 응급 복구 ○ 농경지·농작물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 대국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교량, 도로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상황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 	도로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교통기획과 동주민센터
자 원 봉 사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 민 생활지원과
공 보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케이블TV, 환경전광판, SMS)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재난현장 취재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공 보 담당관실

다. 상황판단회의 운영

1) 개최시기

- 호우 및 태풍 등 발생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 될 경우
- 호우 및 태풍정보 등 예비특보 발령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 개최
- ※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운영

2) 주요 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별 소집대상 범위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이동 조치 및 저지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구 주민 대피 등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계획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 지역대책본부 가동여부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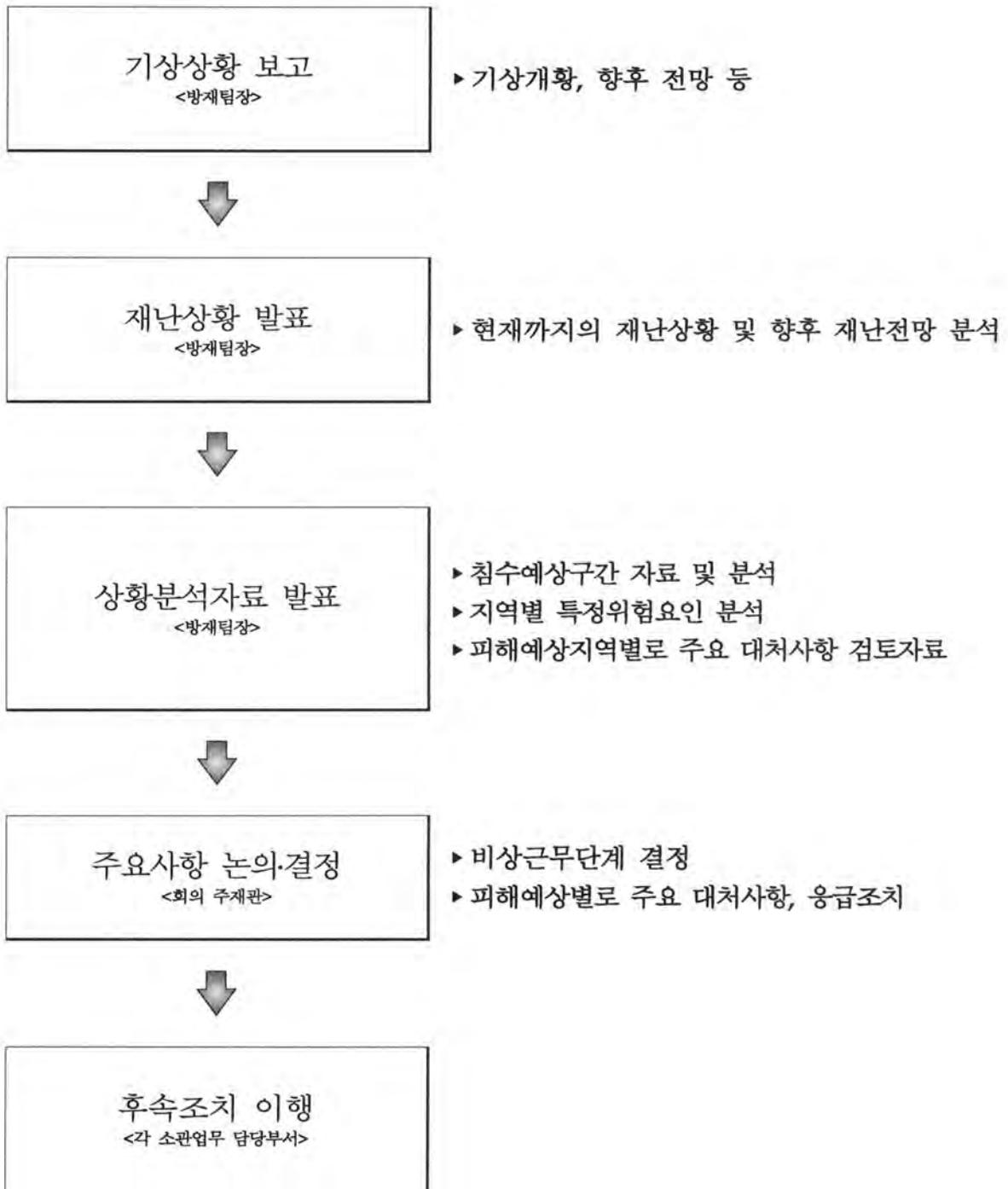
3) 단계별 회의 참석대상

구 분	회의주재	참 석 대 상
사전대비 및 예비특보	통제관(안전교통건설국장) 또는 담당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담당관), 방재팀장, 재난관리팀장, 방재담당자
호우주의보 태풍정보 (북위 16°~25°)	차장(부시장) 또는 통제관(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담당관), 도로과장, 방재팀장, 재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호우경보, 태풍예비 특보·주의보·경보 (북위 25°~30°)	본부장(시장)	자치행정국장(총괄조정관) 안전교통건설국장(통제관) 안전총괄과장(담당관), 도로과장 방재팀장, 재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각 실무반별 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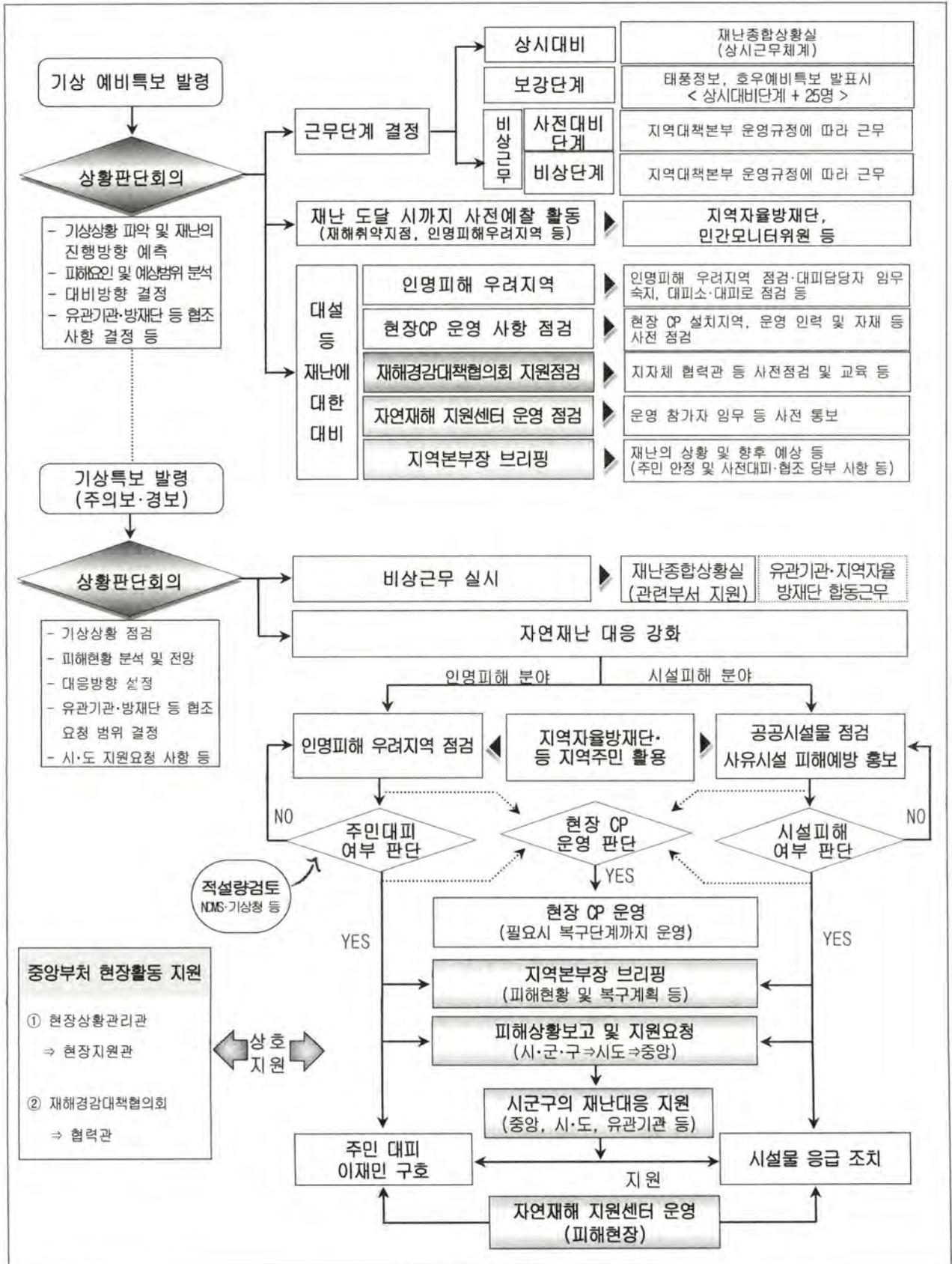
※ 토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1.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기상특보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2.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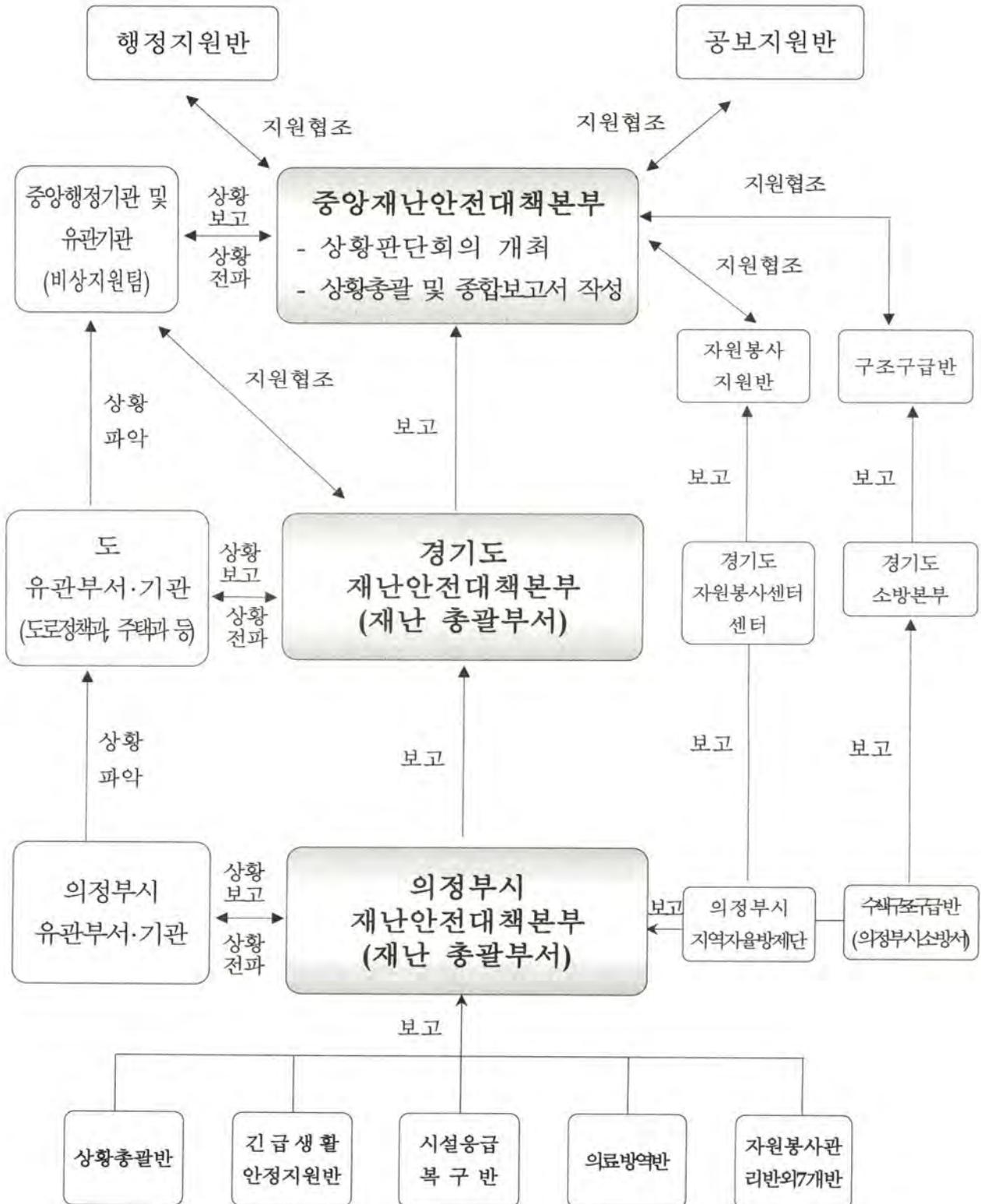
4) 상황판단회의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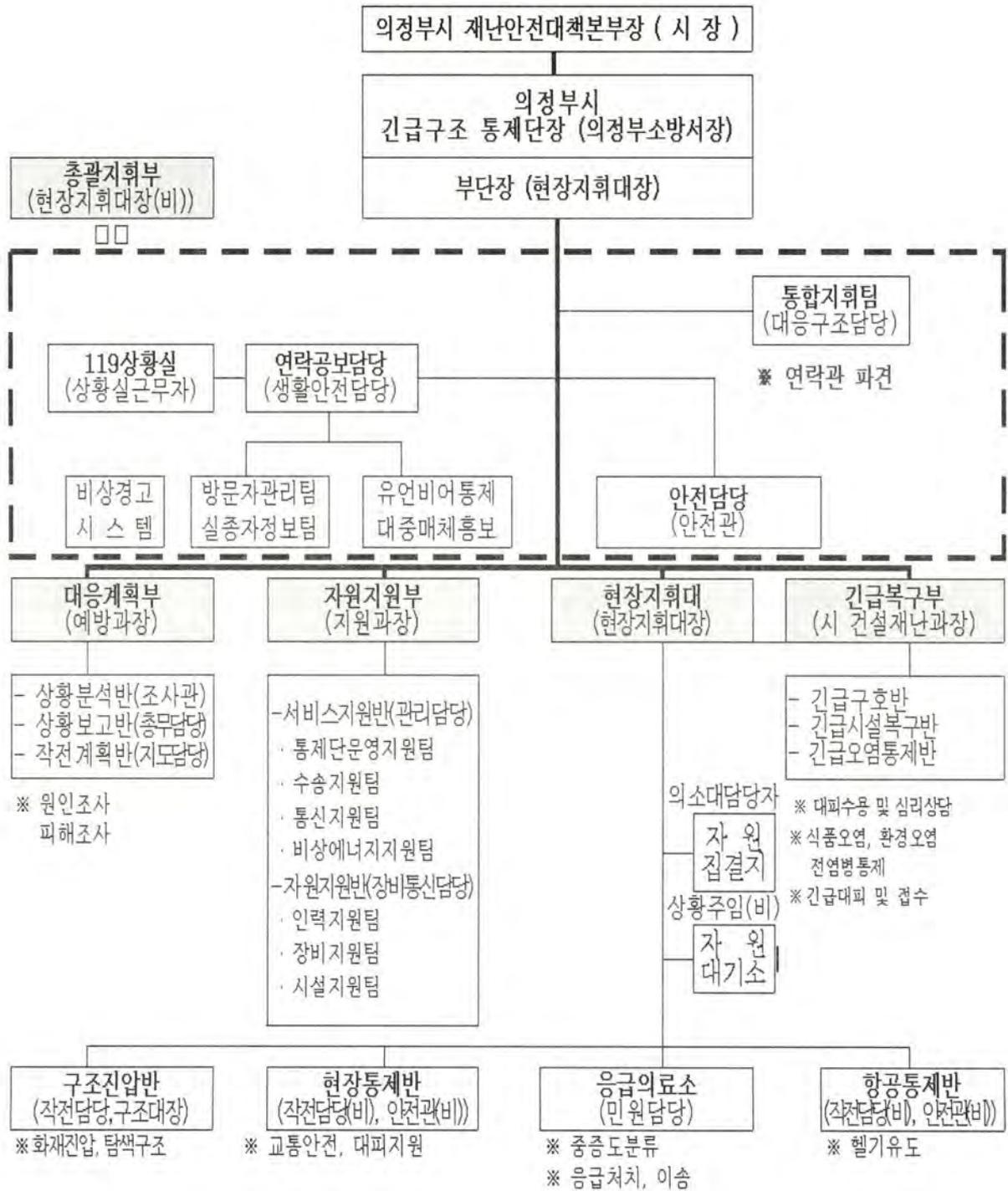
라. 대응절차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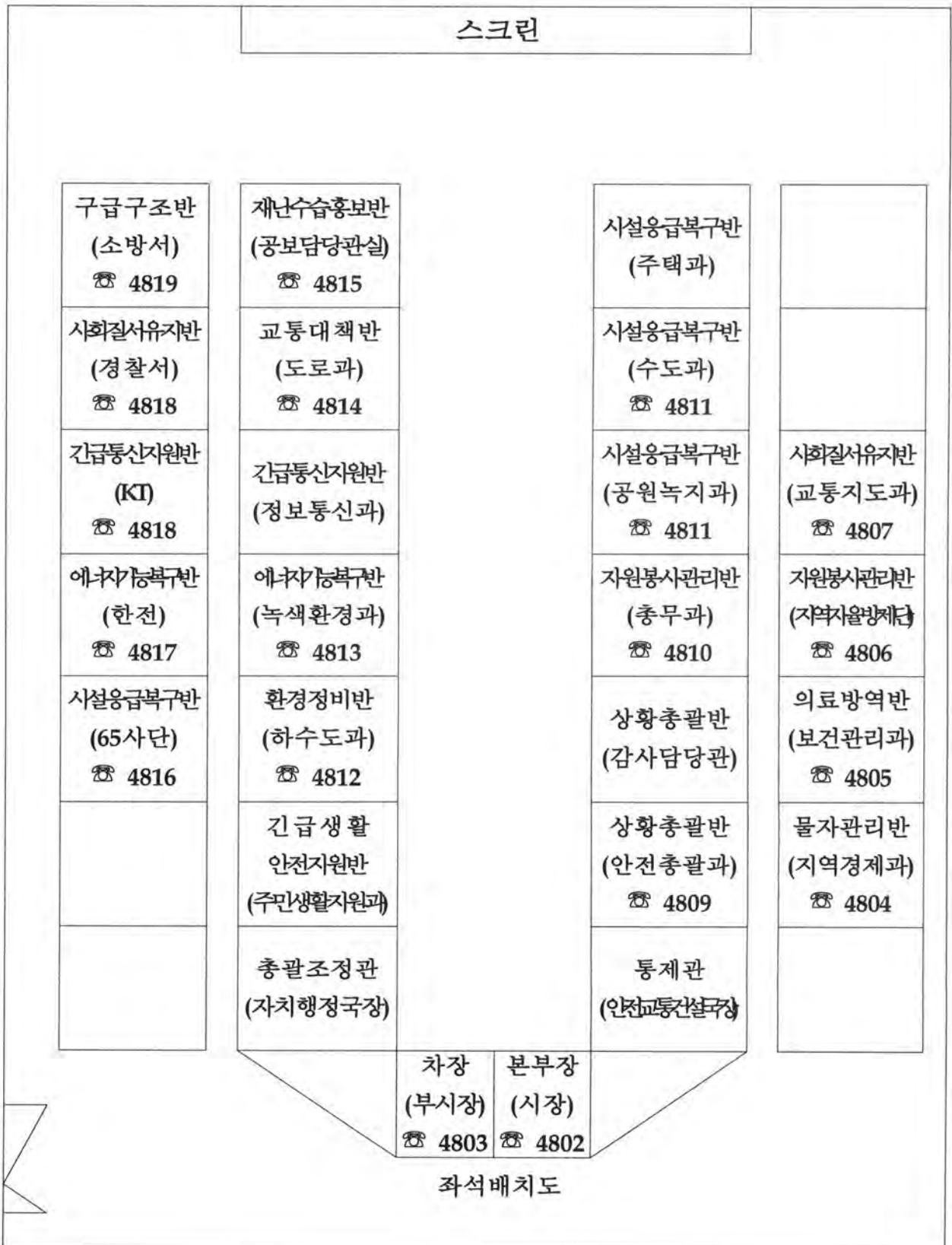
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체계도



바. 의정부시 긴급구조통제단 체계도



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좌석 배치도



제3절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

1.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가.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해당 피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5개반의 지원반을 구성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재난유형 및 피해 규모·특성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구성 가능)

[비상지원본부 조직도]



※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24시간씩 3교대 근무원칙

나. 단계별 행동요령

1. 재난발생 직후

< 지역대책본부 종합상황실 >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 규모에 따라 지역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이 주재
 - 비상지원본부 설치여부 및 설치장소 결정
 - 재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비상지원본부 현장설치가 신속한 재난수습에 효율적인지 검

- 사고현장 접근 용이성, 통신이용 용이성, 차량진출입이 쉬운 공공시설로 지정
- 비상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민간단체 확정

○ 비상지원본부 구성(탄력적 구성)

- 재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기관·단체에 상황전파
- 비상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파견요청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 지원반 등으로 지원반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반 및 지원반별 구성원은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
-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이 총괄지휘

< 비상지원본부 >

- 시도, 시군구 상황실과의 1차적인 연결망과 중앙종합상황실과의 Hot-Line 구축
- 현장상황실과 중앙종합상황실간, 시군구단위 상황실(시군구 및 유관기관·단체상황실)과 중앙종합상황실간 직접 연결체계 형성

2. 재난상황 수습시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실시
 - 중앙수습지원단과 유기적 공동협력체계 구축
 - 응급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파악, 중앙에 요청
 - 이재민 발생현황 실시간 파악 보고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긴급지원체계 가동
 -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활용,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자원재활용수집협회 등 장비지원체계 구축 협약 체결 민간단체를 활용, 신속한 재해쓰레기 처리
- 자치단체별 군(軍) 협력부대 활용, 병력 및 장비 지원요청으로 신속한 응급복구
- 대한건설기계협회 시·도지부 활용, 응급복구장비 신속 투입

3. 지원반별 임무 및 역할

< 초기 대응반 >

- 재난현장 2차 피해 발생징후 조사 및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최초 피해현황 파악 및 즉보
- 사망·부상자 파악 즉보
- 교통두절 상황파악 및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 상황분석 보고반 >

- 추가 기상상황 수시 전파
- 중앙종합상황실, 시도·시군구상황실과 Hot-Line 구축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재난피해 분석·판단

< 관계기관·단체 협력반 >

-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 소관 관리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자재 확보
- 타 기관·단체 인력·장비 필요시 지원 및 요청
- 자원봉사자 접수 및 적정 배치·운영

< 대민보호 지원반 >

- 이재민수용 및 이재민구호
- 사망·실종자 후송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 및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 수습 지원반 >

- 피해시설 응급복구대책 마련 추진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지원
 - 침수지역 및 이재민 급식 지원 및 위생관리 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 이동용 통신시설 확보

□ 파견 기관·단체 임무 및 역할

< 제2군수 지원사령부, 306보충대, 762통신대대, 103공병대대, 65사단, 503방공대대 >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 의정부교육청 >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복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 가설
- 필요시 재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 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 가스설비 피해현황 파악 및 이재민 수용시설 비상가스설비 가설
- 가스누출 점검 및 응급조치
-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

< 대륜 E&S >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북부봉사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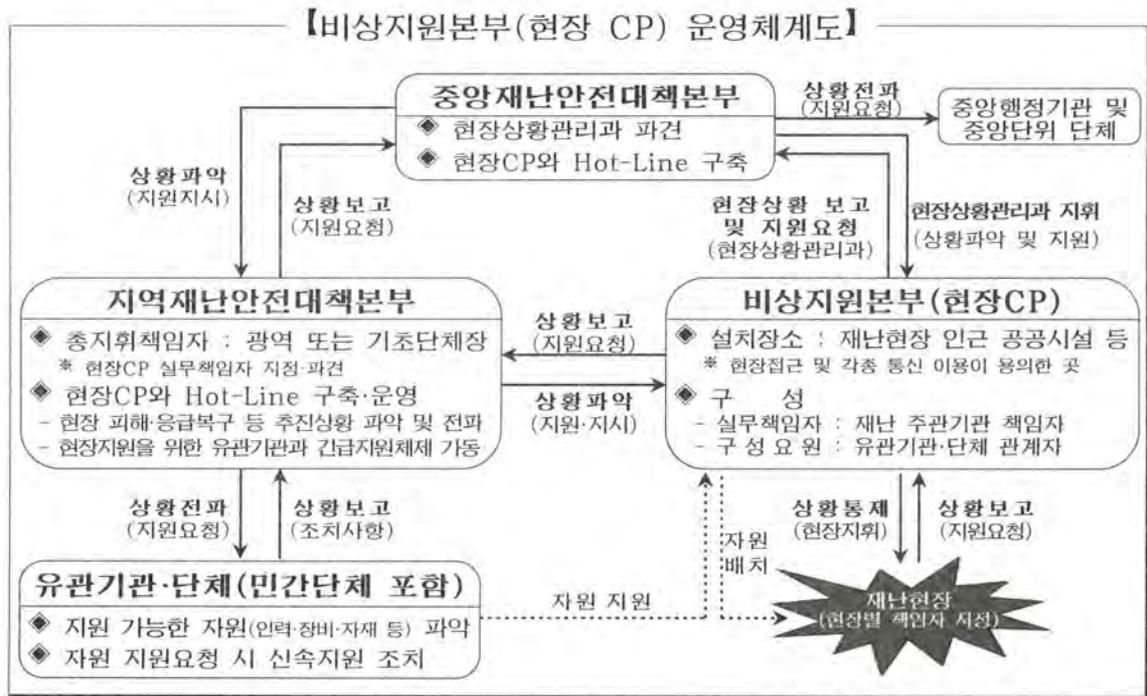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 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 KT 의정부지사 >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휘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파악 및 통신 응급소통

나. 중앙과 지방간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사전 파견
 - ▶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 ※ 중앙상황실과 현장 CP간의 Hot-Line 구축, 필요시 중앙 수습지원단 파견



2. 구조·구급 활동 지원

가.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나.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제 3 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태풍 · 호우

제2절 대설

제3절 황사

제4절 가뭄

제5절 지진

제6절 폭염

제7절 강풍

제8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여 백

제 1 절 태 풍 · 호 우

여 백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 관리

1) 방재교육·훈련 실시

- 시 기 : 5월 중
- 대 상 : 공무원, 유관기관 실무자, 대형공사장 현장대리인,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원, 지역주민 등
- 조치사항
 - 재해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교육
 - 방재시설물 등 재해취약 요인 점검·정비 및 순찰방법 등 교육
 - 재해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전파 및 대피방법 훈련
 - 인명피해 최소화계획 및 “재난안전선(Safety Line)” 설치 교육
 -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방법 교육

2)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 대 상 : 관내 방재시설물
- 점검방법
 -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기준 Check List에 의하여 점검관리
 -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자를 실명으로 기록관리
 - ※ 평상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점검
- 주요점검 사항
 - 방재시설물 청소, 잡초제거, 주유, 도색 등 일상정비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붕괴위험 요인 확인 및 개·보수
 -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잡물 등 제거상황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유수지(저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전기시설등 유수지(저류지) 내 시설물 정비
 - 배수펌프장 동력상태 점검·정비 및 비상전원장치·배선상태 이상유무 확인
 - 도로 및 기타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유형을 감안하여 점검

○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정비
-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조치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마대쌓기·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난응급대책을 강구

※ 방재시설물 현황 (부록 참조)

(단위:개소)

종 류	수 량	종 류	수 량
빗물 펌프장	4	배수문	9
간이 빗물 펌프장(주택)	3	간이 빗물 펌프장(도로)	18
지방하천	6	소하천	28
사방댐	13	야계사방	16
산지사방	3	재난음성경보 시스템	4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37	재해문자 전광판	5
저수지	1	수위관측시스템	4
자동우량정보시스템	5	AWS(강우량 수집)	2
저류지	2		

□ 신속한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 구축·운영

기설치 운영중인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보강

- 현재 사용 중인 예·경보시설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체계 강화

- 예·경보 업무 누수방지를 위한 예·경보 업무담당자 복수지정
- 시설관리·점검부 및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및 담당자별 시스템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중 매주 정기점검 실시 및 예비특보 등 위험 예상시 가동여부 수시 확인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취약지역 관리책임자, 대피요원, 주민대표 등의 전화번호를 D/B구축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조치

3)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관리

- 대상 : 지하철공사장, 골프장,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 댐건설, 택지개발지구 및 기타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 기타 공사장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조치사항
 - 공사현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협조체계 구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등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각배수로 설치 등) 확보
 -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

4) 유류·가스시설 점검·관리

<유류취급소>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위험물 저장 취급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작업시 불안전요소 사전제거(의정부소방서 통보 등)
- 소화기, 소화전, 소화전함, 자동화재 탐지설비, 기타 소방안전장비 점검
 - 정기적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대리점, 주유소의 방호 연습
- 자연재난대책 비상근무체제 확립
 - 각 시설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반 편성 운영
 - 방재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스취급소>

- 가스시설 안전점검
 - 점검방법 :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도,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2회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대상가스별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대상가스의 안전관리 요원 및 긴급출동반 요원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주변 긴급대피 및 통제요령, 유사시 대피요령 및 통제요령 등 교육 실시
 - 유사시 대비한 긴급조치요령을 유인 배포

5) 농·축산시설 점검·관리

- 대 상 : 관내 농·축산 농가
- 조치사항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 논둑, 수로등 농경지의 안전여부 사전 점검·정비
 - 우기전 배수시설 중점 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저지대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개선 우선추진
 - 위험지역은 안내판 등 경고문을 설치하여 인명사고 예방
 -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민·관·군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 축사주위,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을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험 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에 확보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6) 산사태 및 자연비탈 급경사지 위험지역 점검관리

- 대 상 : 산사태 위험지 및 자연비탈 급경사지, 사방댐 등
- 조치사항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및 상황관리체계 재정비

- 산림부서에서는 기관장, 간부공무원, 산사태 위험예보 업무관계자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
 - ※ 인사이동으로 간부공무원, 업무관계자 등이 변경 될 경우 수시로 사용자 정보 수정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및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기관장 및 산림부서의 장 책임하에 위험지역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예보발령 및 현장 조치사항 통보
 - ※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즉시 유선, 공문서, FAX, SNS 마을애플, SMS, CBS, 방송시설 부착 차량 등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전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상황실)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사전대피,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실태 확인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녹지과장산 책임하에 특별관리

〈산사태 위험지역 관련 산림부서에서 조치할 사항〉

- ◆ 공원녹지과는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산사태 위험지역* 직·하류 또는 연접하여 마을(주택)이 형성되어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전수조사 실시
 - * ① '12년부터 시·군·구별(산림부서)로 실태조사를 실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산림청에 보고한 지역
 - * ② "산사태정보시스템"상 산사태 위험지역
 - * ③ 임도 개설로 우수(雨水)가 집중되는 계곡 중 계곡 연장선이 하류 마을(주택 등)을 관류하는 지역
- ◆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별로 책임담당제 지정·운영 등 관리대책 마련

- 산사태 및 자연비탈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측구배수관박스교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등이 걸려 있는 곳 등은 정라보수
- 사방복구를 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 조치 및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활용,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및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합동모의 훈련 실시

- 임도 및 사방댐, 계류보전 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우기 전에 정비 완료

□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2년부터 시·군·구별로(산림부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선정 및 산림청에 보고한 지역 중 직·하류 또는 연접한 곳에 주택 등 주거지가 형성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취약지역에 포함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일부개정 시행 '12.8.23)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과 연접하여 주택, 펜션, 음식점 등이 형성되어 산사태 발생시 매몰·유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위험지도 및 산사태 예측정보서비스(MMS)를 제공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웹주소 : <http://sansatai.forest.go.kr>)」 을 구축·운영

〈피해발생 사례〉

◆ (산사태취약지역) ○○구 소재 ○○산 및 △△시 소재 △△산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하류지역 주택·펜션이 매몰되면서 거주자 29명 사망('11.7.27)



(○○구 ○○산 주변 8개 지역 산사태 인명피해 16명)



(△△시 △△산 산사태 인명피해 13명)

【 산사태정보시스템 】



(○○구 ○○산 산사태 지점 주변 위험1등급 지역 '11년 기준)



(△△시 △△산 산사태 지점 주변 위험1등급 지역 '12년 기준)

임도 개설로 우수(雨水)가 집중되는 계곡과 연접한 산기슭 주택 및 계곡 연장선이 하류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배수로)과 접한 마을(주택)

〈피해발생 사례〉

◆ (임도 개설 지역) ○○시 소재 ○○산 임도 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하류지역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으로 유입, 소하천 주변 주택 등 건물을 덮쳐 4명 사망('11.7.9)



□ 급경사지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는 지역중 주택 및 도로와 연접하여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기시 지하수 용출 또는 비탈면 변형(낙석·토사유실, 배부름, 침하 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직 하부에 주택(공장 등)이 위치하여 사면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피해발생 사례〉

◆ (비탈면붕괴) △△시 소재 급경사지 붕괴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공장 1동이 유실 되면서 근로자 4명이 사망('1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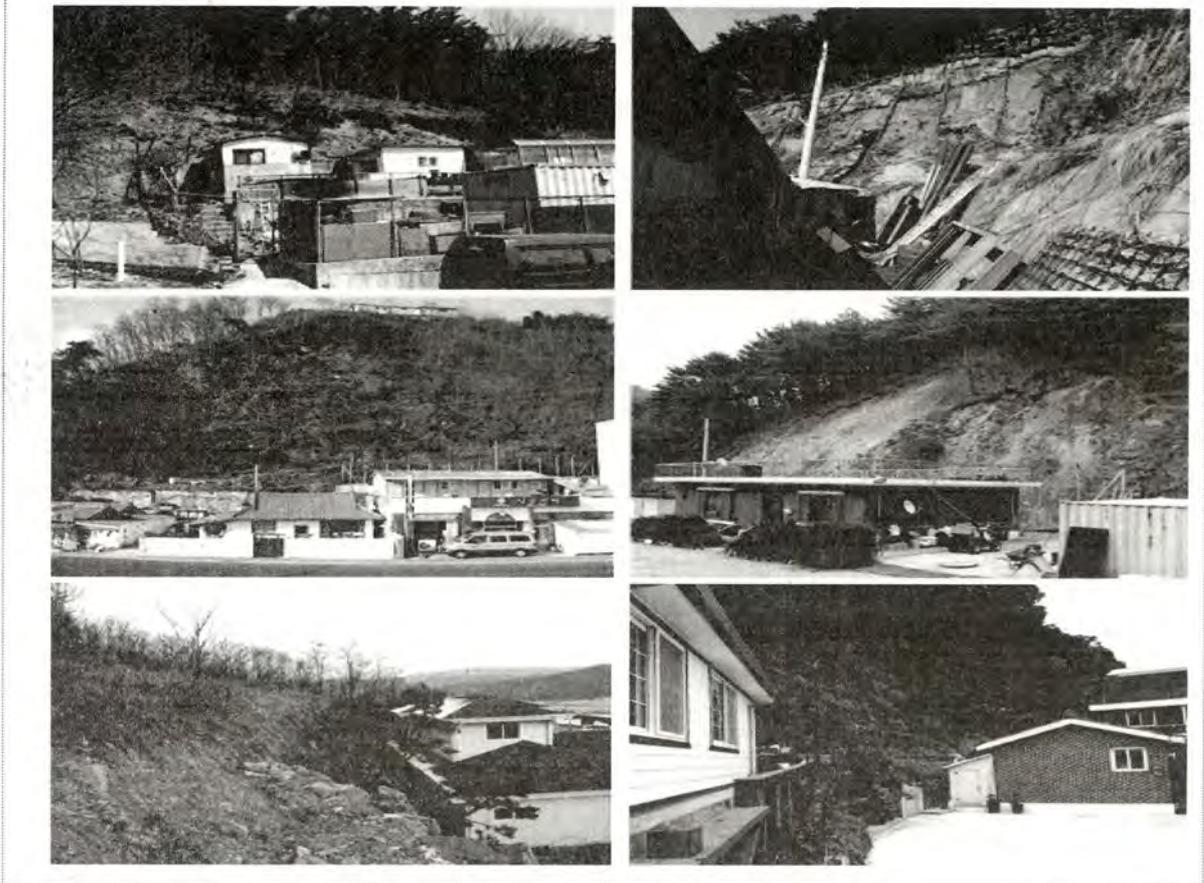
◆ (석축전도) □□시 소재 묘지 석축 전도에 의해 추가 붕괴로 발생된 토석류에 의해 하류에 위치한 사찰 부속건물이 매몰되면서 거주자 2명 사망('11.7.10)



◆ (비탈면붕괴) ◇◇시 소재 급경사지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하류에 위치한 ◇◇아파트 16세대 매몰(인명피해 없음. '09.7.15)



【취약지역 지정대상 유형】



철도 및 도로 비탈면에서 우기시 지하수가 용출되거나 변형(낙석·토사유실, 침하, 배부름 등) 현상이 관측된 지점과 접한 곳에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등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피해 발생사례〉

- ◆ (철도법면) ○○군 소재 철도법면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주택이 매몰되면서 거주자 2명 사망('08.7.25)
- ◆ (도로법면) ○○군 소재 도로법면 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주택이 매몰되면서 거주자 1명 사망('08.7.25)



(○○군 소재 철도법면 붕괴로 주택매몰)



(도로법면 붕괴 발생 사례)

※ 급경사지 현황(급경사지대책- 급경사지 현황 참조)

(단위 : 개소)

구분 시군	계	A	B	C	D	E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의정부시	23	3	4	17	1	0	1 (산장연립)

※ 비탈면 구조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군	계	토사	옹벽	축대	암반	복합	기타
의정부시	23	13	5	0	0	5	0

7)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일제 점검정비

- 대 상 : 관내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 조치사항

-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노후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대책기간중 특별관리
-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 점검구
등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 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전함 및 안정기함의 높이를
침수예상 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8)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 설정·관리

○ 대 상 : 안골유원지 등 3개소

○ 조치사항

-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책임관 및 현장관리관 지정

- 관리카드 작성 및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 해당지역에 대해 수시점검·순찰 실시

⇒ 점검순찰주기: 평시 주1회/ 특보발령시 1~2시간 간격/ 피해발생우려시 현장상주

- 위험징후 발생시 출입통제 및 주민대피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유형	총괄담당관		현장책임관		현장관리관		해당부서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골유원지	하천변 유원지	김광희		백남협		장동길		가능3동
원도봉산 유원지	하천변 유원지	이옥구		이규용		임친교		호원1동
산장연립	노후축대	문상연		김은진		임용재		자금동

〈관리책임자 주요임무〉

◆ (총괄담당관) 해당지역 동장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방·대응 업무 총괄 지휘·관리

◆ (현장책임관) 해당 지역 동 공무원 중 취약지역별로 1명씩 선정

→ 평상시 취약지역 정기점검(주간 또는 강우종료 후)을 실시 위험요인 사전 정비·보강 조치

→ 비상시(기상특보 발표 등 기상악화시) 수시 예찰활동 및 위험징후 발견 즉시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현장 활동 전개와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파악 지원요청

◆ (현장관리관)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방재단 또는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

→ 재난위험 예견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 현장책임관을 보조하여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응급 조치 활동 지원

9) 수방자재 확보·비축

- 대 상 : 포대류, 묶음줄 등
- 장 소 :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및 각 동 주“민센터 수방자재 창고
- 조치사항
 -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및 시험하여 불량자재는 폐기처분하고 부족자재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 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 우리시 수방자재 확보현황 붙임 ○ 참조

10) 응급조치용 장비 지정·관리

- 대상장비 : 백호우, 덤프트럭, 집게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 침수시 쓰레기, 분뇨 등 처리를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조치사항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후 지정 관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및 병원의 앰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보유 장비
 - 2단계 : 군부대 및 협약체결 민간기관의 장비
 - 3단계 : 기타 민간장비
 - 지정장비의 관리실태 매월 점검실시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기상상황, 재난상황을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자연재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 방송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종합상황실 ☎ 031)828 - 4800 ~ 1

FAX 031)828 - 4928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1)828 - 4321 ~ 6

방재팀 ☎ 031)828 - 4331 ~ 4

- 재난신고 무료전화 ☎ 080-215-3650

2)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재난상황 발생시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원봉사단체, 공무원, 군부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실시
- 재난상황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점검 등을 위해 민간재난모니터위원 활용
- 관할 군부대와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3) 주민대피 및 이재민 구호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
- 안내자 파견,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 제거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피유도

- 재산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대피소의 안전확보 철저
- 대피자의 신원 신속히 파악
-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용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반드시 사전홍보 실시

※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출입통제, 강제대피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42조), 과태료 부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각종 대피 표지판>

□ 대피 안내판



- 색 상 : 안내판 바탕색(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지도(칼라)
- 규 격
 - 안내판 : 가로5,000mm, 세로 3,000mm 이상(철 또는 알루미늄판)
 - ※ 단, 주요 대피 대상이 주민인 경우에는 3,000mm×1,800mm 이상
 - 기 둥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지도가 너무 작지 않도록 설치(지도 면적은 상하단 글씨, 테두리 등을 제외한 면적의 약50% 정도)
- 설치장소 : 재해위험예상지구 눈에 잘 띄는 곳

□ 대피소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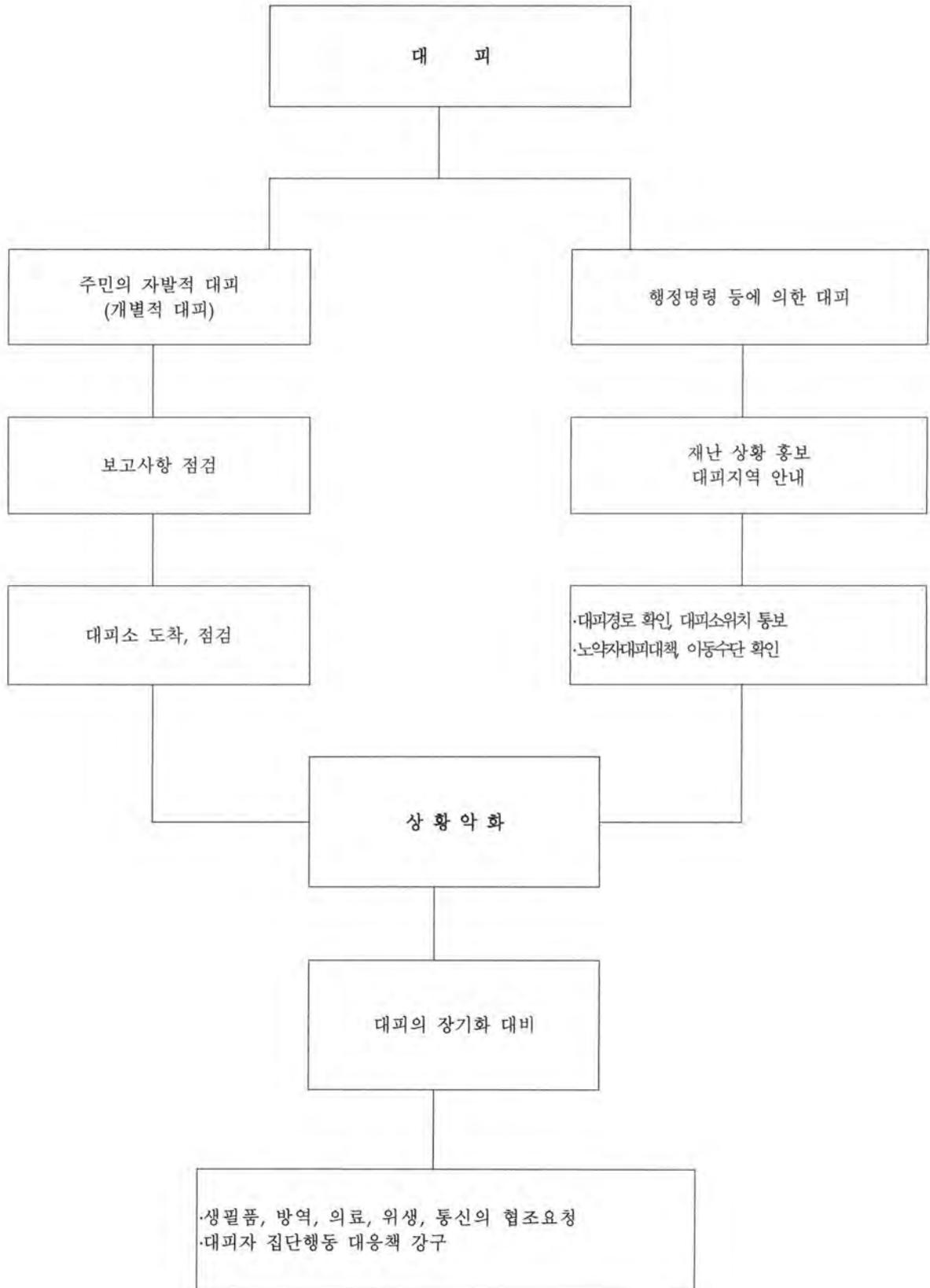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 격
 - 기동형 : 550mm × 65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부착형 : 300mm × 250mm(철 또는 알루미늄, 황동판)
 - 기 동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
주에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소 입구부근 눈에 잘 띄는 곳
 - 두가지 안 중 자치단체에서 선택하여 설치
 - ※ 부착형은 학교 교문이나 공원 출입문 등 출입문 기동에 부착
- ⇒ 해안지역 해발고도 10m 미만 지역에 설치된 대피소 표지판에 “이 곳은 지진
해일 대피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 명시

□ 대피로·대피소 안내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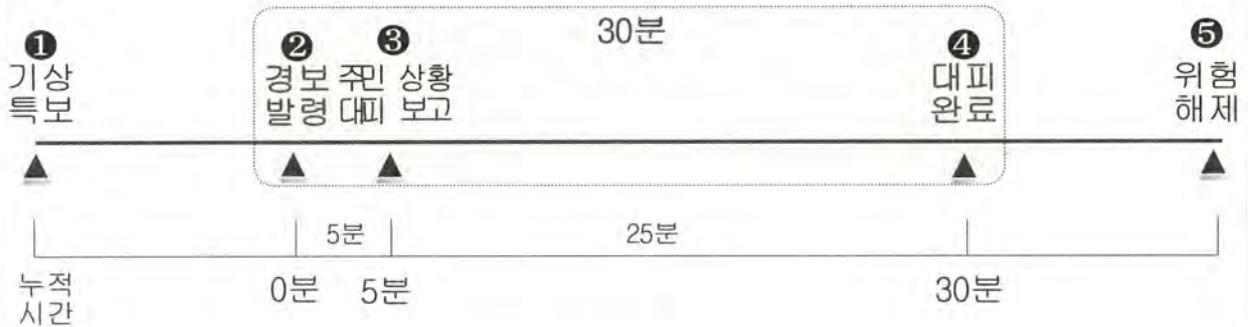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 격
 - 안내판 : 600mm × 70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주에 설치
 - ※ 벽면 설치시 기등 제거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로 안내가 필요한 눈에 잘 띄는 곳
 - ⇒ 해안지역 해발고도 10m 미만 지역에 설치된 대피소로 안내하는 대피로·대피소 안내 표지판에는 “이 곳은 지진해일 대피소 방향이 아닙니다” 내용을 반드시 명시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소 관리계획의 흐름도】



Action plan



① 기상특보

⇒ 태풍·호우 등 재해발생 원인이 되는 특보 발표

② 경보발령(기준시각)

⇒ 침수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 등 지속적인 관찰

⇒ 위험 확실시 경보발령

※ 기상특보와 상관없이 실제 침수, 붕괴위험을 자치단체장이 판단

③ 주민대피 및 상황보고(경보발령 후 5분 이내 시작)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해당지역 경보사이렌 발령 및 대피안내방송 실시

⇒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상지구 주민 대피

⇒ 지역본부 상황실 비상체제 가동

⇒ 자연재난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부처에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경보발령 후 5분)

⇒ CBS, TV재해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경보발령

⇒ 중앙종합상황실 비상체제 가동

※ 경보발령 30분 이내 대피 완료

〈 주민대피 세부 실행계획 〉

◆ 주민대피 기준

- 하천제방과 접한 지역 및 시가지내 저지대 주민 우선 대피
- 재해약자(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는 차량 동원 우선 대피
- 재해약자 분류 및 동원 차량 및 담당자 지정
- 일반인은 대피 안내요원(공무원, 군인 등)의 안내에 따라 도보 대피 유도
- 대피장소가 멀어 도보대피가 어려운 지역은 수송차량이 대기하는 1차 집결지 까지 도보로 대피 유도

◆ 대피시설별 이재민 구호

-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은 대피소로 대피한 주민 확인
- 적십자사, 구호협회는 대피시설별 구호물품 및 급식 지원
-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의료진 투입 및 방역 실시
-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지원 등

<긴급대피 방송문안>

◆ 호우(침수대피)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월 ○○일 ○○시○○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mm의 더 많은 비가 예상되어 ○○마을 침수가 예상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몸이 불편한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대피하거나 안내요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라디오 등 기상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사 태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월 ○○일 ○○시○○분 ○○mm의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오니 ○○마을 주민께서는 즉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몸이 불편한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대피하거나 안내요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라디오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계속 주시하면서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절대 대피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구호>

- 재난구호물자 비축
 - 최근 5년간의 시·군별 재난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물자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재난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파악
 -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구호물자의 공급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하되 선입선출로 재고누적 최소화
 - 지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난구호협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 조달

이재민구호 및 수용소 문의

- 의정부시 (주간) 주민생활지원과 828 - 405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 828 - 2108 ~ 9

-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 031) 874 - 3848

4) 통신두절 대책

- 재난상황 발생시 통신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처가 용이토록 조치
-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복구추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신사업자간 상황보고·지휘체제 확립
- 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체제 유지
- 통신재난대책본부 설치시 24시간 상황근무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실시

- 통신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계 확립을 위해 자연재해, 인위재난 등의 상황관측 및 전파체제 시설정비
- 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장소의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및 기간통신사업자 홍보협조
- 재난위험지역 특정인에게 SMS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송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KT등 유관기관 협조)
- 야간 정전시 대비 대체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츄어무선, 위성전화 등)

통신두절사고 신고센터

- 의정부시 (주간) 정보통신과 828 - 230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KT의정부지사 (주,야간) 875 - 0600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5) 전기두절 대책

- 사고수습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대형 사고, 중형사고, 소형사고로 구분
- 전기사고 중 중형사고 이상 발생하면 즉시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관리 함으로써 사고시 긴밀하게 협조조치
- 대단위 정전으로 주민피해와 혼란 우려시는 민방위부서와 협의 사태 수습 및 복구활동 지원의뢰
- 정전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치안유지 대책협조
- 화재 발생시 최단시간내 진화되도록 소방서와 협조
- 외부 전력공급 부족시 관내에 설치된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
- 자체복구반 및 전기공사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타 전력소 및 안전 관리 기술인력도 지원 요청하여 긴급복구

- 전력부족시 전력공급은 우선 순위에 따라 주요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고 차단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차단
- 방송차 또는 비상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 및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불시 전력공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계몽

□ 전기사고 신고센터

- 의 정 부 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78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한국전력공사 (주간) 849 - 1299 fax: 849-1319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49 - 1303 (상황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간) 850 - 7034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50 - 7000 fax: 850-7085

- 의정부 전력처 (주간) 849 - 4351
(야간) 849 - 4366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6) 가스두절 대책

-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구 성 : 의정부시청 및 협조기관
 - 반 별 : 행정반, 수습반, 홍보반으로 구성
 - 협조기관 : 경찰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북부지사 각 1인
- 대형사고 발생시 총괄지휘 (긴급출동반, 시 사고수습대책본부, 복구반)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구축 및 인원, 장비동원
- 사고 전파 및 수습등 제반사항은 각 반별로 책임 수행

가스사고 신고센터

- 의 정 부 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78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야간) 894 -5528 fax: 876-8345
경기북부지사

- 대륜 E&S (주간) 031) 951 - 0220, fax: 02)951-0110
(야간) 02) 950 - 5050 (상황실)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7) 급수·상수도시설 대책

-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 군 및 유관기관에 사고수습지원 요청
- 구조·구난장비동원
- 사고지역 통제 등 경계구역 설정
-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 : 경찰, 예비군, 공무원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 대처
- 사고지역 판단보고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인근지역 피해예상 주민 긴급대피 유도 및 결과보고

급수시설 긴급복구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수도과 828 - 2441 ~ 5
(야간) 당직실 828 - 4588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8) 하수도시설 대책

- 관계기관 상황 전파
- 응급복구반 즉시 가동
- 재난발생시 사고 분석·보고 및 수질 분석
- 긴급 차단게이트 및 수문밸브 조정으로 시간별 유량 조정
- 사고대책반 운영으로 응급복구

○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하수도과 828 - 4411 ~ 5

(야간) 당 직 실 828 - 4588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9) 교통두절 대책

-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경찰서, 자원봉사 단체 및 업체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 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두절시, 도에 설치된 자체 특별수송대책 본부에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해운·항공로 등의 대체 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조치의뢰하여 연계수송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 등의 특별방송 유도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24시간 교통안내 전화 (1333)

○ 교통두절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교통기획과 828 - 2871 ~ 3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경찰서 (031 - 849 - 3129, 3356, 상황실) fax: 849-1005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3. 복구 단계

가. 시설물 복구 및 보건·위생 대책

1) 공공시설 복구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고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정부노동주민센터에 기타인력은 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 예비비 긴급지원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복구>

- 상·하수도 피해시설의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후 시행
- 세굴, 침하 및 사태가 예상되는 구간의 상·하수관 부설은 지반 보강을 실시한 후 시행
- 정전시 전력 확보의 우선 순위 결정후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두절로 재난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긴급순위에 의하여 최우선 복구 또는 긴급회선을 설치

<토목공공시설 복구>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 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 철도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 상습침수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후 시행
-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천단면 확장, 배수로 설치 등 공사에 병행하여 근원적인 피해원인 제거
- 개량복구 조치대상 교량 및 배수시설 등은 계획 홍수위, 통수단면, 설계 하중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설계 및 시공조치
-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침하 및 소규모로 세굴된 피해시설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원상복구 조치

2) 주택 복구

-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사·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시 복구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사·군·구에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
- 주택복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
- 주택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시 소유자로부터 다른 지역 사·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수해(전파, 반파, 침수)를 입은자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
- 시장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할 것
-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 피해 수리시설은 조기 응급복구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응급복구한 시설은 영농기 동안 임시사용하고, 영농기 이후에 항구복구 추진
-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공단 및 시설재배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유출로 인한 농경지 토양 오염시 처리대책 및 정밀조사 강구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 농경지와 저수지 및 담수호 주변 쓰레기청소 등 주변 정리정돈
- 농경지 유실·매몰인 경우 지원금중 국고지원분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하며 미복구시는 시에서 나머지 복구비로 복구작업 수행

4)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수해 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 복구 장애지역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피해지역의 쓰레기 배출에 임시조치사항을 경기도와 협의조치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후 반입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청소행정과 828 - 2821 ~ 5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031 - 828 - 4853)

5) 방역 및 보건위생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파악
- 집단 환자발생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관리 및 적절한 치료 제공
- 확진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등을 통해 환자관리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강구

□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 의 정 부 시 (주간)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828 - 4511 ~ 9
 의약관리팀 828 - 4781 ~ 3
 (야간) 828 - 2222 (당직실)

- 의정부 성모병원 (주간) 820 - 3418
 응급업무팀 (야간) 820 - 3422

- 경기도립 의료원 (주간) 828 - 5337
 의정부병원 (야간) 828 - 5132

여 백

제 2 절 대 설

여 백

1. 예방·대비 단계 (예비특보)

1)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관리

-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폭설전까지 정비완료
- 폭설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용 장비확보 등 재해 응급대책 강구 후 특별관리
- 재해사전대비 기간 및 재해대책 기간 동안 수시·정기점검 실시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한 염화칼슘 등의 해빙제를 곳곳에 배치
- 재해발생시를 대비해 비상전원을 설치하며 배선관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2) 재해구호물품 확보·관리

- 지역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맞는 재해구호물품 세트 확보
- 부족물자는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 개선지침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까지 전량 확보하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 장기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개별로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관리
- 창고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물자 수불대장 작성 비치
- 부패·변질 방지를 위하여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재해구호물자 점검부를 작성 비치
- 이재민 발생시 구호물품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수재의연품 등의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분배계획 사전 수립

3) 도로별 제설 및 수도권 교통대책 수립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최근 10년간 최대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강설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예상대수 산정·지정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 확보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4) 도로제설대책

가) 단계별 제설방법

적설량	제설작업 방법	동원 장비
3cm 미만	염화칼슘(30%)+소금(50%)+모래(20%)	살포기
3~7cm 미만	염화칼슘(50%)+소금(30%)+모래(20%)	살포기/삽날
7cm 이상	염화칼슘(50%)+소금(40%)+모래(10%)	살포기/삽날/운반용 덤프
10cm 이상	염화칼슘(70%)+소금(20%)+모래(10%)	살포기/삽날/운반용 덤프/그레이더

나) 제설장비 현황

구분	살포기	덤프	굴삭기	로우더	삽날
계	38	17	16	17	17
시청	37	1		1	15
소방서	1				
군부대					2
임대		16	16	16	

다) 인력 확보 현황

제설인력(명)			
계	수로원	지하차도 관리원	준설원
33	16	2	15

라) 제설 전진기지 설치 현황

구 분	제1전진기지(호원적치장)	제2전진기지(민락적치장)
위 치	호원동 211번지	민락동 민락IC
면 적	A=9,753m ²	A=1,828.4m ²
장비보유	모래살포기 1톤용 18대, 15톤용 6대 트럭장착식 제설기(삽날) 6대	모래살포기 1톤용 3대, 15톤용 4대 트럭장착식 제설기(삽날) 4대
제설구역 (중랑천기준)	녹양동, 가능1,2,3동,의정부1,2,3동, 호원1,2동, 장암동 (총10개 동주민센터)	자금동, 신곡1,2동, 송산1,2동, (총5개 동주민센터)
관리책임자	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1팀장

마) 제설 하치장 확보 현황

구 분	의정부 서부지역 제설하치장	의정부 동부지역 제설하치장
위치및면적	① 의정부동 333-3번지 일원 A=40,000m ²	① 금오동 123-5번지 일원 A=20,000m ²
제설구역 (중랑천기준)	녹양동, 가능1,2,3동,의정부1,2,3동, 호원2동 (총8개 동주민센터)	자금동, 신곡1,2동, 송산1,2동, 장암동, 호원1동 (총7개 동주민센터)
관리책임자	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1팀장

바) 제설작업 주요노선

노선명	연장	투입장비 현 황	책임관리관
계(9개노선)	81.6km		
서부로,호국로(송추)	10.7km	서울시계~녹양역(6.5km), 홍선광장~울대고개(4.2km)	도로관리2팀
신시가지일원	4.6km	시청앞-역전(1.2km), 시청앞- 홍선광장(1.2km) 전화국삼거리-내고향주유소-시청앞(3.4km), 신흥로	
평화로,녹양동일원	11.8km	서울시계~양주시계(5.6km), 신촌R- 법원앞(0.8km), 법원앞-양주시계(2.9km)	
동일로,금신로	9.6km	서울시계~양주시계(5.4km), 장암우성삼거리~신곡고가~금오여중 (4.2km)	
동일로,호국로(축석)	8.2km	장암우성삼거리~금오사거리(3.0km), 금오사거리~포천시계(5.2km)	도로관리1팀
송산로,국도대체도로	10.4km	신곡지하도~남양주시계(6.0km), 국대도~산들마을4단지앞(4.4km)	
천보로, 민락로	6.7km	자일교~산들마을4단지앞(2.5km) 산들마을4단지앞~귀락마을~포천시계 (4.2km)	
금오-민락송산지구	19.6km	제2청사 앞(6.2km), 송산마그네틱길(4.6km) 송산2동산무소 주변 경사로(8.8km)	
시일원 지하차도	7개소	의정부역, 회룡역, 신곡, 홍선, 경민, 금신, 중앙	

사) 결빙 및 정체구간 설정·관리

지 구 명	선정사유	강설시 조치계획	우회도로	책임관리관
축석고개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제설작업 실시 - 적사함 3개 - 염화칼슘 20포 차량 우회도로 안내 	천보로, 민락로	도로관리1팀
민락로 (귀락마을)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제설작업 실시 - 적사함 3개 - 염화칼슘 20포 차량 우회도로 안내 	호국로	

※ 강설확률 60% 이상일 경우 도로통행량 적은 시간대에 염화칼슘 사전 살포

아) 이면도로 제설계획

○ 동주민센터, 실과소 전직원, 지역자율방재단, 동 자생단체 등 투입

자) 시 경계구간 제설대책

구 간	도 로 명	제설대책 수립 현황			비고
		모래 적사합	제설장비	단계별	
서울시 경계	국도3호선 (평화로)	1개(2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대1-2호선 (동일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양주시 경계	국도3호선 (평화로)	1개(2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국도39호선 (호국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중로1-15호선 (녹양로)	1개(200kg)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중로1-22호선 (동일로)	2개(400kg)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중로1-48호선 (본원로)	-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중로1-51호선 (산성로)	-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중로1-53호선 (버들로)	-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포천시 경계	국도43호선 (호국로)	1개(2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중로1-29호선 (민락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남양주시 경계	국도43호선 (송산로)	1개(400kg)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1단계	

아) 고가도로 잔출입로, 터널입구, 지하차도, 고갯길 등 취약구간 제설대책

구 간	도 로 명	제설대책			비고
		모래 적사합	제설장비	단계별	
고가도로 IC구간	경민교차로 (서부로)	3개(600kg)	1톤 살포기 1대	1단계	
	의정부교차로 (서부로)	3개(600kg)	1톤 살포기 1대	1단계	
	자일IC (호국로)	-	1톤 살포기 1대	1단계	
	의정부IC (외곽순환로)	-	서울고속도로(주)	-	
	신곡고가 (동일로)	-	1톤 살포기 1대	1단계	
	호원고가 (서부로)	1개(2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장암IC (국대도)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지하차도	의정부지하차 도 (시민로)	2개(400kg)	1톤 살포기 1대	1단계	
	홍선지하차도 (홍선로)	-	1톤 살포기 1대	1단계	
	신곡지하차도 (동일로)	1개(200kg)	1톤 살포기 1대	1단계	
	금신지하차도 (호국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중앙지하차도 (호국로)	-	1톤 살포기 1대	1단계	
	경민지하차도 (서부로)	-	1톤 살포기 1대	1단계	
	정의지하차도 (경의로)	1개(200kg)	1톤 살포기 1대	1단계	
고갯길 등 취약구간	국도43호선 (축석고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국도39호선 (울대고개)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국도3호선 (상습정체)	7개(1,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서부순환로 (중점 관리도로)	4개(8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동부순환로 (상습정체)	7개(1,400kg)	15톤 살포기, 삽날 각 2대	1단계	
	버들개길 (고갯길)	-	1톤 살포기 1대, 15톤 살포기, 삽날 각 1대	1단계 2단계	
	송산사길 (고갯길)	2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1대	1단계	
터널입구	사패터널 (서부로)	1개(400kg)	15톤 살포기, 삽날 1대	1단계	

5)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 산악지역 :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관리

- 2~3일전 예보 분석 후 악 기상 예상시 사전통제 안내방송 실시
-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입산금지, 입산자 하산계도 및 안전대피 조치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 등반자 숙지사항 안내판 설치 및 조난대비 등산요령 홍보
- 등산객 일몰시간 이전 하산유도 및 야간산행 통제철저
- 개별 입산은 만류하고, 단체입산 또는 전문산악인과 동행하에 입산하도록 권고
- 폭설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운영

※ 통제소 설치운영(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① 안골매표소 (안골~사패산~성불사입구~백인굴)
- ② 시청뒤매표소 (의정부시청뒤~범골능선)
- ③ 범골매표소 (범골~백인굴~범골능선~사패능선)
- ④ 회룡매표소 (회룡골~사패능선)
- ⑤ 안말매표소 (안골~체력단련장~사패능선)
- ⑥ 망월매표소 (원동봉~망월사~포대능선)
- ⑦ 원도봉매표소 (원도봉~다락능선~포대능선)
- ⑧ 다락원매표소 (다락원입구~다락능선)



- 폭설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운영, 고립예상 지구 중점관리 및 대피장소 지정
- 겨울철 등산객 조난대비 안전대책 강구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 조난대비 등산요령 홍보
 - 기상특보 발효시 입산금지, 입산자 하산계도 및 안전대피 조치
 - 빙벽훈련장 안전대책 및 빙벽훈련계획 사전신고 철저이행

6) 농림 및 축산시설 피해경감 대책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폭설시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난방기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함으로써 비닐하우스의 눈을 녹여 피해예방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단계부터 적극 가운을 실시하고 폭설로 인하여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을 제거
- 농림부 발행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설치를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실시

7) 설해 방재의 홍보 강화

- 겨울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반상회, 소식지, 안내문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실시
- 홍보기간 : 매년 11월~익년도 3월까지
- 홍보내용
 - 설해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설해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의 제설책임 홍보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내 용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
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의무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기상상황, 재난상황을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자연재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 방송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종합상황실 ☎ 031)828 - 4800 ~ 1

FAX 031)828 - 4928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1)828 - 4321 ~ 6

방재팀 ☎ 031)828 - 4331 ~ 4

- 재난신고 무료전화 ☎ 080-215-3650

2)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재난상황 발생시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원봉사단체, 공무원, 군부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실시
- 재난상황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점검 등을 위해 민간재난모니터위원 활용
- 관할 군부대와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3) 도로별 및 수도권 제설현황 파악

- 재난취약구간 우선 제설실시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운행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제설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통제 실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구간, 시·군 경계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는 합동제설작업 실시

○ 도로제설 현황 문의

- 의정부시 (주간) 도로과 828 - 2981 ~ 4
(야간) 당직실 828 - 2221 ~ 2
-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4) 주민대피 및 이재민 구호

-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
- 안내자 파견,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 제거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피유도
- 재산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대피소의 안전확보 철저
- 대피자의 신원 신속히 파악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파악
 -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구호물자의 공급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하되 선입선출로 재고누적 최소화
 - 지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난구호협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 조달

□ 이재민구호 및 수용소 문의

- 의정부시 (주간) 주민생활지원과 828 - 4051 ~ 4
(야간) 당직실 828 - 2221 ~ 2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 828 - 2108 ~ 9

-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 031) 874 - 3848 fax: 875-9444

5) 통신두절 대책

- 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장소의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및 기간통신사업자 홍보협조
- 재난위험지역 특정인에게 SMS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송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KT등 유관기관 협조)
- 야간 정전시 대비 대체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츄어무선, 위성전화 등)

통신두절사고 신고센터

- 의정부시 (주간) 정보통신과 828 - 230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KT의정부지사 (주,야간) 875 - 0600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6) 전기두절 대책

- 대단위 정전으로 주민피해와 혼란 우려시는 민방위부서와 협의 사태 수습 및 복구활동 지원의뢰
- 정전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치안유지 대책협조
- 화재 발생시 최단시간내 진화되도록 소방서와 협조
- 외부 전력공급 부족시 관내에 설치된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
- 자체복구반 및 전기공사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타 전력소 및 안전관리 기술인력도 지원 요청하여 긴급복구
- 전력부족시 전력공급은 우선 순위에 따라 주요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고 차단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차단
- 방송차 또는 비상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 및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불시 전력공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계몽

□ 전기사고 신고센터

- 의 정 부 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78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한국전력공사 (주간) 849 - 1299 fax: 849-1319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49 - 1303 (상황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간) 850 - 7034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50 - 7000 fax: 850-7085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7) 가스두절 대책

○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구 성 : 의정부시청 및 협조기관

- 반 별 : 행정반, 수습반, 홍보반으로 구성

- 협조기관 : 경찰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북부지사 각 1인

○ 대형사고 발생시 총괄지휘 (긴급출동반, 시 사고수습대책본부, 복구반)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구축 및 인원, 장비동원

○ 사고 전파 및 수습등 제반사항은 각 반별로 책임 수행

□ 가스사고 신고센터

- 의 정 부 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78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야간) 878 - 0019
경기북부지사

- 대륜 E&S (주간) 849 - 6000
(야간) 951 - 0220 (상황실)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8) 급수·상수도시설 대책

- 설해피해지역에 대한 비상급수대책 마련
- 노출된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보온대책 마련 및 홍보
- 얼은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요령 홍보
-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동파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반 및 급수대책반 운영

급수시설 긴급복구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수도과 828 - 2441 ~ 5
(야간) 당직실 828 - 4588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9) 교통두절 대책

-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경찰서, 자원봉사 단체 및 업체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 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두절시, 도에 설치된 자체 특별수송대책 본부에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해운·항공로 등의 대체 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조치의뢰하여 연계수송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 등의 특별방송 유도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24시간 교통안내 전화 (1333)

○ 교통두절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교통기획과 828 - 2871 ~ 3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경찰서 (031 - 873 - 7000, 상황실)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복구 단계

1) 공공시설 복구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고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정부노동주민센터에 기타인력은 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 예비비 긴급지원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복구>

- 정전시 전력 확보의 우선 순위 결정후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통신두절로 재난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긴급순위에 의하여 최우선 복구 또는 긴급회선을 설치

2) 주택 복구

-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사·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시 복구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사·군·구에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
- 주택복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
- 주택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시 소유자로부터 다른 지역 사·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피해(전파, 반파, 소파)를 입은자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
- 시장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할 것

-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4) 방역 및 보건위생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파악
- 집단 환자발생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관리 및 적절한 치료 제공
- 확진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등을 통해 환자관리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강구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여 백

제 3 절 황 사

여 백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1) 황사 예보 및 특보제 운영

○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

- 기상청: 국번없이 131

○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황하중류의 황토지대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황색먼지가 강한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등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일종의 흙먼지이다.

황사를 정의할 때 먼지크기의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대부분의 황사는 그 크기가 1~10 μ m (1 μ m는1/1,000mm) 정도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며 누런색의 고운먼지가 인체와 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황사 이동경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고비사막·내몽골고원, 중국북동 사막지역, 황토고원 등이다.

이중 서로 인접하는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여 직접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50%이며,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기는 하지만 중국북동 사막지역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14%, 황토고원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17%를 차지한다. 즉,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는 경우가 전체의 81%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중국북동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에서 직접 발원하여 유입되는 경우가 각각 18%, 1% 정도이다.

○ 황사 예보 발표 기준

황사예보는 크게 황사정보, 황사예비특보 및 황사특보(주의보·경보)로 나누어 발표하게 된다. 황사정보는 황사발생 가능성 및 황사에 대한 동태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발표하게 되며 황사이동 상황, 확대 가능성, 관측값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 경우 황사강도는 옅은 황사, 짙은 황사, 매우 짙은 황사로 분류한다. 또한,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황사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황사특보 발표시기를 병기하여 황사 예비특보를 발표하게 된다.

구 분	황사 강도의 기준
옅은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mu\text{g}/\text{m}^3$ 미만 예상될 때
짙은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sim 800\mu\text{g}/\text{m}^3$ 정도 예상될 때
매우 짙은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 예상될 때

○ 황사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발령기준치	행 동 요 령
황사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 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2) 노약자 응급대책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3)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야외학습 중지 등 지도활동 강화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을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지도 및 홍보 실시

4) 농림·축산물 응급대책

- 목초지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5)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관내 노인시설, 집단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보건교사를 통한 학생보건교육 실시
- CATV, 지역신문, 반상회보, 팜플렛 등을 통해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기상상황, 재난상황을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자연재난취약지구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 방송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2) 방역실시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 황사에 노출된 공사장 자재, 제품 등의 세척
- 황사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3) 노약자 응급대책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적정습도를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4)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단축수업 또는 휴업
- 황사 발생 기간 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5) 농림·축산물 응급대책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황사문의 및 피해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801 ~ 4
(주간) 보건관리과 828 - 4551 ~ 3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기상청 02) 841 - 0011, 0365

복 구 단 계

- 태풍·호우시 복구단계와 동일

제 4 절 가 목

여 백

< 가뭄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가뭄대비 준비단계



- 가뭄상황 분석 및 점검
- 수공원별 급수능력 파악·점검
- 수리시설·관정·양수 장비 점검·정비
- 관정·간이용수원 등 용수개발 계획 수립
- 공사 중 지구의 조기급수대책 수립
- 절수영농계획수립 및 홍보

2단계 : 가뭄우려 단계



- 용수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준비단계 용수확보대책 추진
- 가뭄대비 용수개발비 단계별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 관정 및 간이용수원 등 용수개발
- 가뭄대책용 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추진
- 절수 영농계획수립 및 홍보

3단계 : 가뭄확산 단계



- 가뭄대책상황실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
- 정부 관련부처와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 강화
- 가뭄극복 비상근무령 발동
- 급수대책 총력추진 및 용수원개발 적극 확대
-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절수·용수개발) 홍보활동 강화
- 민·관·군 가뭄대책 장비 및 인력 총동원

4단계 : 가뭄대책 마무리 단계

- 가뭄대책사업의 원상복구 등 마무리 및 평가·보고
- 가뭄대책용 장비 및 시설 점검·정비 후 관리
-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
- 가뭄대책 업무를 풍수해대책 업무 체제로 전환 추진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1)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TV자막, 전광판 등)
- 우리방송, 나라방송 등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 단계별 홍보계획

단계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부처	자치단체
예 방 · 대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대비 물 절약 등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 빗물 모으기 운동 지원 ○ 가뭄극복 포스터 표어 공모 및 작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 절수, 용수개발) 전개 ○ 절수 영농계획 홍보 ○ 물 절약 및 절수기 설치 유도 홍보 ○ 물 다량 사용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 등에 절수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 절수, 용수개발) 전개 ○ 절수 영농계획 홍보 ○ 물 절약 및 절수기 설치 유도 홍보 ○ 물 다량 사용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 등에 절수교육 실시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극복 영상물 제작배포 ○ 식용수 급수 시 질서유지 홍보 ○ 가뭄극복 현수막 설치 및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홍보 ○ 식수 배급제 홍보 ○ 가뭄극복 성금 모금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과수목 등에 대한 절수 영농계획 홍보 ○ 식용수 급수 시 질서유지 홍보 ○ 먹는 샘물 공급 운반급수 계획 홍보 ○ 가뭄극복 현수막 설치 및 절수홍보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홍보 ○ 식수 배급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과수목 등에 대한 절수 영농계획 홍보 ○ 식용수 급수 시 질서유지 홍보 ○ 먹는 샘물 공급 운반급수 계획 홍보 ○ 가뭄극복 현수막 설치 및 절수홍보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홍보 ○ 식수 배급제 홍보
복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발적인 복구 작업 및 구호 등 지원협조 홍보 		

2) 빗물 모으기를 통한 가뭄재해 저감방안 강구

- 가뭄피해 저감을 위한 빗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빗물모으기 시설 설치 등 빗물모으기 활성화 방안 강구 등
-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모으기 운동 전개 및 빗물 모으기 시설 설치 확산운동 실시

3) 가뭄발생 예상지역 관리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 및 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 절수재배 등 가뭄대책 추진
- 중장비 지원, 용수원 개발 예산 지원
- 가뭄대책 추진체제로 전환
- 용수원 확대 개발
- 양수장비 및 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4) 가뭄발생예상지역 관리 지원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 용수원 확대 개발(관정, 하상굴착, 간이보 등)
- 양수장비 및 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가뭄발생 직전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나라방송, 우리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가뭄 판단기준

가뭄 정도	상수도분야 (환경부)	댐 (용수공급제한) (국토해양부)	농작물/농업용수 (농림수산식품부)
1단계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기본계획공급량의 80~9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공급	(관심단계) 논 저수율 70% 이상 밭 수분 61~80%
2단계	지방상수도 급수제한 (50%미만 감량 공급 시)	기본계획공급량의 60~8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 농업용수 공급 *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주의단계) 논 저수율 51~70% 밭 수분 41~60%
3단계	지방상수도 급수제한 (50%이상 감량 공급 시)	·기본계획공급량의 50~6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공급 *농업,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경계심각) 논 저수율 50% 이하 밭 수분 40% 이하
4단계	지방상수도 급수 중단	기본계획공급량의 50%이하 공급 - 댐의 사수용량 활용 공급 * 생·공, 농업,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 평상시

- 관련 실과별로 상황을 유지하되 필요시 가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 가뭄시작 단계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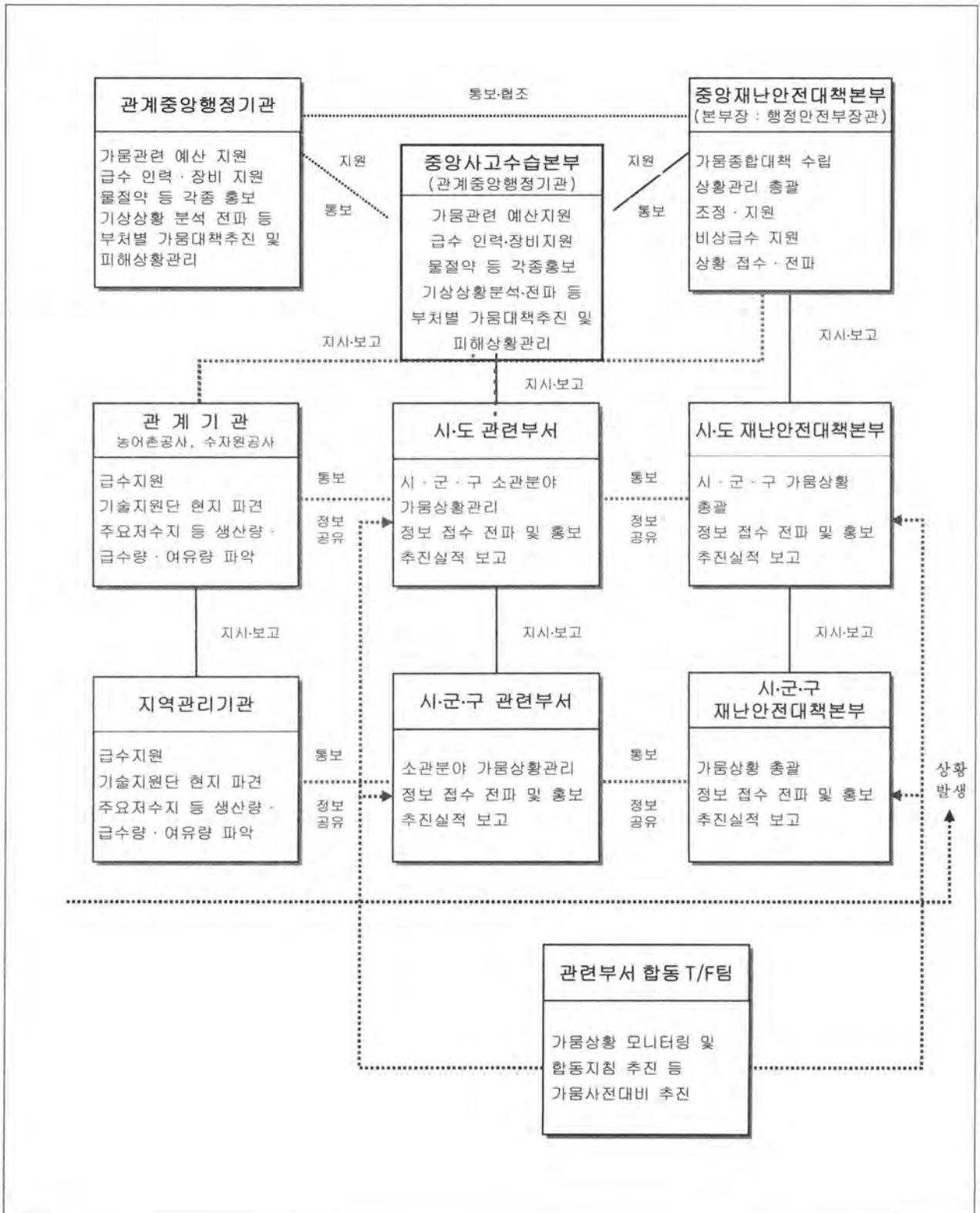
- 가뭄 현상이 2개 읍·면·동 또는 2개 분야(생활·농업·공업용수) 이상 나타나고 가뭄지속이 예상될 때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뭄업무를 관장하되, 업무비중이 높은 실·과에서 총괄관리하고, 관련 실과별로 상황관리
-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가뭄 확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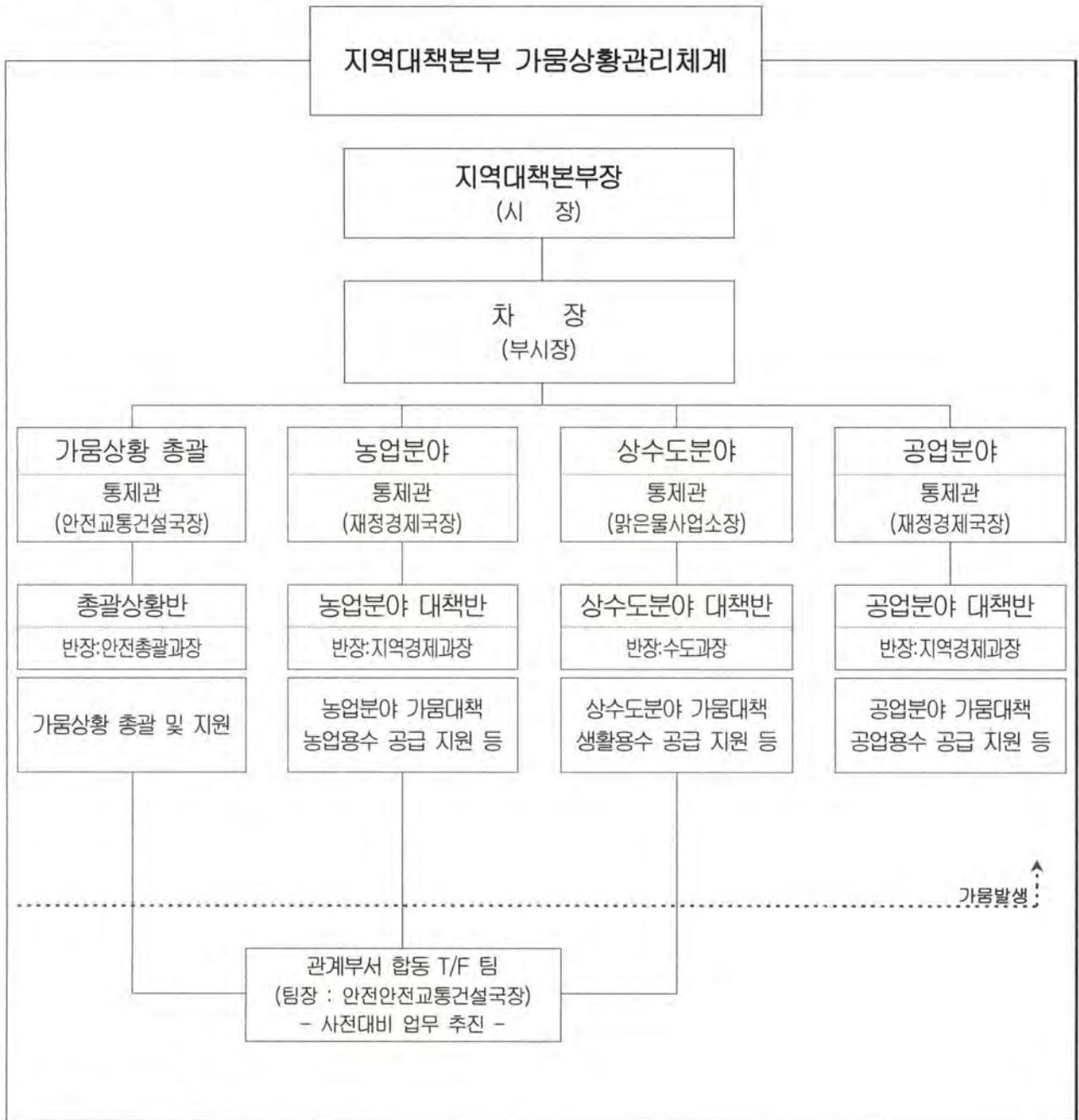
<의정부시>

- 가뭄 현상이 5개동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 전망에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가뭄대책 업무를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분야별 관련 실과에서 상황관리 또는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극복 총력지원 체제 구축 시행

○ 가뭄 상황관리 체계도



○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관리

단계별	근무요령	대책요령
상시대비 체제	가뭄상황 상시파악	도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 상황주시
가뭄시작 단계	직원 3/1 교대근무	가뭄 예상지구 순찰, 가뭄대책장비 점검
가뭄확산 단계	직원 2/1 교대근무	인력동원 및 가뭄대책보유장비 지원

○ 소형관정 보유현황 농지급수 실시

총계(공)	농지(ha)	소형관정(공)	민수관정(공)
672	531	141	-

○ 양수장비 보유현황 및 농지급수

구분	계	급수차량	굴삭기	양수기	송수호스	비고
양수장비	35대	1대	1대	32대	2.7Km	

○ 저수지 보유현황 및 농지해갈 실시

구분	소재지	유역면적	몽리면적	유효저수량	만수면적	제당높이	제당길이	현재저수율
산곡저수지	산곡동	1.2ha	6.2ha	24.1천톤	1.1ha	4.5m	62m	100%

○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지원

-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실시

※ 단계별 급수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식수용 지하수 개발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 샘물 공급,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개인관정 공동이용

<광역상수도>

구 분	가뭄상황 (용수공급제한 기준)	가뭄대응 시행계획
1단계	· 마을상수도의 제한급수 실시	· 가뭄지역에 대한 병물 공급, 물차지원
2단계	· 지방상수도의 제한급수 실시	· 병물 공급, 물차지원 및 · 광역·지방간 비상연결 관로 이용, 가뭄 지역 용수공급 확대
3단계	· 광역상수도의 제한급수 실시	· 병물 공급, 물차지원 확대 · 광역상수도 취수지역 가뭄 시 공급 대상 지자체의 취수원 여건을 감안 수돗물 증량생산 유도 및 비상 취수원 가동
4단계	· 전 지역 제한급수 확대	· 광역 간 연계운영을 통한 대체공급 및 추가운영 가능취수원 개발

※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기준 준용

3)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지원

-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군, 소방서 등)
-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4)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지원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5)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CATV, 공공채널(K-TV)을 통한 홍보
 - 가뭄극복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 디스크 달기운동 등

복 구 단 계

1) 피해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 중앙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시 지원
-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하여 지원

2) 가뭄대책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 유류대 및 전기료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장비구입비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3) 가뭄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의 별표1에 정한 대상자
-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4) 보고 서식 (2013년도 가뭄대비 종합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13.1)

의정부시 가뭄대책 추진현황

- 2013. . 현재 -

I **공통사항**

1. 강수량 현황

(단위 : mm)

구분	평균	00시	00군	00군	00군	00군	00군								
금년															
평년															

※ 시·도 관내 평년자료(30년)가 있는 기상청 관측지점

2.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현황

(단위 : %)

구분	평균	00시	00시	00시	00시	00시	00시	00군	00군	00군
금년										
전년										
평년										

3. 댐(용수댐 포함) 및 4대강 보 저수율

(단위 : %)

구분	평균	00댐	00댐	00댐	00댐	00댐	00보	00보	00보
금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II

가뭄현황

1. 농업용수분야

가. 논·밭의 물 마름 면적

(단위 : ha)

구분	이양대상 논	미이양 논		가뭄대책 필요면적				
		면적	비율(%)	계	미이양 논		이양 논·밭의 물 마름 면적	
					면적	비율(%)	물 마름	비율(%)
00시								

나. 밭작물의 시들음 면적

(단위 : ha)

구분	파종(정식)	시들음(ha)	비율(%)	주요작물
00시				고구마, 고추, 깨, 마늘, 감자, 오이, 무, 두류 등

2. 생활용수분야

가. 운반급수 현황

시·군	읍·면	지역 (마을명)	인원 (명)	세대	운반주기	운반 방법	운반급수 개시일	비고
계		00개소						
					00회/일	000차		
					0일			

나. 제한급수 현황

시·군	읍·면	지역 (마을명)	인원 (명)	세대	급수주기	운반 방법	제한급수 개시일	비고
계		00개소						
					아침, 점심 각 1회 급수	000차		
					6시간 급수			

3. 공업용수분야

산업단지	면적 (천㎡)	업체수	용수원 (취수원)	용수공급현황(톤/일)			대체수원(톤/일)		
				공급량	소요량	여유	수원지명	일공급량	누계공급

Ⅲ

가뭄대책

1. 농업용수분야

가. 총괄

1) 가뭄피해상황 및 급수대책 추진현황

구분	가뭄 면적(ha)(A)				대책급수 면적(ha)(B)				향후계획 면적(ha)(B-A)	
	논			밭	논			밭	논	밭
	계	미이양	모낸 논		계	미이양	모낸 논			
00시										

2) 용수원 개발 및 장비·인력 지원

구분	용수원 개발 (개소)						장비지원 (대, km)					착정기 투입 (대)			인력 지원 (명)	
	계	관정 개발	간이용수원	양수저류	준설	기타	계	급수차량	굴삭기	양수기	중수호스(km)	계	국방부	농촌공사		민간
00시																

3) 가뭄대책비 지원

구분		계	00시	000시	00시	00군	00군	00군	00군	00군	00군
합계											
중앙지원	소계										
	농식품부계										
	- 1차										
	- 2차										
행안부 등											
지방자체예산	소계										
	시·도										
	시·군·구										

나. 세부추진상황

1) 가뭄대책비 지원

구분	소계 (밭작물포함)	소계 (밭작물제외)	미이양 논 급수대책		모낸 논 급수대책		밭작물 급수대책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0시								

2) 긴급 용수개발

구분	계	관정 개발 (공)	간이용수원				양수저류			준설		기타 (개소)
			하상굴착	가물 막이	들샘 개발	간이 양수장	개소	m ²	ha	개소	m ²	
			개소	m	(개소)	(개소)						
00시												

3) 인력 및 장비 지원현황

구분	인력지원 (단위 : 명)								장비지원 (단위 : 대)									
	계	주민	공무원	군경	기관 단체	학생	공공 근로	기타	계	굴삭기	양수기	송수 호스 (km)	급수차량					
													소계	살수차	소방차	급수차	레미콘	
00시																		

4) 가뭄대책 추진계획

구분	향후 급수대책 계획면적(ha)	급수대책 추진계획			재원확보계획(백만원)		비고
		장비(대)	인력(명)	용수원개발(개)	국비	지방비	
00시							

2. 생활용수분야

가. 관정개발 현황

구분	관정개발 실적(개소)				예산(백만원)		
	소계	준비중	공사중	완료	소계	국고	지방비
00시							

나. 급수 인력·장비 지원

구분	금 일 실 적				누 계			
	급수량 (톤)	수혜자 (명)	장비차량 (대수)	동원인력 (명)	급수량 (톤)	수혜자 (명)	장비차량 (대수)	동원인력 (명)
00시								

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원현황

구분	개소	생산량(톤/일)	지원량(톤) 금일(주)/누계	지원인원(명)	비고
00시			/		

라. 병물 접수 및 지원 실적

구분	접수			지원 실적			잔량(병)
	지원기관	기관수	병수	개소	인원	병수	
00시	계						
	타 지자체						
	공공기관(수자원공사 등)						
	민간기업						
	생물생산업체						
	구호관련기관						
	자체구입						
	기타						

3. 공업용수분야

구분	공급량(톤)		대체수원지	공급 방법	예산지원		
	금일	누계			계	국고	지방비
00시				광역상수관로 활용(수자원공사)			

병률 접수 및 지원 실적

시·군	접 수			지원 실적			잔량(병)
	지 원 기 관	기관수	병수	개소	인원	병수	
의정부시	계						
	타 지자체						
	공공기관(수자원공사 등)						
	민간기업						
	샘물생산업체						
	구호관련기관						
	자체구입						
	기타						

가뭄극복추진 관련법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음용수 분야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섬·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공업 용수 분야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다.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대책

라. 인력·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0265호 -

□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료	그 밖의 세부기준
가~나<생략>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생략>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代播)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용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매물·침수 또는 가물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물·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근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또는 가물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 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물대책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 대통령훈령 제236호 -

제3조 (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3조 (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훈령 제130호 -

제3조 (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3조(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간에도 평상시 재난상황관리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를 상시 운영 할 수 있다

제 5 절 지 진

여 백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1)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계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비상무선통신의 이용
- 행정무선, 행정전화 외에 경찰, 군 등과 핫라인 설치

2)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전달

-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을 CATV, 전광판, 소식지 등에 대대적 홍보
- 수집된 각종 피해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신속 전파

3)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통보대상자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 시스템)
-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 시스템)
-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 강화
 - 이동통신 3사(KT, LGT, SKT)를 통한 전국서비스 실시
 - 쌍방향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추진
- 전국적 진도분포 및 건축물/인명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 NDMS를 활용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4) E-30분 대피계획 추진

- E-30분 주민대피계획의 효율적인 주민대피 방안 강구
- 지진해일 발령 후 경보해제를 위한 기준 마련

5) 민방위경보시스템의 활용방안 추진

- 추가 설치예정인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재난 예·경보 발령에 적극적 활용 방안 강구
- 민방위 경보 신호음을 재해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방안 마련 및 대국민 홍보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지진발생 직후의 대책

- 지진발생 초기단계의 대응
 - 상황실 설치운영(정보의 수집·전파)
 - 상황실·현장지휘소 근무요원 파견요청(유관기관)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압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유관기관간 협조 또는 지원요청(의정부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 피해지역주민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 지진발생 수습단계의 대응
 - 피해사항 자체조사
 - 방역실시
 - 인력 및 장비 지원
 - 음료수·식료·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긴급도로 확보 등
 - 쓰레기 처리 및 장비 지원
 -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추진
- 피해상황보고
 - 주요피해상황 : 동 → 의정부시대책본부 → 경기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 동 → 의정부시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및 시·도대책본부
 - 대규모피해(즉보) : 주민 → 동 → 의정부시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인근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 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 재해규모별·분야별로 지원협력 매뉴얼을 작성 활용
- 지역협력체제 구축
 - 비축물자나 장비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 유지
- 대규모 피해지역의 치안유지 및 시민안정화를 위하여 군·경의 지원 요청

2) 초동대응 이후의 대응대책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방안 수립
 - 다양한 시설별 학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도평가단 구성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노동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
- 기타 인력지원 국방부에 요청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로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 교통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 수송로, 주요 우회로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대형헬기 등 수송장비 지정
- 긴급도로 확보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확보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장애물의 제거
 - 장애물 정리는 시장 주관으로 우선 처리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 처리
 - 실종자 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 대피소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에 응급 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하여 응급 급수활동 실시
-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비상급수대책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20세대이상
설치기준	-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0㎡마다 1일 양수량 0.4톤 이상 20톤 미만	-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일 양수량 세대당 0.2톤 이상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시·도지사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비상급수토록 지시

- 급수목표량 기준
 -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 1인1일 4 ℓ (음료수)
 - 10일까지 : 1인1일 20 ℓ (생활용수 포함)
 - 20일까지 : 1인1일 100 ℓ (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1일 250 ℓ (정상적 급수)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분으로 확충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송로가 확보되어 식음료 및 생필품의 수송이 가능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음료 및 생필품 비축
- 식음료 등 긴급물자 수송시스템의 확립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자 방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양곡보관소 등 파악 관리
- 대규모 지진발생으로 식료품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 통제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수도시설의 설계도면 관리를 철저히하여 긴급복구에 대비
- 지진대비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상수원 수계별 전환 급수체계 강구
- 단기 대체 수원의 확보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이커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도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복구 단계

1)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 복원 사업과 개선복구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
- 피해지방자치단체가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 방안 강구(정부는 이를 지원)

2) 피해조사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평가단 편성·운영
 - 건축시설 분과위원회 : 일반주택, 공동주택, 대형빌딩, 문화재 등
 -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량, 철도(지하철), 고가도로, 터널
 - 상·하수도시설 분과위원회 : 취수·송수·배수관로, 취수·정수·배수·가압장, 하수도분야, 우·오수관로, 종말처리장
 - 전기, 가스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가스공급설비
 - 직무범위
 - 지진피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의 수립
 -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지진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 지진재난경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의정부시 지진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 지진에 따른 국가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행동조치를 위해 세부사항은 지진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절차 규정

1.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관계기관/부서
현장투입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접수 및 확인 ○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등 전파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장비 확보 - 긴급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임무숙지 및 출동준비 	상황총괄반
임무수행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 현장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이재민수용시설 운영·관리 ○ 사망·실종자 처리 ○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재난쓰레기 처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및 협조 ○ 주민대피 및 안내 ○ 식용수 확보 및 지원 ○ 재난수습 보도지원 ○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상황총괄반 비상지원반 " " " " " "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 " 구조구급반 자원봉사지원반 " " " " 비상지원반 상황총괄반 자원봉사지원반 비상지원반 상황총괄반 상황총괄반
철 수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비상지원반 상황총괄반 상황총괄반 상황총괄반 비상지원반

2. 조치내용

가. 현장투입전

1) 지진상황 접수 및 확인

- ①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확인(지진발생지역,진앙, 규모, 시간 확인)
- ② 지진상황 접수자는 즉시 상황관리자에게 보고

2)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① 보고

- 상황실장 :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등

②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상황실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무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③ 주민에 대한 재난상황 신속 전파 : 상황실 요원

- 재난문자전송(CBS),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재해문자전광판등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 활용방법 : 부록Ⅳ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체계 참조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재난종합상황실에 등록된 통·반·이장 및 의용 소방대원, 재난통신동우회원의 휴대전화로 지진재난 SMS전송)

- 지진발생 사실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민방위 중앙 경보통제소에서 피해지역에 재해경보 발령

(필요시 시도 경보통제소에 재해경보 발령 통지)

☞ 민방위경보 발령과 비상연락망 : 부록Ⅲ-8 참조

3)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대응 수준에 따른 현장투입 인력 및 장비 확보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파견 요청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별 통역가능자 유관기관에 파견 요청

-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요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요청
 - 기동방역반 편성 요청
 - 재난쓰레기 처리 지원 요청
 - 식용수 지원 요청 등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 국가별 통역요원 지원 요청 등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4)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① 지진피해지역 인명피해 상황 파악
- 현장에 파견된 소방, 군 및 비상지원본부 등과의 정보 교환
 - 파견단체와 정보교환(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존재 여부 등)
 - 관계기관과의 통화시간·내용(협조요청, 상황전파 등), 현장파견부서와의 조치시간·내용(출동시간·인원, 현지조치 사항 등)
 - 인근지역 주요시설(병원,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확인
- ② 지자체 및 소방 등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 공유
- 지진피해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파악(연락처, 담당자 등)
 - 현장투입 유관기관의 구조장비 및 인력투입 파악
 - 구조지역의 할당, 현장지휘 관련 등

5) 임무숙지 및 출동 준비

- ① 지진피해상황 및 피해규모에 따라 출동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규모 결정
- 지진피해가 확대 및 2차 재해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에 추가 장비 및 인력 지원 대기 요청
- ② 구조장비 및 투입부서, 인력의 투입준비·명령
- 현장투입될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직원에게는 현장에서의 임무를 숙지하도록 조치
 - 현장투입 부서별 장비 및 인력 확인
 - 할당된 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접근방법 검토

나. 임무수행시

1)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① 현장출동시

- 피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이동로 파악·이동
- 피해현장과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지진 피해 및 구조구급 상황 파악

② 현장 도착시

- 현장지휘본부 검토 및 위치 선정
- 지진피해 상황과 예측 규모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 신속한 업무수행 체계 구축

③ 상황보고·전파

- 내 부 : 소방방재청, 중앙 및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안전
교통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등
- 외 부 : 의정부소방서, 군부대, 의정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 언론사 : 방송사 및 주요 일간지 등
- 보고내용
 - 기상청 지진정보 및 현 피해상황
 - 피해상황에 따른 대응수준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사항
 - 현장 도착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등

2)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운영

① 비상지원본부 설치

• 비상지원본부 구성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장이 총지휘 책임
- 실무책임자 : 재난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4개의 지원반으로 구성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 지원반

•지원반 임무 및 역할

초기대응반

- 재난현장 2차 피해 발생직후 조사 및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최초 피해현황 파악 및 즉보
- 사망·부상자 파악 즉보
- 교통두절 상황파악 및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상황분석보고반

- 추가 지진상황 수시 전파
- 중앙종합상황실, 도 및 시 상황실과 hot-line 구축
- 재난진행상황 파악
- 재난피해 분석·판단

관계기관·단체협력반

- 소관관리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 소관관리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자재 확보
- 타 기관·단체 인력·장비 필요시 지원 및 요청
- 자원봉사자 접수 및 적정 배치·운영

대민보호지원반

- 이재민수용 및 이재민구호
- 사망·실종자 후송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 민심동향, 미답사례 확인 및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②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현장대책회의 개최

- 현장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 사망 및 부상자가 대규모로 점점 늘어나는 경우

- 화재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책회의 개최시 회의내용 포함사항

- 현장지휘 체계의 숙지 및 보고 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 유관단체 및 외국구조대의 인명구조 구역 할당운영에 관한 사항
- 차량 및 민간인 통제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상황실 운영 및 통신망 운영 사항
- 주민대피 및 민간보호에 관한 사항
- 식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
- 구조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 구급차량지원 차량통제,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구조계획 수립

- 구조의 우선순위 결정(생존자 우선 구조후 사망자 수습)

③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사항

- 지진 피해 위험 지역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내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 위험구역내 주민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조치
- 지역 경찰서의 장애인에 통행제한 요청
 -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진화,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요청
 - ⇒ 지역내 관할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인에 소속공무원의 파견등 필요한 지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의 응급조치 사항
 - 화재진화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2차 피해 예상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폭발,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지시 및 확인
 - 위험시설 경계(군부대 및 경찰서 등)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피해 극심지역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④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보고 실시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 및 유관기관별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시설별 피해 상황 집계 후 지휘체계 보고 및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보

< 각 기관별 피해 집계 및 보고 List >

유 관 기 관	주 요 내 용 (피해 집계 및 보고)	비 고
한국전력 경기북부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송변전, 배전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가스설비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분부	열차(교량, 터널)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제6276부대	군사시설	
KT의정부지사	통신시설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유관기관별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⑤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확인 및 통신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구성 확인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실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유관기관은 상황실 구성후 재난종합상황실에 구성현황 통보

- 유관기관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①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우회교통로 확보 : 경찰서 협조

- 현장 주변 출입자 통제 및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 현장 주변 출입자 통제 및 교통관리

- 현장 주변 차량 및 출입자 우회소통 대책강구

•safety line 설치 : 비상지원본부(초기대응반)에서 설치

②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긴급구조차량 현장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

- 주차차량 이동 및 진입로 적치물 이동조치

- 차주 미연락시 주차차량 견인조치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기 능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응 급 의 료 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중 증 도 분 류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의 료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급차 대기소 운영 •의료물품 비축 및 배정, 자원봉사자 배치
임 시 영 안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현황 파악 및 사망자 신원 확보 •개인 소지물품 보관

5) 이재민 수용 및 관리

- 식료품, 식용수 및 생활필수품 등 확보 요청
- 이재민 수용건물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 통신 및 난방시설 등 지원

6) 사망·실종자 처리

○ 현장수습

- 사고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및 부분시체 보관처리

○ 신원확인자에 대한 조치

- 유가족 시신 확인
- 생전자료 수집, 사망자 신원파악 → 주민전산망
- 사후자료 수집 → 전문 식별팀
- 지문 및 유류품 검사 등

○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조치

- 시료채취 가능시
 - DNA감식용 시료채취(2개씩) 및 인수
 - 시료운송수단 강구 → 국과수 및 감식기관 협의
 - 유가족 혈액채취 및 결과 통보
- 시료채취 불가능시
 -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인정사망처리」 추진
 - 미확인 사망자 본적지 파악

○ 시신 미수거 사망자 유토함 준비

○ 사망자 수송

- 영구차 확보
- 이송지역별 현황 파악 및 협조
- 이송지역 내 병원현황 파악 협조

○ 장례지원

- 종교단체와 협의 합동 위령제 의식 시행
- 시신 안치병원에 분향소 설치 지원
- 사망자 매장신고 등 행정절차 지원 장의사 연락망 확보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분향소 설치 등 유족 위로계획 수립

- 유가족 의문사항 문답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시장 등 간부공무원 방문 위로 계획 수립 시행
- 유가족에 사고 수습 일일상황 통보

- 유가족 구호
 - 여성협의회에 협조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 부모사망자 유자녀세대 보호대책 강구
 - 분향소의 각종시설, 보안 지원
- 부상자 위로
 - 부상자가족 위문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부상자 신원확인 및 가족사항 파악 통보
- 부상자 구호
 - 현장 응급소 및 부상자 입원병원에 급식지원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담당 공무원 배치(안내, 애로사항 조치, 연락체제)

7)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 조치
- 피해지역,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감시원 배치관리
- 보건소에서 기동방역반 편성 및 운영

8) 재난쓰레기 처리

- 동원장비 지정시 덤프, 집게차 등 지정 및 확보
- 권역별 쓰레기 임시 적치장 지정·운영
 - 적치장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 살포
- 이재민수용시설 등 집단시설내 임시 화장실 설치·운영
- 경찰서와 협의 쓰레기 수거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단속 요청

9) 자발적 민간 참여 관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재난안전대책본부내 자원봉사지원반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주요 건설업체의 중장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민간 참여의 지도 및 확인
 - 지역별 필요 인력 및 장비 확인
 - 민간 참여의 지역별 배분 및 인계

10) 주민대피 및 안내

-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통한 주민 대피 및 건물 출입 통제
- 재난방송요청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마을앰프, 자막방송 등)
- 여진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대피령 발령 검토 및 발령
 - 대피장소 공지
- 이재민 발생 따른 긴급지원
- 지진 발생에 따른 보도문안

11) 재난수습 보도 및 지원

- 보도자료 작성
 - 지진발생 정보 및 현재 구조 및 피해상황
 - 지진피해현장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
 - 교통통제의 필요성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국민 동참 유도
- 자료배포 및 기자브리핑 실시 : 일간지 및 방송사 등

12)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 지원시점 : 동시 다발적 피해로 구조구급 및 치안유지 역량 부족시
- 지원기관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외교부 등
- 지원내용 : 인력, 장비추가지원 및 관련전문가(외국구조대 통역가능자등) 지원

13) 지진피해 조사 실시

- 피해조사는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시설물별 피해 조사
- 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처리
-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서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

다. 철수시

1)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완료에 따른 복구계획 등 후속조치 강구
- 실종자 대책 마련
- 철수에 따른 대안 마련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복구 등 필요사항 지원 요청

2)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인력 및 장비지원 현황 파악

- 기관 및 단체명, 지원인원(대표자외 ○○명), 지원기간 등
- 장비명, 수량 등

○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치안유지 협조(경찰, 군)

○ 식료품, 식수 및 생필품 등 지원(소방서, ○○단체 등)

○ 구조 및 환자수송(병원, 119구조대 등)

3)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의 봉사자 접수 및 배분
- 동원지정된 장비 소유자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배치
- 피해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공공시설물

- 주요 도로·교량의 우회도로 및 가교 설치 등 응급복구 추진
- 하천시설은 수충부·주요 구조물 우선 복구로 2차 피해 예방
-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 신속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 파손된 철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대체 수송대책 시행
- 응급복구 우선순위 사전 지정 순위에 따라 복구 추진

○ 기타 시설물

-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 응급복구 추진
- 전·반파된 주택은 안전점검 후 이용 및 철거 조치

•국민생활 필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우선 복구 추진

○ 복구계획 검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

4)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지진피해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여부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여부(지휘체계 확립 여부)

○ 지진피해 시설물 통제여부

•피해가 발생되어 이재민 수용시설로 피난한 건물의 통제여부

○ 치안유지 여부

•도난 및 폭동 방지 등 치안 유지 여부

○ 대책본부와 현장파견 기관간 협조체계 또는 보고체계(통신), 언론보도의 원활성 여부

○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 기타 지진피해 현장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5)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구

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분부

○ 정전지역 및 단전현황 파악 조치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전기료 감면 및 전기용품 수리지원현황 파악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KT 의정부지사

○ 통신두절 및 피해 현황 파악

○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현황 파악

○ 대민지원 현황 파악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대한적십자 경기북부분사관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 의정부소방서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피해지역 주민대피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대규모 사체수습 지원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의정부경찰서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의 교통통제
- 피해지역 주민대피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제6276부대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 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긴급 구조 및 현장 확인 인력지원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및 지원
- 지역 안정화대책 각종 소요사태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의정부교육지원청

- 학교 피해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응급수업대책 수립 마련
- 학생피해조사 및 보고
- 비상시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 이재민수용에 따른 제반 조치

□ 문상기상대

- 지진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청소행정과

-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환경오염 위험시설 점검 및 대응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수도권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피해지역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상·하수도 피해시설물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식수원 오염대비 지역 순찰

지역경제과

- 자체시설 피해조사
-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 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지진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전기시설, 가스설비 및 정유설비 등 피해조사 및 긴급 복구
- 주요관공서 전력지원대책 수립
- 전력수급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문화관광체육과

- 지진상황 전파 및 보고
- 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 전파(TV, 라디오)
-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요원 파견
-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 등 자체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

공보/정보통신과

- 지진상황 전파 및 보고
- 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 전파(TV, 라디오)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대국민 선무대책 홍보 및 지원
- 관련부처 홍보은행사항 방송
- 방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원
- 보도자료 제공 및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통신대책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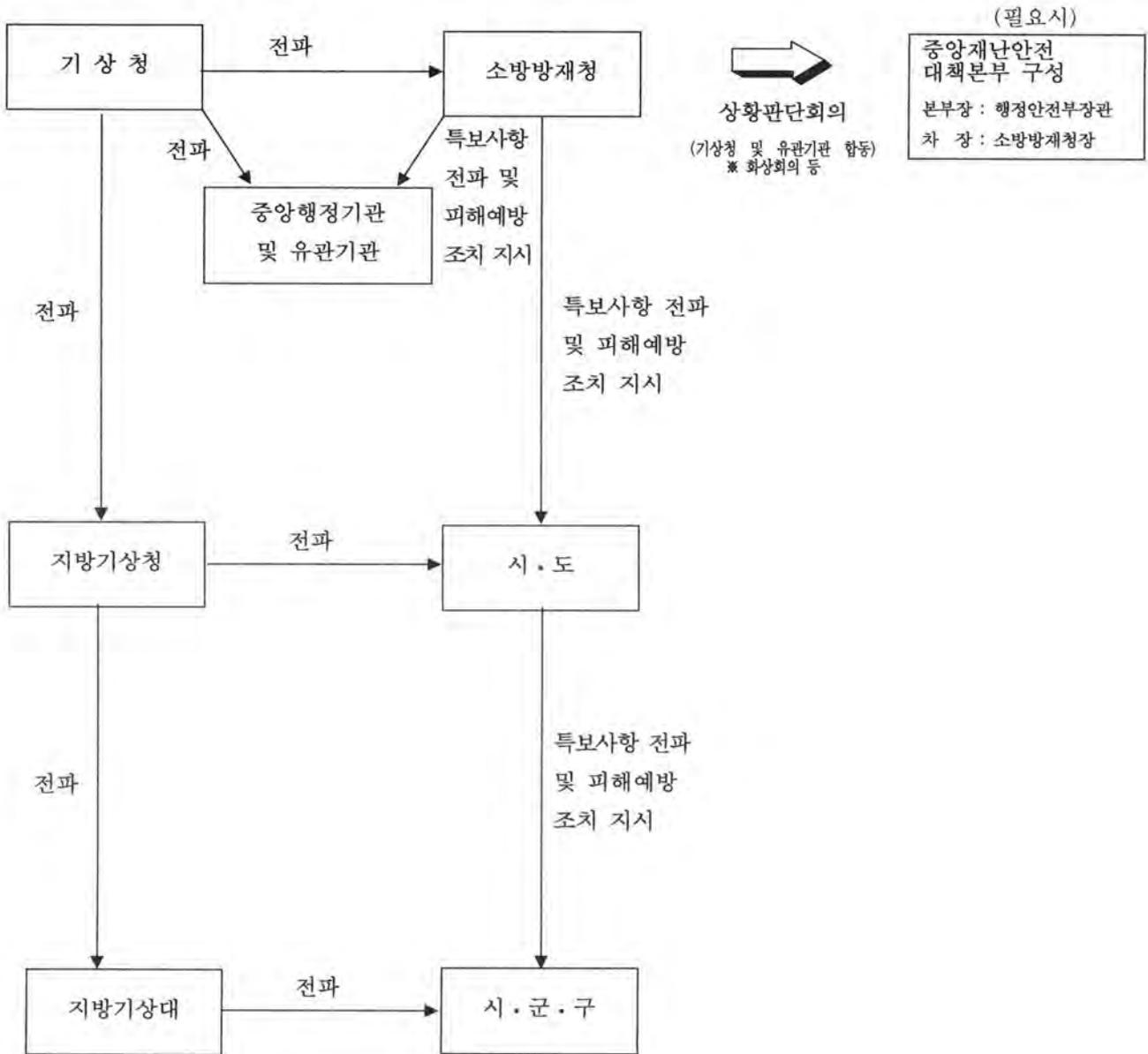
□ 도로과

- 지진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여진에 대비 붕괴우려 대형 사업장 점검 실시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지진으로 인한 원전시설 피해 점검·확인 및 대책 마련
-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대피 조치

□ 보건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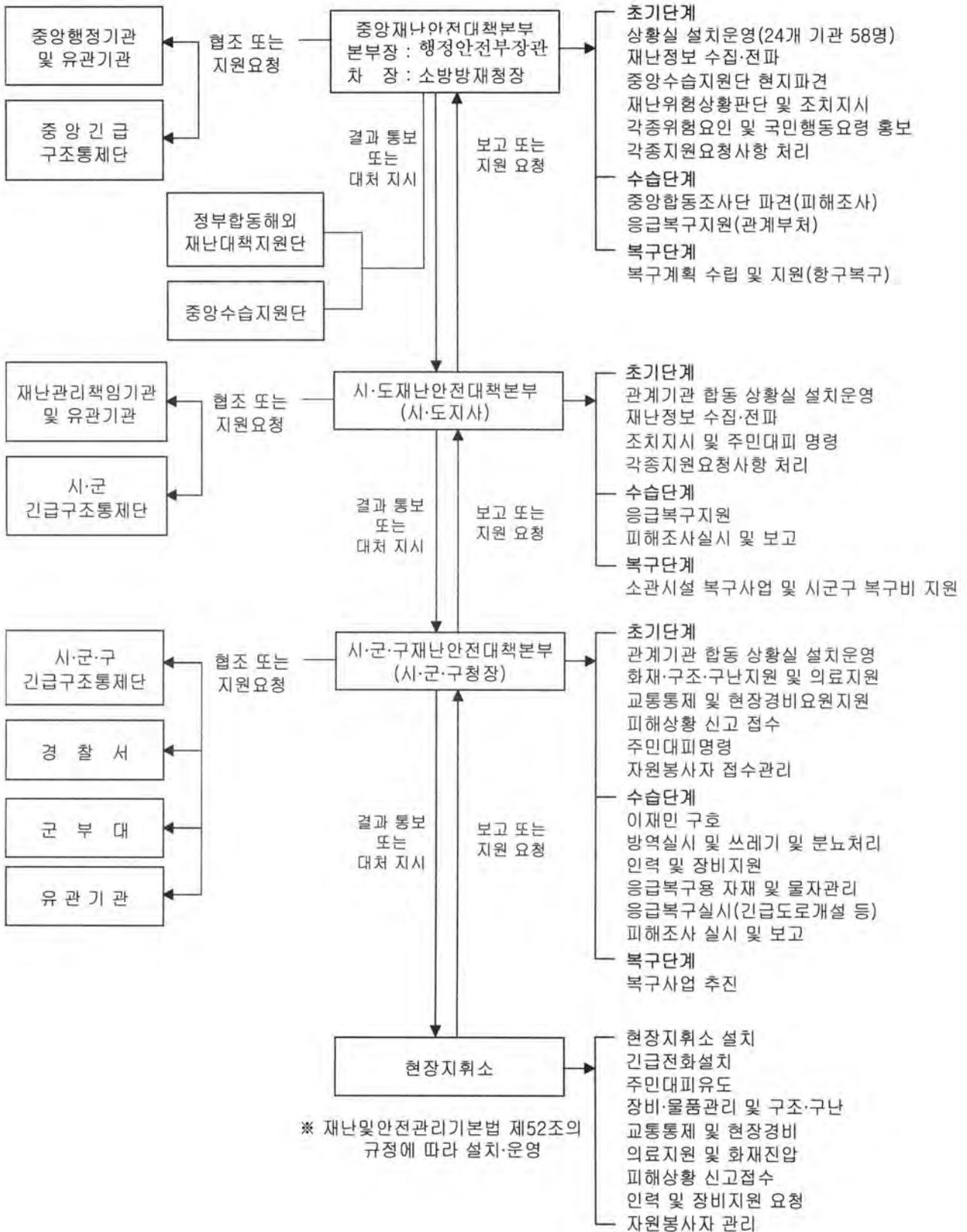
- 지진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각종 의료, 구호물품 수급대책 마련
- 전염병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 전파 체계 >



1. 전파방법 : 컴퓨터 통신, 동시동보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2. 국민홍보 : TV·라디오, CBSDMB 재난방송시스템, 앰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인터넷, SNS,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3. 지진해일 특보는 기상청에서 해안지역 시·군·구에 직접 전파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 수습체계 >



【부록 1】

지진 피해보고 양식

각부서

구분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인명피해	- 인명 피해 ○○○명 · 사망 △△명 · 실종 ××명 · 부상 ◇◇명 ※ 인구 : ○○천명	- 구조 활동 현황 · - 주민 대피 현황 ·	- 지원 요청 사항 ·
시설피해	- 건물피해 ○○○동 · 전파 △△, 반파 ◇◇ - 주요시설 피해 · 도로·교량 파손 ××개소 · 주유소 ○동 전파 등 - 화재발생 △△개소	- 응급복구 현황 ·	
기타	- 산사태 발생 ○○동 - 원자력발전소 피해발생 - 댐·저수지 파손 등	- 응급복구 현황 ·	

유관기관

시설종류	지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시설	△△시 ○○동	- 피해내용 : 붕괴 ⇒ 2차 피해 현황 ※ 주요기능 상실 여부	- 긴급 복구 현황 ·	- 지원 요청 사항 ·
△△시설	△△시 ○○동	- 피해내용 : 화재발생 ⇒ 2차 피해 현황 ※ 주요기능 상실 여부	- 긴급 복구 현황 ·	

문자, 방송 및 협조요청 문안

가. 민방위경보 방송문안(지진) : 내륙 M5.0 이상, 해역 M5.5 이상

□ 1단계 : 지진발생 직후(지진통보 및 대피방법)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웅 ~) -

시민여러분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회 반복방송)

- △△지역에 규모 ○.○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회 반복방송)
- 전원과 가스밸브를 잠그고 신속하게 가까운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 불이 난 경우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체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끝.

□ 2단계 : 긴급대피 직후(응급구조 및 대응 조치)

시민여러분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회 반복방송)

-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의 지진으로 전국에서(○○지역 일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공터에 대피중인 주민께서는 우선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신 후, 주위의 부상당한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도 건물 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 과도한 전화사용은 긴급통신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가급적 개인적인 전화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계속해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끝.

□ 3단계 : 지진상황 종료 후(피해신고 및 응급복구 등)

시민여러분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회 반복방송)

-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의 지진에 의해 ○○지역 일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 시각 현재 지진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가하여 집안을 정리하여 주시되, 주택이 붕괴되었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주민들께서는 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지역의 대피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 이웃 중에 실종된 사람이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 119, 시·군청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여진에 대비하면서 여진발생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가까운 공터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끝.

나.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 지진해일 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웅 ~) -

시민여러분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1회 반복방송)

우리지역에 〇〇:〇〇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니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니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 이상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끝.

다. 크로샷 송출문안(지진, 지진해일)

◆ 의정부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알림

〇〇:〇〇분 〇〇지역 규모 〇.〇 지진(지진해일)발생. 재난대본 근무자 비상근무 실시.

라. 재난방송 요청문안(지진)

제목 :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기상청에서 기통보한 지진통보와 관련하여, 지진재난 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여진 발생 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및 자막문안 -

- 〇〇:〇〇분경 〇〇지역에 규모 〇.〇의 지진 발생
- 진앙지 부근에서 건물 피해 등 지진재난 발생 예상
-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진화
-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
- 여진발생시 행동요령
 -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다리를 꼭잡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운전 중일 때는 차량을 신속하게 우측에 정차
 - 전열기와 가스렌지 등 사용 금지
 - 가스, 수도 밸브 잠그기. 끝.

마. 재난방송 요청문안 : 지진해일 특보(주의보/경보)

제목 :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발표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기상청에서 기통보한 지진해일주의보(경보) 관련, 지진해일피해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및 자막문안 -

- ○○:○○분 ○○지역 등에 지진해일주의보(경보) 발표
- 지진해일 내습시 행동요령
 - 해안저지대 주민들은 신속하게 높은 지대로 대피
 - 해안 저지대 도로 차량운행 금지
 - 운항중인 선박 먼 바다 대기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 대피
 -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 끝.

바. 소방출동 요청 문안(지진 및 지진해일)

◆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출동 지령 요청(상황전파메시지)

1. 기상청에서 기통보한 지진통보와 관련하여, 대규모 시설물 붕괴와 화재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실제피해 신고 및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예측결과를 참고하여 일사분란하게 구조·구급 및 소방인력을 즉시 출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 군·경 출동 협조 요청문안(지진 및 지진해일)

◆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군병력 출동 협조 요청(상황전파메시지)

1. 기상청에서 기통보한 지진통보와 관련하여, 시설물 붕괴와 화재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지진 발생 이후 대규모 폭동 및 약탈행위 등으로 사회 혼란이 우려되니 귀 기관에서는 경찰 및 군병력을 파견하여 질서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응 메시지 문안

가. 재난대본 비상근무 소집 문안(지진 또는 지진해일)

◆ 재난대본 가동에 따른 비상근무 소집

1. ○○월 ○○일 ○○:○○분경 ○○지역에서 규모 ○.○의 지진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 시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소집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근무기간 : '○○. ○월 ○일 ○○ :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나. 근무장소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본관 3층)

다. 대상인원

- 부서 : 공보담당관, 총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경전철사업과, 도로과, 보건관리과, 수도과, 하수도과
- 유관기관: 의정부경찰서, 2군사령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의정부교육청, KT의정부지사, 대한건설협회경기지회, 대한적십자사경기지사북부봉사관, 한국가스공사 경기북부지사,

※ 향후, 상황 변동시 조정될 수도 있음. 끝.

나. NDMS 및 Fax 대응 메시지 문안 (지진)

◆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 보고 및 신속대응·수습 철저

1. 기상청에서 기통보한 지진통보와 관련하여, 시설물 붕괴와 화재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실과소에서는 아래사항에 유념하여 사태수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신속대응 및 사태수습, 피해사항 파악 후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자체 조치사항

- 가. 각종 TV, 라디오 등 지역방송사, 옥외전광판, 마을앰프, SMS 등을 통해 지진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 나. 위험지역 주민대피
- 다. 이재민 수용,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공통(실과소) 조치사항

- 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
- 나.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 및 사태수습
- 다. 지진피해 지역의 범죄 예방활동과 교통 통제지역 설정 운영
- 라.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환자 수송 등 구조·구급 철저
- 마.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 폭발, 화재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바. 손상된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용 통제 등.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체계

1.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 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으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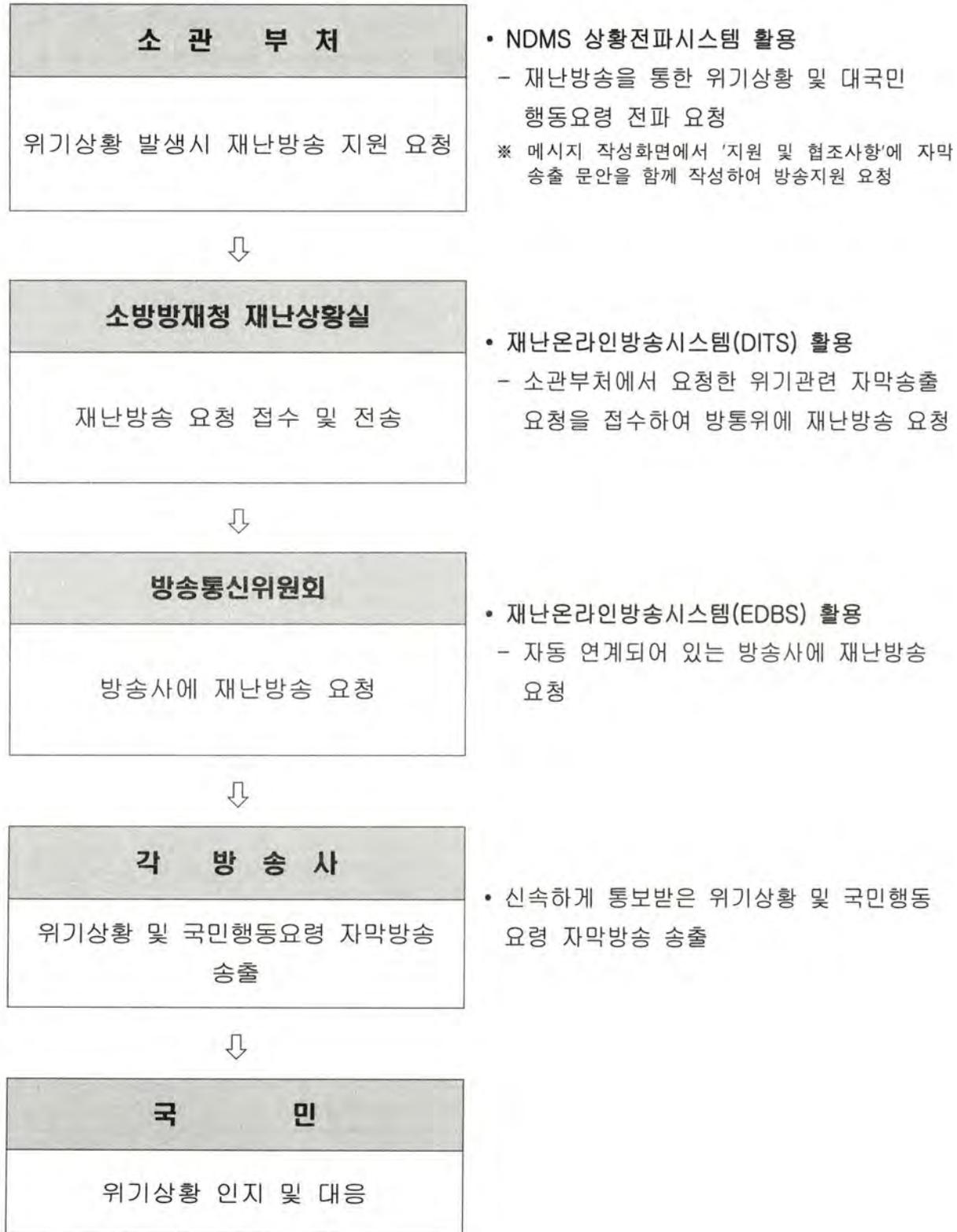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 표준문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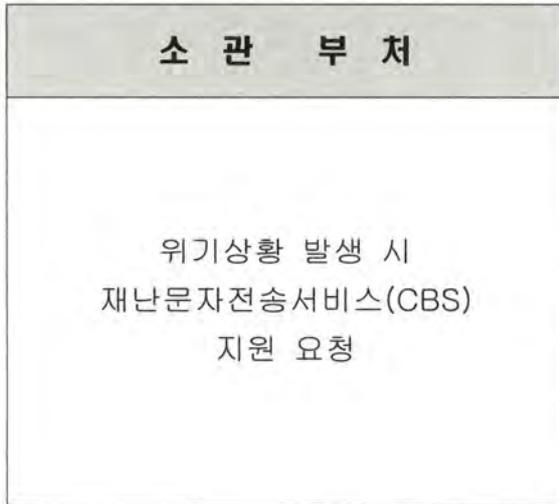
지진해일	[안전총괄과] ○○시 ○○분경 ○○지역 지진해일 특보(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해면 저지대 주민과 운행차량 고지대 대피,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
전력부족	[녹색환경과] 한파(폭염)에 의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부족 우려,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정전시	[녹색환경과] ○○월 ○○일 정전경보, 전력부족으로 전국 대규모정전 우려, ○○.○○일 ○○:○○분부터 순환정전 실시 중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교통통제	[교통기획과, 도로과]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바랍니다.
통신구 화재	[정보통신과] ○○월 ○○일 ○○시 ○○지역 통신구화재로 통신케이블 일부 훼손, ○○지역 주민 복구 시 까지 양해바랍니다.
댐붕괴	[수도과] ○○일○○시 ○○분 ○○다목적 댐의 붕괴가 발생 하류지역 침수가 예상되니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바랍니다.

2.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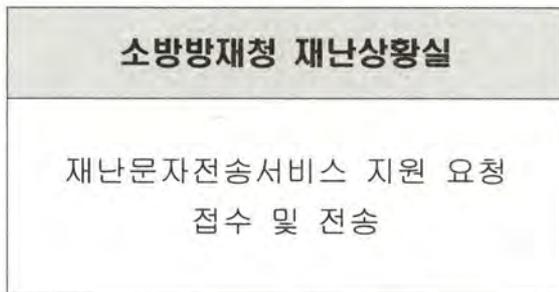
□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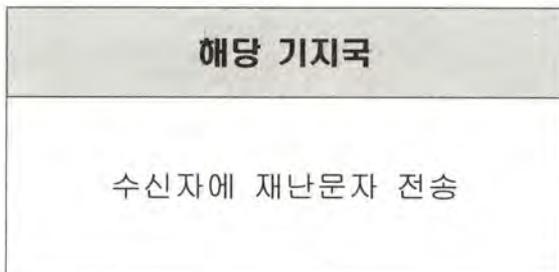
□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송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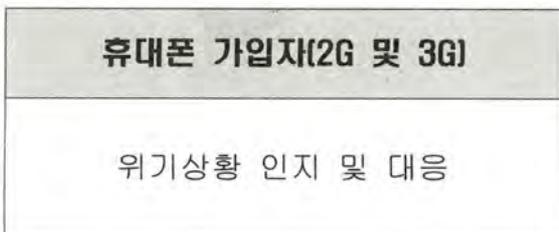
-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서비스(CBS) 송출을 요청 하거나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지원 요청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을 활용 소관부처에서 메시지 송출(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승인)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문자내용을 해당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해 재난문자 자동 전송



- 기지국 단위로 해당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 실시간 재난문자 전송
 - 재난문자(60자 내외) 대량 동시 전송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3.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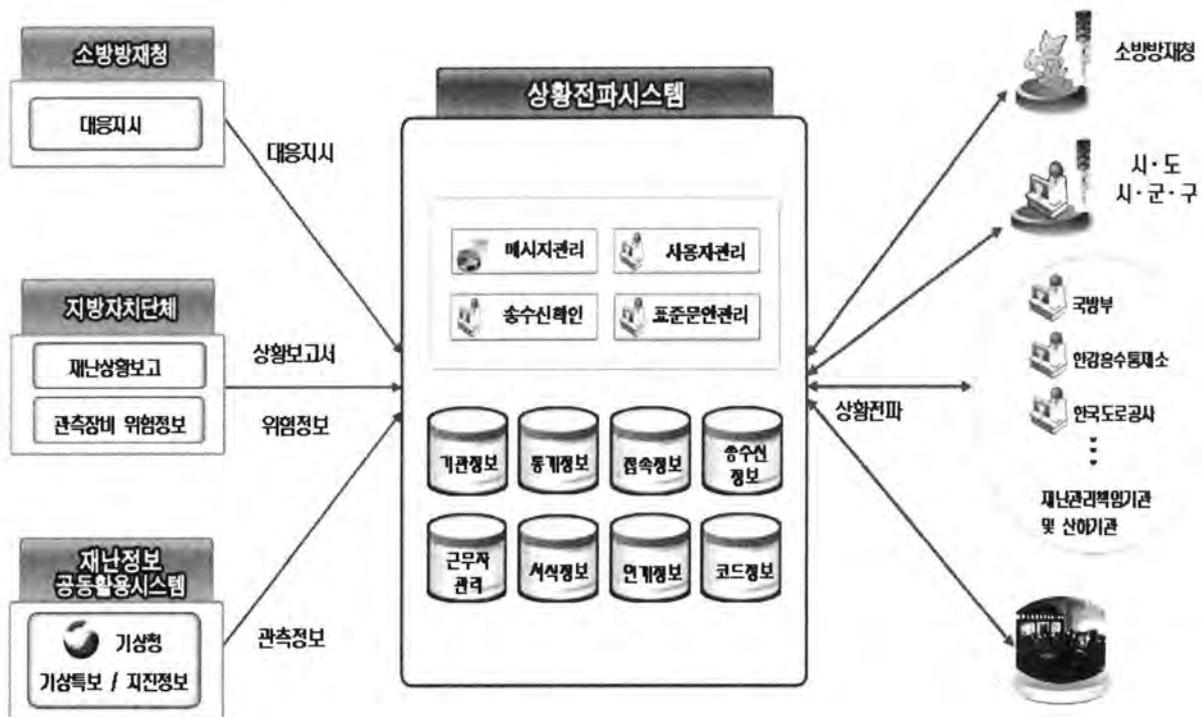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TV 등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내역

-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3,716개 읍·면·동
- 195개 소방관서 및 16개 시·도 교육청
- 137개 중앙부처 및 126개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

□ 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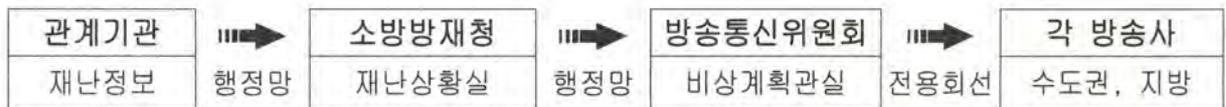


4.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요

- ‘재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 등 62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 기타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청시 재난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시, 방통위를 거쳐 방송사로 1분 이내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지진규모 및 진도에 따른 현상

규모	진도	내용
2.9미만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
3.0~3.9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 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 진동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을 느끼며 지속 시간이 산출됨
4.0~4.9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동안 실내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 ◦ 밤에 잠을 깨며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냄.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주고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뚜렷함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어떤 곳에서는 석고에 금이 가며 불안정한 물체는 뒤집어 짐. 나무, 전신주 등 다른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며 추시계가 정지
5.0~5.9	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석고가 떨어지고 굴뚝에 피해가 발생
	V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수준 ◦ 잘 설계된 건물에 피해가 없을 수 있으나 보통 건축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음.

규모	진도	내용
6.0~6.9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 피해가 있고 보통 건축물에는 부분적인 붕괴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심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 ◦ 창벽이 무너지고 굴뚝, 기둥, 벽들이 무너짐. 무거운 가구가 뒤집어 지며 모래와 진흙이 솟아남. 우물 수면이 변하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음.
	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수준 ◦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남. 땅은 명백하게 갈라지며 지하파이프도 구부러짐.
7.0이상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지어진 목조구조물이 파괴되는 수준 ◦ 대부분의 석조건물과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지며, 땅이 심하게 갈라지고 철도가 휘어짐. 강둑이나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됨. 물이 분출되며 독이 붕괴됨
	X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있는 석조구조물이 거의 없는 수준 ◦ 교량이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발생되며,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됨. 연약한 땅이 폭 꺼지고 지층이 어긋나며,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짐.
	X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인 피해 수준 ◦ 지표면에 파동이 보이고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리고 물체가 하늘로 던져짐.

제 6 절 폭 염

여 백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1) 대국민 홍보활동 대대적 전개

-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행동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폭염 피해 가능성과 대비방안 등에 대해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하여 국민 예방의식 제고
- 물놀이 사고 대책 중점 추진
- 지역별 소규모 물놀이 지역까지 사전파악, 취약시간대(오전 10:00~15:00) 시민단체, 행정기관, 마을주민 합동 순찰조 집중 배치, 구명장구 등 비치
-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웅덩이, 굴착장소 등 일제 정비
- 공사중이거나 중단된 공사장, 웅덩이 위험표지판 및 통제시설 설치,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 마을앱프, 가두방송차량, 언론, 유선방송, 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대대적 홍보
- 지역내 유관기관간 상시협조체제 및 연락체제 구축·운영 등

2) 전력수급대책

- 하계 부하관리 및 축냉식 냉방설비, 고효율기기 보급 차질 없이 추진
- 수급 차질 대비 비상전력 확충 필요
- 공급 예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보
- 노후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정비
-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강구

3) 물 부족 대책

- 시군별로 지역별 급수 상황에 따른 다량 물소비 영업장 사전 파악, 구체적인 영업시간 단축계획 수립, 필요시 시행
- 도서, 농어촌 지역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지원대책 수립·시행
- 취수장, 정수장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대책 재검토
 - 문제업소 종업원관리자 교육 등 집중관리, 수질오염 차단시설, 오일펜스 등 점검

-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수시 지도 점검
- 가정이나 기업 및 학교 등 단체에서는 덩치 않을 때 생수 등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미리 구입토록 권장

4) 각종 안전사고 대책

- 가스 및 정유저장 탱크, 화학약품 창고, 발전시설 등에 대하여는 폭염기간 중 운전상 문제가 없는지 관계기관별로 특별점검 실시
- 고온으로 인한 철도 휘어짐에 따라 발생 우려가 있는 열차 탈선사고대책 필요
- 지하철, 열차 전력공급 선로 단락 등으로 인한 복구 및 승객안전을 위한 대책 강구
- 고속도로 아스팔트 노면 훼손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 필요
- 고열작업장의 실신, 탈수증, 열경련 등의 피해예방 대책강구 필요
- 건설, 야외 현장 노동자 등의 안전을 고려, 일정온도 이상시 휴서기를 설정, 공사중지 명령 또는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강구 필요

5) 전염병 등 방지대책

- 하절기 휴양지에서의 예방수칙 홍보
 -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
 - 각급학교, 교회, 직장단체 등의 하계수련행사 등 개최시 예방수칙 교육
- 보건기관 비상방역근무 강화
- 환자 발생전 전염병 유행시기 예측 사전 주의보 발령
-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수립시행
 - 폭염시 특별주간을 설정, 노약자·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양로원 냉방시설 유무실태 등을 파악 지원방안 강구
-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조 구급요원 수시 순회 순찰

6) 가축 질병, 병충해 대책

- 축사의 환기관리, 운동장 그늘막 설치, 모기 구제, 분뇨처리,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 급여
- 사료 가축방역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요원등 가축질병 예찰요원 농가지도 홍보 강화

- 수의과학검역원의 ARS 전화활용 및 질병신고센터, 질병 전담반, 진료 지원반 설치·운영
- 벼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 대책 강구
-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밀집 사육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축사 위생관리 및 소독 등 방역관리 대책 강구
- 1차산업 생필품 안정적 수급 대책 강구

7) 화재예방대책

-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되는 전기화재 유형별 안전점검 강화
-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장치가 설치된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 철저
-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객에 대하여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실시
- 상수도 단수를 대비한 대체 비상용수(하천, 풀장, 저수조 등)활용 대책추진 및 인근 소방관서 응원출동체제 정비

8) 기타 필요대책

- 능률 향상을 위해 오침 시간 한시적 도입 검토
- 야외 근무자에게 얼음 및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지급하고, 폭염이 계속될 경우 작업 단축
- 식당 메뉴를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특별 메뉴로 준비
- Flexible time제, 자유복장제(반바지 출근)등을 임시 운영
- 야외행사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일 기온별 가이드 라인” 마련 참석자들의 건강 배려 필요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폭염발생 직전

- 언론매체를 통한 폭염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2) 폭염발생시

- 폭염대책상황실 운영

3) 실과 및 유관기관 폭염대책 추진

-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
- 물놀이지역에 대한 인명구조장비·인원 근접배치
- 폭염시 전력수급대책 추진
- 식수부족지역에 대한 비상 급수 지원
- 가스 및 정유시설 등 폭염기간중 점검·정비
- 폭염시 건설공사장 일정시간 공사중지등 노동자 안전대책 추진
-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환자의 응급조치체계 가동
-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근무 등
- 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대책 추진
-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
- 가축질병 예찰요원 순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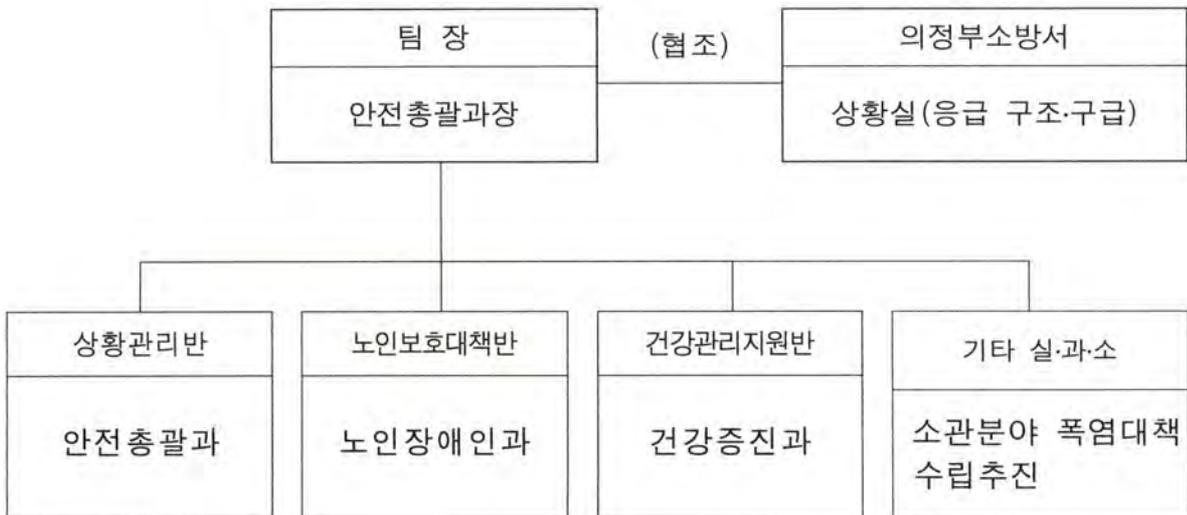
세부 추진계획

1 폭염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단계별 폭염대비 조치사항

평상시(사전대비)	특보발령(주의보·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체계 구축(TF팀)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SMS 등) ○ 취약계층 파악, 재난도우미 지정 무더위쉼터 점검 ○ 폭염특보기간 대국민 지속 홍보·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특보 상황전파·전달 및 상황관리 ○ 소관분야 폭염대책 시행 ○ 관계기관 폭염 대처상황 파악 및 지도 ○ 일일 폭염 대처상황 보고 및 사례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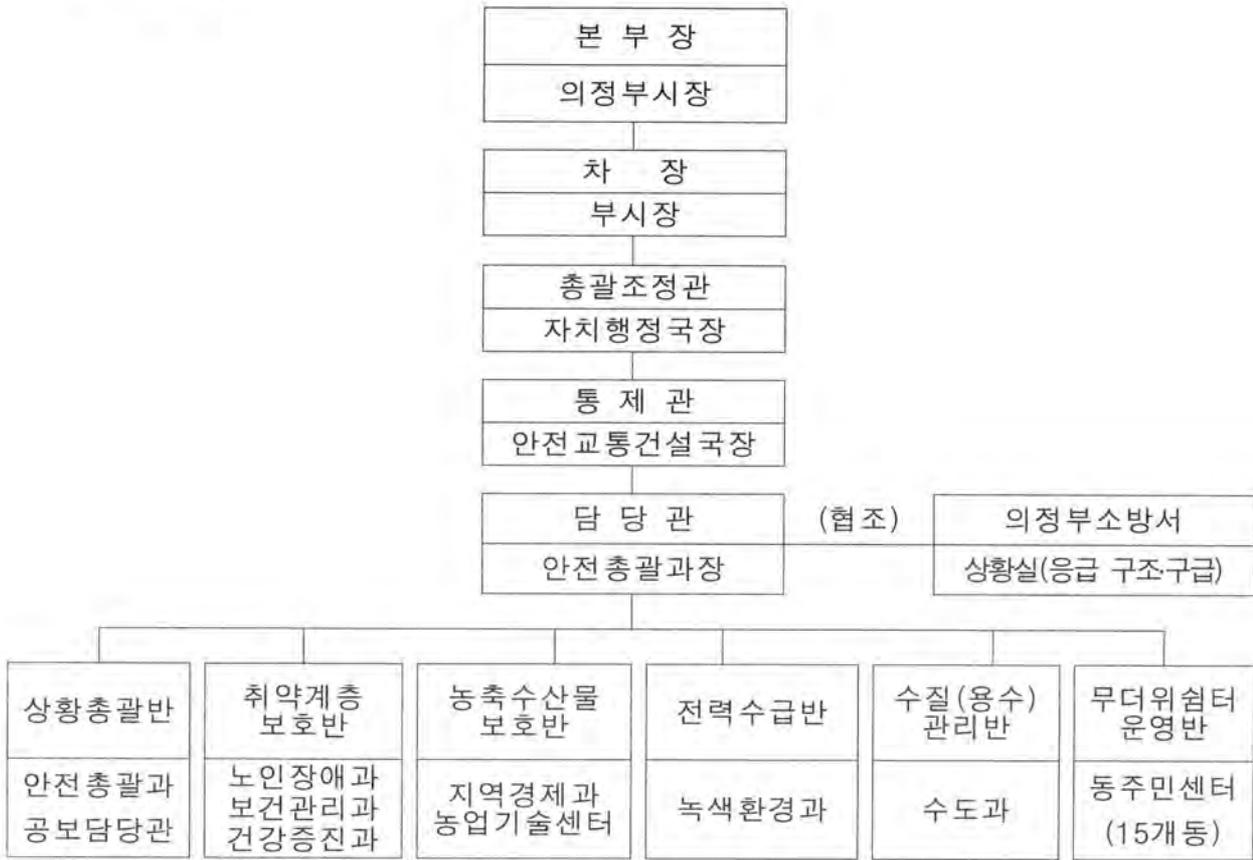
○ T/F팀 운영(평상시)



○ 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특보 발령시)

- 근무시간 : 09 ~ 18시(평일 및 공휴일)
- 근무장소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담당부서

- 조직도



<주요임무>

- 상황총괄반 : 폭염대책 상황 총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취약계층 보호반 : 폭염 취약대상자 파악 및 건강상태 집중관리
- 농축산물 보호반 : 농축산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 전력수급반 : 전력위기 비상대응 추진
- 수질(용수)관리반 : 상수원 조류발생 예방 및 안정적 용수 공급 추진
- 무더위쉼터운영반 : 무더위 쉼터 관리

○ 추진업무

- 상 황 관 리 반 : 폭염대책 상황총괄
- 노인보호대책반 :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파견 등 수시 안전관리
- 건강관리지원반 : 취약계층 방문건강체크, 안부전화 등 추진
- 가타 실과소 : 각 실과별 소관분야 폭염대책 추진

< 폭염특보 발령기준 >

-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폭염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열 대 야 : 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운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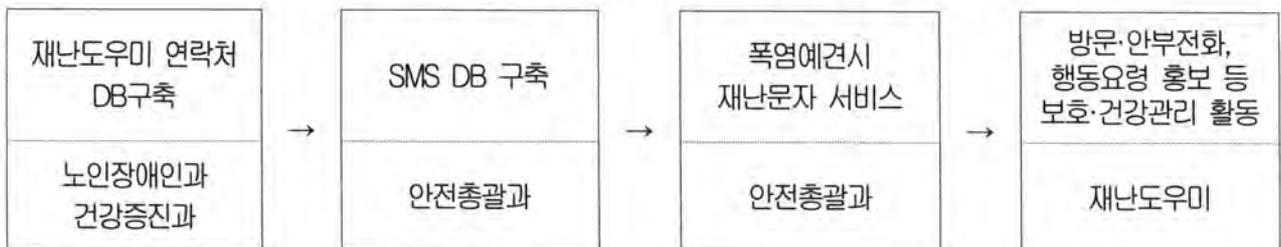
②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주관부서 : 전실과소 및 동 주민센터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4:00~17:00) 휴식 유도
 - 운영시기 :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시
 - 대 상 : 65세이상 노인, 학생, 농민, 군인, 건설·산업근로자
- 행동요령 홍보 집중 실시 및 휴식 권고
 - 농사일, 체육활동, 야외작업,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토록 유도 및 권고(14:00~17:00사이 3회 이상)
 -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의 휴식 유도를 위해 전단지 배포 등 홍보추진

③ 폭염정보 전달체계구축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재난도우미의 연락처 등에 대한 사전 DB 구축
 - ⇒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도우미(안부전화,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활동 추진

<SMS서비스 활용 폭염정보 전달체계도>



④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

- 주관부서 : 동 주민센터
- 평소 노인들이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
- 무더위 쉼터에 간판을 부착하되, 민간건물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부착
- 폭염 발생 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냉방기(적정 실내온도 26℃) 가동
-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점검내용을 기록 관리
 - 평시 주 1회 유선점검, 폭염발생시 즉시 현장 점검
 - ※ 폭염대비 기간 중 최초 1회 현장점검
 - 쉼터의 위치와 이용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
 -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비치

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 운영방법
 - 폭염발생기간에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에 대하여 집중 운영
 -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도우미를 활용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 불편자)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 체크 등 실시

⑥ 폭염특보 발표시 국민행동요령 집중홍보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홍보내용 : 폭염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 홍보방법 : 소식지, 시 전광판 및 재난전광판 활용

무더위쉼터 간판

가 로 형	세 로 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auto;">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무더위 쉼터</p> <p style="font-size: 18px; margin: 0;">문의 [0000, ☎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auto;">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무더위 쉼터</p> <p style="font-size: 18px; margin: 0;">문의 [0000, ☎ ()]</p> </div>

〈간판 설치 요령〉

1. 규격 : 시설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로 표준형 : 1.0m(가로) × 0.4m(세로)
 - 세로 표준형 : 0.4m(가로) × 1.0m(세로)
2. 재질 : 철이나 알루미늄,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 가. 간판 바탕 : 어두운 노랑
 - 나. 글씨 : 무더위 쉼터는 파랑, 문의는 검정색
 -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여 백

제 7 절 강 풍

여 백

1. 예 방 · 대 비 단 계 (예비특보)

1)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 대 상 : 관내 방재시설물
- 점검방법
 -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기준 Check List에 의하여 점검관리
 -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자를 실명으로 기록관리
- 조치사항
 - 주요 구조물 균열 및 노후화 상태 점검
 - 기계·전기 및 각종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점검
 -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등

2)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관리

- 대 상 : 지하철공사장, 골프장,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 댐건설, 택지개발지구 및 기타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 기타 공사장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조치사항
 - 공사현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협조체계 구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등
 -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

3) 유류·가스시설 점검·관리

- 대 상 : 유류 및 가스 취급시설
- 조치사항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소화기, 소화전, 소화전함, 자동화재 탐지설비, 기타 소방안전장비 점검

- 각 시설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반 편성 운영
- 방재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4) 농·축산시설 점검·관리

- 대 상 : 관내 농·축산 농가
- 조치사항
 - 강풍시 시설물의 안전여부 사전 점검·정비
 -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민·관·군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을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5)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일제 점검·정비

- 대 상 : 관내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 조치사항
 -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 정비조치

6)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 설정·관리

- 대 상 : 안골유원지 등 3개소
- 조치사항
 -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책임관 및 현장관리관 지정
 - 관리카드 작성 및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 해당지역에 대해 수시점검·순찰 실시
 - ⇒ 점검순찰주기: 평시 주1회/ 특보발령시 1~2시간 간격/ 피해발생우려시 현장상주
 - 위험징후 발생시 출입통제 및 주민대피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7) 수방자재 확보·비축

○ 대 상 : 포대류, 묶음줄 등

○ 조치사항

-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및 시험하여 불량자재는 폐기처분하고 부족자재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 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8) 응급조치용 장비 지정·관리

○ 대상장비 : 백호우, 덤프트럭, 집게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시 쓰레기, 분뇨 등 처리를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조치사항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후 지정 관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및 병원의 앰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보유 장비
 - 2단계 : 군부대 및 협약체결 민간기관의 장비
 - 3단계 : 기타 민간장비
- 지정장비의 관리실태 매월 점검 실시

2. 대 응 단 계 (주의보·피해발생)

1)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기상상황, 재난상황을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자연재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 방송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종합상황실 ☎ 031)828 - 4800 ~ 1

FAX 031)828 - 4928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1)828 - 4321 ~ 6

방재팀 ☎ 031)828 - 4331 ~ 4

- 재난신고 무료전화 ☎ 080-215-3650

2)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재난상황 발생시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원봉사단체, 공무원, 군부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실시
- 재난상황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점검 등을 위해 민간재난모니터위원 활용
- 관할 군부대와 응급조치 응원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3) 주민대피 및 이재민 구호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
- 안내자 파견,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 제거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피유도

- 재산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대피소의 안전확보 철저
- 대피자의 신원 신속히 파악

<이재민 구호>

- 재난구호물자 비축
 - 최근 5년간의 시·군별 재난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물자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재난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파악
 -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구호물자의 공급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하되 선입선출로 재고누적 최소화
 - 지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난구호협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 조달

이재민구호 및 수용소 문의

- 의정부시 (주간) 주민생활지원과 828 - 405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 828 - 2108 ~ 9

-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 031) 874 - 3848

4) 통신두절 대책

- 재난상황 발생시 통신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처가 용이토록 조치
-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복구추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신사업자간 상황보고·지휘체계 확립

- 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체제 유지
- 통신재난대책본부 설치시 24시간 상황근무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실시
- 통신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계 확립을 위해 자연재해, 인위재난 등의 상황관측 및 전파체제 시설정비
- 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장소의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및 기간통신사업자 홍보협조
- 재난위험지역 특정인에게 SMS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송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KT등 유관기관 협조)
- 야간 정전시 대비 대체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등)

통신두절사고 신고센터

- 의정부시 (주간) 정보통신과 828 - 230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KT의정부지사 (주,야간) 875 - 0600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5) 전기두절 대책

- 사고수습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대형 사고, 중형사고, 소형사고로 구분
- 전기사고 중 중형사고 이상 발생하면 즉시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관리 함으로써 사고시 긴밀하게 협조조치
- 대단위 정전으로 주민피해와 혼란 우려시는 민방위부서와 협의 사태 수습 및 복구활동 지원의뢰
- 정전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치안유지 대책협조
- 화재 발생시 최단시간내 진화되도록 소방서와 협조
- 외부 전력공급 부족시 관내에 설치된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

- 자체복구반 및 전기공사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타 전력소 및 안전 관리 기술인력도 지원 요청하여 긴급복구
- 전력부족시 전력공급은 우선 순위에 따라 주요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고 차단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차단
- 방송차 또는 비상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 및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불시 전력공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계몽

□ 전기사고 신고센터

- 의 정 부 시 (주간) 녹색환경과 828 - 2781 ~ 4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한국전력공사 (주간) 849 - 1299 fax: 849-1319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49 - 1303 (상황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간) 850 - 7034
경기북부지역본부 (야간) 850 - 7000 fax: 850-7085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6) 교통두절 대책

-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경찰서, 자원봉사 단체 및 업체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두절시, 도에 설치된 자체 특별수송대책 본부에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해운·항공로 등의 대체 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조치의뢰하여 연계수송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 등의 특별방송 유도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24시간 교통안내 전화 (1333)**
- **교통두절 신고전화**
 - 의정부시 (주간) 교통기획과 828 - 2871 ~ 3
(야간) 당 직 실 828 - 2221 ~ 2
 - 의정부경찰서 (031 - 873 - 7000, 상황실)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복 구 단 계

- 태풍·호우시 복구단계와 동일

여 백

제 8 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여 백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소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 ※ 각 해당업무 실과소별로 조사 후 안전총괄과(상황총괄반)로 보고

나. 시설별 피해조사 항목

- 사유시설

구 분	조사대상	세부조사항목	비 고
주택	파손상황	전과, 유실, 반파	주택과
	침수상황	침수면적	
농경지	피해상황	유실, 매몰	지역경제과
	침수상황	침수면적	
기타	피해상황	-	해당 실과소

- 공공시설 조사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참조

다. 피해조사 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 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 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라. 피해상황 보고

- 담당 실과소에서 파악한 후 안전총괄과에 보고
- 재난의 예방 및 피해·대응·응급조치 현황 등 재난상황을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보고·관리, 상황관리의 신속성 확보
-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력은 관련부서 담당자가 직접 입력

구 분	내 용
사전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사전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발간 배포된 책자준비 및 홈페이지 접속 다운활용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법령·훈령(http://www.nema.go.kr) - 피해조사 요령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 피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사유시설 : 재해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공시설 : 재해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재해기간중이라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위한 현지조사 시행 - 담당부서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조사반 편성 운영
NDMS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NDMS)시스템을 활용 피해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시설 입력절차 : 피해발생→피해주민 피해신고(10일 이내)→피해접수(동 주민센터)→피해조사확인(담당 부서)→피해입력보고 - 공공시설 입력절차 : 피해발생→피해현지조사 → 피해입력보고

※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시 사유시설 피해확인 조서 및 자연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마. 재난피해 접수양식

일련번호.

2014. . .

개 요	조 치 사 항
<p><건명 : ></p> <p>○신고자 :</p> <p>○장 소 :</p> <p>○개 요 :</p> <p>○피해상황</p> <p>- 인적피해 : 명</p> <p>이재민 :</p> <p>사 망 :</p> <p>실 종 :</p> <p>부 상 :</p> <p>※인적사항</p> <p>- 재산피해(주택, 공장, 상가 등)</p> <p>==>피해액 : 천원</p> <p>- 기 타</p>	<p>○ 담당부서 통보 (직급 : 성명 :)</p> <p>①</p> <p>②</p> <p>③</p> <p>④</p> <p>○ 동원사항</p> <p>-인 력 : 명</p> <p>공무원 : 명</p> <p>민간인 : 명</p> <p>단 체 : 명</p> <p>- 장 비 : 대</p> <p>굴삭기 : 대</p> <p>덤 프 : 대</p> <p>기 타 : 대</p> <p>- 자 재 : 개</p> <p>마 대 : 개</p> <p>비 닐 : 개</p> <p>보온덮개 : 개</p>
<p>○보고일시</p>	<p>○ 향후 복구예정일</p>
<p>- 초동보고</p>	<p>○ 복구비</p>
<p>-</p>	
<p>-</p>	
<p>○접수자</p>	<p>직급 : 성명 : </p>

바. 재난대책 상황보고 양식

재난대책 상황보고

2014.0.0 00시현재

○○○○○○○○

상황개요

○○지역에 태풍·호우, 해일, 대설로 00명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

기상상황

- 태풍위치 : 2014년 04월 03일 18시 14분 04초
- 특보상황 :
- 강수(적설)량 :

피해상황

- 인 명 : 0명 (사망 0명, 부상 0명, 실종 0명)명
- 이 재 민 : 0세대 0명
 - ○○동 0세대/0명, 모충동 0세대/0명
- ※ 000대피 00명 (재해구호물자 생필품 0세트, 취사용 0세트 지급)

재산피해 : 백만원(잠정)

- 건물피해 : 동 (전파 0동, 반파 0동)
- 공공시설 : 000백만원

구분	시설별	도로	교량	소규모	기 타
		건/ m	건/ m	건/ m	건/ m
물 량					
피 해 액(천원)					

- 사유시설 : 000만원

□ 주요 조치사항

【비상근무체제 가동】

- 비상근무 : 000명(각과 00, 구청 및 동 00)
- 재난예방대책 상황지시 및 실종자 수색 강화 지시 0회
-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군부대, 소방서,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전, 한국통신 등

【건물 붕괴예상에 따른 긴급 주민 대피】

- ○○동 00여명 사전대피 조치

【위험지역 사전조치】

- 붕괴위험 교량(000개소), 사전예찰 및 주민홍보(000개소)

□ 응급복구 지원상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 인력지원 : 000명
 - 공무원 000, 군부대 00, 주민 00
- 장비지원 : 불도저 및 덤프, 굴삭기 등 00대

【건물피해 조치】

- 피해현황 : 0동

계	전 파	반 파	비 고
0동	0동	0동	

※ 전파·반파 피해 추정액 : 00백만원 (전파는 공가)

⇒ 인력동원 : 00명(공무원 0, 소방 0, 주민 0)

⇒ 장비동원 : 덤프 0대, 굴삭기 0대, 기타 0대

【교량피해 조치】

- 피해현황 : 0개소 0.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완료 : 00개소 0.00km
 - ⇒ 장비 00대(백호우 0, 덤프 0등), 인원 00명 동원

【도로피해 조치】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기타시설 조치】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향후계획

-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 예방
-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실시 및 쓰레기 처리

2.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가. 기본방침

-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학교시설, 산림시설, 철도시설,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시설, 문화재시설, 기타 시설, 우정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공학적으로 공종판단이 불필요하거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단위품목, 기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상의 어려움이 미미한 것, 군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문화재시설등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원이 조사하여야만 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피해조사기법 및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사용한다.

나. 복구비 지원 참고사항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시·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 기준	비 고
0.6이상	42억 이상	의정부시

- 비우심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

※ 지방관리 공공시설 재원부담 : 국고 50%, 지방비 50%

3.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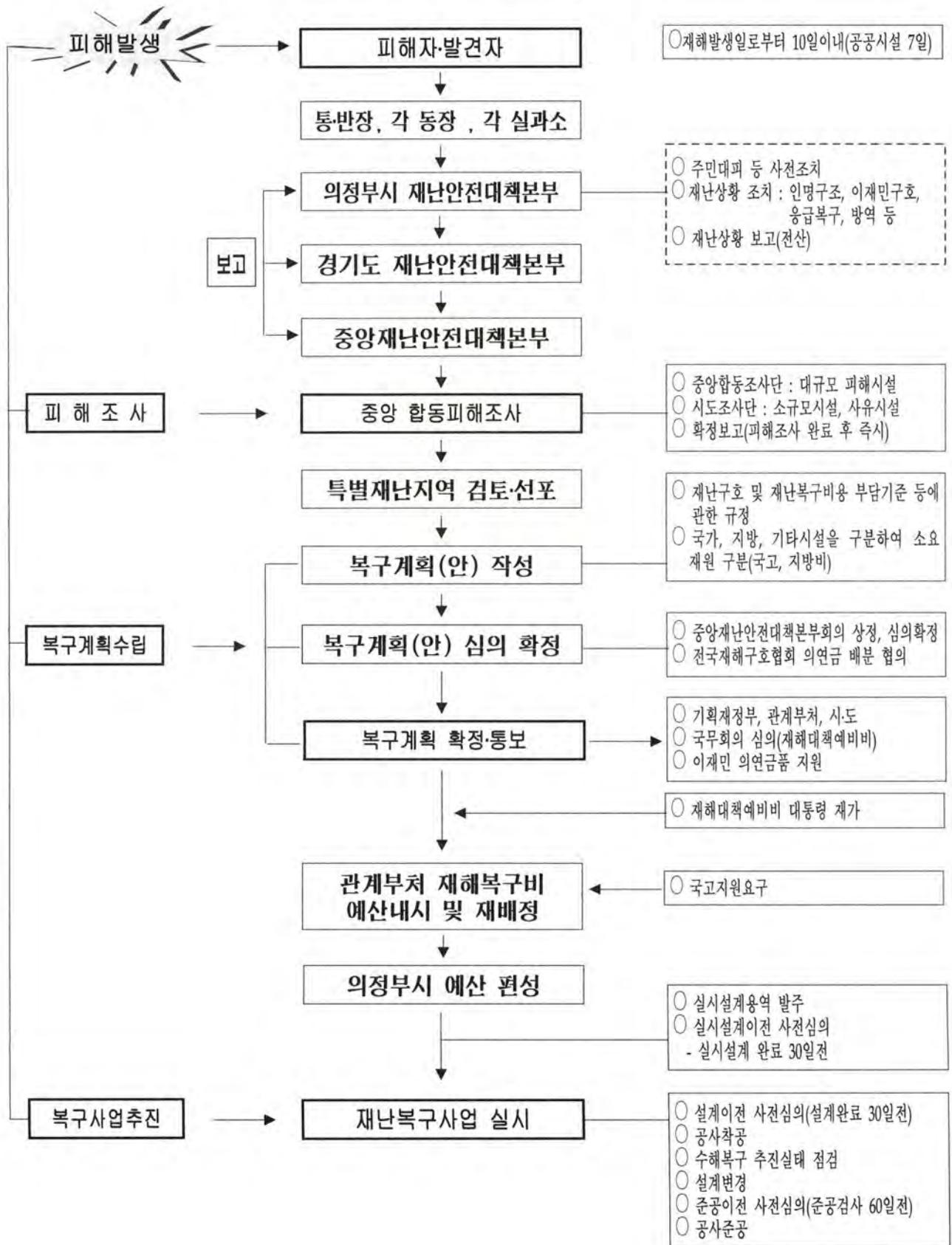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계획을 해당업무 성과소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흐름도



라.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 피해신고 접수시 사유시설 피해확인 조서 및 자연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4. 재난관리시스템 상황관리 요령

가. 공공시설 피해입력

①

상황관리 - 재해선택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재해선택 > 재해선택

□ 재해를 입력 또는 선택하는 화면을 확인한다.

상황관리 재해선택

재해명 : 재해진행구분 : 전체 조회

선택	연도	유형	번호	진행여부	재해명	재해시작일	재해종료일
<input type="radio"/>	2009	강풍	1	진행중	1.11-12 강풍	2009-01-12 09:47	2009-01-12 23: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10	종료	12.4-8 강풍, 홍양	2008-12-04 09:30	2008-12-08 11:00
<input type="radio"/>	2008	지진	08년	진행중	08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모의훈련	2008-12-02 10:30	2008-12-02 20: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9	종료	09 홍양, 강풍	2008-11-29 03:45	2008-11-30 20: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8	진행중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2008-10-14 09:47	2008-10-17 21: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7	종료	10.7 호우	2008-10-07 02:40	2008-10-07 15: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6	종료	10.5 호우	2008-10-05 03:20	2008-10-05 13:00
<input type="radio"/>	2008	태풍	3	종료	제15호 태풍 장미(소방방재청장 시연)	2008-09-28 20:17	2008-10-10 20: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5	종료	9.22 호우	2008-09-22 07:00	2008-09-22 12: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4	종료	9.1~ 호우	2008-09-01 15:30	2008-09-02 04:00

2009 강풍 1.11-12 강풍 재해기간 : 2009-01-12 09:47 ~ 2009-01-12 23:00

재해선택

재해명 : 재해진행구분 : 전체 조회

선택	연도	유형	번호	진행여부	재해명	재해시작일	재해종료일
<input type="radio"/>	2009	강풍	1	진행중	1.11-12 강풍	2009-01-12 09:47	2009-01-12 23: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10	종료	12.4-8 강풍, 홍양	2008-12-04 09:30	2008-12-08 11:00
<input type="radio"/>	2008	지진	2	종료	08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모의훈련	2008-12-02 10:30	2008-12-02 20: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9	종료	11.29 홍양, 강풍	2008-11-29 03:45	2008-11-30 20: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8	진행중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2008-10-14 09:47	2008-10-17 21: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7	종료	10.7 호우	2008-10-07 02:40	2008-10-07 15: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6	종료	10.5 호우	2008-10-05 03:20	2008-10-05 13:00
<input type="radio"/>	2008	태풍	3	종료	제15호 태풍 장미(소방방재청장 시연)	2008-09-28 20:17	2008-10-10 20: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5	종료	9.22 호우	2008-09-22 07:00	2008-09-22 12: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4	종료	9.1~ 호우	2008-09-01 15:30	2008-09-02 04:00

총 439건 1/44페이지

○ 실행방법

1. 라디오 버튼 클릭 시 해당 재해를 선택한다.
2. 재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재해의 정보를 나타내는 팝업 창이 나타난다.
3. 자동으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며 상단에 선택한 재해 정보가 나타난다.

②

상황관리 - 공공시설피해입력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상황입력 > 공공시설피해입력

□ 공공시설피해입력 현황을 조회 / 입력 한다.

상황관리

2008 호우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과제기간 : 2008-10-14 09:47 ~ 2008-10-17 21:00

○ 공공시설 피해입력 홈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상황입력 > 공공시설피해입력

행정서비스 전체 **조회** ①

번호	피해일시	소관부처	시설구분	시설등급	시설명	피해위치	피해액(천원)
현재 등록된 피해현황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시설피해입력 ②

○ 실행방법

1. 행정 서비스별로 공공시설피해를 조회한다.
2. 공공시설피해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상황관리 - 공공시설피해입력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상황입력 > 공공시설피해입력

□ 공공시설피해를 입력한다.

2008 호우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재해기간 : 2008-10-14 09:47 ~ 2008-10-17 21:00

○ 공공시설피해입력 홈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상황입력 > 공공시설피해입력

* 행정서비스	전체		
* 피해일시	2009 년 01 월 29 일 09 시 04 분		
* 피해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선택	
상세주소			
* 소관부처	선택	* 시설구분	선택
		* 시설등급	선택
* 피해요인	침수	* 피해구분	침수
* 시설명			# 동일한 시설명 입력불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복구 대상 <input type="checkbox"/>
피해개요			
* 피해규모	1	개소	피해물량
* 피해액		천원	
* 교통상황	두절		
두절구간			
우회도로			
소통예정일시	2009 년 01 월 29 일 09 시 04 분		
소통완료일시	2009 년 01 월 29 일 09 시 04 분		

① ② ③

○ 실행방법

1. 입력된 값들을 저장한다.
2. 입력한 값들의 필드를 모두 지운다.
3. 목록 화면으로 돌아간다.

※ 시설명은 동일한 시설명이 입력 불가하다. 또한 소관부처가 변동됨에 따라 피해물량 단위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며 도로나 교량일 경우는 화면과 같이 교통통제 상황을 입력하는 내용이 추가로 나오게 되며 여기서 입력한 교통상황은 상황입력의 교통통제 상황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사유시설 피해입력

①

상황관리 - 재해선택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재해선택 > 재해선택

□ 재해를 입력 또는 선택하는 화면을 확인한다.

상황관리

재해선택

재해명

재해진행구분 전체

조회

선택	연도	유형	번호	진행여부	재해명	재해시작일	재해종료일
<input type="radio"/>	2009	강풍	1	진행중	1.11-12 강풍	2009-01-12 09:47	2009-01-12 23: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10	종료	12.4-8 강풍, 홍양	2008-12-04 09:30	2008-12-08 11:00
<input type="radio"/>	2008	지진	2	종료	08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모의훈련	2008-12-02 10:30	2008-12-02 20: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9	종료	11.29 홍양, 강풍	2008-11-29 09:45	2008-11-30 20: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8	진행중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2008-10-14 09:47	2008-10-17 21: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7	종료	10.7 호우	2008-10-07 02:40	2008-10-07 15: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6	종료	10.5 호우	2008-10-05 09:20	2008-10-05 13:00
<input type="radio"/>	2008	태풍	3	종료	제15호 태풍 갈미(소방방재청장 시연)	2008-09-28 20:17	2008-10-10 20: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5	종료	9.22 호우	2008-09-22 07:00	2008-09-22 12: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4	종료	9.1- 호우	2008-09-01 16:30	2008-09-02 04:00

재해기간 : 2009-01-12 09:47 ~ 2009-01-12 23:00

재해선택

재해명

재해진행구분 전체

조회

선택	연도	유형	번호	진행여부	재해명	재해시작일	재해종료일
<input type="radio"/>	2009	강풍	1	진행중	1.11-12 강풍	2009-01-12 09:47	2009-01-12 23: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10	종료	12.4-8 강풍, 홍양	2008-12-04 09:30	2008-12-08 11:00
<input type="radio"/>	2008	지진	2	종료	08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모의훈련	2008-12-02 10:30	2008-12-02 20:00
<input type="radio"/>	2008	홍양	9	종료	11.29 홍양, 강풍	2008-11-29 09:45	2008-11-30 20: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8	진행중	14일 호우(시군구 담당자교육)	2008-10-14 09:47	2008-10-17 21: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7	종료	10.7 호우	2008-10-07 02:40	2008-10-07 15: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6	종료	10.5 호우	2008-10-05 09:20	2008-10-05 13:00
<input type="radio"/>	2008	태풍	3	종료	제15호 태풍 갈미(소방방재청장 시연)	2008-09-28 20:17	2008-10-10 20:3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5	종료	9.22 호우	2008-09-22 07:00	2008-09-22 12:00
<input type="radio"/>	2008	호우	24	종료	9.1- 호우	2008-09-01 16:30	2008-09-02 04:00

총 439건 1/44페이지

재해선택

○ 실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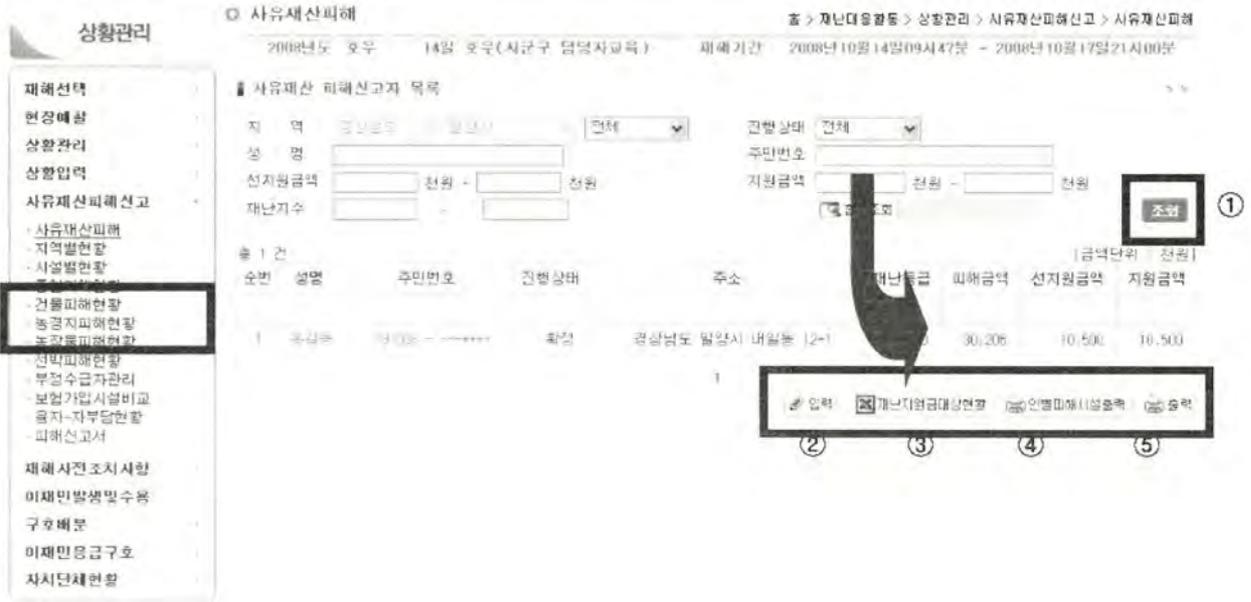
1. 라디오 버튼 클릭 시 해당 재해를 선택한다.
2. 재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재해의 정보를 나타내는 팝업 창이 나타난다.
3. 자동으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며 상단에 선택한 재해 정보가 나타난다.

②

(1)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 **사유재산피해 현황을 조회 / 입력 / 출력 한다.**



○ **실행방법**

1. 해당 검색 조건으로 조회한다.
 2. 사유재산피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3. 재난지원금대상현황 목록을 엑셀 형식으로 출력한다.
 4. 인별로 피해시설물 출력 현황을 집계하여 출력한다.
 5.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다.
- ※ **합계조회** 버튼을 클릭할 경우는 현재 조회된 리스트의 피해금액 / 선지원금액 / 지원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제일 상위에 표출해준다.
-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경우는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상세화면을 볼 수 있다.

③

(1)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 사유재산피해 현황 중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 실행방법

1. 주민번호가 중복되었는지 체크한다.
 2. 인명 / 선박인 경우는 주소지를 입력하기 때문에 관외지역 버튼을 눌러 해당 주소지를 입력한다.
 3. 해당 사유재산피해의 개인정보를 저장한다.
 4. 입력된 값들을 지우고 새로 입력하게 한다.
 5. 사유재산피해 목록화면으로 돌아간다.
- ※ 지급통장 계좌번호 입력 시 “-” 를 함께 입력하여준다.
- 신고일자를 입력할 시 신고일자는 재해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1)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

▶ 작업경로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 사유재산피해 현황 중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 내역을 입력한다.

○ 사유재산피해 ▶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2008년도 호우 14일 호우(사군구 담당사료록) 재해기간 2008년 10월 14일 09시 47분 - 2008년 10월 17일 21시 00분

■ 사유재산 시설피해 입력 > >

개인정보 피해정보 **장기구조 대상 세대원수(세대주포함)를 입력하십시오.**

피해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81029-****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12-1 전화번호 02-2100-5105 핸드폰 02-2100-5105

피해일시 2008년 10월 20일 10시 59분 진행상태 완료지역 ①

피해위치 산 농지 ②

자주쓰는시설 선택 상 시설종류 ③

피해종류 국토해양부 주택 주택 전파/유실

피해물량 0.0 동 피해금액 원 복구물량 0.0 동 재난지수 0.0

피해구분 선택 피해요인 선택 복구종류 선택 복구구분

세대수 1 세대원수

비 고

수정 불가 수정 가능

인별피해시설출력 보험시설내역 저장 중 다입력 목록

출 2 건	순번	진행	피해종류	피해물량 ③	피해금액 ④	재난지수 ⑤	비고 ⑥ ⑦
1	확인관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농경지 - 전작 - 유실	100.00	206	124.00		
2	피해자 신고	국토해양부 - 주택 - 주택 - 전파/유실	1.00	30,000	10,325.00		
총 재난지수(확정)						124.00	

○ 실행방법

1. 주소지를 입력해야 할 경우 버튼을 눌러 피해위치를 입력한다.
2. 자주 입력되는 피해종류를 등록하는 팝업 창을 호출한다.
3. 인별로 피해시설을 집계하여 출력한다.
4. 보험시설내역을 출력한다.
5. 입력한 해당 피해내역을 저장한다.
6. 입력한 값들을 지우고 새로 입력할 수 있게 한다.
7. 사유재산피해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5. 피해신고서 양식

<개정 2013.7.30>

(앞쪽)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용자신청 여부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허가·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용자신청 여부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할 세무서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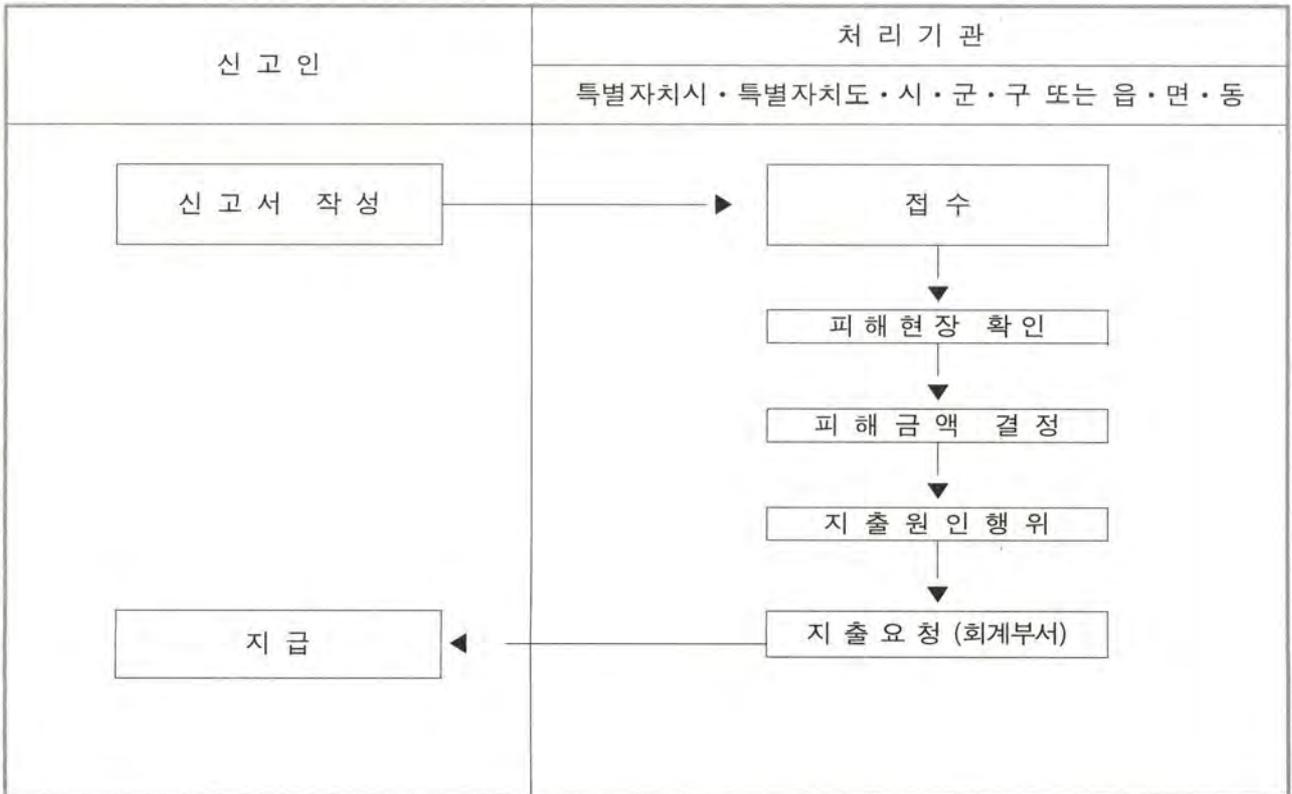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 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나. 사유시설 피해확인조서

(2014. 00. 00.)

2014. 00. 00.

일련 번호	피해현황				피해위치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발생 일 시	피해원인	피해사항	복구 계획	비고
	피해 구분	동수	세대	건물 용도	동	번지	소유자		피해자						
							주소 (Tel)	성명	주소 (Tel)	성명					

제 4 장 업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1. 재난취약시설 점검·지정관리
2.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3. 봉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4.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5.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구역 설정·운영
6.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7.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8.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9.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0. 급경사지 대책



여 백

1.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가. 방재시설 점검·정비·관리

1) 근거 및 종류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3조
- 종류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
 - 도로 및 철도시설 :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 등
 - 상·하수도시설 :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 등
 - 사방시설 :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2) 방재시설의 전수 점검·정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관할지역내 방재시설 전수점검
 - 점검시기
 - 재해사전대비 기간 중 : 3월부터 4월까지 1회 이상
 - 재해대책 기간 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점검방법
 -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점검기준 Check List에 의하여 점검관리
 -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자를 실명으로 기록관리
 - ※ 평상시에는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점검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기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3)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붕괴위험 요인 점검
-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 각종 하천 점용 시설물 정비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스펀돌,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붕괴위험 제방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 상·하수도시설

- 관측시설, 안전망, 동력, 비상전원, 배선관계 이상유무 등 확인
- 유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전기시설 정비
- 양·배수펌프장의 안전망 및 동력상태 이상유무 점검·정비
- 펌프장 등의 비상전원설치 및 배선상태 이상유무 확인
- 관리자 배치,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정비
- 퇴적물 준설,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점검 등

○ 수리시설

- 수문·여수토·방수로·취수탑, 저수지 등 주요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당 누수부분 점검·정비·보수
- 누수 및 파이프, 기초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 상태 확인 등

○ 도로·교량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

-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및 기타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재해유형을 감안하여 점검
- 대규모 산불피해지역 순찰 강화 및 사전예방조치 강화
- 임목벌채지역 관리실태 확인 및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지역 등 산림개발지 집중 확인·점검

-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
- 수해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안전조치 강화와 정비대책 강구

○ 기타 지하공간

- 지하철·지하상가 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 및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정비실시 및 침수피해 예방 대책 강구

나.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 선정관리

○ 선정대상 시설

- 방재시설 전수 점검결과 재해방지기능에 큰 중요시설 및 재해 우려가 있는 방재시설을 선정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연중 중점관리
 - 배수펌프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전수 선정관리
 - 소하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수리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취약시설물 점검기준에 의한 사전점검결과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기타 재해방지 기능이 큰 시설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지역실정에 따라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점검·정비 체계 구축
 -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전대비 점검 후 수시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등 연중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결과보고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Feed back)
 -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후 재해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반영하고 지역별 재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적절한 대책 강구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비치
 -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관리주체·지역주민·관계공무원을 복수로 하여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시설별 합동점검을 실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방재부서와 시설관리기관, 시설현장 등에 비치·관리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

1) 지정·관리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

2) 점검대상

-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3) 사전 조치할 사항

- 지구별·유형별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상습침수지구는 침수구역도를 작성 관리
- 지구별로 재해요인에 따른 지역별·시간대별 계획적인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
 - 응급복구용 물자·장비 투입계획 수립 및 비상 통신장비 확보
 - 대피로·주민대피장소, 대피방법 등을 주민에 홍보
- 지구별 관리책임자 지정(공무원, 관련기관, 인근주민 등) 및 수시 예찰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지구는 가배수로 설치, 절개지 비탈면 비닐덮기 등 응급대책 강구와 함께 지구별 수방자재·장비확보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
- 재해발생시 교통두절 예상지구는 가도 또는 우회도로 확보
-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발생이 극히 우려된다고 판단될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비공사중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여름철 수방대책 강구
 - 공사장 수방자재 점검 실시 및 유사시 응급확보 대책 마련
 - 수충부 및 펌프시설 등을 우선 시공하여 재해위험 해소
 - 시공자, 감리자,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풍수해 취약요인에 대한 공사장 점검실시 및 안전대책 강구
 - 하천공사의 경우 수위상승 및 급류에 의한 유실,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 주민, 시공관계자, 자치단체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라.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관리

1) 점검대상

- 지하철공사장, 골프장,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 댐건설, 택지개발 지구 및 기타 5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기타 공사장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2) 점검관리방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카드 작성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으로 복수지정
- 점검방법
 - 수시점검
 - 사전대비 및 재난기간에 시공회사와 현장감리원이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 담당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재해위험 예측시 또는 출장시 현지점검
 - 정기점검
 - 관리책임 공무원은 재해 사전대비기간 및 재해기간중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 3월중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원 및 관계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 보완조치
- 재해사전대비 기간중(3~4월)에는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불편 최소화

3) 사전 조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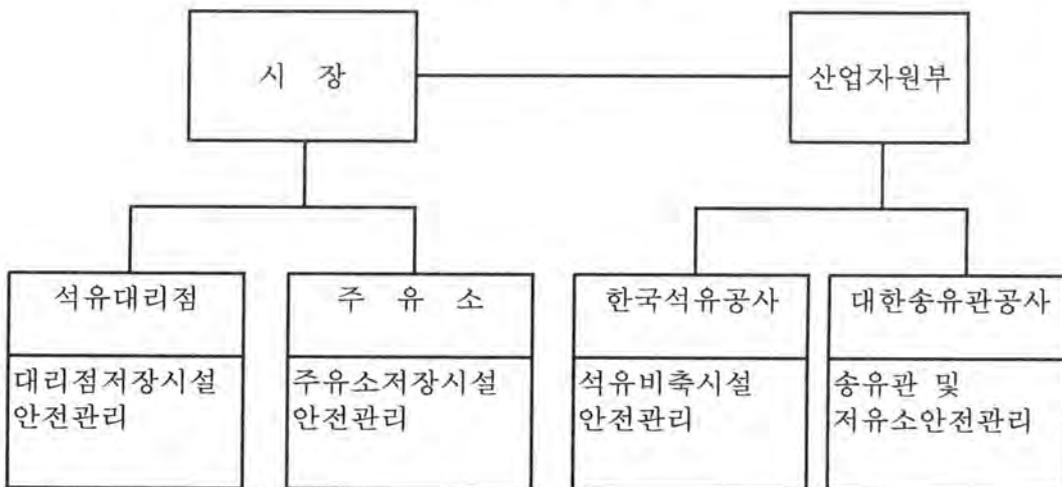
- 공사현장과 재해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재정비등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피해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연중 수시 사전점검 체제로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보강 실시
- 공사장내 가저류지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공사현장 소장을 공사장 및 인근지역 수방대책 책임자로 지정

마. 유류·가스시설 점검·관리

1) 유류관련시설 재난대책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위험물 저장 취급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작업시 불안전요소 사전 제거(관할소방서 통보 등)
- 소화기, 소화전, 소화전함, 자동화재 탐지설비, 기타 소방안전장비 점검
 - 정기적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대리점, 주유소의 방호 연습
- 자연재난대책 비상근무체제 확립
 - 각 시설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자체안전관리반 편성 운영
 - 방재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시설별 책임 신속복구 및 피해확산방지 주력
 - 방재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의 장비와 인력 지원요청
 - 재난복구 최단시간내 완료 원활한 유류수급 도모
- 기관별 및 주요시설별 안전관리체계 확립



○ 안전관리체계

- 시장은 업체의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수시 확인
-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특별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선정 중점관리
-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실시 철저
- 관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강화

2) 가스관련시설 재난대책

○ 가스시설 안전점검

- 점검방법 :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도,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2회
- 점검시기 : 상반기 4 ~ 5월, 하반기 9 ~ 11월
- 특별가스 안전점검 3회

○ 중점점검 사항

- 관련규정과 시설의 적합여부
- 각종 법정검사 이행여부(정기, 자체, 완성)
- 공급자의무규정,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 안전관리자 확보상태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각종위해방지시설 확보여부(독성가스중화장치,제독장비 등)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시설 주기적 점검 실시
- 타공사장 현황(노출배관, 시공사 현장 입회자, 공사내용등) 중점 관리
- 간부사원 가스시설 책임관리자 도입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가스안전의식고취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도, 시·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상가스별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대상가스의 안전관리 요원 및 긴급출동반 요원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주변 긴급대피 및 통제요령, 유사시 대리요령 및 통제요령 등 교육 실시

- 유사시 대비한 긴급조치요령을 유인 배포
- 가스시설 법정검사 강화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정검사 : 완성검사(최초 시설 완성시), 정기검사(1회/년), 자체검사(2회/년)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각종배관, 탱크, 용기의 기밀유지 및 누설검사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등 안전장치류 작동상태 검사
 - 법정검사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검사 실시
 - 가스책임배상보험 가입여부 조사

바. 전기시설 점검·관리

1) 전기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

- 변전소 환산망 구성으로 송전선로의 이중화사업 조기추진
- 발·변전소의 신·증설 및 노후설비 교체로 여유전력 확보(적정 예비율 : 15%)
- 발·변전소의 주요 변압기 및 기기 등의 소손시 긴급복구용 예비자재 확보와 기기별 인력관리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고장원인 사전 제거
- 발·변전설비의 일상·정기점검으로 피해예방 활동실시와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 및 가상 고장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처 능력향상
- 소화취약장소에 예상 소화유형의 초기 진화용 방재시설 보강
- 이동 발전차, 예비용(이동)변압기 및 자가용 수용가의 비상발전기를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토록 평상시 유지관리 철저
- 전력설비에 접근 시행하는 공사장소에서 사전 선로감시실시로 사전예방 및 안전 계몽활동 전개
-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 펌프시설 등 수방시설 점검강화 및 수방 기초자재 비축관리
-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 전개
-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정전안내 및 전기안전의식 계도 실시

2) 전력설비 점검강화

- 한전계통 발·변전소 : 전기, 기계, 토목부문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주 1회이상)
- 매일 실시하는 "설비안전 점검의 날" 행사 내실화로 취약설비 도출 및 노후불량설비 교체
- 발·변전소 건설공사현장 : 소장책임하에 분야별 주기적인 점검 실시(주1회 이상)
- 점 검 반 :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및 전력소
- 점검회수 : 매년 1회이상
- 주 점검 사항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및 유지관리 상태
- 자체점검 강화
 - 예비 및 비축 기자재 확보, 관리 상태
 -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숙지 상태
 - 기타 주요시설의 주변환경(기초, 수목, 축대 안전상태 등)

사. 통신시설 점검·관리

1) 통신재난 대비 교육·훈련

- 통신시설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사관내 통신사업자 간 연계하여 긴급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관리능력 향상

2) 우회통신경로 확보

- 통신재난상황 발생시 재난대처에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통신로를 이중화
-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긴급 우회통신망 전체계획 수립
- 유무선 통신망의 확충 및 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케이블, CATV 케이블의 지중화 촉진 등을 통한 통신망 신뢰성 확보
- 유선통신망 장애 시 무선장비를 이용한 긴급통신망 구성도

3)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상황발생시 재난관리대처에 신속성 및 연락체계 확보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유지
- 유관기관 간 통신재난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 추진
-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를 위해 지역방송을 활용한 재난대비 홍보
- 통신재난에 대비 평시 사업자별 자체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유지

4) 재난관리 통신수단의 확보

- 총체적인 비상통신망 설비·보강, 방재통신망의 초고속화, 자연재해 경보 시스템의 확충 등 재난관리 통신수단의 확보
- 방재무선통신, 화상회의, 위성전화기 시스템 등 도~시군간 비상연락 통신수단을 재난안전대책상황실내 설비하여, 평시에는 행정업무, 재난발생시는 도 상황실과 시군·현장 간 직통망으로 운영

5) 응급복구체제 기반 마련

- 한전 정전 등에 따른 통신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의 예비전원 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 보수
- 주요 통신전송로에 대한 긴급복구계획 수립 및 예비전송로 점검
- 유관기관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피해지역에 신속히 투입이 가능한 이동형 긴급복구장비 확보
- 응급복구 계획에 따른 조직편성으로 업무능률성 향상
- 통신재난의 접수 및 보고
 - 일과시간 중 : 정보통신과(031-828-2301~4)
 - 일과시간 후 : 당직실(031-828-2221~2)
 - 주요기간 통신사업자는 재난상황 발생즉시 보고하고, 수시로 재해 상황 및 복구현황을 보고 조치

6) 통신재난정보 분석·정리, DB구축

- 통신재난정보 DB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통신재난 다발지역·원인 사전분석
- 집중관리 대상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계열화 구축관리

- 도~시군구, 시~통신사업자 간 재난정보DB공유를 통하여 통신재난의 총체적 관리를 용이토록 조치

아. 농림 및 축산시설 점검·관리

1) 농림시설 점검·관리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 논둑, 수로등 농경지의 안전여부 사전 점검·정비
- 우기전 배수시설 중점 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저지대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개선 우선추진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원상복구시 재난의 재발이 우려되는 주요 피해 시설은 항구복구추진
- 위험지역은 안내판 등 경고문을 설치하여 인명사고 예방
-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민·관·군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 시설관리자 방재교육 실시

2) 축산시설 점검·관리

- 축사주위,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을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험 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에 확보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자. 산사태 및 임도위험지역 점검·관리

1) 산사태위험지역 점검·관리

- 산사태위험지는 현장에 위험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하는 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는 산사태저지용 사방댐, 예방사방 등 항구적인 자연재난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사방복구를 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조치 및 안전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공사현장사무소, 인부막사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2) 임도위험지역 점검·관리

- 임도시설지는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우려지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비축
- 유사시의 대피장소지정 및 인근주민에 대한 대피요령·응급복구 조치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 임도시설지의 경우 집중호우시 무너짐·갈라짐이 우려되는 절·성토 부위 등
- 송전철탑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우기이전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

차.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일제 점검·정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군 단위로 관할지역내 시설물 전수 점검·정비
 - 점검시기
 - 재해사전대비기간 중 : 3월부터 4월까지 1회 이상

·재해기간 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기 타 :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법정점검

○ 점검방법

-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 점검구 등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전함 및 안정기함의 높이를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 주관하에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노후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중 특별관리

2.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가. 수방자재 확보·비축

1)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비축기준

- 종류 : 흡수성 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뚝, 덮개류(비닐), 배수관 (흙관, PE관), 작업공구 등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을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로 보관창고 공간 부족현상 해소
 -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 비축장소 : 시, 동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3) 점검 및 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자재의 관리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 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나.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1) 지정기준

- 대상장비 : 굴삭기, 덤프트럭, 집게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 예상대수 산정·지정

- ① 산사태, 토사유실 등이 우려되는 도로절개지의 경우
 - 장비종류 : 로우더 또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도로규모, 지형 등 현장실정에 따라 산정
- ② 통수단면이 협소하거나 재난에 취약한 교량의 경우
 - 장비종류 : 굴삭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교량규모, 가도설치 등을 감안 산정

2) 지정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 후 지정관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및 병원의 엠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지정장비의 지정관리실태 점검 수행
 - 재해기간(5~10월) : 매월 파악
 - 비재해기간(11~익년4월) : 매분기파악

다. 방역물자 확보·비축

1)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2) 확보·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라.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관리

1) 확보기준

- 종류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관, 비상발전기, 전선 등
-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상습침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보관장소 : 시 수방자재 창고, 동주민센터 창고

2) 점검 및 관리

- 보관장비는 우기전에 시험 가동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 보관관리는 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 보관창고내 장비는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위탁관리 장비는 개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민 전출·입시 장비를 회수하여 분실, 고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 관리
- 재해발생시 주민 스스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사용요령” 등과 같이 장비별 리후렛을 제작 배포 및 교육·홍보

○ 점검시기

- 사전대비체제 기간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상시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마. 제설 자재·장비 확보·관리

1) 확보기준

- 종류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 트럭 등
- 확보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 예상대수 산정·지정
- 보관장소 : 포교원옆 복개주차장, 민락동공터, 호원동 자재창고

2) 점검 및 관리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에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3. 봉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 인력동원 계획 수립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소요 동원인력 판단
- 동원대상은 지역내의 군인, 민방위대 등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단계별 동원계획 수립

나. 인접 자치단체와 응원체제 확립

- 대규모 재해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의 부족에 대비,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제 방안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재해발생시 지원대책 사전협의

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활용

1) 목 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방재단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 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2) 임무 및 설치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 설 치 :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동 단위로 설치

3)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확대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기능 강화
- 재난위험시설등 수시순찰, 이상유무확인 신고 등

4) 확대지정대상

- 지역거주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운영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읍·면단위 통·리장 등

5) 방재단원 역할

<상시대비체제시>

-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등 육안검사 실시
-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대비 교육 등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 재난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복구상황 전파
-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전파 및 대응방안 제시
-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전파 및 지역주민 동원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활동, 의약품·구호물자의 접수·배분실태 등 복구활동 협조 및 상황 전파
- 의료 및 방역활동 정보, 교통통제 상황 등 정보제공
- 각종 자치단체 공사 등 모니터위원들의 감시활동 실시, 부실 시공시 정보제공 등으로 견설시공 유도
- 재난정보수집 중 문제점 등 기타정보제공

6) 보고방법

<상시대비체제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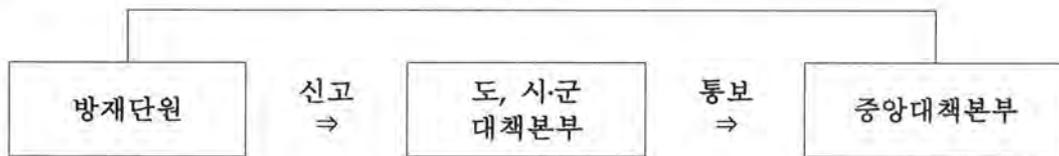
-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폰, 전화, 주소 등)
- 방재단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당해지역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방재단원간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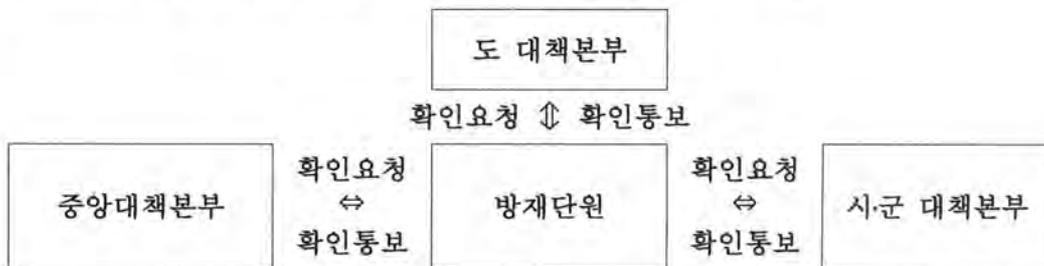
-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활용>

- 재난상황 발견 즉시 신속한 보고 시스템 가동



- 필요시 중앙, 도, 시군의 재난상황 현장 확인 요청



※ 긴급한상황 확인시 활용할수 있도록 D/B구축자료 상황실비치

라.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1) 목 적

-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 제고

2) 근 거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마. 자원봉사 협조체제 구축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연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축
-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적인 지휘체계 유지
- 자원봉사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자연재난대비 활동능력 제고
- 자연재난시 비상근무
 - 비상체제 : 공무원(자원봉사부서) 및 센터직원 전원 비상근무
 -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연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 경계체제 : 공무원(자원봉사부서) 및 센터직원 1/2 비상근무
 - 태풍, 호우, 해일 등에 관한 경보발령시
 - 준비체제 : 자원봉사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센터의 자연재난대비 담당자 비상근무
 - 태풍, 호우 등에 관한 주의보 발표시

4.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가. 방재교육·훈련 실시

1) 방재교육 참석 및 실시

- 교육체계
 - 3단계(중앙교육, 도자체교육, 전파교육)로 실시
- 교육운영
 - 중앙교육 : 방재관리자, 자연재난실무자, 인적재난실무자, 방재전문요원, 상황관리실무자, 중앙합동조사 과정으로 구분실시
 - 도 자체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 교육대상 : 도 재난대책관련부서, 시군 방재담당과팀장, 유관부서(기관) 등
 - 전파교육 : 시·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시·군·읍면동·유관기관 실무자, 지역자율방재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시 자체교육 : 대강당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재난대책관련부서, 지역자율방재단, 유관기관 등
 - 교육기간 : 4월중

2) 방재훈련

- 훈련목적
 -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단체 등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풍수해대책기간(5.15~10.15)전에 재난관리체제 점검·대비
- 훈련 실시
 - 훈련기관
 - 도본청 : 도상연습 주관
 - 시·군 : 도상연습 실시
 - 훈련대상 :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실시
 - ※ 훈련대상 선정시 가급적 과거 10년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군을 선정

○ 훈련내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검증
- 재난관리조직의 재난대비·현장대응·수습절차 숙달
- 유관기관 인적·물적자원 동원 및 대응능력 점검
- 재난관리체제(국가·지역·해외) 점검 및 평가
- 부처별 소관 조치내용 「국가안전관리계획」 과 비교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정·지휘·통제기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기상황 의사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조사, 이재민 구호, 사상자 처리 등 수습·복구절차

【실제훈련】

- 훈련주관 : 중앙 및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훈련장소 : 자체선정
 - 재난위험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장소를 선정, 훈련효과 거양
 - 민간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훈련이 될 수 있는 장소
 - 지역주민, 학생 등 다수가 참관 할 수 있는 장소(하천둔치 등)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 시나리오 작성
- 훈련내용 : 재난발생에서부터 사태수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훈련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나.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지역방송(TV, 라디오,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프로그램 제작 방영
- 지역 및 기관별 재난예방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행정 홍보 및 주민참여

다. 기업의 방재활동 촉진

- 풍수해 발생시 종업원 안전, 고객의 안전, 경제활동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재난시 표준행동지침의 작성, 방재체제의 정비, 방재훈련 실시
- 기업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 방재훈련 참가유도

5. 인명피해우려 위험구역 설정·운영

가.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42조
 - 위험구역내 행락객 등의 출입제한 또는 퇴거 및 대피명령
 - 위험구역내 행위금지 제한 내용 등 표지판 설치

나. 설정대상

- 원도봉산지구

지 구 명	원도봉산계곡(유원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229-11			
표지판설치	1개소	설치완료일시	1999. 3월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해 계곡범람으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98년8월6일집중호우(2시간 강수량 : 216mm) 사망7명, 실종1명(98년 이후 피해발생 없음)		
	원인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대피계획인원	200명	대피장소	호원고등학교	
통제수단	바리게이트, 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마을앰프 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등			
통제 및 주민대피	Ⅱ단계 이상(주민대피 검토)발령 시			
분야별 담당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책임담당자	이규웅	호원1동 주민센터	(행 정) 828-4286 (핸드폰)
	지역주민	임천교	호원1동 14통장	(핸드폰)

○ 안골지구

지 구 명	안골계곡(유원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표지판설치	1개소	설치완료일시	1999. 3월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집중호우 時 계곡물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과 거	내용 인명피해 3명			
피해상황	원인 1998. 8. 6 집중호우 時 계곡물 범람으로 인한 인명 피해 (2시간 강우량 216mm)			
대피계획인원	180명	대피장소	경민대학	
통제수단	담당자 지정			
홍보수단	경고(표지판, 안내표지판, 방송앰프)			
통제 및 주민대피	Ⅱ 단계이상(주민대피 검토)발령시			
분야별 담당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책임담당자	백남협	가능3동 주민센터	(행 정)828-4957 (핸드폰)
	지역주민	장동길	가능3동 6통장	(핸드폰)

○ 자금지구

지 구 명	산장연립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70-13일원 산장연립			
표지판설치	3개소	설치완료일시	2011. 7월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옹벽 노후로 붕괴 우려			
과 거	내용 해당없음			
피해상황	원인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240명	대피장소	금오초등학교	
통제수단	안전선 및 위험안내 표지판			
홍보수단	안내방송 등			
통제 및 주민대피	Ⅱ 단계이상(주민대피 검토)발령시			
분야별 담당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책임담당자	김은진	자금동 주민센터	(행 정)828-4895 (핸드폰)
	지역주민	임용재	산장연립 관리소장	(핸드폰)

다. 단계별 조치계획

구 분	조 치 사 항
I 단계 (기상특보 발령)	·직원 비상근무 발령 - 주의보 발령시 : 1/5 근무 - 경보 발령시 : 1/3 근무 - 비상체제시 : 전직원 2교대 근무 ·수중펌프, 안전선 등 수방자재 사용대기 ·계곡 야영객 퇴거, 출입제한조치 ·인명피해우려지역 재난관리관 비상근무조치
II 단계 (주민대피 검토)	·방재단 및 민방위대원 비상대기 조치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수량 파악 ·이재민수용시설 사용협의
III 단계 (주민대피, 구호)	·유관기관 협조요청 ·대피방송 및 대피안내조 투입(이재민수용시설 수용) ·방재단 및 민방위대원 동원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확보 ·대피상황 보고(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의정부경찰서 873-3129 ·의정부소방서 849-7415 ·성모병원 820-3418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828-5337 ·제1710부대(530-3240통신대) 530-3240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849-1299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 828-8000 (재난안전관리반)

라. 세부 실행계획

○ 마을앰프 등 방송 담당자

지역명	상세위치	담당공무원		연락처	비 고
		부서명	성 명		
산장연립	금오동 270-13	자금동	김은진		
안골유원지	가능3동산81-11	안 전 총괄과	이승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원도봉산 유원지	호원1동 229-111		이승준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 가두방송 구역 및 담당자

지역명	소 속	담당 공무원	연락처	행정차량
산장연립	자금동 주민센터	이남성		
안골유원지	가능3동 주민센터	전춘배		
원도봉산 유원지	호원1동 주민센터	장영복		

○ 주민대피 안내요원 지정 및 현장배치

지역명	소 속	총괄 책임자	현장책임관		비 고
			성 명	연 락 처	
산장연립	자금동	자금동장	김은진		직원 2명
안골유원지	가능3동	가능3동장	백남협		직원 2명
원도봉산 유원지	호원1동	호원1동장	이규웅		직원 2명

○ 예경보시설 운영 담당자 지정

- 자동우량정보시스템 : 2개소

설치장소	상세위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안골 지구	가능동 산81-2	이승준		안전총괄과
원도봉산 지구	호원동 229-170			

•민방위 경보시설 : 3개소

설치장소	상세위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자금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조원희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가능3동 주민센터				
호원1동 주민센터				

•재해취약지역별 수용시설 지정현황

지 역 별	대 피 시 설				비 고
	시설명	수용능력	대피거리	대피시간	
산장연립	금오초등학교	1,000명	1.4Km	24분	도보
안골유원지	경민대기념관	280명	1.4km	24분	도보
원도봉산유원지	호원고등학교	200명	1.4Km	24분	도보

•유관기관 주요임무 지정현황

구 분	주 요 임 무	연락처
의정부경찰서	교통통제 및 치안대책, 수송차량 지원	849-3356
의정부소방서	환자이송 및 수송차량 지원, 응급의료 지원	878-7120
의정부교육지원청	이재민 수용시설지원	820-0124
제2군수 2167부대 제1710부대(762통신대대) 제6276부대(65사단)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수송차량 지원	820-6030 530-3240 866-9120
한국전력공사	피해지역 전력 차단	849-1299
한국가스안전공사 대륜E&S경기지사	피해지역 도시가스 차단	894-5528 951-0220
대한적십자	수용시설별 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구호 추진	874-3848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828-2108
KT의정부지사	통신두절지역 긴급통신 복구지원	875-0060

○ 재해취약지역별 주민대피 안내도

〈산장연립〉



□ 주민대피 담당자 지정

총괄 책임자 : 자금동장

주민대피 요원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임 무	비 고
자금동	박재범		- 주민대피 총괄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인원 확인	
자금동	김은진		- 주민대피 가두방송 - 주민대피 안내	
관리소장	임용재		- 주민대피 안내	산장연립

<안골유원지>



□ 주민대피 담당자 지정

총괄 책임자 : 가능3동장

주민대피 요원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임 무	비 고
가능3동	김진욱		- 주민대피 총괄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인원 확인	
가능3동	백남협		- 주민대피 가두방송 - 주민대피 안내	
통장	장동길		- 주민대피 안내	

<원도봉산유원지>



□ 주민대피 담당자 지정

총괄 책임자 : 호원1동장

주민대피 요원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임 무	비 고
호원1동	임재성		- 주민대피 총괄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인원 확인	
호원1동	이규용		- 주민대피 가두방송 - 주민대피 안내	
통장	임천교		- 주민대피 안내	

마. 야간 집중호우 및 돌발성 인명피해 대책

1) 필요성

- 자연재난 중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하천범람 등이 야간에 발생할 경우 인지·대피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문제점 및 대책

- 사전 대피명령 발령 시 주민, 행락객 등의 대피 거부
 - ⇒ 대피거부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 ⇒ 예비특보 단계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피 분위기 조성
 - ⇒ 대피 거부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 철저
 - 야간 대피 유도를 위한 자재확보 미흡
 - ⇒ 경광봉, 반사조끼, 후레쉬 등 야간 대피자재 확보
 -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행동요령 미흡
 - ⇒ 야간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마련 및 보급
 - 상황발생시 신속한 행정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야간 대피계획 미흡
 - ⇒ 인근의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체계 구축
- ※ 특히 군부대와 주민대피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3) 주요내용

<사전대피 및 순찰활동 강화>

-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특보 발표 등 야간 집중호우 예상시 위험구역 (원도봉, 안골계곡) 일몰 전 사전대피
- 야간 순찰활동 강화
 - 누적강수량 많고 지속 강우 예상 시 “현장순찰팀” 야간 운영
 - 필요시 대피담당자를 현장 인근에 사전배치
- 대피거부자에 대해서는
 - 지역별로 대피거부 요인을 사전에 판단하여 요인 해소방안 마련
 - 강제대피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부과

※ 대피거부 해소방안 예시

원 인	대 책
대피준비 어려움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홍보 ※ 대피소, 대피로, 준비물, 행동요령 등 구체적인 내용
대피지역 도난우려	-경찰 등으로 출입지역 통제 실시 및 홍보
가족 등 대책 미흡	-가족 대피계획 마련 및 지원

※ 기타 원인에 따른 대책 마련

<야간대피 보조자재 확충>

- 대피로(소) 표지판 야광 재질 사용 및 보강
 - 기존 설치한 대피로(소) 표지판 야광으로 교체
 - 갈림길이나 굴곡부위에 등에 추가설치
 - 야간대피 유도인력 및 물품을 충분히 준비
 - 야간 주민대피 인력 사전 확보(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필요한 경광봉,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등 사전확보
 - 통제지역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경광등 설치
- ※ 인명피해우려지역 등에는 재난안전선(SAFETY LINE)” 설치와 병행하여 경광등을 설치하여 경각심 고취

구 분	안전선 (틀)	형광띠 (장)	차단봉 (개)	경광봉 (개)	반사조끼 (벌)	경광등 (개)
보유수량	48	900	15	28	10	4

<야간대피 Action plan>

- 대피 담당자 확보(비상근무자 명단 작성시 확정)
 - 2인 1조(지자체 공무원 1명, 유관기관 1명)로 대피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담당 가구를 지정하여 책임 대피제 확행
 - 담당자는 현지상황, 연락처, 가족 수, 재해약자 여부, 현장 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 숙지
 - 현지에서 사용할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등 사전 배포

※ 각 조별 담당업무 분장

구 분	역 할	비고
총괄조	대피업무 총괄	안전총괄과
대피조	현지에서 직접 주민 대피유도	동주민센터
안내조	대피로 중간에서 대피소 안내 및 대피로의 상태 전파	동주민센터
확인조	대피완료 후 가구마다 방문 점검(대피조가 병행가능)	동주민센터
대피소 운영조	대피자 도착 전에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주민생활지원과

○ 사전 홍보방송 실시

- 위험요인 증대시 야간대피에 사전 준비 홍보방송 실시
 - ※ 방송 차량, 마을앰프, 전화(대피담당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 대피소, 대피방법(도보, 차량), 차량탑승 장소, 준비물 등 안내
- 개인별로 대피 시에는 통장 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
- 위급시 귀중품 챙기기에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철저

○ 대피 유도시

- 거동 불편자,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재해약자는 최우선 대피
- 대피로 중간에서는 방향유도 안내요원 배치
- 대피소 입구에 조명 설치 또는 차량 불빛 등으로 위치안내
 - ※ 필요시 비상발전기 등을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 대피조는 주민과 대피소까지 동행
 - ※ 주민은 차량 탑승후 또는 대피 중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인행동 금지
- 경찰은 선두·후미에서 대피자(차량) 안내 및 낙오자 유무 점검
- 확인조는 대피 완료한 마을을 가구별로 최종확인 후 철수
- 주민대피에 참가한 담당자 중 낙오자 여부 확인 등

○ 대피완료 후

- 대피조는 주민의 대피완료 및 인원수를 총괄반에 보고
- 최종 철수시 확인조는 출입도로에 “재난안전선(S/L)을 설치
- 재난안전선 설치지역 출입통제(사전 지정된 담당자 또는 경찰)
 - ※ 이때 “출입 통제자”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근무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야간에 신속·원활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경찰·소방·군부대 등과 사전협조 체결
 - 유관기관 담당자등과 조 편성 및 임무 분담, 비상연락망 구축
 - 현장에서 활동할 세부행동요령 및 역할 협의

구 분	지원가능 인원(명)	지원가능 장비(대)	임 무	비고
65사단	병력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1대 •트럭(인력)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대피 유도 •대피거부자 강제대피 •대피차량 지원 •대피로 파손시 응급복구 	
의정부소방서	구조요원 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트 1대 •소방펌프차 6대 •잠수장비 12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 구조 	
의정부 경찰서	통제요원 6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성기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통제 및 강제 대피 	

2) 반별 주요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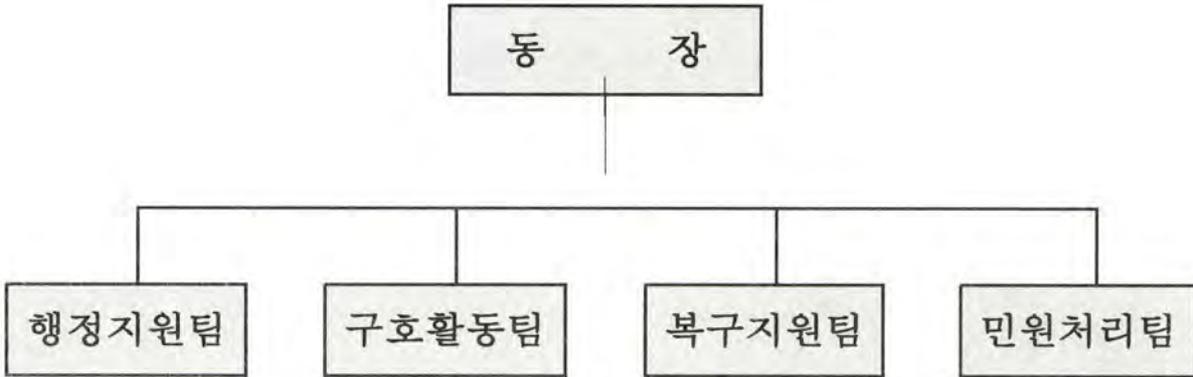
구 분		담 당
이재민 구호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 및 이재민 발생시 응급 구호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업무연락 지원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부팀 운영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역군부대, 유관기관 등 민간구호단체에 부족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요청	주민생활지원팀장 외 3명 (사회복지과 4명 지원) (노인장애인과 4명 지원) (여성가족과 4명 지원)
의 료 지원반	보건소를 통하여 수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시·군지역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 으로 의료지원반 구성 진료활동 실시 국·공립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요청 이재민을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의약관리팀장 외 5명 (건강증진과 3명지원)
감염병 관리반	수해지역 방역기동반의 증강 편성·운영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감염병 조기발견 관리체계 확립 및 홍보 ·계몽 강화	감염병관리팀장 외 2명 (건강증진과 6명지원)
위 생 지도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배치 하여 급식관리	위생관리팀장 외 5명 (문화관광체육과 3명지원)

3) 이재민 구호 대책본부 구성 운영

- 구성시기 : 집중호우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 구성체제 : 4개팀 41명(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4개 실무반을 3개조으로 구성 24시간 근무교대 운영
- 주요 활동내용
 - 이재민 수용시설 설치 및 이재민보호 지원
 - 재해구호 의연품 접수 및 배부
 - 각종 구호사실 조사지원(응급·장기구호, 생계보조, 침수주택현황 등)
 - 응급환자 수송 및 방역활동

4) 동주민센터 이재민구호활동반 구성·운영

○ 구성체계



※ 재해구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업무별 추진팀을 구성, 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 각 팀별 임무 부여

팀 별	구 호 업 무 수 행 (임무)	비 고
동 장	총 괄	
행정지원팀	이재민 현황 및 각종 상황 종합관리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일반사항 처리	
구호활동팀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관리 재해의연금(인적피해 부분) 집행	
복구지원팀	수해 피해지역 현지조사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 재해의연금(주택복구비, 침수주택 등 물적부분)집행	
민원처리팀	각종 민원사항 처리 자원봉사자 등록배치 관리	

나.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1) 주 관 : 의정부시장

2) 지정기준

- 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풍수해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산출한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동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시설, 교육훈련 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 가능('11. 8. 4, 재해구호법 개정)
- 임시주거시설은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지진 발생시에 긴급대피를 위해 학교운동장, 공설운동장, 공원, 야영장 등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정
- 규모 6.0을 기준으로 지진대응시스템에서 산출된 이재민 수를 대상으로 대피면적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을시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대피 면적을 산출하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 ※ 이격거리 : 대피장소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를 제외하고 대피 면적 산출
- 지진해일,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이 높은 곳은 제외

- 토지소유주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 하여 지정
- 천막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 ※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시주거시설 중 관공서 등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이나 대형 텐트 등을 활용

3) 관리기준

- 수용시설 및 대피장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또는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 점검
- 수용시설 및 대피장소 규모에 따라 이재민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장소,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의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입력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관리

1) 적용대상

-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
-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인 등이 기탁한 재해구호물자

2)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

가) 응급구호세트(남)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150㎝, 1.3kg 200㎝×150㎝, 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PVC 38㎝× 28㎝×10㎝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규 격	0.7mm 유성	10cm×4.8cm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면	1회용	면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켢레	1벌	1벌	1개	1켢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 ℓ) 1병								

나) 응급구호세트(여) :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 티슈	PVC 38cm× 28cm×10cm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규 격	0.7mm 유성	10cm×4.8cm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면	1회용	면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켢레	1벌	1벌	1개	1켢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 ℓ) 1병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중(남 100, 여 95)·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함

다)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스렌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 가 방
규 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켢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라)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 젓병), 기저귀, 모기약 등
- 개별구호물품은 필요에 따라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3) 재해구호물자의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주택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 중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시대피자 세부기준>

- 시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대피한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과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포함함

○ 지급기준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과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은 1인당 남·여(대·중·소)에 따라 각 1세트, 재가구호세트는 1세대당 1세트를 지급

<주택침수의 세부지급 기준>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의 경우 재해구호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취사 또는 주거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 예1) 방바닥만 침수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 지급
예2) 방바닥과 주방이 침수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재가구호세트 지급

-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물티슈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분유 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자연재해외에 산불·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재해 구호물자를 반드시 지급

- '11년 재해구호물자세트 기준 개선 前 기존 재해구호물자는 소진시까지 변경전 지급 기준대로 지원

※ 일시구호세트 → 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기본 → 침수피해 이상 1세대 2인당 1세트 지원

4) 재해구호물자의 지급시기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법」 제7조에 따라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에 이재민 피해상황을 입력하고 구호물품 지급

5) 재해구호물자의 확보·비축

- 근거 : 재해구호법 제6조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단위:개)

비축기준		응급구호				취사구호	
		남		여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계	비축량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371	282	256	185	94	91	115	97

※ 비축한 구호물자의 입출고 등 변동사항은 재난관리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6)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관리

- 구호물자 보관창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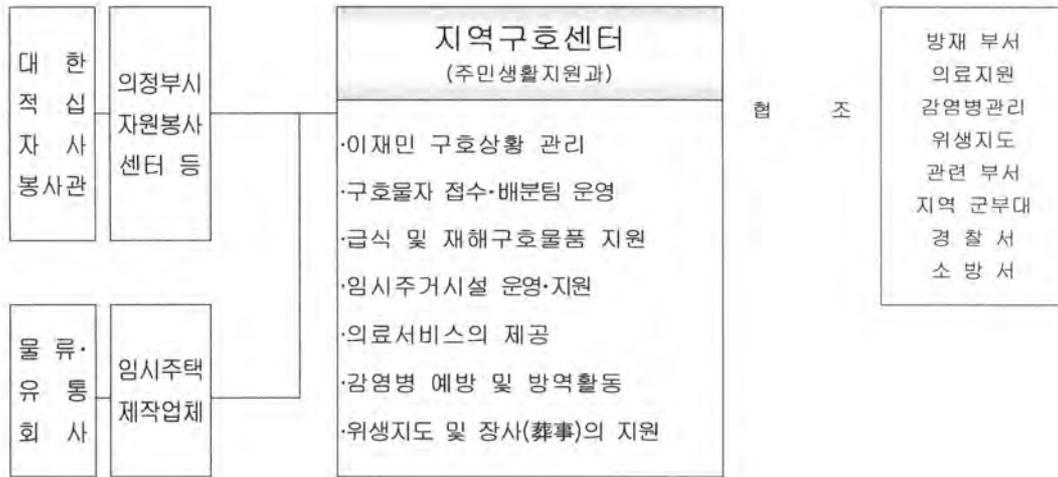
구분	위 치			보관창고명	면적 (㎡)	비축량 (세트)	관리자 연락처	
	동	리	지번				성명	전화번호
1	의정부동	546	1	재해구호창고	198	271	이승자	828-4056
2	용현동	550	1	의정부소방서 재해구호창고	33	100	남궁완	849-7431

7) 재해구호물자의 보관 관리

- 구호창고에는 재해구호물품·의약품 및 재해구호와 관련된 물품만을 보관토록 한다. 다만, 관내에 재해구호용 물자 이외의 물자를 보관할 창고가 극히 부족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물자의 입·출고 등을 재난관리 시스템 상에서 입력 관리
- 보관책임자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자의 망실, 훼손 및 보관상태 등 점검

라.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및 단계별 조치사항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예방 및 대비단계	이재민 발생 시
지역구호센터 운영	▪구호물자 비축·관리 등 평시업무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설치·운영
재해구호물자 지원	▪자치단체 및 민간구호단체의 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 등 현황 파악·관리	▪구호물품 지원 등 응급구호 실시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등에 지원 요청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을 통해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의 지원 조정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 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부족 물자는 긴급구매업체에서 구입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구축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체계 구축	▪임시주거시설 제공·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급식 제공 등)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수요파악 및 지원
재해구호예산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관리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복권기금 소요액 파악·지원

구 분	예방 및 대비단계	이재민 발생 시
민간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등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의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세탁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 요청
고립지역 구호물자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재해발생시 도로두절 등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 동원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작성 운영 (별지6호 서식) ※ 구호물자의 비축이 가능한 임시 주거시설은 필요량 사전비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지역 발생시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등 긴급구호 실시

마. 인명구조 및 구급체계

1)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응급의료기관 : 3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 의정부성모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경기도립의정부병원, 백병원
- 인명구조대 편성현황 및 구조장비 보유현황

의정부소방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인 력	장 비	인 력	장 비
2조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구조장비 야간투시경 등 23종 222점 수난구조장비 구명보트 등 16종 131점 	3조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구조장비 하강기 등 12종 94점

■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운영



※ 응급의료기관 :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도립의정부병원, 백병원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응 급 의 료 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중 증 도 분 류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의 료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급차 대기소 운영 •의료물품 비축 및 배정, 자원봉사자 배치
임 시 영 안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현황파악 및 사망자 신원확보 •개인 소지물품 보관

2)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

○ 응급진료 전달체계 구축

- 기초단계 : 관내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활용
- 중간단계 : 지역별 후송체계 활용 (관내 응급의료기관 활용)
- 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 시 : 권역응급의료센터 활용

※ 경기북부권역 :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 소재)

- 신속한 환자이송 및 정보안내 체계 확보

○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본부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인근 응급의료기관 활용
-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의정부경찰서 협조
- 응급의료정보센터(의정부성모병원) 운영 강화
 - 관내 무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 응급진료체계 전달과정

<p>I. 환자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119 등 구급대원 환자 구조·구명
<p>II. 응급처치, 환자분류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시행 - 중증 응급환자 분류
<p>III. 구급차 동원 및 환자 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구급차(헬기) 확보 - 119 및 응급의료기관 연락
<p>IV.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간 환자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보관리 - 대형사고 시 근접 응급의료기관 동원
<p>V. 상황종료, 결과보고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진료체계 종결시점 결정 - 최종 결과 취합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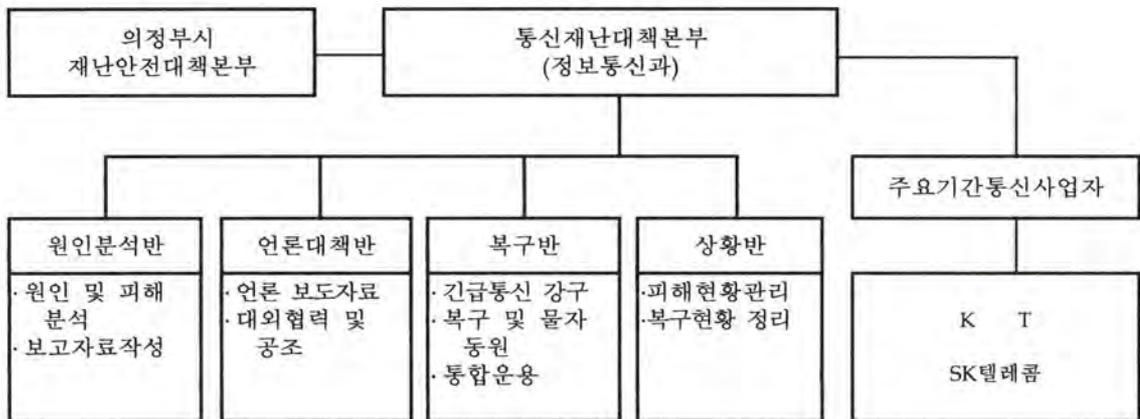
7.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가. 통신두절 대책

1) 통신재난대책 본부 구성·운영

- 재난상황 발생시 통신재난대책 본부 구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처가 용이토록 조치

2) 통신재난대책본부 편성



3) 통신재난 보고·지휘체제 확립

-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복구추진을 위해 재난대책본부~통신사업자간 상황보고·지휘체제 확립
- 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체제 유지
- 통신재난대책본부 설치 시 24시간 상황근무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실시

4) 재난상황 대응방안

- 통신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확립을 위해 자연재해, 인위재난 등의 상황관측 및 전파체제 시설정비
- 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장소의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및 기간통신사업자 홍보협조
- 재난위험지역 특정인에게 SMS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송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KT등 유관기관 협조)
- 야간 정전시 대비 대체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등)

나. 전기두절 대책

1)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사고수습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대형 사고, 중형사고, 소형사고로 구분
- 전기사고 중 중형사고 이상 발생하면 즉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피해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관리 함으로서 사고시 긴밀하게 협조조치
- 대단위 정전으로 주민피해와 혼란 우려시는 민방위부서와 협의 사태수습 및 복구활동 지원의뢰
- 정전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치안유지 대책협조
- 화재 발생시 최단시간내 진화되도록 소방서와 협조

2) 유관기관별 재난상황 대응방안

-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 각종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전력보강사업 확행
 -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제조정으로 정전지역 최소화
 - 사고원인조사 및 긴급복구 실시
 - 복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체 비상동원과 행정기관에 지원요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자문 및 검사
 - 자가수용가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협조
 - 자가용 수용가 사고시 기술지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출장소
 - 전기공사업체 동원에 대한 협조
 - 동원업체의 인력, 장비 관리
 - 사태구분별 행동요령

3) 사고유형별 재난상황 대응방안

○ 소형 사고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소도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 급전 사령실에 보고하여 송·변전계통의 급전변경으로 정전시간 최소화
- 자가수용가가 확보한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되 발전용량에 적정한 부하로 가동토록 지도(안전공사 협조)
- 자체 복구반 및 전기공사업체 동원으로 응급복구
- 이동안내 방송차 또는 비상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 및 주민행동요령 전달

○ 대(중)형 사고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긴급 복구토록 한다.
- 중앙 급전사령실로 보고하여 송·변전계통의 긴급연결공사로 타 발·변전 시설 여유전력 사용토록 응급조치
- 외부 전력공급 부족시 관내에 설치된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활용
- 자체복구반 및 전기공사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타 전력소 및 안전관리 기술인력도 지원 요청하여 긴급복구
- 전력부족시 전력공급은 우선 순위에 따라 주요시설 등에 우선 공급하고 차단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차단
- 이동안내 방송차 또는 비상방송을 통하여 정전상황 및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불시 전력공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계몽

다. 가스누출 대책

1)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구 성 : 의정부시청 및 협조기관

- 대책본부장 : 의정부시장
- 부분부장 : 부시장
- 상황실장 : 재정환경국장
- 대 책 반 : 3개반(행정반, 수습반, 홍보반)
- 협조기관 : 3개기관(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각1인)

○ 기 능

- 대형사고 발생시 총괄지휘 (긴급출동반, 시 사고수습대책본부, 복구반)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구축 및 인원, 장비동원
- 사고 전파 및 수습등 제반사항은 각 반별로 책임 수행

2) 유관기관별 재난상황 대응방안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 저해요인 조사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 가스분야 대형재난 발생시 지자체 등 긴급구조기관 주관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연락관 파견(요청시)
- 수해, 산불 등 재해발생시 관내 가스업체와 연계한 긴급복구 협의회 구성
- 밸브차단 등 임시조치 및 주변 가스시설 안전점검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가스시설 설치
- 재난 발생시설(지역) 복구지원 및 가스안전조치요령 홍보

○ 의정부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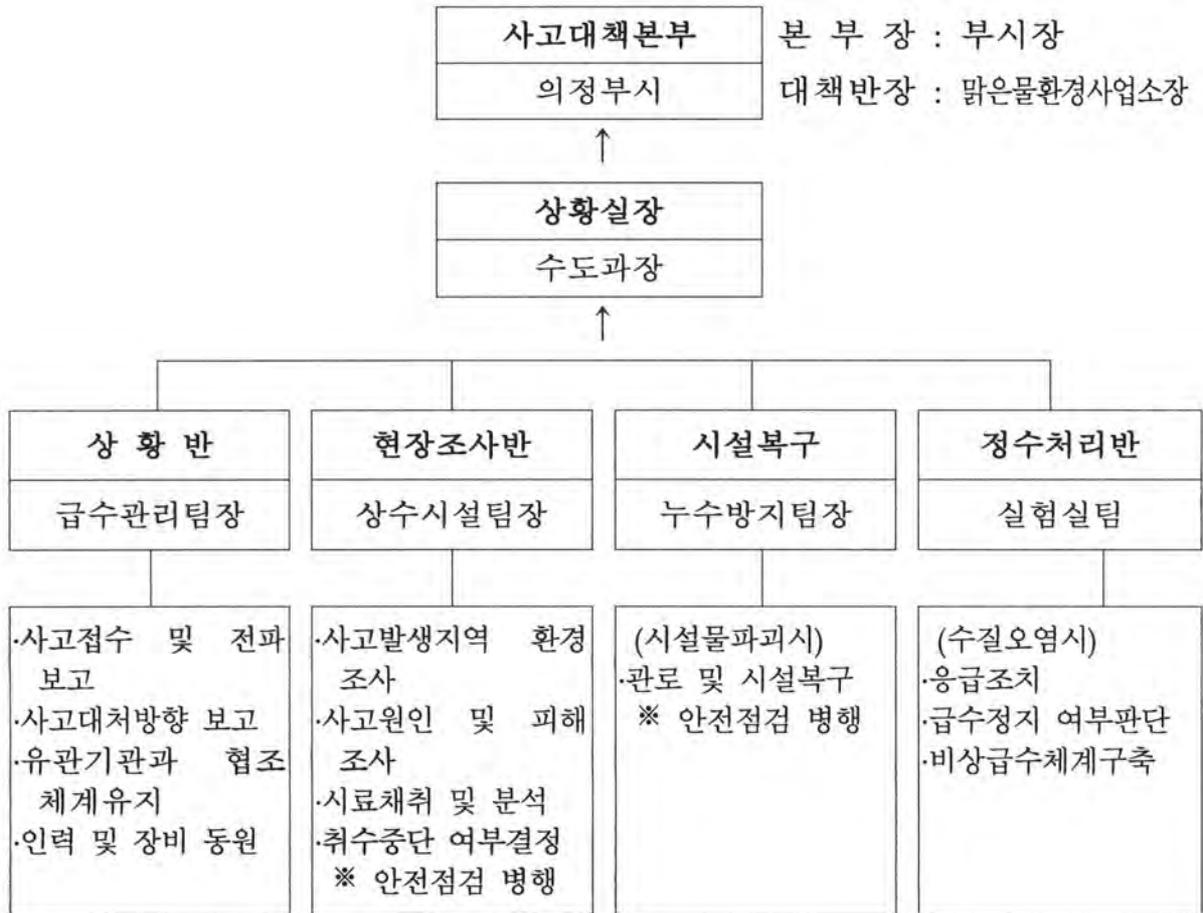
- 인명 및 재산피해 조사
- 사고원인 조사, 주민동향 관리
- 사고지역 경계강화

○ 의정부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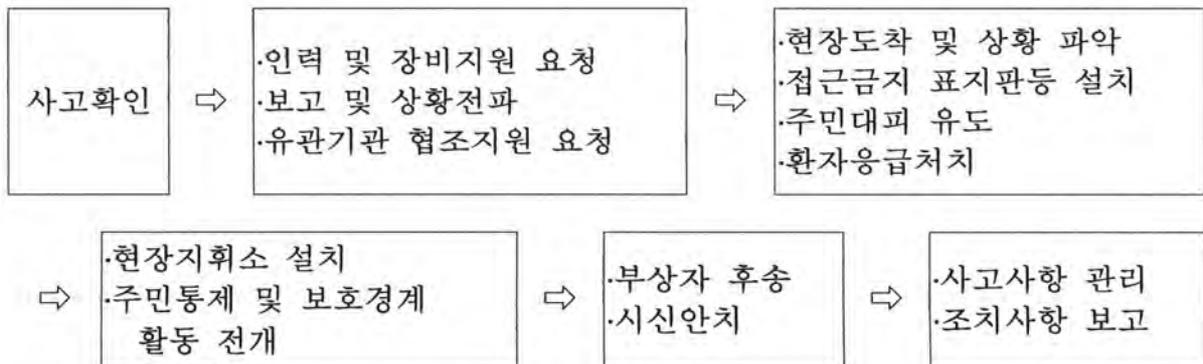
- 복구요령 및 기술, 장비, 인원지원
- 화재진압

라. 급수·상수도시설 대책

1)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처리흐름도】



2) 사고발생시 초동 조치사항

○ 초동조치

-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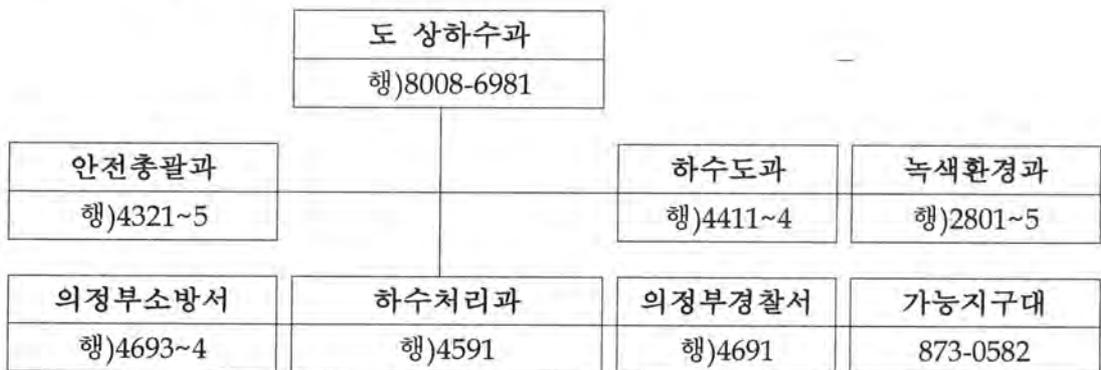
- 군 및 유관기관에 사고수습지원 요청
- 구조·구난장비동원
- 사고지역 통제 등 경계구역 설정
-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 : 경찰, 예비군, 공무원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 대처

3) 사고발생 현장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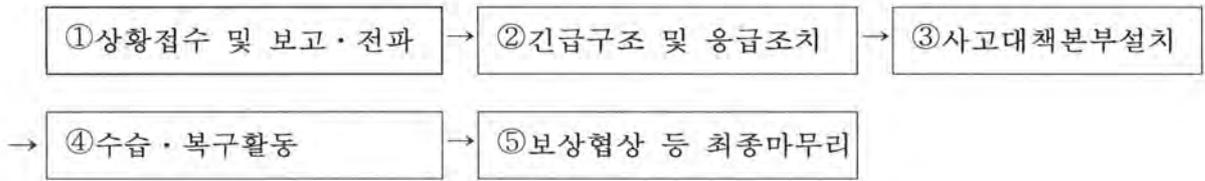
- 구난장비 동원
-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협조지원 요청
- 사고지역 판단보고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인근지역 피해예상 주민 긴급대피 유도 및 결과보고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의정부경찰서)
- 부상자 후송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보건소 및 의정부소방서)
-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
-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및 사망자 처리

마. 하수도시설 대책

1)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수습체계도】



2)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 관계기관 상황 전파
- 응급복구반 즉시 가동
- 재난발생시 사고 분석·보고 및 수질 분석
- 긴급 차단게이트 및 수문밸브 조정으로 시간별 유량 조정
- 사고대책반 운영으로 응급복구

바. 교통두절 대책

1)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시기 : 자연재난 규모가 지역적이고 정부차원의 긴급수송대책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시 자체구성
- 참여기관 : 경찰서, 자원봉사 단체 및 업체
 - ※ 단, 관련기관별 특별수송대책본부는 자연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협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

2) 특별수송대책의 내용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자연재난로 인한 교통두절시, 도에 설치된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에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 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해운·항공로 등의 대체 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조치의뢰하여 연계수송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피해정도에 따라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 통행 조치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통행제한)
 - 1. 응급차량 및 재난복구차량 2. 공공용 차량
 - 3. 대중교통(버스, 택시)차량 4. 자가용등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 등의 특별방송 유도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8.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가. 공공시설 복구

1)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을 구분하고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정부노동주민센터에 기타인력은 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 예비비 긴급지원

2)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복구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복구반을 편성 운영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두절로 재난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3) 토목공공시설 복구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 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 철도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시 시행

나.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피해구분 : 전파·반파 구분은 피해면적을 및 용적을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점포, 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세입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피해보고는 하되 주택소유자에게 침수 수리비 지급

3) 복구계획 수립

-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옮겨 이축복구를 희망시 복구 희망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복구계획 수립

-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시 복구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
- 주택복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
- 주택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시 소유자로부터 다른 지역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4)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건축물

-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5) 주택복구비 지급

- 주택전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지 아니함
- 주택반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되,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반파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을 희망하는 경우 전파기준지원 금액의 50%를 공사착공시 선지급하고 공정율 50% 달성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되,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수해(전파, 반파, 침수)를 입은자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위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유의사항
 - 시장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할 것
 -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 할 것

6) 건축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복구소요기간 단축

- 전파주택 건축허가 대상은 인·허가부서에서 직접 일괄 작성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즉시 일괄 처리(One-Stop)
- 신고대상 주택은 해당 기관에서 즉시 처리
- 개인별 주택복구 일정을 파악 관리

7) 주택용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 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일괄발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통보 등으로 시간 단축
- 금융기관 주택용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직접 면담 안내
- 융자신청 서류 중 토지등기부등본, 허가서 사본 등은 자체 발급 및 대행으로 융자기관에 직접 송부

다.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 피해 수리시설은 조기 응급복구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응급복구한 시설은 영농기 동안 임시사용하고, 영농기 이후에 항구복구 추진
-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공단 및 시설재배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유출로 인한 농경지 토양 오염시 처리대책 및 정밀조사 강구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 농경지와 저수지 및 담수호 주변 쓰레기청소 등 주변 정리정돈

라. 산사태발생 지역 응급복구

- 산사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 등은 응급 복구 실시
 - 비닐피복·통나무울짱얇기·흙마대쌓기·우회수로 설치 등
 -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복구 조치
- 응급복구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한 복구 추진
-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 유역전체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류 등에 적치된 유목·거석 등의 정리비도 설계에 반영 검토
- 피해재발이 없도록 적지·적공법에 의한 개량복구 추진
- 유관기관(시·도, 지방청,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복구의 효율성 제고

9.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가. 방역 및 보건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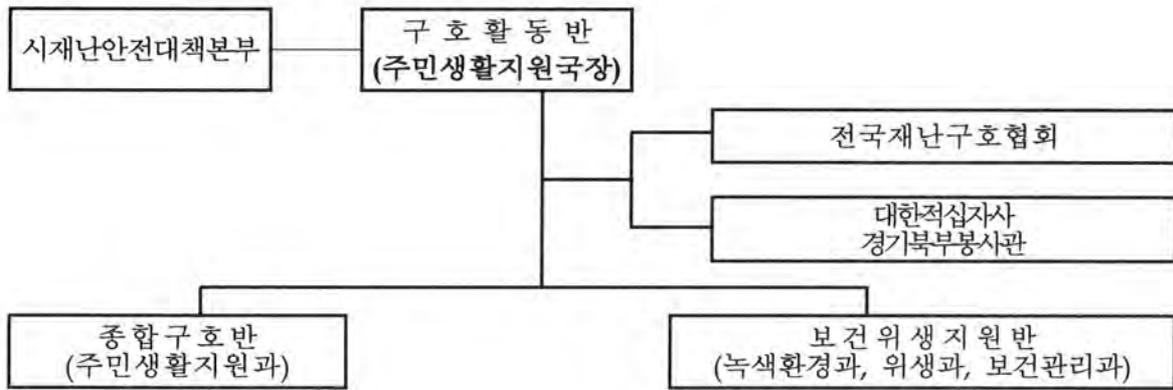
1)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2) 보건위생 대책

- 재난이 발생하면 생활환경의 악화나 체력의 저하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평소보다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재민은 한번 감염되면 저항력이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 전이될 수가 있으므로 재난기간에는 방역 및 보건 위생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파악
- 집단환자 발생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관리 및 적절한 치료 제공
- 확진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등을 통해 환자관리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강구

3) 의정부시재난구호활동반 구성 운영



《 의정부시재난구호활동반 임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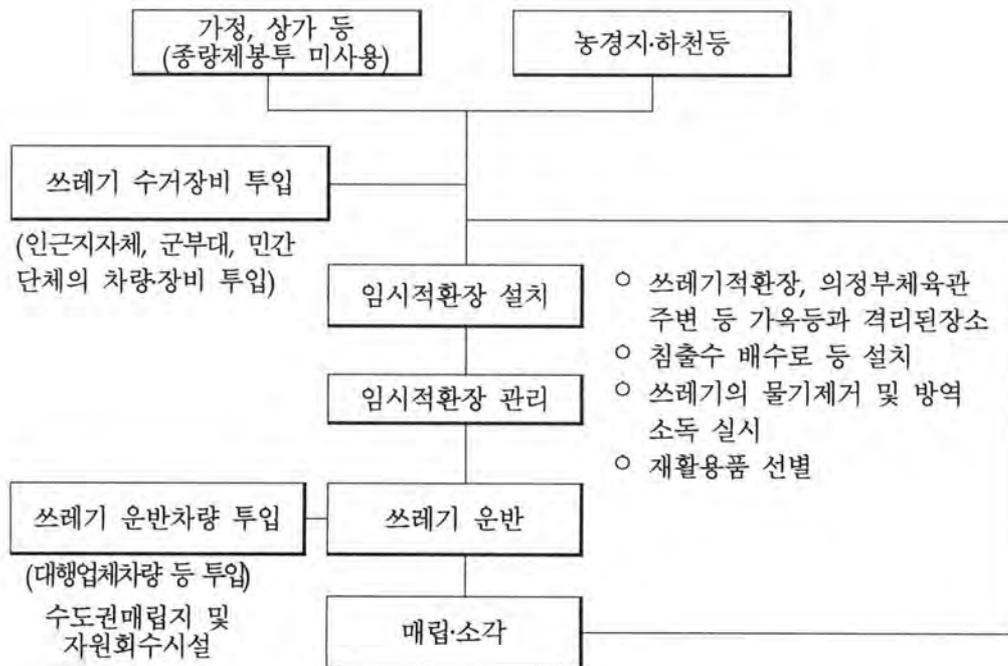
종합구호반	보건위생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발생현황 파악 ○ 구호활동상황 취합 보고 ○ 중앙 및 도 재난대책본부와 업무연락 ○ 이재민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재난구호물품 구입·조달 지원 업무 ○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유지 ·전재협 - 구호물자지원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호품 지원 - 급식세탁차 배치운영 - 자원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의료지원반 편성·운영 ○ 무료이동진료반 운영 ○ 각 시도 및 보건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의약품 구입 및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구급의약품 지원 ○ 의료지원 소요판단 및 인력 배치 ○ 의료·방역 지원상황 파악 ○ 방역기동반 배치운영 ○ 재난 방역약품 구입 배부 ○ 재난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접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위생 지도점검 ○ 재난지역 안전식수 공급 ○ 재난지역 식중독 예방 ○ 이재민수용시설에 식품 위생감시원 고정배치 및 급식관리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나.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수해 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 복구 장애지역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 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피해지역의 쓰레기 배출에 임시조치사항을 경기도와 협의조치
 - 침수지역 등 피해 우심지역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결정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선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후 반입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



<쓰레기 임시적환장 선정현황>

구분	위 치	시설용량(m ²)	비 고(동)
제1권역	녹양야구장	9,108	의정부1·2·3동
제2권역	폐기물종합처리부지(자일동)	9,000	송산1·2동, 자금동, 신곡1·2동
제3권역	울대고개 밑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6,465	가능1·2·3동, 녹양동
제4권역	스포츠센터 주차장	1,700	장암, 호원1·2동

<분뇨처리장 현황>

○ 위	치	: 장암동76번지 하수처리과내
○ 규	모	: 1,895m ² (2개동)
○ 처리가능량		: 300kl/일
○ 연 락 처		: 하수처리과 031)828-4611~3

10. 급경사지 대책

가.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1)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요

- 주 체 : 의정부시장
- 내 용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수립
- 대피대상
 - 붕괴위험지역 또는 붕괴 징후가 보이는 비탈면 인접주택가 주민 등
- 대피시기
 - “붕괴경보” 이상의 강우시나 붕괴징후가 나타나 피해가 예상될 때

2) 주민대피 시기 기준

○ 강우량에 의한 주민대피 기준

- '98년 수해 강우량의 80% 수준으로 설정

붕괴 주의보	구 분	붕괴 경보
50~80mm	최대 시우량	90mm 이상 2시간 지속
200~350mm	일최대 강우량	350 mm 이상
350~600mm	연속강우량	600 mm 이상

※ '98년 수해시 강우량

- 최대시우량 : 113mm ('98.08.06 04:00~05:00)

- 일최대 강우량 : 408mm ('98.08.06)

- 총 강우량 : 762mm ('98.08.06~08.08)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역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 고
		유 형	등급	면적(m ²)		
금오동 산장연립	금오동270-13	붕괴위험 지 역	D	128.2	- 용벽 노후로 붕괴 우려	의정부시고시 제2011 -0847(2011.7.4)
	금오동265-19			66.7		
	금오동265-63			29.2		
	금오동265-47			175.7		
	금오동265-18			16.8		

※ 지형도면은 부록 참조

다. 급경사지 현황

○ 총 급경사지 : 23개소

(2014. 3월 현재)

관리번호	명칭	부서	주소	구분	붕괴이력	등급	비고
1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45-4	자연비탈	없음	C	
2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46-1	자연비탈	없음	C	
3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25-1	자연비탈	없음	C	
4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18-1	자연비탈	없음	C	
5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23-1	자연비탈	없음	C	
6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14	자연비탈	없음	C	
7	천보산1	자금동	자금동 산37-2	자연비탈	없음	C	
8	신곡주유소	신곡1동	신곡1동 산110	옹벽	2007년	B	
9	천보산8	녹양동	녹양동 산5-46	자연비탈	없음	C	
10	수락산1	장암동	장암동 산180	자연비탈	없음	C	
11	수락산2	장암동	장암동 산172	자연비탈	없음	B	
12	수락산3	장암동	장암동 산19-1	자연비탈	없음	C	
13	수락산4	송산1동	용현동 산61	자연비탈	없음	B	
14	수락산5	장암동	용현동 산120	자연비탈	없음	C	
15	홍복산	가능1동	가능동 산29-9	자연비탈	1998년	C	
16	고산동	송산1동	고산동 산30-1	자연비탈	1998년	C	
17	산장연립	자금동	금오동 270-13	옹벽	없음	D	
18	신일아파트	신곡1동	신곡동 457	옹벽	없음	A	
19	건영캐스빌	송산1동	용현동 390-33	옹벽	없음	A	
20	청구아파트	녹양동	녹양동 146-15	옹벽	없음	A	
21	안골유원지	안전총괄과	가능3동 산11-11	자연비탈	없음	C	
22	원도봉산 유원지	안전총괄과	호원1동 229-111	자연비탈	없음	C	
23	녹양동	녹양동	녹양동 산77-11	인공비탈	없음	C	

제 5 장 본부장 및 각급 팀장별, 실과별 행동 요령

제1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절 소관실과별 주요임무



여 백

제 1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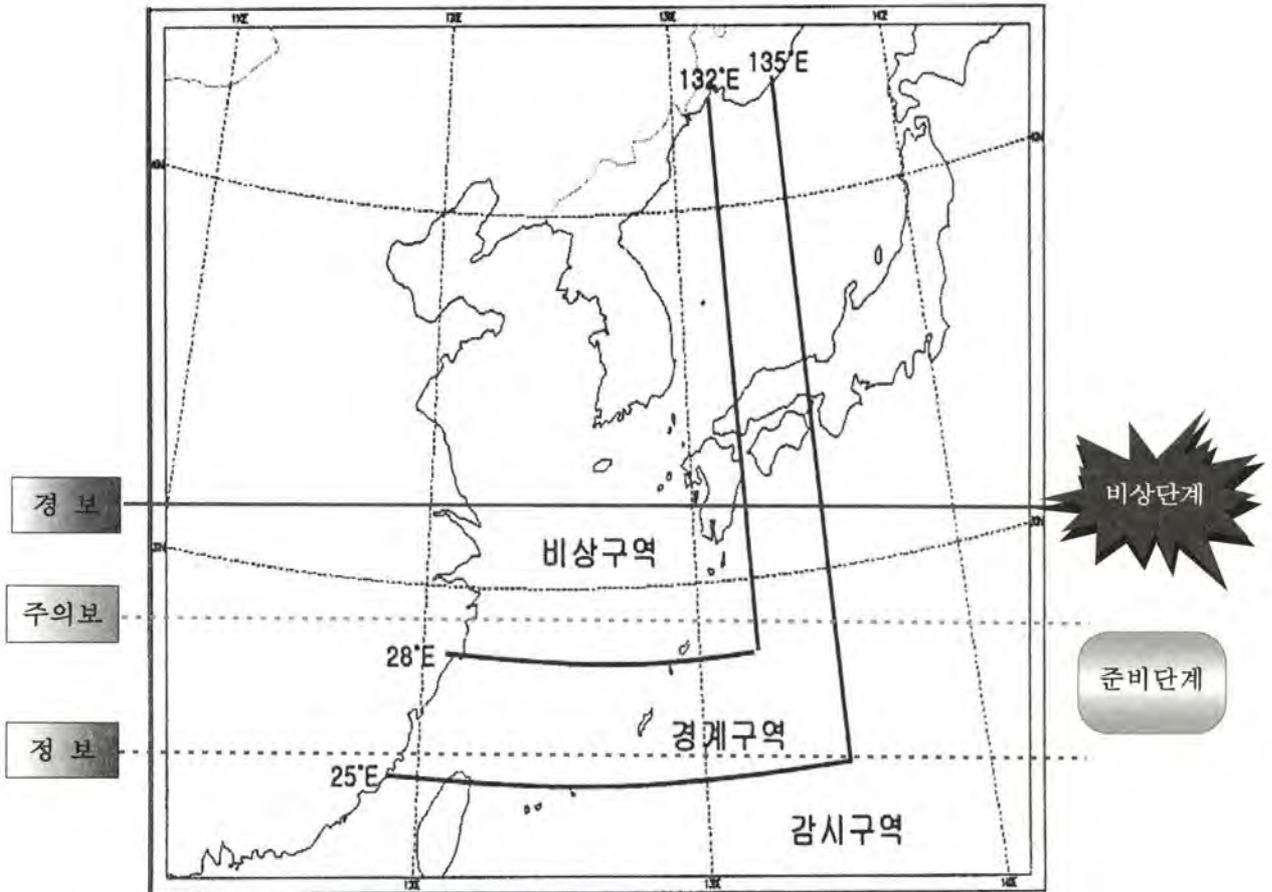
1. 본부장 (의정부시장)

- 관할구역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각 재난 시 임무 및 역할

태풍 내습시 본부장 임무 및 역할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지역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주재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피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예·경보 발령 및 특별지시
- 재해취약시설 정비·점검 지시
- 수방 장비 및 자재 관리 확인
- 유관기관 긴밀 협조체제 구축
- 농·수산관련시설 관리 철저 지시
-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 요청
-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시
- 이재민 보호대책 수립 확인
- 수해피해현장 방문, 응급복구 현황파악 및 이재민 위로

단계별 태풍정보 구역



단계별	기상상황	태풍위치	태풍구역
준비단계	태풍정보	16.0 N, 141.5 E	감시구역
	태풍주의보	25.0 N, 135.0 E	경계구역
비상단계	태풍경보	28.0 N, 132.0 E	비상구역
복구단계	태풍통과	동해 진출	-

태풍시 단계별 조치사항

① 태풍정보 ⇨ 대응태세 점검

-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동두천기상대장과 긴밀 협조체제 유지
- 재해취약시설 (위험구역, 침수피해예상지구)관리

② 태풍주의보 ⇨ 사전대비체제로 전환

-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 주재 (폭설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각 실과소장 및 동장에게 전화 및 폭설대비 특별지시
- 태풍대비 특별지시
 - 인명피해 Zero화, 태풍대비 사전예방 철저
- 수방 자재·장비·인력 지정 및 전진배치 지시

③ 태풍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피해 예상시 상황실 상황지휘
-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요청
- 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필요시)
- 각 실과소동, 유관기관, 피해수습상황 확인 및 요청

④ 태풍통과 ⇨ 복구단계로 전환

- 피해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설명
- 피해조사 및 도본부장에게 피해상황보고
- 응급복구를 위한 부족 장비·인력 등 응원요청 (필요시)
-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피해조사 및 보고
-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1 태풍정보 ⇨ 대응태세 점검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일본·미국의 태풍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태풍예상 진로 파악 ※ 보고 : 안전총괄과장 	태풍정보 발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내습대비 상황대처계획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상황 및 전망 - 단계별 대처방침 - 태풍영향권에 따른 조치 - 피해발생에 따른 조치 등 ※ 상황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 기상대장과 회의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예상진로 및 상륙예상시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태풍피해 예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대비태세 점검 ※ 전반적인 태풍상황 보고 : 안전총괄과장 (태풍예상진로 보고) 	【붙임 1】 협조사항 설명자료

② 태풍주의보 ⇨ 사전대비체제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p>준비단계 (사전대비체제)</p>	<p>○ 해당 실과소동장 및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물 등 점검철저 당부 ※ 본부장님 당부내용 각실과소 및 동에 시달 (통제관) 	<p>태풍주의보 발효시</p> <p>【붙임 2】 말씀자료</p>
	<p>○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피해 사전예방조치 철저 - 인명피해 Zero화에 만전 등 	
	<p>○ 시지역내 각 동장 및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응체제 구축에 만전 기하도록 당부 	<p>【붙임 3】 말씀자료</p>
	<p>○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현황 파악 및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내습대비 사전조치 강화 - 피해예상지역은 사전대비에 만전 ※ 본부장님 당부내용 시도에 시달 (통제관) 	

③ 태풍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비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 제주도 인접지역에 상륙예정시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과, 주택과, 의정부소방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에게 전화하여 예방철저 및 피해상황 신속 파악 당부 	태풍경보 발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통과에 대비한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동 확행 - 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인명구조 및 이재민 구호체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주재 도안전관리위원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예상진로 및 상황대처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도지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위치·크기 및 상륙예상지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실과소동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대응 계획서 요청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계획서 주요내용 : 재난발생현황, 대응조치 및 진행단계별 조치계획 - 계획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나 의견 제시 	

4 대풍통과 ⇨ 복구단계로 전환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복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관련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주택수리비·이재민구호비 등은 시 보유 재난 대책기금에서 우선지원 후 복구비로 정산하고 응급 조치에 차질 없도록 조치 	【붙임 4】 특별지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수습지원단 파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수습지원, 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파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주재 도안전관리위원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도지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접수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보고 ※ 보고 : 통제관 또는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도지사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협의 및 수행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p>○ 수해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현황 파악 및 수재민 위로 ※ 일정협의 및 수행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 	
	<p>○ 합동조사단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액 및 복구예상액 산정, 피해원인 조사 	
	<p>○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조사단의 피해액 및 복구예상액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극심한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 대통령 	
	<p>○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관계기관에 확정통보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확정 	

붙 임

1. 태풍대비 관계기관 협조사항
2. 각종 시설물별 점검철저 당부말씀(전화)
3. 각 관계기관장에게 당부말씀(전화)
4. 응급복구 관련 특별지시 말씀

여 백

태풍대비 관계기관 협조사항

공통사항

- 태풍대비 상황실 설치 운영
-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장 정위치 진두 지휘
-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 인근 군구청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관리시설물 점검·정비
- 응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확보 및 인력동원체계 점검
- 통신두절 대비 비상통신수단 확보태세 점검
- 저지대, 상습침수 및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역방송국, 유선방송, 공보담당관

- 지역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사항 보도 요청
- 언론기관에 재해 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협조
- 각종 보도매체 안내, 지원, 통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KBS의 재난방송체계 적극 활용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실시
- 라디오·TV방송 보도와 관련한 사항 처리

지역경제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잠사 등 농림시설 점검
-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 시설 점검
- 배수문, 원동기 및 배수펌프 조작기능 점검
- 농경지 배수로 정비 및 낙과방지를 위한 지주대 보강
- 비닐하우스시설 중앙파이프 보강 및 결속 보완
- 산사태위험지, 사방댐, 임도시설 점검
- 산림휴양 및 표고재배시설, 양묘장, 조경수재배지 등 시설 관리

정보통신과, KT의정부지사, 의정부우체국

- 통신두절대비 비상용 통신수단 확보 및 긴급 통신소통을 위한 지원 태세 점검
- 재해취약 통신시설의 점검 관리
- 긴급복구용 자재,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보건소,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 학교강당, 교회, 마을회관, 공공건물 등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 화장장, 공원부지 등 소관시설 점검
- 비상근무태세 점검
- 의료기자재,약품, 방역·소독약품 및 구호품 관리상태 점검
- 응급의료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 대기

녹색환경과,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점검
-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시 수거 및 처리체계 점검
- 쓰레기 임시적환장 지정, 쓰레기 긴급수거용 운송장비 및 인력동원 확보체계, 긴급 식수원 공급대책 등 점검

도로과, 교통기획과, 안전총괄과

- 교통통제상황 파악 및 체계 점검
- 공사현장 안전조치 확립 및 홍수예경보 발령태세 점검
- 도로, 하천, 상수도, 공업용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
- 긴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관리
- 수계별 주요지점 수위현황 수시 파악
- 신호등 감전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조치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 고립예상지역의 119, 군부대 등과 연계한 인명구조태세 점검
- 산간, 계곡, 하천, 유원지 등 야영·등산객, 낚시꾼 등 대피유도
-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 활동체계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 국립공원 및 시공원내 시설물 관리
- 산간, 계곡, 해변, 야영지, 하천변 등 재해우려지구내 탐방객 출입통제 및 안전지대 대피 등 안전관리

각종 시설물별 점검철저 당부말씀(전화)

1. 태풍의 강도 및 크기가 지난 20〇〇년 발생한 “〇〇”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
2. 각급 기관장은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관계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긴급대응체제 구축에 만전
3.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등산객·행락객·야영객·낚시객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일 오후까지 모두 대피토록 조치
4. 자동우량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가동여부 점검
5. 낙석 등 붕괴위험지구, 배수문, 수문, 제방 등 재해취약시설 긴급예찰활동 실시 등 사전조치 철저
6. 농·축산시설, 양식시설 등 피해최소화 조치 및 수확 가능 농작물 등은 조기 수확 조치
7. 이재민 발생에 대비,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사전준비
8.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사장 보호 및 장비긴급 투입 대기 등 조치
9. 태풍의 이동상황 등 기상정보 예의주시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주민홍보 강화 등

각 관계기관장에게 당부말씀(전화)

1. 제○○호 태풍 「○○」가 제주도 서귀포 남남 서쪽 약 ○○○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km/h로 매우 빠르게 북상하고 있으며 중심부근에는 초속 ○○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
2. 각 기관장은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긴급대응체제 구축에 만전
3. 태풍 영향시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창문열, 가로수, 전주 등 접근금지
4.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작물 시설보호 조치
5. 가로수 전도, 입간판 추락 등에 대비, 사전에 단단히 고정 조치
6. 아파트, 빌딩 등 고층건물 유리창 테이핑 고정 등 예방 조치
7. 노후시설물, 광고탑 등 전도대비 옥외간이시설물 근처 접근금지
8. 파도 구경 행락객의 해안가 항구 출입통제로 인명피해 예방
9. 위험지역 주민에게 손전등 준비, 라디오 청취, 비상대피소 안내 등 국민 행동요령 지속 홍보 등

응급복구관련 특별지시 말씀

1.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이재민구호비 등은 시 보유 재난대책기금에서 우선지원 후 복구비로 정산
2. 피해주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추진에 전력하고, 전 공무원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의 자제 및 국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구현
3. 고립지역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 구호품을 전달할 경우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누락 사례가 없도록 조치
4. 쓰레기 처리는 주민위생상 적기 처리, 군인력·장비 등 총동원 비상수단 강구
5. 관내 소규모 군부대의 주둔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등 수해 긴급 복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6. 주택 전파·반파 피해 이재민 장기수용 대비 철저
7. 피해지역 건설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타지역 건설인력 수급 및 지원대책 강구
8. 건설자재의 일시적 품귀 및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등 대비 및 생산업체에 자재공급 협조 방안강구 등

호우시 본부장 임무 및 역할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총괄·조정
-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회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피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예·경보 발령 및 특별지시
- 재난사태 선포건의
- 도지사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동원발령 요청
- 수습지원단 구성·파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호우시 단계별 조치사항

① 호우주의보 ⇨ 사전대비체제로 전환

-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동두천기상대장과 긴밀 협조체제 유지
- 재해취약시설 (위험구역, 침수피해예상지구)관리
-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폭설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각 실과소장 및 동장에게 전화 및 폭설대비 특별지시
- 호우대비 특별지시
 - 산사태 위험지구 예찰활동 강화

② 호우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재난사태 선포건의 (필요시)
- 호우피해 예상시 상황지휘
- 도지사주재 관계기관 회의 참석
- VIP, 도지사 등 종합상황실 방문시 접견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대응계획서 요청 (필요시)
-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요청
- 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필요시)
- 각 실과소동, 유관기관, 피해수습상황 확인 및 요청

③ 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 피해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설명
- 피해조사 및 도본부장에게 피해상황보고
- 응급복구를 위한 부족 장비·인력 등 응원요청 (필요시)
-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피해조사 및 보고
-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 재난현장에 수습지원단 파견 (필요시)

① 호우주의보 ⇨ 사전대비체제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p>사전대비체제 (호우주의보)</p>	<p>○ 종합상황실 방문,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구 등 시설물 사전점검 - 가로등·신호등 감전사 피해방지 등 <p>※ 본부장님 당부내용 시도에 시달 (통제관)</p>	<p>【붙임 1】 말씀자료</p>
	<p>○ 동두천기상대장과 회의 (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강우량 및 사전조치할 사항 등 	
	<p>○ 지역위원회 회의 주재 (호우피해 예상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p>※ 전반적인 호우상황 보고 : 안전총괄과장</p>	<p>【붙임 2】 말씀자료</p>
	<p>○ 호우피해 예상 각실과소동장에게 직접 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예방 철저 등 <p>※ 본부장님 당부내용 각실과소동에 시달 (안전총괄과장)</p>	<p>【붙임 3】 말씀자료</p>
	<p>○ 종합상황실 방문, 현황파악 및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우려지구 예찰강화 등 <p>※ 본부장님 당부내용 시도에 시달 (통제관)</p>	<p>【붙임 4】 말씀자료</p>

③ 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복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관련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주택수리비·이재민구호비 등은 시 보유 재난 대책기금에서 우선지원 후 복구비로 정산하고 응급 조치에 차질없도록 조치 	【붙임 7】 말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지원단 파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수습지원, 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파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주재 관계기관장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협의 ※ 수행 : 의정부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도지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접수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보고 ※ 보고 : 통제관 또는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도지사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협의 및 수행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현황 파악 및 수재민 위로 ※ 일정협의 및 수행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조사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액 및 복구예상액 산정, 피해원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조사단의 피해액 및 복구예상액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극심한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관계기관에 확정통보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확정 	

붙 임

1. 집중호우 대비 특별지시 말씀
2.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협조사항
3. 인명피해예방관련 특별지시 말씀(전화)
4. 지속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지시 말씀
5. 홍수예보(주의보·경보)에 따른 특별지시 말씀
6. 수계 수해예방대책 특별지시 말씀
7.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말씀

여 백

집중호우 대비 특별지시 말씀

- 지난 ○월 ○○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지방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각 실과소동에서는 재해위험 시설물 사전점검·정비, 수해취약지역의 수난구조·구급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고 다음사항을 해당 유관기관 및 부서에 전파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음 =

가. 재해대책 상황근무 철저

- 주요하천 상류지역에 호우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하류지역에서도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주의보·경보 등에 대비, 사전 비상근무 등 실시
- 각 실과소에서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 비상근무태세 및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

나. 재해위험지구 등 시설물 사전점검·정비 철저

- 재해위험지구의 책임자 지정 등 현장관리 철저
- 주택의 축대붕괴위험지구를 파악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호우시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붕괴대비 특별대책을 강구
-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사전 예찰강화
 - 특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E급 시설물 특별관리
- 대규모공사장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강화
 - 특히,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

- 공사중인 수해복구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예방대책 확행
- 마을노인·통장 등 주민들과 하천제방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보수·보강중인 사업장은 조속히 완료조치
-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등 예찰을 강화하고 제체누수 및 파이핑현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긴급정비반을 투입, 정비조치 등.

다. 가로등·신호등 감전사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정비 철저

- 도로과, 교통기획과,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등과 안전대책 수립시행 및 협조지원체제 구축
- 부적합 시설 정비완료 후 전기안전공사 재점검 및 미정비 시설물에 대한 단전조치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 아파트 보안등·전기광고물 등 사설전기시설물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강화

라. 수난구조구급 강화로 계곡 등 수해취약지역 수난사고 예방

- 자원봉사자 등 배치, 예방 및 구조활동 강화
- 물놀이, 수영, 수상레저 등 수상사고 취약지역 및 익사빈발지역 간이 구조장비 비치 등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협조사항

공통사항

- 집중호우 대비 상황실 설치 운영
-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장 정위치 진두 지휘
-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해당실과소 및 유관기관 관리시설물 점검·정비
- 응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확보 및 인력동원체계 점검
- 통신두절대비 비상통신수단 확보태세 점검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 및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공보담당관, 지역방송국, 유선방송

- 지역 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사항 보도 요청
- 언론기관에 재해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사항 협조
- 각종 보도매체의 안내, 지원, 통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KBS의 재난방송체계 적극 활용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실시
- 라디오·TV방송 보도와 관련한 사항 처리

지역경제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림시설 점검
-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점검

- 배수문, 원동기 및 배수펌프의 조작기능 점검
- 농경지 배수로 정비 및 낙과 방지를 위한 지주대 보강
- 비닐하우스 시설의 중앙파이프 보강 및 결속 보완
- 산사태위험지, 사방댐, 임도시설 점검
- 산림휴양 및 표고재배시설, 양묘장, 조경수재배지 등 시설 관리

정보통신과, KT의정부지사, 의정부우체국

- 통신두절대비 비상용 통신수단 확보 및 긴급 통신소통을 위한 지원태세 점검
- 재해취약 통신시설의 점검 관리
- 긴급복구용 자재,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보건소,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 학교강당, 교회, 마을회관, 공공건물 등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 화장장, 공원부지 등 소관시설 점검
- 비상근무태세 점검
- 의료기자재,약품, 방역·소독약품 및 구호품 관리상태 점검
- 응급의료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대기

청소행정과, 수도과, 맑은물사업소

- 상·하수도시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점검
-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시 수거 및 처리체계 점검
- 쓰레기 임시적환장 지정, 쓰레기 긴급수거용 운송장비 및 인력동원 확보체계, 긴급 식수원 공급대책 등 점검

도로과, 교통기획과, 안전총괄과

- 댐 사전 예비방류 검토 및 방류 실시
-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상황 파악 및 체계 점검
- 공사현장 안전조치 확립 및 홍수예경보 발령태세 점검

- 도로, 하천 등 시설물 점검
- 긴급 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관리
- 수계별 주요지점 수위현황 수시 파악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 고립예상지역의 119, 군부대 등과 연계한 인명구조태세 점검
- 산간, 계곡, 하천, 유원지 등 야영·등산객, 낚시꾼 등 대피유도
- 신호등 감전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조치
-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활동체계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북부사무소

- 국립공원내 시설물 관리
- 산간, 계곡, 해변, 야영지, 하천변 등 재해우려 지구내 탐방객의 출입통제 및 안전지대 대피 등 안전관리

인명피해예방관련 특별지시 말씀(전화)

- 지역에 따라 ○○~○○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예상되고) 있어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으니 단 한건이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1. 국립공원 및 피서객이 모이는 유명 산간계곡에 행락객 출입통제 철저
 2. 물에 잠긴 도로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통행 일제통제
 - 일부지역에서 통행제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통행하던중 급류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발생
 3. 산사태 위험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사전안전대피 및 수용
 - 국지성 집중호우로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산사태, 침수사례 빈발하고 있어 사전대피 요망
 4. 산간계곡에 대피중인 행락객이 있으면 계곡물이 빠질때까지 무리한 하산을 하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피장소에서 대기토록 조치 등

지속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지시 말씀

- 지금까지 ○일간 지속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흙이 포화상태가 되고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 노후 축대·담장, 5m이상 옹벽, 경사진 곳, 절개지 및 산사태 우려지구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2. 산사태 위험지구에 위치한 독립가옥의 주민대피 등 기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 강구 등

홍수예보(주의보·경보)에 따른 특별지시 말씀

1. 하천전역에 관련공무원을 현지 배치하여 위험상황 돌발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사전대피

2. 지역주민 대피 등 적정한 대응태세 만전
 - 하천제방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지역 주민의 사전대피 및 안전수용
 - 이재민 발생에 대비 수용장소, 구호품 확보 지급 등 구호대책 사전점검 및 물자 현지 배치 등

수계 수해예방대책 특별지시 말씀

- ○○~○○기간중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 동안 계속된 강우로 ○○강 유역에서는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홍수경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니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하천제방은 수위상승이 극점에 도달하였다가 수위가 하강할 때 붕괴위험이 큰 만큼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상시배치,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2. 상습침수지역으로 홍수범람 우려가 있는 민가 거주지역은 기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응급복구장비·마대 등 수방자재를 현장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계도하여 응급사태시 시기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특히, 대규모 재해가 심야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북부지사, kt의정부지사 등 모든 유관기관이 연계한 즉각적인 상황대처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말씀

-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람
- 1.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이재민구호비 등은 도(道)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지원하고, 추후 복구비로 정산
- 2. 침수지역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예방접종 실시
- 3. 수해지역 생활쓰레기는 물론, 육상·수상·해상쓰레기 등 각종 수해 쓰레기 제거에 최우선 추진
- 4. 상수도 피해지역은 운반급수 실시로 수재민 생활불편 최소화
- 5.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군인·예비군·민방위대원 등을 동원하여 조기 마무리하되, 전화·전기·가스·수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최우선 복구
- 6. 침수된 농작물 씻어내기,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
- 7.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군·경·소방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급 중앙행정기관, 산하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부족인력 지원 및 총력대응 등 추진
- 8. 응급복구 등 소요예산은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을 지체없이 시달하여 응급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

대설시 본부장 임무 및 역할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지역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주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피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예·경보 발령 및 특별지시
- 재해취약시설 정비·점검 지시
- 제설 장비 및 자재 지정·관리 확인
- 고립예상지역 및 교통두절 대책 수립 확인
- 유관기관 긴밀 협조체제 구축
- 농·수산관련시설 관리 철저 지시
- 제설을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 요청
-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시
- 이재민 보호대책 수립 확인
- 설해피해현장 방문, 응급복구 현황파악 및 이재민 위로

대설 단계별 조치사항

① 대설정보 ⇨ 대응태세 점검

-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동두천기상대장과 긴밀 협조체제 유지
- 재해취약시설(고립·교통두절 예상지구) 관리

② 대설주의보 ⇨ 사전대비체제

-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 주재 (폭설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각 실과소장 및 동장에게 전화 및 폭설대비 특별지시
- 제설 자재·장비·인력 지정 및 전진배치 지시

③ 대설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피해 예상시 상황실 상황지휘
- 제설을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요청
- 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필요시)
-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수습상황 확인 및 요청

④ **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 피해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설명
- 피해조사 및 도본부장에게 피해상황보고
- 응급복구를 위한 부족 장비·인력 등 응원요청 (필요시)
-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피해조사 및 보고

1 대설정보 ⇨ 대응대세 점검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방문,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및 기온강하에 대비, 사전점검 철저 등 ※ 본부장 당부내용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시달 (통제관) 	대설정보 발효시 【붙임 1】 특별지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기상대장과 긴밀 협조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적설량 및 사전 조치할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해피해 예상 지역 동장에게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예상지구 ·고립예상지구에 구조구호대책 및 교통 소통 대책 강구 및 사전대비 철저 - 상습교통두절 예상지구 ·제설장비·인력 배치 현황과약 등 - 자치단체간 제설작업 연계체계 구축 ※ 본부장 전화내용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시달 (통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도로 등 교통소통대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과, 교통기획과,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전화 ·도로 제설대책 점검 및 철저한 제설작업 실시 당부 	

② 대설주의보 ⇨ 사전대비체제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준비단계 (사전대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원회 회의 주재 (설해피해 예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 전반적인 폭설상황 보고 : 안전총괄과장 ※ 도재난대책본부에 사전대비 활동 보고(통제관) ※ 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군부대, 의정부경찰서, 국립공원 북한산북부사무소,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소방서 등 	대설주의보 발효시 【붙임 2】 협조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방문 상황판단회의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파악 및 특별지시 - 수도권경계지역 출·퇴근 대책 강구 - 공무원 출·퇴근시간 조정 검토 ※ 본부장 지시내용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통제관) 	【붙임 3】 특별지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예상 동장에게 직접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화칼슘 총동원 및 인접자치단체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본부장 당부내용 각 동에 시달(통제관) 	【붙임 4】 말씀자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 장비·자재·인력 전진배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예상지역 담당 실·과장 지원 - 피해 예상지역 제설 장비·인력 전진배치 - 피해 예상지역 사전 염화칼슘 등 살포 	

3 대설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비상단계	<p>○ 대설경보 발효시 상황실에서 상황지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과, 교통기획과, 의정부소방서 및 각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예방철저 및 피해상황 신속 파악 당부 <p>※ 도재난대책본부에 피해상황 및 사전예방활동 보고(통제관)</p>	대설경보 발효시
	<p>○ 대설경보에 따른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동 확행 - 군·경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인명 구조 및 이재민구호 체계 점검 <p>※ 본부장 지시내용 각 동에 시달(통제관)</p>	
	<p>○ 지역방송매체(TV 등)와 협조, 홍보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자가용차량 운행 자제 - 대중교통 이용 등 <p>※ 지역방송사, 케이블 TV, 마을앰프 등</p>	
	<p>○ 상황관리관 파견(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운영 - 신속한 재난수습 지원 - 지원사항 관계기관본부 등에 협조요청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비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근이 쉬운 장소 설치(필요시) - 수습책임이 있는 해당 실과소동장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 가능 	대설경보 발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 장비·인력 등의 동원명령 및 응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민방위대 동원(필요시) - 제설 자재 기 지정된 장비·인력 동원 - 부족 장비·인력에 대한 응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내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필요시) - 의정부경찰서장에게 도로구간 통행제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관련기관에 재난상황대응 확인 및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현황·대응조치 및 진행단계별 조치 계획 확인 - 협약된 인근 군부대 동원 인력 요청 등 - 확인후 필요한 조치 요청 및 의견 제시 	

④ 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복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비닐하우스 철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요청(인근지역 군부대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 인력 지원 요청 - 각 동 ·선지원 후정산 제도 적극 운영 등 ※ 본부장 협조 및 지시내용 유관기관 및 각동에 시달(통제관) 	<p>[붙임 5, 6] 특별지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인력 최대한 동원 응급복구 실시 - 이재민 보호 대책에 필요한 사항 - 주민생활관련 사항 최우선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 투입(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발생시 - 이재민 보호 대책에 필요한 사항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현장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접수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보고 ※ 보고 : 통제관 또는 안전총괄과장 		

단 계 별	행 동 요 령	비 고
	<p>○ 주요인사 피해현장 방문시 안내</p> <p>※ 일정협의 및 설명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p>	
	<p>○ 설해피해현장 방문</p> <p>- 응급복구현황 파악 및 이재민 위로</p> <p>※ 일정협의 및 수행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p>	
	<p>○ 합동조사단 파견</p> <p>- 피해액 및 복구예상액 산정, 피해원인 조사</p>	
	<p>○ 위원회 개최(필요시)</p> <p>-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협의</p> <p>※ 보고자료 작성 : 안전총괄과장</p>	
	<p>○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p> <p>-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각 실과소 등에 확정통보</p> <p>※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확정</p>	

붙임

1. 설해대비 특별지시 말씀
2. 관계기관별 주요 협조사항
3. 주민불편 해소 관련 특별지시 말씀
4. 관계기관장에게 당부 말씀자료(전화)
5. 응급복구관련 관계기관 협조사항 말씀자료
6.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말씀

여 백

설해 대비 특별지시 내용

- 대설 및 기온 강하에 대비한 보온 기자재의 사전 점검과 정비 철저 등 주민홍보 강화
-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눈을 쓸어 내리는 등 홍보 및 계도 철저
- 비닐하우스 피복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노끈으로 견고히 묶는 등 조치
-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함으로써 눈이 녹도록 조치하고 보온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는 수시로 눈 쓸어 내리기 작업을 실시하여 붕괴 방지
- 노후화 하거나 붕괴우려 농림시설(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은 버팀목을 보강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축사 주변의 배수로를 깊게 정비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濕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막을 제거하여 설(雪)하중으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
-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이 탈락되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하는 등 설해피해대책 강구 철저 등

관계기관별 주요협조사항

공통사항

- 각급 기관장 정위치 근무 등 비상근무태세 유지
-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관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공보담당관, 지역방송사

- 매스컴을 통한 각종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
- 폭설대비 대국민 행동요령의 대대적인 홍보 추진

의정부교육지원청

- 폭설 피해지역 임시휴교, 단축수업 등 검토
- 언론매체를 이용, 학생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

인근 군부대

- 군(軍)보유 제설장비 및 동원 병력 지원체계 구축
- 제설 및 응급복구작업 동원 가능 군부대 투입 검토
- 응급복구 예하 군부대 주변 도로의 제설작업 실시

지역경제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대책 강구

- 시설원예 등 특작시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강구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도로과, 의정부소방서,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철도공사성북시설사업소

- 국도 등 교통통제 및 제설대책 총괄 추진
-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비상시 대중교통 수단 강구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 대설상황에 따른 교통통제 등 비상근무 실시
- 주요 교통취약구간 기동순찰반 배치
-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흐름 조정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 대설에 따른 단계별 국립공원 입산통제계획 수립 추진
- 유관기관과 협조, 조난자 구조를 위한 헬기지원체제 구축
- 등반객, 조난자를 대비한 비상대피소 설치 운영

주민불편 해소 관련 특별지시 내용

1. 도시지역 등 출·퇴근 시민 교통수송대책 강구
 -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및 R.H(러시아워) 시간대 연장운행
 - 시내버스 막차 연장운행
 - 택시부재 해제 및 터널 통행료 면제
2.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1시간 단축)
3. 초·중고생 등교시간 1시간 연장 및 일부시군 초·중고 휴교조치

관계기관장에게 당부내용 자료(전화)

-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총동원, 결빙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 대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사용가능한 염화칼슘을 폭설지역으로 지원·협조하는 등 인접 동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응급복구관련 관계기관 협조사항

1. 설해피해 주요시설인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은 시설물 철거시 전문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나, 시설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접 별도의 전문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재 용접 및 절단이 가능한 산업기술인력 및 군병력(공병대)을 선발,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요청(인근부대, 의정부지방노동주민센터)
2. 피해농가에서 비닐하우스용 철재 등 자재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기공급 요청 (조달청, 농협중앙회 의정부 지부)
3. 응급복구작업에 동원된 경찰관 등 응급복구 투입인력에게 복구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화 등 필요한 장비·자재 등 적극 지원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내용

-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람
- 1. 사유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피해주민에게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정산」 제도 적극 운영
- 2. 피해인근지역 공무원, 지역 군부대, 시민단체 등과 협조, 인력·장비·구호물품 등을 적극 지원, 조기 수습 조치
- 3. 산간 오지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생필품 공급, 농산물 수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
- 4. 농업기술센터, 타기관 및 타부서 가용인력을 폭설피해 현장에 모두 투입, 피해조사 실시
- 5. 아직까지 눈이 덮혀 있는 산간오지 등은 피해조사 시 누락·과다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공무원 피해조사교육 철저
- 6.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인삼재배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등 조기 지원대책 강구
- 7. 비닐하우스 복구용 철재파이프 조기 확보 방안 강구
- 8. 피해를 입은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구호 특별휴가 검토 등

본부장 임무 및 역할 (공통사항)

가. 대비단계

- 1)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
- 2)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협조 및 파견요청
- 3)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4)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5)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6)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7)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지정·관리 및 정비
- 8) 방재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9) 관할 지역내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실시
- 10)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조치 통보

나. 대응단계

-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이나 의정부시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제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를 명령
 - 4) 응급조치의 실시예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

다. 복구단계

-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제공
- 2) 동원명령, 응급부담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
- 3)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구조 종사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4)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원

2. 차장 (부시장)

- 본부장의 업무보좌 및 부재시 역할 대행

3. 총괄조정관 (자치행정국장)

-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안전교통건설국장)

- 실무반 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총괄조정관을 보좌
 - 1) 재난사전대비 추진지침 시달 및 점검
 - 2)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지시 및 확인
 - 3)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수립
 - 4)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관리
 - 5)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수립
 - 6)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7) 응급복구대책 수립
 - 8) 방역 및 보건위생대책
 - 9) 인력·장비 동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10)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 11)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확인·보고
 - 12) 피해조사 완료 후 피해상황 보고
 - 13) 복구계획 수립
 - 14)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5.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 각 실무반별 업무 팀장, 각 소관업무별 통제관 보좌

6. 실무반

○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수행

가. 상황총괄반

1) 대비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취약지구 예찰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산간계곡 행락지와 위험구역내 야영객 대피
- 지역자율방재단,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비상대기 조치
-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현황 파악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구축 및 대기조치

2) 대응단계

- 동, 재해지역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강우량, 하천수위 시간별 보고
- 재난재해통합영상망 상시 모니터링
- 실과소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 소집 및 비상근무 파악
- 실과소별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망 파악 및 대기조치
-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방위대원의 비상출동대기 민방위 경보통제소 상황연락
- 수난구조활동 신속 전개
-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물자, 이재민구호 및 수용시설, 사망자, 부상자 조치대책 강구

3) 복구단계

- 상황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및 본부장 특별지시 처리
- 인명피해, 재산피해 자료 취합 및 분석관리
- 상황분석·판단 및 민심동향·미답사례 파악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분석 조치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안전총괄과, 총무과

○ 임 무

▶ 안전총괄과 【☎ 828 - 4331~4】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회의준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서 작성 등)
- 인명피해 자료 취합 및 분석관리
- 재난진행사항 파악·전달·처리 및 종합집계
- 문제점, 애로사항 분석 조치
- 기상파악 및 전파
- 강우량, 하천수위 등 데이터 파악
- 기상특보 발효시 단계별 비상소집(문자메세지 발송) 행정지원반에 통보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총괄
- 피해발생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 피해현장에 장비투입

▶ 총무과 【☎ 828 - 2991~6】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 주요인사 및 본부장 특별지시 처리
- 유관기관 비상근무 통보 및 근무자 복무관리

나. 행정지원반

1) 대비단계

- 비상근무명령 발령·확인·복무단속
- 각종 회의준비 및 개최

2) 대응단계

- 비상근무자 복무단속
- 주요인사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통제관,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3) 복구단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근무체계 개선 및 근무수칙 보완
- 수해복구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 임 무

▶ 기획예산과 【☎ 828 - 2041~5】

·주요인사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각종 회의준비 및 개최

·통제관,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근무체계 개선 및 근무수칙 보완

·수해복구 재원 확보 계획 수립 및 부족재원 대책

※ 단, 복구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감사담당관 【☎ 828 - 2551~5】 , 총무과 【☎ 828 - 2121~6】

·근무명령 발령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다. 구조구급반

1) 대비단계

- 구조구급 상황파악 관리
- 의료시설, 물자·장비 확보

2) 대응단계

-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제 가동
-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3) 복구단계

-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
- 부상자 치료 및 수송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보건관리과, 안전총괄과(민방위팀), 의정부경찰서(경비교통과)

의정부소방서(구조구급과)

○ 임 무

▶ 보건관리과 【☎ 828 - 4551~9】

·구조구급 상황파악 관리, 부상자 의료지원 및 가동의료반 편성운영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제 가동

·의료시설, 물자·장비 확보, 방역소독 및 기동 방역반 편성운영

▶ 안전총괄과(민방위팀) 【☎ 828 - 4361~5】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의정부경찰서(경비교통과) 【☎ 849 - 3129,3356】

·구조구급 지원

▶ 의정부소방서(구조구급팀) 【☎849 - 7420~2】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

·부상자 치료 및 수송

라. 비상지원반

1) 대비단계

-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상·하수도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파악

2) 대응단계

-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철도, 교량, 도로 등 교통통제 및 해제사항 공지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사항 공지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3) 복구단계

- 파견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
-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사망·실종사 유족대책, 응급대책 구호 실시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가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문화재피해 복구현황 파악
- 농작물·농경지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교통기획과, 경전철사업과,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도로과, 업무지원과, 녹색환경과, 수도과, 하수도과, 의정부경찰서(경비교통과), 한전경기북부지사, KT의정부지사, 65사단, 2군수지원사령부, 306보충대, 103공병대, 762통신지원대

○ 임 무

▶ 문화관광체육과 【☎828 - 2151~5】

- 문화재시설 안전점검
- 문화재시설 응급복구

▶ 위생과 【☎828 - 4371~4】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청소행정과 【☎828 - 2821~4】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교통기획과 【☎828 - 2841~4】 , 의정부경찰서(경비교통과) 【☎ 849 - 3129,3356】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세무과 【☎828 - 2201~5】

-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
- 지방세 징수유예 여부

▶ 회계과 【☎828 - 2601~8】

- 자연재난복구공사시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
-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선금(의무지급율) 지급

▶ 지역경제과 【☎828 - 2311~5】

- 농작물,농경지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
- 우기전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추진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공원녹지과 【☎828 - 2341~5】

- 전도된 수목제거
- 절성토 사면등 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조치 강구
- 산사태 등으로 피해우려가 있는 곳은 응급복구 실시 및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경전철사업과 【☎828 - 4011~4】

- 경전철 운영현황 및 피해상황 파악, 보고

▶ 주택과 【☎828 - 4241~4】

- 대형건축공사장 안전대책 확보 및 실태 점검
- 침수,전과,반과 등 피해조사반 편성
- 옥외 광고물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조치 강구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도로과 【☎828 - 4241~4】

- 도로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사업 추진 (도로 배수처리 등)
- 도로에 대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수립, 실시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828 - 2891~6】

- 하천시설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사업 추진 (하천개수, 소하천 정비사업 등)
- 하천시설에 대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수립, 실시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맑은물 환경사업소(업무지원과, 녹색환경과, 수도과, 하수도과)

-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가스, 전기시설 사전점검 및 공급중단 대비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의 전기, 연료공급 등 지원대책 수립
- 비상급수 또는 제한급수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주거정비과 【☎828 - 4241~4】

-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대형 공사장 안전대책 확보 점검실시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교통지도과 【☎828 - 2881~4】

- 중랑천 둔치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 수해긴급구간 차량 강제 견인 조치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시민봉사과, 여성가족과, 도시과, 각 동 주민센터,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한전경기북부지사, KT의정부지사, 65사단, 2군수지원사령부, 306보충대, 103공병대, 762통신지원대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마. 자원봉사지원반

1) 대비단계

- 자원봉사협조체제 구축
-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2) 대응단계

- 자원봉사단체 합동근무 실시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3) 복구단계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복구활동 지원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
- 타 시·도 자원봉사 지원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

○ 임 무

▶ 주민생활지원과 【☎828 - 4051~6】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사 유족대책, 응급대책 구호 실시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타 시·도 자원봉사 지원

바. 공보지원반

1) 대비단계

- 재난상황단계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대응단계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 각종 보도·상황자료 배포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TV·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 TV·라디오 기상·뉴스속보, 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대응·정정보도

3) 복구단계

- 홍보상황·실적 기록 및 정리·보고

4) 반원편성 및 임무

○ 구 성

- 공보담당관 공보팀·홍보기획팀
- 정보통신과 정보개발팀

○ 임 무

▶ 공보담당관 공보팀·홍보기획팀

- TV·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 TV·라디오 기상·뉴스속보, 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대응·정정보도
- 홍보상황·실적 기록 및 정리·보고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과건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철도, 교량, 도로 등 교통통제 및 해제사항 공지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사항 공지

▶ 정보통신과 정보개발팀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 각종 보도·상황자료 배포
-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 공보담당관 공보팀

- 상황분석·판단 및 민심동향·미담사례 파악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 상황실 장비 관리 운영

제2절 소관 실·과별 주요임무

상황근무요령

- ◆ 해당 실·과소 팀직원 1인 이상은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실시
- ◆ 상황근무복 착용후 근무에 임하고, 이석시 팀장의 동의를 받음
- ◆ 모든 재해사전 조치사항 및 결과는 반드시 상황실을 경유토록 조치
- ◆ 상황 종료 후 시간대별 상황진행 및 개략적인 피해 현황 제출

1. 안전총괄과

가. 대비단계

태 풍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사항 전파
- 시간대별 상황근무 일지 작성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각동주민센터 주무·방재팀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기상특보사항)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배수펌프장 및 간이빗물펌프장 담당자 비상근무 통보
- 임차단가계약 중기업체에 비상대기 통보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자메세지 및 유선통보 (하천 둔치주차장 견인차량 비상대기)
 -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828 - 2882 ~ 7
 - ☑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828 - 6841 ~ 7
- 주택과 광고물팀 비상근무 유선통보 (건물 입간판, 옥외광고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제거 및 결속 당부)

▶ 주택과 광고물팀 828 - 4501 ~ 4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통보 (입산통제 및 야영객 대피 등 상황관리 철저 당부)

▶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둔치주차장 차주 문자메세지 발송 (차량 이동주차 및 통제 협조)
- 재해취약지구 예찰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하천저지대, 상습침수우려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앰프 및 자동음성통보 (현재 기상상황 및 주민 주의사항)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
- 시간별 강우량 기록 및 보고

호 우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사항 전파
- 시간대별 상황근무 일지 작성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다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각동주민센터 주무·방재팀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기상특보사항)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배수펌프장 및 간이빗물펌프장 담당자 비상근무 통보
- 임차단가계약 중기업체에 비상대기 통보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자메세지 및 유선통보 (하천 둔치주차장 견인차량 비상대기)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828 - 2882 ~ 7

▶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828 - 6841 ~ 7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통보 (입산통제 및 야영객 대피 등 상황관리 철저 당부)
 - ▶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둔치주차장 차주 문자메세지 발송 (차량 이동주차 및 통제 협조)
- 재해취약지구 예찰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하천저지대, 상습침수우려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앰프 및 자동음성통보 (현재 기상상황 및 주민 주의사항)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
- 시간별 강우량 기록 및 보고

대 설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사항 전파
- 시간대별 상황근무 일지 작성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 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각동주민센터 주무·방재팀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기상특보사항)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도로관리1팀 비상근무 유선통보 (도로순찰 및 제설철저 당부)
 - 경기도홍수정보시스템에 제설작업 현황 입력 철저 당부
 - ▶ 도로과 도로관리1팀 828 - 2981 ~ 6
- 교통통제 및 두절지구 현황 보고 철저 당부
 - ▶ 도로과 도로관리1팀 828 - 2981 ~ 6
 - ▶ 교통기획과 대중교통물류팀 828 - 2871 ~ 4
- 농축정팀 비상근무 유선통보 (농·축산시설 보호조치 당부)
 - ▶ 지역경제과 농축정팀 828 - 2311 ~ 6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통보 (입산통제 및
야영객 대피 등 상황관리 철저 당부)

▣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재해취약지구 예찰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
- 시간별 강설량 기록 및 보고
- 제설작업 현황 파악

황 사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828 - 248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4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권고
 -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828 - 2281 ~ 3
 - ▣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 820 - 0120 ~ 6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가 목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가뭄대책 상황보고서 작성
 - ▣ 지역경제과 농축정팀 828 - 2311 ~ 6
- 강수량, 저수지 저수율, 하천수위 등 데이터 파악
- 절수운동전개 등 대민 홍보 실시
 - ▣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828 - 248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4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 가뭄취약지구 단계별 제한급수 준비

지 진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전 실·과소 직원 비상소집 통보
- 재난대비 비상통신망(위성전화기) 확보
-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 공보담당관 홍보기획팀 828 - 237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5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협조체제 구축
- 재난관리시스템에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 입력

나. 대응단계

태 풍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및 비상근무 전파
- 해당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비상근무통보)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해당실과소 상황실 파견 요청)
- 마을애플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배수펌프장 및 간이빗물펌프장 보강근무자 비상근무 통보
- 재난재해통합영상망(CCTV)을 통해 현재 상황 수시로 확인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필요시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임차장비 투입
- 필요시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하천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강제전인 요청
 -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828 - 2882 ~ 7
 - ▣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828 - 6841 ~7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상류지역의 강수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위상승에 대비해 차량통제 등 조치
 - ▣ 도로과 도로관리1팀 828 - 2981 ~ 6
- 산업시설물 파손시 유관기관에 연락 긴급복구 조치
- 입간판, 광고물 낙하 및 파손에 대비 관내 순찰 강화 지시
 - ▣ 주택과 광고물팀 828 - 4501 ~ 4
- 대형공사장 작업중단 요청
 - ▣ 부록 대형공사장 현황 참고
- 위험구역(원도봉산유원지, 안골유원지) 강제대피 조치
 -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통보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필요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시간별 강우량 기록 및 보고

호 우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및 비상근무 전파
- 해당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비상근무통보)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해당실과소 상황실 파견 요청)
- 마을애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배수펌프장 및 간이빗물펌프장 보강근무자 비상근무 통보
- 재난재해통합영상망(CCTV)을 통해 현재 상황 수시로 확인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다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필요시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임차장비 투입
- 필요시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하천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강제견인 요청
 -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828 - 2882 ~ 7
 - ▶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828 - 6841 ~7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상류지역의 강수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위상승에 대비해 차량통제 등 조치
 - ▶ 도로과 도로관리1팀 828 - 2981 ~ 6
- 산업시설물 파손시 유관기관에 연락 긴급복구 조치
- 입간판, 광고물 낙하 및 파손에 대비 관내 순찰 강화 지시
 - ▶ 주택과 광고물팀 828 - 4501 ~ 4
- 대형공사장 작업중단 요청 ▶ 부록 대형공사장 현황 참고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통보
(입산통제 및 야영객 대피 등 상황관리 철저 당부)
 ▶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필요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시간별 강우량 기록 및 보고

대 설

- 전자문서를 통해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및 비상근무 전파
- 해당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비상근무통보)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해당실과소 상황실 파견 요청)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재난재해통합영상망(CCTV)을 통해 현재 상황 수시로 확인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다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비닐하우스, 축사, 낡은 주택 붕괴에 대비 행동요령 지도 요청
 ▶ 지역경제과 농축정팀 828 - 2311 ~ 6
 ▶ 주택과 일반건축팀 828 - 4241 ~ 4
- 위험구역(원도봉산유원지, 안골유원지) 강제대피 조치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재난안전관리반 828 - 8000 (대표번호)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필요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시간별 강설량 기록 및 보고
- 제설작업 현황 파악

황 사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강화
 - ▣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828 - 248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4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필요시 휴업 또는 단축수업 요청
 -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828 - 2281 ~ 3
 - ▣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 820 - 0120 ~ 6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 목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가목대처 추진현황 작성 (지역경제과와 협의)
 - ▣ 지역경제과 농축정팀 828 - 2311 ~ 6
- 절수운동전개 등 대민 홍보 강화
 - ▣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828 - 248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4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필요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가목취약지구 단계별 제한급수 실시 요청
 - ▣ 수도과 급수관리팀 828 - 2441 ~ 9

지 진

-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 특보 전파
-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해당실과소 상황실 파견 요청)
- 마을앰프 방송(기상특보 발효사항 및 주민주의 사항)

-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강화
 - ▣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828 - 2481 ~ 5
 -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 - 2531 ~ 4
- 필요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피해 발생시 수시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다. 복구단계

- 하천둔치주차장 차량전인 현황 파악 보고 요청
 - ▶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828 - 2882 ~ 7
 - ▶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828 - 6841 ~ 7
- 자연재난 종료후 보고서 작성후 상부(팀과장, 팀국장) 보고
단, 피해발생시 부서장, 시장까지 보고
예) 강우량 보고서, 제설현황 보고서 등
- 상황종료후 각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별로 피해사항 파악 요청
- 피해발생시 7일 이내 실과소별로 피해내용 재난관리시스템에 최초보고 요청
단, 최초보고시 보고내용 방재팀에 통보 요청
- 피해 발생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피해 발생시 중기 단가계약 업체에 임차장비 피해현장 투입 지시
- 전기설비, 수도관, 가스관 등 안전점검 요청
 -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849 - 1299
 -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850 - 7034
 - ▶ KT의정부지사 875 - 0060
 -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894 - 5528
 - ▶ 대륜 E&S 951 - 0220
 - ▶ 수도과 상수시설팀 828 - 4451 ~ 3
- 민방위대원, 자원봉사단체 복구 및 구호 활동에 투입 요청
 - ▶ 민방위대원은 각 동주민센터에 요청
 - ▶ 자원봉사센터 828 - 2108 ~ 9
 -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828 - 4361 ~ 5
- 이재민 발생시 인근 수용시설에 이재민 수용 요청
 -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828 - 4051 ~ 6
- 이재민 구호물자 지급 및 방역 실시 요청
 -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828 - 4051 ~ 6
 - ▶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 828 - 4551 ~ 3
- 해당 실과소별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피해사항 정밀 조사

(피해규모 및 피해액 파악,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해지역 사진촬영 등)

- 사유시설인 경우 사유시설 재해확인조서 작성
- 각 피해내용별로 재해대장 작성 (각 실과소에서 작성후 1부는 방재팀부서에 제출)
- 피해내용 최초보고후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보고 각 실과소에 요청
- 각실과소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후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토록 요청
- 각 실과소별로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한 피해내용을 집계해 방재팀부서에 최종보고
- 피해내용을 최종 집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최종보고

2. 도로과 (태풍, 호우, 대설)

가. 대비단계

태 풍

- 지하차도 담당자 비상근무
- 공사장, 중요 방재시설 등 시설물 점검
-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점검

호 우

- 지하차도 담당자 비상근무
- 공사장, 중요 방재시설 등 시설물 점검
-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점검

대 설

- 각 동주민센터 제설작업 비상근무 통보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다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지도
- 제설취약구간(지하차도, 오르막길 등) 및 상습결빙구간 사전 염화칼슘 살포
- 도로결빙에 대비한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해빙제 곳곳에 배치
- 중기임차장비 비상대기 통보

나. 대응단계

태 풍

- 지하차도 침수시 배수펌프 가동
- 침수도로구간 보행·접근 금지
- 교통두절구간 우회도로 설치
- 공사장 작업중지 및 태풍 대비 비상근무 지시

호 우

- 지하차도 침수시 펌프 가동
- 교통두절구간 우회도로 설치
- 공사장 작업중지 및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지시

대 설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제설취약구간(지하차도, 오르막길 등) 및 상습결빙구간 초동제설작업 실시
-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 실시
- 대설 피해지역에 중기임차장비 긴급 투입
- 제설작업중 자재, 장비 및 인력 부족시 인근 지자체·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월동장비 미부착 차량 통제 실시
- 경기도홍수정보시스템에 제설작업 현황 입력
- 교통두절 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

다. 복구단계

- 상황종료후 제설작업 투입(자재, 장비, 인력 등) 현황 파악
- 상황종료후 보고서 작성 상부에(재난담당부서 과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보고. 단, 피해발생시 부서장, 시장까지 보고
- 상황종료후 도로시설물 피해사항 파악
- 제설작업으로 사용한 제설자재 재보충
- 피해발생시 7일 이내 피해내용 재난관리시스템에 최초보고 단, 최초보고시 보고내용 재난담당부서에 통보 요청
- 피해 발생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피해 발생시 중기 단가계약 업체에 임차장비 피해현장에 투입 지시
- 합동조사반 구성후 피해사항 정밀 조사 (피해규모 및 피해액 파악,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해지역 사진촬영 등)
- 사유시설인 경우 사유시설 재해확인조서 작성
- 각 피해내용별로 재해대장 작성 (각 실과소에서 작성후 1부는 재난 담당부서에 제출)
- 피해내용 최초보고후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보고
- 복구계획서를 작성후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
-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한 피해내용을 집계해 재난담당부서에 최종보고

3. 지역경제과

가. 대비단계

태 풍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기상정보

-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지도
- 논두렁, 둑, 제방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지 점검
- 산사태, 토사유출 지역 수시 점검
- 태풍에 대비 축사 지붕 및 낡은 가옥 보수 및 정비
- 파열된 비닐하우스 보수 등 영농시설 점검, 피해예방 조치
- 용·배수로 점검
- 영농시설 주변 이랑을 높게하고 적절한 배수로 확보
- 꽃길, 화단, 화분관리 및 대형화분 결박 등 안전조치
- 공원조경수에 대한 지주목 설치
- 낙과방지제를 살포하고 낙과시 상처방지를 위해 짚, 산야초 등으로 표토 피복
- 집중호우 피해우려 지역의 가축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확보

호 우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더기상정보

-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지도

- 논두렁, 둑, 제방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지 점검
- 산사태, 토사유출 지역 수시 점검
- 집중호우에 대비 낮은 가옥 보수 및 정비
- 파열된 비닐하우스 보수 등 영농시설 점검, 피해예방 조치
- 영농시설 주변 이랑을 높게하고 적절한 배수로 확보
- 집중호우 피해우려 지역의 가축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확보
- 피해 우려지역의 임도시설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대 설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웹주소 : <http://metsky.kma.go.kr>

I-D : ggd41001

P-W : ui4800

주요메뉴 : 레이다기상정보

▣ 홍수정보시스템

IP주소 : <http://105.0.1.103>

I-D : yjb5320

P-W : 1111

주요메뉴 : 시군별 기상정보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보호조치 강화
- 강설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눈쓸어내리기, 비닐찢기 등 홍보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 비닐 걷어내기 홍보

황 사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지도
-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비닐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준비

가 물

- 관정 등 농업용수 개발
-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조속설치 협조요청
- 수리시설, 양수장비, 용배수로 사전 점검하고 용수확보에 주력

- 가뭄대비 농작물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 및 지도
- 물빠진 저수지 준설 추진
- 가뭄대비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 및 육모관리 강화
- 가뭄 대책용 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강화

나. 대응단계

태 풍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용·배수로 보수
- 산사태, 토사유출 지역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태풍에 대비 축사 지붕 및 낮은 가옥 결박 및 거주 주민 대피조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호 우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용·배수로 보수
- 산사태, 토사유출 지역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집중호우에 대비 낮은 가옥 거주 주민 대피조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피해 우려지역의 임도시설지 접근금지

대 설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접속후 기상상황 예의주시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보호조치 강화
- 강설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눈쓸어내리기, 비닐찢기 등 홍보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 비닐 걷어내기 홍보

황 사

- 방목장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함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가 목

- 소형관정 가동으로 농업용수 급수 실시
- 보유중인 양수장비 이용하여 양수급수 실시
- 농업용 저수지 용수를 공급해 농지해갈 실시
-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자리모 노화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 늦모내기는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 중점지도
-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은 대파 지원
- 가뭄 대책용 장비 및 인력 등 총력 지원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강화

다. 복구단계

- 상황종료후 보고서 작성 상부에(재난담당부서 과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보고. 단, 피해발생시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
-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구연산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 자연재난 발생후 병충해, 전염병 대비 방제실시
- 가축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 4040)
- 상황종료후 농·축·산림 피해시설물 파악
- 피해발생시 7일 이내 피해내용 재난관리시스템에 최초보고
단, 최초보고시 보고내용 재난담당부서에 통보 요청
- 피해 발생시 인근 지차제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 자재·장비 협조요청
- 합동조사반 구성후 피해사항 정밀 조사
(피해규모 및 피해액 파악,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해지역 사진촬영 등)
- 사유시설인 경우 사유시설 재해확인조서 작성
- 각 피해내용별로 재해대장 작성 (각 실과소에서 작성후 1부는 재난 담당부서에 제출)
- 피해내용 최초보고후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보고
- 복구계획서를 작성후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
-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한 피해내용을 집계해 재난담당부서에 최종보고

4. 주택과

가. 대비단계

태 풍

- 건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 제거 및 결속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옥외광고물 지도 점검 및 순찰강화
- 대규모공사장 시설물 점검 및 안전조치
- 태풍에 대비 낡은 가옥 보수 및 정비 지도

호 우

- 각종 공사장 시설물 점검 및 안전조치
- 집중호우에 대비 낡은 가옥 안전점검 조치

대 설

- 각종 공사장 시설물 점검 및 안전조치
- 낡은 주택 붕괴에 대비 안전점검 조치

황 사

- 지하철 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의 환기시설 점검·정비
-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나. 대응단계

태 풍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 대규모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접근금지
- 태풍에 대비 낚은 가옥 결박 조치

호 우

- 대규모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접근금지

대 설

- 각종 공사장 시설물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 낚은 주택 붕괴에 대비 안전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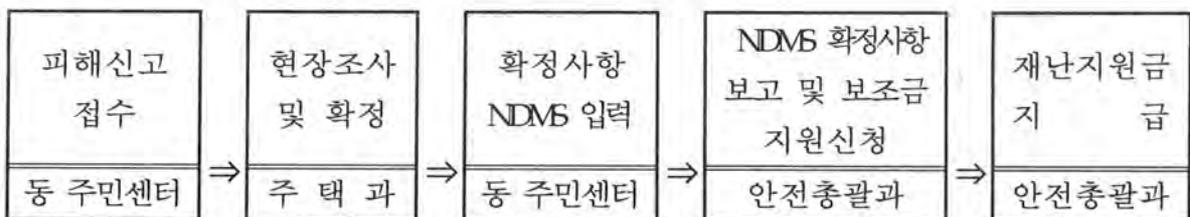
황 사

- 지하철역사, 대형건물 등 환기시설 가동
- 공사장 먼지발생작업 중단 및 실외작업 자제 요청
-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해 비닐 등으로 덮도록 지시

다. 복구단계

- 상황종료후 보고서 작성 상부에(재난담당부서 과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보고. 단, 피해발생시 부서장, 시장까지 보고
- 상황종료후 주택 파손 및 침수 등 피해사항 파악
- 피해 입은 건물 현장보존을 위해 가설울타리 설치
- 지하철 역사, 대형건물 등 환기시설 가동 및 실내외에 쌓인 황사 세척 제거
- 피해발생시 7일 이내 실과소별 피해내용을 취합하여 최초보고 단, 최초보고시 보고내용 재난담당부서에 통보 요청
-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사항 정밀 조사 (피해규모 및 피해액 파악,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해지역 사진촬영 등)
- 사유시설인 경우 사유시설 재해확인조서 작성
- 각 피해내용별로 재해대장 작성 (각 실과소에서 작성후 1부는 재난담당부서에 제출)
- 피해내용 최초보고후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보고
- 복구계획서를 작성후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
-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된 피해내용을 집계해 재난담당부서에 최종보고

※ 사유시설(주택) 피해사항 보고 및 확정절차



5. 주민생활지원과

가. 대비단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리
- 응급 구호물자 확보

나. 대응단계

- 구호물자 등은 요구시 즉시 반출을 위해 사전준비
-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대한적십자사경기북부봉사관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다. 복구단계

- 태풍 피해내역 긴급파악
- 이재민 발생시, 동별 이재민 수용시설에 분리수용 지시
- 긴급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및 비상식량 등) 수송
 - 피해정도 및 가족수에 따라 적정배분
- 구호활동팀 24시간 근무
 -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관리
- 수시보고체제 유지
 -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828 - 4051 ~ 4
 - ▶ 경기도 제2청 사회복지과 031) 850 - 4311 ~ 4
 - ▶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자원정책과 02) 504 - 6231

6. 보건관리과

가. 대비단계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 관리
 - 의료소장 : 보건소장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행정지원반
- 방역장비 점검 및 방역약품 보유량 파악

나. 대응단계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자원 현황 파악 관리
 - 전문과목 및 전문의사 확보현황
 -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확보현황
 - 구급차 확보현황
 - 일반응급실 병상, 중환자실 병상, 예비 병상 및 수술실 등의 확보현황
- 방역기동반 가동
- 유관기관(소독업체) 비상연락망 가동

다. 복구단계

- 초동의료체제 구축
 - 인명구조, 환자수송 등을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의약품, 의료기자재 비축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관리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대책 수립
- 방역대책반 설치·운영
- 피해지역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 방역소독(보건소 및 관내 소독업체 동원)
-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 실시

7. 교통지도과 (태풍, 호우)

가. 대비단계

- 강우량 수시 확인 및 중랑천 수위 감시
특히, 양주시의 강우량 및 중랑천 수위 중점적으로 파악
- 둔치주차장 주변 주택가에서 지도차량을 이용해 주차차량 자진이동 안내방송 실시
- 중랑천변 둔치주차장내 차량진입 전면 통제
- 차량진입 전면통제전 주차된 차량 전수조사(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 유선으로 자진이동 계도
 - 연락처 없을시 차적 조회후 연락
- 강제 견인이 용이하도록 교통통제 및 단속 실시

나. 대응단계

- 둔치주차장 주변 주택가 차량안내방송 지속적으로 실시
- 자진이동토록 유선 연락하면서 강제 견인실시
- 유료주차장(의정부1동 주차장, 의정부3동 주차장)부터 강제 견인
- 무료주차장(의정부1동 주차장(금융APT), 가금교 주차장, 하동교 주차장)은 침수 우선순위에 의거 견인
- 중랑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긴급한 상황시 주차장 인근 사설 업체 견인차 소집

다. 복구단계

- 둔치주차장내 차량 진입 통제 및 수해 차량 견인조치
- 수해 차량 차주 확인 후 인계 조치 및 피해상황 파악
- 하천둔치주차장 차량견인 현황 파악후 재난담당부서에 보고
- 수해차량 확인증명서 발급 등으로 각종 세제혜택 부여

8. 위생과 (황사)

가. 대비단계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나. 대응단계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실외에서 식품가공 및 조리 판매행위 금지

다. 복구단계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실시
-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9. 청소행정과 (태풍, 호우)

가. 대비단계

- 수해쓰레기 임시적환장 4개소 설치 관리
- 수해쓰레기 수거장비 및 운반차량 확보

나. 대응단계

- 수해정도 등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추정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해 경기도와 쓰레기 배출에 관한 임시조치사항 협의조치

다. 복구단계

- 수해지역에 수해쓰레기 수거장비 및 운반차량 투입
- 자체 수거, 운반장비 부족시 인근 지자체, 군부대, 민간단체의 차량·장비 지원 요청
- 수해쓰레기의 물기제거 및 방역소독 실시
- 재활용품 선별
- 수해쓰레기 반입·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과 협의
- 수해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강화

10. 수도과 (가뭄)

가. 대비단계

- 가뭄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절수운동전개 등 대시민 홍보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실시
-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홍복저수지) 점검·정비

나. 대응단계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지속적으로 실시
- 긴급식수원(간이 상수도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긴급용수원 개발 추진
- 물다량사용업소 제한급수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다. 복구단계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11. 하수도과 (태풍, 호우)

가. 대비단계

- 배수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 도로변 집수구 이물질 제거
- 하천변 관거 시설물 지속 점검 및 보수
- 하수도 맨홀 등 위험요소 점검

나. 대응단계

- 배수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도로변 집수구 이물질 제거
- 하천변 관거 시설물 지속 점검 및 보수 강화

다. 복구단계

- 도로변 집수구 이물질 제거
- 토사 퇴적으로 막힌 관로 준설작업 실시

여 백

제 6 장 주민행동요령

1. 태 풍
2. 호 우
3. 대 설
4. 가뭄 및 폭염
5. 지 진
6. 항 사
7. 강 풍
8. 한 파



여 백

제1절 태 풍

태풍예보 시에는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1.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둡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합시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시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근처에 가지 마시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태풍주의보 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집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점검합니다.



태풍경보 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시다.
-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
-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합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
-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주택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을 경우 미리 대피합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 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 위험한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맙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제2절 호 우

1. 호우가 예상돼나요?

-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호우가 지나갔나요?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합시다.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관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시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집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
-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 후에 이용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집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단단히 묶어 둡니다.

제3절 대 설

눈이 많이 내릴(주의보 경보) 때

1. 차량운전자는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합시다.
- 눈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서행 운전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니 삼갑시다.
-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 통행 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합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시다.

2. 보행자는

-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 합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대설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이상 예상 될 때, 다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3. 가정에서는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눈을 치웁니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직장에서는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수단을 이용합니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합니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합니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차량히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차량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연락을 취합니다.
-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제4절 가뭄 및 폭염

가뭄에 대비 합시다.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가정에서는 식기류세척·세수·샤워 시 물을 받아 사용합시다.
- 가정에서 세탁할 때는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합시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합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합시다.
- 개인소유의 우물(관정 포함)은 공동으로 이용합시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논·밭 토양의 수분정도와 농작물의 상태 잘 살펴봅시다.
- 농작물에 피복(멀칭)이 가능한 곳에서는 벚짚, 비닐 등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을 잘 알아둡시다.
- 가뭄이 오기 전에 우물과 같은 용수원을 미리 개발 합시다.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를 잘 점검합시다.
- 수리불안전답 지역에서는 논물가두기, 사용한 물 재사용 등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1. 일반 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세요.

2.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3. 학교에서는

-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 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5. 농가·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하우스 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6. 도로·철로에서는

- 35℃이상 예보 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동원 살수를 실시하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하세요.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1. 일반 가정 등에서는

-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도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2.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3. 학교에서는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4.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 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5. 농가·축가에서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 시는 신속하게 매몰하고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 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6. 도로 · 철로에서는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제5절 지진

지진 이렇게 대비합시다.

-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맙시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시다.
- 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 비상시 서로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하고 모임 장소를 익혀둡시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들이 취해야 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시다.



지진 발생 전인가요?

- 지진발생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니다.
-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부분을 수리합니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크고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도록 하고, 선반은 벽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등은 잠글 수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합니다.
- 균열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 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비상 물자를 준비하여야 하며, 집 주변의 대피장소(공터, 학교, 공원 등)를 미리 알아둡니다.
- 지진이 지나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지진 발생 중인가요?

- 지진 중 발생한 대부분의 부상은 건물을 출입할 때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이므로,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욕실)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합니다.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빨리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건물·가로등·전선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 변화가(빌딩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유리 파편, 간판 등)가 가장 위험하므로 우선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로 대피하거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고 정전되거나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이동 중인 차량은 가능한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도로나 교량의 피해정도를 살피며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합니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합니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검색하거나 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합시다.

지진이 멈추었나요?

-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하여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시킨 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부상자의 호흡과 심장이 모두 또는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경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을 실시합시다.
-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만약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시다.
- 유리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읍시다.
-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 건물(굴뚝, 담장, 벽체 등)을 점검하되,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진단은 멀리 떨어져서 합시다.
- 건물 내에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종류·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두고 대피합시다.
-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해둡시다.
- 가스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다면 메인밸브를 잠급시다.

-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밸브를 잠근 후, 관계기관[지역 도시가스회사 또는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재사용합니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립니다.
- 수도관에 피해를 입었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급니다.
- 하수관로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캐비닛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문은 조심히 열어주세요.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합니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거리로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합니다.
-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해일에 대비합니다.

지진이 끝난 직후의 점검사항

- 여진에 대비합니다.
- 부상자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이웃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 유리조각이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조심합니다.
- 화재 및 가스누출을 확인합니다.
- 상·하수도과 전기 안전을 확인합니다.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재난 방송을 통해 지진 상황을 확인합니다.



장소에 따른 대피방법

1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대형·고층건물에서는

- 소파 혹은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 크고 견고한 구조물 밑이나 아래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단은 이용하지 마시다 : 지진발생 시 외부계단은 빌딩본체와 다르게 진동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계단과 빌딩본체가 충돌하여 파괴되면서 계단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건물 중 가장 심각한 구조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진으로 바로 붕괴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가능한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외벽 쪽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 내부로 들어갈수록 대피로가 잔해로 막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외벽 쪽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과 붕괴 후 구조될 가능성이 높으나 유리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합니다.
- 복사지, 신문지 등 종이 더미 속은 생존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를 쌓아둔 쪽으로 대피합니다.

2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형건물에서는

- 1층보다는 2, 3층이 안전하므로 위층으로 대피합니다.
- 목재는 유연하고 지진력과 같은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지진 발생시 가장 안전한 시설입니다. 목조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니다.
-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이 부서져서 많은 부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에 비하면 신체가 어스러져 사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니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니다.
-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침대에서 굴러 내려와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니다.
- TV를 시청 중이거나 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재빨리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파나 큰 의자 옆으로 가서 몸을 구부린 태아자세를 유지합니다.
- 학교에서는 책상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합니다.

3 자동차 안에서는

- 고가도로 아래는 고가상판이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신속히 빠져 나오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자동차에서 나와 자동차 바로 옆에 누워있거나 쭈그리고 있도록 합니다.(실제 지진현장을 조사한 결과, 상판 지지기둥이 차량으로 직접 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판 밑에 깔린 자동차 옆으로는 1m 높이 정도의 생존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6절 황 사

황사 이렇게 대비합시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시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읍시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갑시다.
-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에는 긴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용 안경 등을 착용합시다.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읍시다.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읍시다.
- 가습기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합시다.

황사가 발생하려고 하나요?

1. 가정에 계신다면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시다.
 -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시다.
 - ▶ 외출 시에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시다.



-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읍시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 계신다면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해주시고
- ▶ 휴업 조치 시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3. 축산·시설원에 등을 하신다면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읍시다

황사가 지나갔나요?

1. 가정에 계신다면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주시고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 계신다면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3. 축산·시설원에 등을 하신다면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줍니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를 관찰합니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제7절 강 풍

강풍에 대비합시다.

- 문·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머무릅시다.
-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입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맙시다.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날아 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을 하지 맙시다.
-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맙시다.
- 바닷가 근처로 가지 맙시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맙시다.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입니다.

제8절 한 파

1. 겨울철 건강관리는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합니다.

2. 겨울철 운동은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 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하여 감기를 예방합시다.

3.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 드라이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4. 보일러 배관 관리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5. 외출 시에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줍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경우에는
 -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6.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시다.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 커브 길을 돌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합시다.
-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점검 하여야 합니다.

7. 농림 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 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합니다.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축사 등에는 셋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8. 전기분야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 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문어발식)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850-7034)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 조작하지 맙시다.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맙시다.

9. 가스 분야

- 가스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합니다.
- LP가스 사용 시,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공급자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사용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10. 유류 분야

- 급격한 기온강하로 인한 동파예방을 위해 유류이송배관에 대하여 충분한 물빼기 작업과 부동액 주입
- 장치의 동파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보은 조치합니다.

11. 지역난방

- 열원시설
 - ▶ 동절기 동파대비 시설물 관리 및 보호상태를 점검합니다.
 - ▶ 설해 및 동파대비 복구용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상태를 점검합니다.
- 사용자 시설(지역난방)
 - ▶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온수분배기 입구의 세대별(관리)밸브를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 온도조절기 고장 시 난방온수분배기로 조정하고, 즉시 수리·교체하여야 합니다.
 - ▶ 난방 배관 내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12. 승강기 분야

-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니다.
-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시 교체합니다.
- 승강장 및 카 바닥 물청소로 인한 결빙에 의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합니다.
- 승강기의 운영을 장시간 중지한 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예비운전 등 안전 확인 후 운영을 개시합니다.

여 백

제 7 장 부 록

1. 기상특보 발표기준
2. 재난피해접수 서식
3. 방재시설 현황
4. 방재물자 현황
5. 타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6.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7.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8. 의료기관 현황
9. 재해취약지구 현황
10. 재해약자 관리 현황
11. 의정부시 하천 현황
12. 설에 취약지 노선 및 동별 현황
13. 대규모 건설공사장 현황
1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여 백

1.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3급</td> <td>2급</td> <td>1급</td> </tr> <tr> <td>바람(m/s)</td> <td>17~24</td> <td>25~32</td> <td>33이상</td> </tr> <tr> <td>비(mm)</td> <td>100~249</td> <td>250~399</td> <td>400이상</td> </tr> </table>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재난피해접수

일련번호.

2014. . .

개 요	조 치 사 항
<p><건명 : ></p> <p>○신고자 :</p> <p>○장 소 :</p> <p>○개 요 :</p> <p>○피해상황</p> <p>- 인적피해 : 명</p> <p>이재민 :</p> <p>사 망 :</p> <p>실 종 :</p> <p>부 상 :</p> <p>※인적사항</p> <p>- 재산피해(주택, 공장, 상가 등)</p> <p>==>피해액 : 천원</p> <p>- 기 타</p>	<p>○ 담당부서 통보 (직급 : 성명 :)</p> <p>①</p> <p>②</p> <p>③</p> <p>④</p> <p>○ 동원사항</p> <p>-인 력 : 명</p> <p>공무원 : 명</p> <p>민간인 : 명</p> <p>단 체 : 명</p> <p>- 장 비 : 대</p> <p>굴삭기 : 대</p> <p>덤 프 : 대</p> <p>기 타 : 대</p> <p>- 자 재 : 개</p> <p>마 대 : 개</p> <p>비 널 : 개</p> <p>보온덮개 : 개</p>
<p>○보고일시</p>	<p>○ 향후 복구예정일</p>
<p>- 초동보고</p>	
<p>-</p>	
<p>-</p>	<p>○ 복구비</p>
<p>○접수자 직급 : 성명 :</p>	

3. 방재시설현황

▣ 배수펌프장 현황

펌프장명	의정부1동 (T.2898)		의정부3동 (T.2899)		신곡1동 (T.4437)		장암동 (T.4438)		간 이 빛 물 펌 프 장			북양유수지	장암저류지
	기 존	변 경	기 존	증 설	기 존	신 설	신 설	신 설	호원간이	신흥마을	오목마을		
구 분	기 존	변 경	기 존	증 설	기 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위 치	가능동 13-48번지		의정부동 63번지		신곡1동 615-34번지		장암동 392-1번지		호원동 72-1번지	의3동 89-5	용현동 736-2	북양동 25-9	장암동415-38
배수구역 면적 (km ²)	0.14		1.27		0.129		0.25		0.0225	0.0481	-	-	0.268
부지 면적 (m ²)	2,644		5,898		1,368		1,883		206.4	-	-	6,656	10,323
건축 면적 (m ²)	157.09		330.88	266.51	200.09		144.68		63.12	-	-	29.52	-
연 면 적 (m ²)	265.77		633.52	400.68	428.08		254.36		86.6	-	-	-	-
유수지 면적 (m ²)	1,125		3,520		580		201		70	369	박스배수	3,055	10,323
유수지 용량 (m ³)	2,250		7,300		1,100		700		245	325 기존암거	박스배수 800mm관	11,000	20,370
모터펌프 규격 (HP)	60HP×2대 ×Ø600	100HP×2대 ×Ø600	500HP×6대×Ø1,500 50HP×3대×Ø700	500HP×2대 ×Ø1,500 50HP×3대 ×Ø700	120HP×3대 ×Ø700 30HP×2대 ×Ø400	60HP×1대 40HP×1대 ×Ø700	40HP×2대 ×Ø400 드레인펌프 1HP×1대	40HP ×3대 ×Ø500 게이트 펌프 (예비1대)	40HP×1대 ×Ø400	20HP×2대 ×Ø100	-	-	-
처리능력 (m ³ /분)	40	80	1572		184		40		30	68	15	4	-
가동수위 (EL/m)	39.96		35.16		37.0		28.5		31.0	37.33	-	46.19	-
유수지 평수위 (EL/m)	39		33.5		35.1		-		29.5	36.49	-	42.59	26.53
사 업 비 (백 만 원)	계:964 도비:682 시비:282	계:121 시비:121	계:1,600 도비:960 시비:640	계:6,632 국비:2,725 도비:620 시비:3,287	계:279 도비:284 시비:279	계:1,902 국비:891 도비:284 시비:727	계:1,912 국비:1,123 도비:641 시비:148	계:1,047 국비:524 도비:209 시비:314	계 : 705 시비 : 705	한국토지공사 사서울지사 에서관리이 전	180백만원 대한주택 공사에서 관리이전	SH공사에서관 리이전	-
하 천	평수위 (EL/m)	36.9	32.35		35.1		25.82		29.5	-	-	43.67	-
홍수위 (EL/m)	42.37	38.73		39.88		31.14		36.83	38.93	-	-	46.17	29.94
변압기 용량 (kVA)	150	250	3,500		500		150		160kw 비상발전기	-	-	-	-
계 약 전 력 (kw)	250		3,500		500		150		74	80	41	38	-
수해가구 및 인원 (세대·명)	1,500세대 5,730명		11,400세대 30,600명		1,100세대 3,210명		90세대 360명		121세대 314명	320세대 637명	269세대 667명	2,020세대 6,060명	2,559세대 7,166명
설 치 년 도 (년, 월)	'88. 10. ~ '89. 8. ~	'02. 3. 21 ~ '02. 6. 22.	'88. 9. ~ '89. 6. ~	'99. 5. ~ '00. 12. ~	'92. 4. ~ '93. 7. ~	'99. 12. ~ '00. 12. ~	'99. 12. ~ '00. 12. ~	'01. 7. ~ '01. 12. 15.	'08. 5. ~9.	'01. 12. 31	'08. 11	'12. 10	-
필수근우자	1명		1명		1명		1명		무인설비	무인설비	무인설비	무인설비	-
우 기 철 보강근우자	3명		6명		3명		3명		3명	3명	충산2동 직원1명	-	-
고객번호	10-1610-8505 산업용 감 고압(1)		10-1622-3462 산업용 감 고압(1)		10-1610-5125 산업용 감 고압(1)		10-1610-5759 산업용 감 고압(1)		10-1610-4 457 산업용 감 저압	10-0756-0 355 산업용 감 저압	10-1329-70 31 산업용 감 저압	10-2116-1894 산업용 감 저압	-

■ 배수문 현황

수 문 명	위 치	하천명	규 격	담당배수펌프장	비 고
가금배수문	의1동 가금교 밑	중랑천	1.2×1.2×1런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경의배수문	의3동 둔치주차장	"	2.0×2.0×1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중랑배수문	의3동 신의교 밑	"	1.5×1.5×1런		
장암배수문	의3동 펌프장 건너편	"	2.0×1.5×1런	신곡1동 배수펌프장	
호원배수문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뒤	"	2.0×2.0×1런	호원간이 배수펌프장	
건영배수문	호원1동 건영□ 뒤	"	1.5×1.5×1런		
한일배수문 (1)	호원1동 한일농장 옆	"	2.0×2.0×1런	장암동 배수펌프장	
한일배수문 (2)	호원1동 한일배수문(1) 밑	"	1.0×1.0×1런		
한일배수문 (3)	호원1동 한일배수문(2) 밑	"	1.0×1.0×1런		

■ 저수지 현황

시설명	시설 규모	위 치		비 상 연 락 망				
		시군구	읍면동	시설관리기관			담당부서	
				기관명	관 리 책 임 자	사무실(TEL) 핸드폰번호	관 리 책 임 자	사무실(TEL) 핸드폰번호
홍 북 저수지	1,090,000톤	양주시	백석읍 북지리	의정부부시	수도과장 이택재	828-4440 010-6306-3936	안주영	828-2449

■ 저류지 및 우수지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용량(m ³)	비고
1	녹양 우수지	녹양동 25-9	3,055	11,000	off-line
2	장암 저류지	장암동 411-51	저류하도길이 440m	20,370	on-line

▣ 배수문 관리자 지정 현황

(2014.04월 기준)

동 별	수 문 명	관리자	민간인 비상근무자(A)		민간인 비상근무자(B)	
			성 명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의정부1동	가금배수문	정영필	임기철		명노현	
의정부3동	경의배수문	오운탁	박관신		권성애	
	중랑배수문		김선희		유정순	
신곡1동	장암배수문		최경수		강창구	
호원1동	호원배수문	정영필	우연숙		조귀남	
	건영배수문		정문선		안철호	
	한일배수문(1)	김영남	김희란		이영애	
	한일배수문(2)		이영춘		조남춘	
	한일배수문(3)		이순자		황병용	

■ 간이빗물펌프장(도로) 현황

번호	1	2	3	4	5	6
시설명	다락원 간이배수장	호원동 빗물펌프장 (S커브)	호원동 건영아파트 간이배수장	회룡가도교 (회룡역4거리)	호원 간이배수장 (회룡초교앞)	회룡 빗물펌프장
구분	도로침수예방용					
위치	호원1동 165-2	호원동 146-8	호원1동 107-42	호원2동 414-13	호원동 448-6	호원동 2-2 (골프연습장앞)
수전방식	1회선 3상 4선 380V/220V	2회선 3상 4선 22,900V/380V- 220V	1회선 3상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관리자	도로과 (도로관리2팀)					

번호	7	8	9	10	11	12
시설명	신의교 간이배수장	경의 지하차도	의정부역 지하차도	홍선 지하차도	중앙 지하차도	경민 지하차도
구분	도로침수예방용					
위치	의정부3동 319-10	의정부3동 706	의정부2동 495	의정부2동 212-5맞은편	가능1동· 의정부동 (경찰서앞)	가능3동 548-191
수전방식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관리자	도로과 (도로관리2팀)					

번호	13	14	15	16	17	18
시설명	신곡 지하차도	금신 지하차도	장암 지하보도	발곡 지하보도	청룡 지하보도	추동 지하보도
구분	도로침수예방용					
위치	신곡동 597-168	자금동 344-11	신곡1동 748-1 (장암초교앞)	신곡1동 748-1 (발곡부락입구)	신곡1동 748-1	신곡2동 677
수전방식	1회선 3상 4선 380V/220V	2회선 3상 4선 229kV/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1회선 3상 4선 380V/220V
관리자	도로과 (도로관리2팀)					

■ 사방댐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m)	비 고
1	입석계곡 사방댐	가능동 산24-2	전고: 5.5, 유효고: 3.0	용량 1,800m ³
2	홍복산 사방댐	가능동 산29-3	전고: 4.5, 유효고: 2.0	용량 1,800m ³
3	가능동 사방댐(1)	가능동 산30-1	전고: 6.0, 유효고: 4.0	
4	가능동 사방댐(2)	가능동 31-1	전고: 6.0, 유효고: 4.0	
5	가능동 사방댐(3)	가능3동 백석천	전고: 3.5, 유효고: 2.0	
6	안골계곡 사방댐	가능동 산81-2	전고: 4.5, 유효고: 2.5	용량 600m ³
7	안골계곡 보막이	가능동 산81-2	전고: 4.5, 유효고: 2.0	
8	회룡골계곡 사방댐	호원동 산35-4	전고: 5.5, 유효고: 3.5	용량 2,100m ³
9	원도봉산계곡 사방댐	호원동 산93-25	전고: 5.0, 유효고: 3.0	용량 1,000m ³
10	동막골 사방댐	장암동 산17	전고: 7.0, 유효고: 4.0	용량 2,100m ³
11	만가대계곡 사방댐	용현동 산65-1	전고: 5.0, 유효고: 2.0	용량 700m ³
12	흑석 사방댐	산곡동 산94-16	전고: 6.0, 유효고: 3.0	용량 2,400m ³
13	검은돌계곡 사방댐	산곡동 산94-11	전고: 6.0, 유효고: 3.5	용량 1,300m ³

■ 야계사방 현황

구 분	위 치	규모(m)	형 식	비 고
1	녹양동 산63-12	폭: 4.0	돌망태	
2	녹양동 275	폭: 4.0	돌망태	
3	녹양동 산63-6	폭: 4.0	돌망태	
4	녹양동 산63-8	폭: 4.0	돌망태	
5	가능동 459-1	전고: 2.0, 유효고: 1.0	콘크리트 보	
6	가능3동 백석천	폭: 7, 5개소	돌망태	
7	가능동 산81-2	전고: 3.0, 유효고: 1.5	콘크리트 보	
8	호원1동 229-111	폭: 5.0~7.0, 길이: 100	석축 및 돌망태	
9	금오동 산25-1	-	석축	넓이: 62m ²
10	산곡동 산94-16	-	석축 및 돌망태	넓이: 149.5m ²
11	자일동 산56-1	폭: 9, 3개소	돌망태	
12	용현동 산31-31	길이: 72, 골막이 5개소	돌망태	
13	신곡1동	전고: 2.5, 유효고: 1.5	콘크리트 보	
14	용현동 산58-2	폭: .0, 높이: 2.0, 길이: 100	석축 및 콘크리트 보	
15	장암동 산38-1	폭: 6.3, 높이: 1.2, 길이: 50	석축 및 콘크리트 보	
16	고산동 산36-2	전고: 2.0, 유효고: 1.0	돌쌓기 및 콘크리트 보	

■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현황

카메라번호	도로/하천명	설치 위치	설치 장소
1번	국도39호선	가능동 산65-2	울대고개 양주군 시계
2번	국도3호선	녹양동 105-38	녹양동 17호광장
3번	국도43호선	금오동 447-15	홈플러스 사거리
4번	국도43호선	자일동 산31	축석고개
5번	시도광로3-1호선	호원2동 산24-18	서부순환로 의정부시청 IC
6번	국도39호선	가능3동 555-18	경민교차로
7번	국도3호선	의정부동 591	경의로타리
8번	국도3호선	의정부3동 141-1	의정부역 동부광장
9번	국도3호선	호원동 200-33	평화로 다락원 서울시계
10번	국도3호선	호원동 145-13	호원동 중계펌프장 옆S커브
11번	국도3호선	호원동 417-3	호원동 오도주유소 옆
12번	중랑천	호원동 1-26	의정부교옆 가도교
13번	시도5호선	장암동 117-2	동부순환로 상촌마을 삼거리
14번	시도5호선	신곡동 산14-2	장암동 우성아파트옆 삼거리
15번	부용천	용현동 63	용현동 송산1교 옆
16번	국도43호선	송산동 485-3	신곡동 검은돌 입구
17번	백석천	가능동 578-21	안골유원지 입구
18번	중랑천	가능동 15-436	가능가압장
19번	중랑천	가능동 13-48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20번	부용천	신곡2동 699	금신교
21번	백석천	호원동 353-93	신흥교
22번	중랑천	의정부동 30-38	고수부지 주차장 입구
23번	중랑천	신곡1동 615-86	신곡1동 배수펌프장앞
24번	시도5호선	신곡동 754-2	신곡 지하차도
25번	회룡천	호원동 316-50	회룡2교 미도아파트 입구
26번	중랑천	의정부동 15-12	신곡교 신곡파출소 옆
27번	중랑천	장암동 20-3	동막교
28번	시도 6호선	의정부동 677	의정부 서부역 지하차도
29번	호원천	호원동 130-7	망월1교
30번	중랑천	장암동 136-5	장암동 자동차 전용도로 끝
31번	중랑천	도봉구 도봉2동	장암동 배수펌프장 앞
32번	시도 64호선	의정부동 260-5	홍선 지하차도
33번	유수지	녹양동 25-9	녹양동 유수지
34번	민락천	자일동 50-21	오리마을
35번	민락천	자일동 60-8	귀락마을
36번	부용천	고산동 842-1	고산교
37번	부용천	금오동 477-11	효자교

■ 재난재해 문자전광판 현황

순번	설치장소	설치위치	설치목적	비고
1	원도봉산입구	호원동 229-197	재난관련정보 전파 및 시정홍보	2003.04.29 소방방재청에서 인수
2	안골유원지입구	가능동 581-125		
3	홈플러스앞 사거리	금오동 187-20		2006.12.21 추가설치
4	경민광장	가능동 577-4		
5	녹양역 사거리	녹양동 98-3		

■ 음성경보시스템 현황

순번	설치장소	설치위치	비고
1	가금교앞	가능동 15-436	
2	제일시장 대한노인회앞	의정부동 11-1	
3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의정부동 64-7	
4	녹양유수지	녹양동 25-9	

■ 수위관측소 현황

순번	관측소명	설치하천명	설치위치	측정방식	수위		사업비(천원)	설치일	비고
					경계	위협			
1	양주교	중랑천	의정부1동	레이다	440	590	40,700	'06. 12	
2	동막교	중랑천	장암동	레이다	450	600	40,700	'06. 12	
3	호장교	중랑천	호원동	레이다	450	600	40,700	'06. 12	
4	효자교	부용천	신곡2동	레이다	440	590	40,700	'06. 12	

▣ 자동강우수집계(AWS) 현황

순번	설치장소(주소)	설치일자	설치목적	설치주체
1	용현배수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9-24)	1991.11.21	강우량 수집	기상청
2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현황

지구명	시설현황			설치일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설명	수량	위치		계	도비	시군비	
시청 재난상황실	감시국	1	시청 본관 3층 재난상황실	'05.12 (13.7)	458	229	229	
원도봉산 지구	우량국	2	의정부시 호원동 229-146 의정부시 호원동 산91					
	경보국	1	의정부시 호원동 229-170					
		1	의정부시 호원동 229-111					
		1	의정부시 호원동 229-98					
	통제국	1	호원1동주민센터 내					
안골 지구	우량국	1	의정부시 가능동 산81-189					
	경보국	1	의정부시 가능동 산81-2					
		1	의정부시 가능동 산81-159					
	통제국	1	가능3동주민센터 내					

4. 방재물자 현황

▣ 수방자재 보유현황

(2014. 3. 현재)

PP포대				구조용 보트 (선외기)		구조용 로프총	엔진 양수기	수중 펌프	연장 코드	비닐 (롤)	묶음줄 (타래)
마 대	사 낭	스피드랩	벌크백 (500kg)	8인승	30마력	HW-38	(3HP)	(1HP)	(10m)		
147,360	89,061	1,000	465	1	1	2	58	332	90	109	63

소방호수 (40φ15m) (롤)	고압호수 (40φ5m) (롤)	주름관 호 수 (롤)	코팅 장갑 (장)	연장선 (릴선) (50m)	천막지 (탑지) (장)	비닐호수 (1롤50m) (롤)	말목 (개)	삼 (자루)	투광기 4등식	장화 (족)	우의 (벌)	안전선 (롤)
47	68	38	4,850	75	20	178	200	1,334	1	640	697	104

▣ 복구장비(중장비) 보유 현황

연번	장비명	계	수량	담당부서
1	굴삭기	18	행정 1	청소행정과(폐기물관리팀)
			민간 17	안전총괄과(방재팀)
2	덤프	13	행정 1	도로과(도로관리1팀)
			행정 1	하수도과(하수관리1팀)
			행정 1	수도과(누수방지팀)
			민간 10	안전총괄과(방재팀)
3	로우더	3	행정 1	도로과(도로관리1팀)
			행정 1	하수처리과(수처리팀)
			행정 1	청소행정과(폐기물관리팀)
4	청소차	37	행정 1	청소행정과(폐기물관리팀)
			민간 29	
			유관기관 7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5	바브켓	5	민간 5	안전총괄과(방재팀)
6	지게차	5	민간 5	안전총괄과(방재팀)
7	크레인	2	민간 2	안전총괄과(방재팀)

▣ 복구장비(기타) 보유 현황

연번	장비명	계	수량	담당부서
1	용접기	6	유관기관 3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행정 3	하수처리과
2	컴프레샤	8	유관기관 4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행정 4	하수도과(하수관리1팀)
3	발전기	1	유관기관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4	천공기	1	유관기관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5	착암기	1	행정 1	수도과
6	절단기	4	유관기관 3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행정 1	수도과
7	수중펌프	332	민간 3	안전총괄과, 15개 동주민센터
8	엔진양수기	58		안전총괄과, 15개 동주민센터

5.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시·군·구	지원가능 장 비	지원가능 인 력	지원가능 자 재	소속담당자	
				소 속	성 명
양 주 시	덤프트럭 2 페이로다 1 포크레인 6 양수기 10	복구 5	마대 25,000	건설과	오순일 8082-6781
파 주 시	덤프트럭 1 방역차 1 포크레인 1 양수기 10	복구 5 교통통제 5	마대 30,000 비닐 10 묶음줄 10 말목 10	안전총괄과	허권준 940-5712
동두천시	양 수 기 10 덤프트럭 2 수중펌프 5	복구 5	마대 10,000 비닐 10 묶음줄 20 말목 50	안전총괄과	김진철 860-2330
포천시	덤프트럭 1 행정차량 1 방역차 1 견인차 1 청소차 1 양수기 50	복구 50	마대 30,000 비닐 30	안전방재과	김종하 538-2899
한 국 열 관 리 시공협회	-	복구 25	산소절단기 20 전기컷소 30 전기그라인더 30 1톤트럭 20 수중펌프(1마력)10	의정부 양주시회	전길석 874-0591
2167부대	행정차량 9 구급차 1 방역차 1 견인차 1	복구 95	-	군수과	홍지성 820-6410

6.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2014.3월 현재)

구분	단 체 명	인원	대표	휴 대 폰	담당자
	계	360			
1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9	한중정		공업7급 구본철
2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0	김인걸		
3	대한적십자한북안전강사회	20	강항모		
4	동그라미네트	9	박수경		
5	새마을부녀회	30	김영숙		
6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5	최병옥		
7	의정부시민명예경찰연합회	20	이석재		
8	해병대전우회	15	염경천		
9	가능1동	10	김동인		
10	가능2동	16	조정훈		
11	가능3동	19	강성철		
12	녹양동	12	류제옥		
13	송산1동	9	임유섭		
14	송산2동	10	원유현		
15	신곡1동	8	박정서		
16	신곡2동	10	김보은		
17	의정부1동	12	명노현		
18	의정부2동	13	정덕열		
19	의정부3동	15	유정순		
20	자금동	10	정성섭		
21	장암동	8	김금자		
22	호원1동	10	조귀남		
23	호원2동	10	조남춘		
24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	20	김극철		
25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지회	20	윤여권		

7. 이재민수용시설 현황

▣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풍수해)

(단위 : 명)

구 분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기 타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42	30,297	34	29,439	2	80	2	50	4	728
의정부1동	2	2,744	2	2,744						
의정부2동	2	4,111	1	3,863					1	248
의정부3동	2	230	1	200			1	30		
호원1동	4	3,089	4	3,089						
호원2동	2	1,256	2	1,256						
장암동	2	190	1	150	1	40				
신곡1동	3	4,393	3	4,393						
신곡2동	4	817	1	597			1	20	2	200
송산1동	3	269	3	269						
송산2동	3	2,732	3	2,732						
자금동	2	1,200	2	1,200						
가능1동	6	7,097	6	7,097						
가능2동	3	440	2	400	1	40				
가능3동	1	280							1	280
녹양동	3	1,449	3	1,449						

■ 임시주거시설 관리현황(풍수해)

동 별	시 설 명	위 치(주소)	규 모 (㎡)	수 용 가능인원	연락처	비 고
계	42개소		180,996	30,297		
의정부1동	중앙초등학교	의정부동 224	807	244	846-2665	
의정부1동	배영초등학교	의정부동 229	10,532	2,500	845-5404	
의정부2동	의정부2동성당	의정부동 429-6	819	248	836-1980	
의정부2동	상우고등학교	의정부동 611	12,748	3,863	826-2201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의정부동 366	7,490	200	877-4807	
의정부3동	의정부3동경로당	의정부동 38-66	100	30	877-0533	
호원1동	호암초등학교	호원동 226	2,604	789	872-3483	
호원1동	회룡초등학교	호원동 247-27	9,401	1,200	878-6124	
호원1동	회룡중학교	호원동 247-25	2,970	900	878-2234	
호원1동	호원고등학교	호원동 226-154	1,786	200	822-2015	
호원2동	호원초등학교	호원동 308-42	846	256	876-2456	
호원2동	호동초등학교	호원동 350-1	5,613	1,000	878-0873	
장암동	상하촌마을회관	장암동 162-5	132	40	873-2901	
장암동	장암초등학교	장암동 17-23	1,651	150	873-9678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신곡동 420-3	2,006	608	846-2257	
신곡1동	청룡초등학교	신곡동 702-1	4,138	1,254	826-6010	
신곡1동	발곡초등학교	신곡동 727-3	8,352	2,531	878-3696	
신곡2동	신곡초등학교	신곡동 686-1	1,972	597	841-1503	
신곡2동	가능교회	신곡동 489-7	330	100	841-1004	
신곡2동	신곡교회	신곡동 478-9	330	100	843-2266	
신곡2동	신촌경로당	신곡동 537-41	66	20	846-4163	
송산1동	고산초등학교	고산동 464	494	149	841-4811	
송산1동	솔미초등학교	용현동 211-4	330	100	840-4275	
송산1동	용현초등학교	용현동 5-1	68	20	851-4814	
송산2동	송현고등학교	민락동 735-4	11,117	500	851-2982	
송산2동	오동초등학교	민락동 735-6	767	232	852-1071	
송산2동	부용고등학교	민락동 757-1	11,546	2,000	853-0184	
자금동	금오초등학교	금오동 234-47	9,834	1,000	846-6617	
자금동	의순초등학교	금오동 469-3	2,948	200	852-8021	
가능1동	의정부여자중학교	가능동 653-24	1,006	100	873-8612	
가능1동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가능동 653	4,607	1,396	876-4201	
가능1동	광동고등학교	가능동 110-2	2,009	609	849-5695	
가능1동	의정부중학교	가능동 652-56	3,210	972	876-0572	
가능1동	의정부고등학교	가능동 359-3	5,546	1,680	874-2996	
가능1동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가능동 652	34,112	2,340	828-8400	
가능2동	가능2동노인회관	가능동 734	132	40	872-4149	
가능2동	가능초등학교	가능동 724-3	12,535	300	879-5310	
가능2동	서중학교	가능동 833	330	100	876-5074	
가능3동	경민대기념관	가능동 562-1	926	280	828-7031	
녹양동	녹양초등학교	녹양동 398	1,800	545	878-0449	
녹양동	녹양중학교	녹양동 190-5	610	184	829-9745	
녹양동	버들개초등학교	녹양동 190-51	2,376	720	878-3421	

8. 의료기관 현황

□ 종합병원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병상수	의료인력					구급차	전화번호
				의사	치과 의사	한 의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계	3개소		1,139	309	12	1	735	86	8	
성모병원	금오동 65-1	염수정	706	268	8		558	38	2	1661-75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2동 433	허봉열	233	22	2	1	101	17	2	828-5300
백 병 원	신곡2동 519-11	송숙희	200	18	2		76	31	4	856-8111

□ 병 원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병상수	의료인력					구급차	전화번호
				의사	한 의 사	치 과 의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계	18개소		2,786	124	1	1	358	154	24	
추 병 원	의1동 234-5	추현광	206	18		1	71	26	4	843-8282
한도정신 병 원	가1동 399-1	이인수	240	6			20	3	1	877-6081
성베드로 병 원	의1동 228-22	김희경	120	10			33	13	4	840-1700
중앙병원	의1동 237-7	박민호	105	3			4	3	2	845-6001
신여성병원	의2동 492-3	정찬진외 3인	48	12			19	41	1	844-3800
우면피아 여성병원	신곡동 761-4	김성진	44	7			10	30	1	853-7500
센텀병원	금오동 447-5	김영기	135	13			22		1	1588-7516
로체스터병원	호원동 450	서인태	181	2	1		22	7	1	879-7575
의정부 보람병원	신곡동 23-2	최태익	157	2			13	1	1	853-3636
의정부힐링스 병원	금오동 474-3	최진태	603	9			47		2	853-9222
한서중앙병원	의정부3동 377-1	이서경	160	4			11	3	1	875-7878
베스트병원	호원동 449-6	고영관	62	4			11	10	1	1600-8280
리하트병원	용현동 46-3	김연연	187	3			24	3	1	871-8200
튼튼병원	태평로 66 (의정부동)	이문	108	13			22	8	1	1588-7562
호원병원	호원동 345-6	박향진	50	5			5		1	855-6800
의정부척병원	태평로 6 (의정부동)	권재희	67	9			23		1	830-2000
강남병원	가능동 604-3	배진환	93	4			1	6	1	845-0700

요양병원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병상수	의료인력				구급차	전화번호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3개소		482	11	0	27	22	2	
카네이션 요양병원	신곡동765-1 금오종합상가	곽병규	73	2		5	3	0	852-1233
조은 요양병원	민락동 732-5	이인우	169	5		17	12	1	853-0119
새하늘병원	가능동 76-1	오승준외 1인	240	4		5	7	1	1600-8280

치과병원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병상수	의료인력			구급차	전화번호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간호 조무사		
탑연세 치과병원	금오동 473-3	윤상일	-	4	6	-	-	853-2870

한방병원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병상수	의료인력				구급차	전화번호
				한의 사	의사	간호 사	간호 조무 사		
의정부 한방병원	가능동 225-17	이화민	52	2	1	7	4	1	820-7100

9. 재해 취약지구 현황

▣ 인명피해우려 위험구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 치		위험 등급	연 락 처					대피장소 (전화)
	읍면동	지 번		관계자	소 속	직급	성 명	전 화 번 호	
원도봉 계 곡	호원1동	229-111 일원	C	공무원	호원1동	행정8급	이규웅	행정)828-4286	호원고 (822-2100)
				민간인		14통장	임천교		
안 골 계 곡	가능3동	산81-11 일원	C	공무원	가능3동	녹지7급	백남협	행정)828-4957	경민대 (828-7061)
				민간인		6통장	장동길		
산 장 연 립	금오동	270-13 일원	D	공무원	자금동	행정7급	김은진	행정)828-4895	금오초 (846-6614)
				민간인		관리소장	임용재		

▣ 하천변 둔치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하천명	위 치	조 성 현 황			관리청	침 수 위 험 (일강우)	대피계획	비고
			면적(m ²)	주차 능력	평시				
의정부1동 둔치	중랑천	의정부동 30-38	5,734	225	196	의정부시	90mm	전인차 4대	

10. 재해약자 관리현황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1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11-1	김계화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28명)
2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11-1	이금자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3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21-9	오차순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4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21-10	배옥순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5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33-1	기영자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6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39	서화자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7	가능3동	호국로 1120번길	13-4	강수자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8	가능3동	호국로 1126번길	12	안선옥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9	가능3동	호국로 1114번길	33-1	송기숙	가능3동주민센터	이경숙	828-4221	이상준	7통장	
10	가능3동	호국로1135번길	12-16	김진구	가능3동주민센터	김진옥	828-4224	김순자	8통장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11	가능3동	홍선로 6번길	54	최복희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2	가능3동	홍선로 16번길	26-5	서봉춘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3	가능3동	홍선로16번길	26-5	장부옥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4	가능3동	홍선로 24번길	24-21	김조이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5	가능3동	홍선로 6번길	54	최명식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6	가능3동	홍선로 24번길	36	조춘자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7	가능3동	홍선로 24번길	15	김정순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김경숙	10통장	
18	가능3동	호국로1123번길	22-11	공반석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이준래	11통장	
19	가능3동	호국로 135번길	43-1	이종학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이준래	11통장	
20	가능3동	호국로1101번길	69 (지하1호)	홍순자	가능3동주민센터	최미애	828-4227	윤정순	15통장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21	가능3동	호국로 1101번길	61	백향목	가능3동주민센터	최미애	828-4227	윤정순	15통장	
22	가능3동	호국로 1101번길	77(지하1호)	임호순	가능3동주민센터	최미애	828-4227	윤정순	15통장	
23	가능3동	호국로 1051번길	35	김춘성	가능3동주민센터	백남협	828-4957	김국희	16통장	
24	가능3동	호국로 1051번길	28-1	안은순	가능3동주민센터	백남협	828-4957	김국희	16통장	
25	가능3동	호국로 1051번길	28	홍순이	가능3동주민센터	백남협	828-4957	김국희	16통장	
26	가능3동	호국로1051번길	34	김정만	가능3동주민센터	백남협	828-4957	김국희	16통장	
27	가능3동	호국로 1049번길	16	김기연	가능3동주민센터	백남협	828-4957	김국희	16통장	
28	가능3동	호국로1123번길	22-12	하순자	가능3동주민센터	황순호	828-2977	이재은	18통장	
29	의정부3동	태평로24번길	59	하중협	의정부3동	이현숙	828-4487	배인덕	7통	(21명)
30	의정부3동	경의로118번길	11-21	황옥분	의정부3동	임동규	828-4134	심희자	10통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31	의정부3동	경의로118번길	33-4	강병연	의정부3동	김민준	828-4181	이근진	11통	
32	의정부3동	평화로450번길	18	송우경	의정부3동	김민준	828-4281	이근진	11통	
33	의정부3동	평화로450번길	58-1	이남례	의정부3동	김민준	828-4281	이근진	11통	
34	의정부3동	경의로118번길	33-17	박동순	의정부3동	김민준	828-4281	이근진	11통	
35	의정부3동	경의로151-2		김순이	의정부3동	임지혜	828-4133	김선희	13통	
36	의정부3동	경의로146번길	33-14	김순례	의정부3동	유혜림	828-4132	강순자	15통	
37	의정부3동	평화로440번길	81-3,지층	송옥희	의정부3동	유혜림	828-4132	강순자	15통	
38	의정부3동	경의로146번길	53-26	이봉희	의정부3동	유혜림	828-4132	지영희	16통	
39	의정부3동	경의로146번길	53-8	박대영	의정부3동	유혜림	828-4132	지영희	16통	
40	의정부3동	경의로146번길	53-24	이순화	의정부3동	유혜림	828-4132	지영희	16통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41	의정부3동	신흥로168번길	32-39	이해천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유선심	17통	
42	의정부3동	경의로132번길	11-32	오봉승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이봉구	18통	
43	의정부3동	경의로132번길	11-9	최옥용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이봉구	18통	
44	의정부3동	경의로134-1		안중해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이봉구	18통	
45	의정부3동	평화로440번길	56-1	강갑선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강창구	19통	
46	의정부3동	평화로428번길	55-3,지층	김광자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강창구	19통	
47	의정부3동	평화로428번길	55-4	김순자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강창구	19통	
48	의정부3동	경의로132번길	51-14	박성원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강창구	19통	
49	의정부3동	평화로440번길	48-1	성순희	의정부3동	심우신	828-4137	강창구	19통	
50	신곡2동	추동로108번길	81-31, B02호	김영례	신곡2동주민센터	임성애	828-4172	전은선	23통장	(5명)

순번	행정동	주소		이름	현장책임관 (공무원)			현장관리관 (인근주민)		비고
		본번	부번		소속	성명	사무실	성명	이력	
51	신곡2동	추동로108번길	81-33,B02호	최지연	신곡2동주민센터	임성애	828-4172	전은선	23통장	
52	신곡2동	추동로108번길	81-28,102호	염지수	신곡2동주민센터	임성애	828-4172	전은선	23통장	
53	신곡2동	추동로108번길	91-5,지하	장달효	신곡2동주민센터	임성애	828-4172	김란일	1통장	
54	신곡2동	추동로92번길	47-5,B01호	정준묵	신곡2동주민센터	임성애	828-4172	김란일	1통장	
55	호원1동	호암로109번길	37	박윤원	호원1동	이규용	828-4286	임영복	10통장	(4명)
56	호원1동	호암로109번길	107	장석희	호원1동	이규용	828-4286	임영복	10통장	
57	호원1동	호암로109번길	113	이금계	호원1동	이규용	828-4286	임영복	10통장	
58	호원1동	호암로109번길	33	김범수	호원1동	이규용	828-4286	임영복	10통장	

11. 의정부시 하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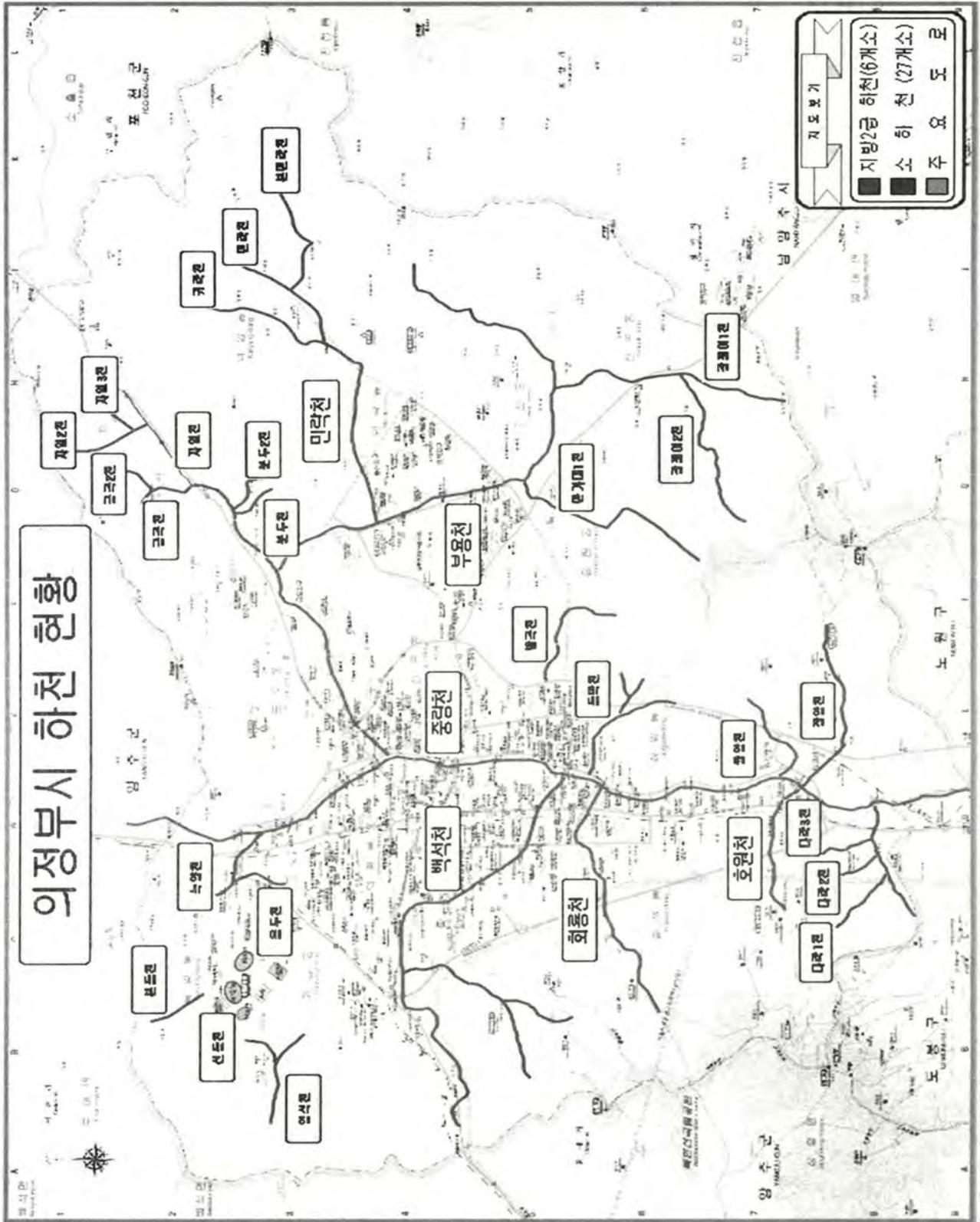
▣ 지방하천 현황

하천명	하천등급	구 간 (위치)	개 수 현 황				개수율 (%)	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고시일자
			총연장 (km)		완전개수 (km)	불완전개수 (km)		
			하 천	제 방				
계	6개소		27.94	53.73	40.796	12.934	75.9	
중랑천	지방2급	녹양동~호원동	8.25	16.50	15.526	0.974	94.1	2012.12.26
부용천	지방2급	신곡동~산곡동	8.41	16.78	10.026	6.754	59.7	
민락천	지방2급	민락동~낙양동	2.64	3.65	1.219	2.431	33.3	
백석천	지방2급	가능동~의정부동	5.89	11.4	9.415	1.985	82.5	
회룡천	지방2급	호원동	1.76	3.40	2.822	0.578	83.0	
호원천	지방2급	호원동	0.99	2.00	1.788	0.212	89.4	

▣ 소하천 현황

소하천명	소하천 연장	정비대상 연장(A=B+C)	기정비연장(B)				미정비 연장 (C)	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고시일자
			계(B=D+E)	완전정비 (D)	불완전 정비(E)	정비율 (B/A)(%)		
소계	32,970	43,096	27,833	16,135	11,698	64.6	15,243	
장암천	900	858	438	33	405	51.0	420	승인 '07.7
쌍암천	950	645	390	390	-	60.5	255	
동막천	1,080	1,670	1,210	1,210	-	72.5	460	
발곡천	1,050	1,935	330	330	-	17.1	1,605	
다락1천	1,300	1,895	1,825	1,530	295	96.3	70	
다락2천	660	500	500	500	-	100.0	-	
다락3천	580	350	350	350	-	100.0	-	
녹양천	2,700	2,530	1,525	1,525	-	60.3	985	
본동천	850	1,633	433	433	-	26.5	1,200	
입석천	1,250	2,235	1,285	1,285	-	57.5	950	
선돌천	500	430	430	430	-	100.0	-	
안골천	1,500	1,620	1,475	1,475	-	91.0	145	
분두천	700	1,170	-	-	-	-	1,170	
분두2천	1,020	1,455	315	315	-	21.6	1,140	
금곡천	1,150	1,830	1,050	1,050	-	57.4	780	
금곡1천	700	660	35	35	-	5.3	625	
자일천	3,600	3,480	1,757	-	1,757	50.5	1,723	
자일2천	700	610	610	480	130	100.0	-	
자일3천	580	230	40	40	-	17.4	190	
귀락천	2,300	3,955	3,955	515	3,440	100.0	-	
민락천	2,550	3,965	3,965	370	3,595	100.0	-	
본민락천	900	1,580	1,580	-	1,580	100.0	-	
만가대1천	1,020	1,985	1,985	1,489	496	100.0	-	
광쟁이1천	2,420	2,170	1,970	1,970	-	90.8	200	
광쟁이2천	740	1,370	180	180	-	13.1	1,190	
부용천	1,270	2,335	200	200	-	8.6	2,135	

▣ 의정부시 하천 위치도



12. 설해취약지 노선 및 동별 현황

노 선 명	연 장	세 부 노 선 명
국도43호선	12.6km	축석길(5.2km), 송산길(7.4km)
국도39호선	6.5km	송추길(4.2km), 군단앞길(2.3km)
국도3호선	8.1km	서울시계-S커브구간(2.5km), S커브-양주시계(5.6km)
서부순환도로	6.2km	경민R- 시청IC(1.5km), 시청IC-S커브구간(4.7km)
동부순환도로	8.4km	서울시계-장암우성@삼거리(2.9km) 장암우성@삼거리-금오여중삼거리(5.5km)
낙양동 벚들개길	3.7km	신촌R- 법원앞(0.8km), 법원앞-양주시계(2.9km)
신시가지 일원	4.6km	시청앞-역전(1.2km), 시청앞- 흥선광장(1.2km) 전화국삼거리-내고향주유소-시청앞(3.4km)
금오·민락·송산지구	19.6km	제2청사 앞(6.2km), 송산마그넷길(4.6km) 송산2동산무소 주변 경사로(8.8km)
중로1-29호선	2.5km	낙양동 별말- 포천시계
계	76km	

순 번	해당 동	개 소	위 치
1	의정부1동	7	중앙로, 능골교, 경찰서R, 파발R, 문화R, 대원R, 구한전R
2	의정부2동	7	서부역R, 흥선지하도, 경의지하도, 전화국R, 보건소사거리, 무봉리순대국앞, 삼천리사거리
3	의정부3동	5	송산R, 경의R, 대한생명 앞, 경의로, 신곡교
4	호원1동	4	안말지구내, 호장교삼거리, 다락원, 회룡초교앞,
5	호원2동	4	회룡사진입로, 망월사진입로, 회룡2교, 한신아파트앞
6	장암동	3	장암주공1단지정문앞, 장암주공2단지진입로, 신진빌라입구
7	신곡1동	6	신곡지하차도, SM마트옆길, 발곡초교주변, 의정부초교 뒷길 경사로, 성원아파트 입구, 서해아파트 도로변
8	신곡2동	6	새말초등학교앞길, 신곡동 78-28앞, 청광빌라 커브길, 신곡동 109-15 앞길, 덕유주유소옆 새말입구, 건영아파트뒷길
9	송산1동	5	검은돌 숫돌고개, 만가대앞R, 우리은행앞R, 송산1단지진입로, 롯데마그넷앞R.
10	송산2동	4	축석고개진입로, 청구1차아파트후문진입로, 신안아파트앞R, 전화국R
11	자금동	4	2군수진입로. 축석길 구도로, 성모병원앞, 면허시험장앞
12	가능1동	4	북부역앞, 경찰서앞, 의공고앞, 시민회관사거리
13	가능2동	4	서초교앞, 의료원앞, 흥선지하차도, 의정부역서부광장
14	가능3동	4	수원지 경로당~다윗수도원앞, 신도아파트뒤, 안골유원지입구, 구세군교회옆
15	낙양동	7	대림APT입구R, 윗벚들개-본동, 주공@앞도로, 현대@입구R, 동주민센터앞R, 운동장진입로R, 입석부락 진입로(고시원앞 소로)

13. 대규모 건설공사장 현황

(2014.03. 현재)

공사장명	공사장 자율방재담당자			공사장 자율방재확인자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성명
의정부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일성건설(주)	한광수		주택과	시설7급	허남준
민락 푸르지오아파트	(주)대우건설	강동하		주택과	시설7급	허남준
남해오네뜨 주상복합건설공사	남해종합건설(주)	임상근		주택과	시설7급	허남준
용현스포츠센터	배하종합건설(주)	최형석		주택과	시설7급	박정선
해동타워신축	(주)해동종합건설	조영우		주택과	시설7급	박정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호산업(주)	임형원		안전총괄과	시설7급	최종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한신공영(주)	김효근		도로과	시설7급	이필우
민락2지구 BRT 개설사업	롯데건설(주) 외1개사	박찬욱		도로과	시설7급	소영철
호원IC 개설사업	(주)한양	박남식		도로과	시설7급	이필우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삼중종합건설(주)	조용성		하수도과	시설7급	차영상

1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직위(담당부서)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의정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보수과	주) 820-1755 야) 820-1756	847-7680
제2군수 지원사령부 2167부대	군수과	820-6030(지통실) 820-6410(군수과)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분부의정부역	역무과	872-7788	
의정부 교육청	경영지원팀	주) 820-0124 야) 820-0100	842-2574
의정부 소방서	현장지휘과	주) 849-7422 야) 849-7120,3(상황실)	849-7419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사무소	자원보전과 (재난안전관리반)	주,야) 828-8000	828-8002
문산기상대		952-0583	953-7369
의정부경찰서	상황실경비교통과	849-3129, 3329	849-1005
의정부시설관리공단		828-6812	828-6849
제6831부대(306보충대)	군수과	845-4070	-
제1710부대(762통신대대)	군수과	530-3240	-
제1398부대(6공병여단 103공병대대)	군수과	843-1398(교환)	-
제6276부대(65사단)	군수참모처	866-9120(교환)	-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산업안전과	주) 850-7635 야) 877-0009	851-8853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검사2부	주,야) 878-0019	876-8345
대륜 E & S	안전관리팀	주) 849-6000 야) 02-951-0220(상황실)	02-951-0110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기술진단부	주) 850-7034 야) 850-7000	850-7085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전략경영팀	주) 849-1299 야) 849-1303(상황실)	849-1319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관리사업부	853-6681	853-6685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북부봉사관		874-3848	875-9444
의정부전력처	송전팀	주) 849-4351~3 야) 849-4366,7	849-4329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업무팀	주) 820-3418 야) 820-3422	820-3439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행정과	주) 828-5337 야) 828-5132(당직실)	828-5024
K T 의정부지사	CM팀	875-0060	876-2115
제2667부대(503방공대대)		855-7952	-

2014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
안 전 총 괄 과 방 재 팀
전 화 : 031)828-4331~4
팩 스 : 031)828-4941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의정부정보도서관



EM000694

의정부
행복 특별시

Enhancing Uijeongbu City's Value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겠습니다